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0

KOCCA20-45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0

KOCCA20-45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연구/조사기관 : (주)케이디앤리서치
연구/조사책임자 : 김유미 팀장

요 약 문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인 간 표준계약서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 양자의 균형 있는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및 통계자료, 주요 분쟁 자료 등을 통한 사례조사와 대중문화예술인 및 기획업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정량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연구기획-연구결과 적정성 검토로 구성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구조와 동향 파악을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주요 통계자료 분석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음악산업진흥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유관 법제도 검토 및 분석

대중문화예술산업 종별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파악

- 표준전속계약서(가수, 연기자) 등 주요 계약서 사용현황 조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관련 주요 쟁점 및 현장 인식, 활용도 조사
- 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인 심층 인터뷰/정량조사 실시

국내 분쟁 등 주요 사례 조사를 통한 개선된 계약조항 개발

- 법원 판례 및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불공정 계약사례, 전속계약 위반 사례, 금지행위 등 사례 조사
- 다양한 계약 이행 관련 주요 분쟁내용 조사를 통한 원인 파악 및 표준계약 관련 개선 방향 도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전문가, 법률 전문가, 유사연구 수행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분석

1. 대상 표준계약서 등 연혁

기존의 표준약관이 표준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대중문화예술산업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른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49호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2018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3호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서 이 고시에서 대중문화(가수, 배우) 관련 표준계약서 2건, 만화 관련 표준계약서 6건, 방송 관련 표준계약서 6건, 예술 관련 표준계약서 3건 및 저작재산권 관련 표준계약서 4건을 일괄하여 담고 있다.

이후에는 청소년 및 연습생 등에 대한 계약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등을 제정하고 보급하고 있다.

[표 1] 대상 표준계약서 등 연혁

현행 대상 고시 및 계약서	제정 및 개정 연혁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문체부고시 제2018-47호, 2018.11.28.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 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	- 문체부고시 제2018-33호, 2018.9.18. 제정 - 문체부고시 제2019-36호, 2019.8.27. 일부개정 - 문체부고시 제2019-41호, 2019.9.30. 일부개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 문체부고시 제2019-10호, 2019.3.4. 제정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 문체부고시 제2019-40호, 2019.9.29. 제정

2.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 현황

표준전속계약서는 매니지먼트 권한의 위임, 전속계약기간(최대 7년), 대중문화예술용역의 활동과 매체 한정,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과 의무, 가수의 권한 및 의무, 지식

재산권 관련 조항 적시, 수익의 분배에 관한 규정,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사항,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기자의 경우 연기자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한 경우 계약종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표 2]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조항	주제어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함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기획업자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 및 의무 명시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최대 기간 내 전속계약 기간 명시 및 기간의 예외 사유 제시
제4조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활동범위 및 매체를 특정
제5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개괄 및 구체적 사항
제6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가수에 부여되는 권한 및 의무를 명시
제7조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에 대한 가수 인성 및 정신건강 지원 의무 부여
제8조	상표권 등	가수 관련 상표, 디자인 개발 권한 및 기획업자의 권리자성 부여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기획업자에 일체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이용권원 부여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가수 관련 저작권의 기획업자 귀속 및 저작인접권 등 인정
제11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기획업자의 권리침해 배제조치 근거 및 가수의 협력의무 부여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수익 분배의 원칙을 수립하고 부당한 비용전가 금지 제시
제13조	확인 및 보증	부실 기획업자의 기만에 다른 계약 방지를 위한 의무 부여
제14조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변경 필요 사유 발생시 계약변경 방식 명시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방식을 명시
제16조	비밀유지	계약당사자 모두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
제17조	분쟁해결	분쟁해결 시 협력의무 부여 및 관할 명확화
제18조	청소년의 보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명시
제19조	부속 합의	부속 합의서를 통한 추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

나.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표 3]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조항	주제어	주요내용
제1조	목적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함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기획업자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 및 의무 명시
제3조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활동범위 및 매체를 특정
제4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개괄 및 구체적 사항
제5조	'연기자'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연기자에 부여되는 권한 및 의무를 명시
제6조	'연기자'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에 대한 연기자 인성 및 정신건강 지원 의무 부여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수익 분배의 원칙을 수립하고 부당한 비용전가 금지 제시
제8조	상표권 등	가수 관련 상표, 디자인 개발 권한 및 기획업자의 권리자성 부여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기획업자에 일체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이용권원 부여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연기자 관련 저작권의 기획업자 귀속 및 저작인접권 등 인정
제11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기획업자의 권리침해 배제조치 근거 및 연기자의 협력의무 부여
제12조	계약의 적용지역	계약 적용지역의 범위를 명문으로 명확화
제13조	계약기간	최대 기간 내 전속계약 기간 명시 및 기간의 예외 사유 제시
제14조	확인 및 보증	부실 기획업자의 기만에 다른 계약 방지를 위한 의무 부여
제15조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변경 필요 사유 발생시 계약변경 방식 명시
제16조	권리 등의 양도	계약상 권리의 제3자 양도 시에 대한 원칙 제시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방식을 명시
제18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중대한 질병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따른 예외 명시
제19조	비밀유지	계약당사자 모두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
제20조	분쟁해결	분쟁해결 시 협력의무 부여 및 관할 명확화
제21조	청소년의 보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명시
제22조	부속 합의	부속 합의서를 통한 추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

3. 계약서상 주요한 쟁점의 논의

표준전속계약서 관련하여 전속계약기간의 문제, 지식재산권 등 보호 문제, 수익의 분배 문제, 계약 해지·해제의 문제, 위약벌의 문제, 제3자 계약 체결 시 전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문제 등이 있었으며, 논의되는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표준전속계약 관련 논의의 주요 쟁점

구분	구체적 쟁점	
전속계약의 기간 문제	기간의 적절성 문제	
	가수중심의 경우 사실상 전속계약 기간 제한이 없는 상황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퍼블리시티권 등의 인정 및 처리 문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계약상 인정의 적절성 여부
		퍼블리시티권의 기획사 귀속의 적절성 여부
		퍼블리시티권의 구체적 이용비용 등 권리이용 체계에 대한 규정 흠결
수익의 분배 문제	약자일 경우 체결한 전속계약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매우 불리한 수익배분 조건을 합의	
	대중문화예술인에 투자 비용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기획사의 투자손실의 부담을 대중문화예술인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 있는지 여부	
계약 해지.해제의 문제	계약 당사자간 계약 종료를 위한 요건의 균형 문제	
위약벌 문제	위약금을 위약벌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위약벌 규정 포함 불가 문제	
	위약벌 규정이 당사자 일방에만 부여되어 있는 것의 문제	
제3자 계약 체결 시 전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문제	기획사의 대리권 행사 시 당사자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3장 대중문화예술인 계약 관련 주요 사례 분석

법원 판례 및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불공정 계약사례(장기간 전속계약, 출연료 미정산 등), 전속계약 위반 사례(독자 연예 활동, 위약금 등 손해배상, 사전설명 위반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표 5] 대중문화예술인 계약 관련 주요 사례 연구 요약

구분	주요 사례
판례에서의 사례	-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 손해배상 - 매니지먼트의무 불이행 또는 신뢰관계 파탄 - 전속계약 부존재 - 기타
판례 이외의 사례	- 전속계약 분쟁 - 출연금 및 정산금 분쟁 - 상표권 분쟁 - 부당계약 분쟁 - 이중계약 분쟁

제4장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사례수집과 더불어 개선된 계약 조항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실제 표준전속계약서의 활용현황을 파악하였다.

가. 심층 인터뷰 진행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업 대상 정량조사를 하기 전, 표준전속계약서 활용과 관련한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업 10개사, 대중문화예술인 4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주로 표준전속계약서(가수, 연기자) 등 주요 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연습생 표준계약서 등의 주요 쟁점과 현장의 인식 · 활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표 6] 심층인터뷰 진행 현황

구분	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
총 업체/인원	10개사	40명(연습생 포함)
진행기간	2020. 7. 28 ~ 2020. 8. 19	2020. 7. 13 ~ 2020. 8. 11
구분	- 연기 중심 5개사 - 가수 중심 5개사	- 음악 분야 성인 예술인 12명, 청소년 예술인 3명, 연습생 10명 - 연기 분야 성인 예술인 12명, 청소년 예술인 3명

나. 정량조사 진행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량조사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예술인 약 393명, 기획업자 약 1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2020년 10월 5일~11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었고, 대면조사가 어려운 응답 대상자만 온라인 조사페이지(모바일 접속 가능)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7] 정량조사 설문항목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 현황	-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나이, 전속계약여부 등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 및 미활용이유, 변경활용 항목 - 전속계약기간의 적절성 및 그에 대한 의견 - 활동매체 범위 및 SNS 활동에 대한 범위 제시 필요성 - 저작권, 저작인접권 명시 수준 - 수익분배 방법/정산내역 제공 형태 및 개선 필요 사항 -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지원,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 여부 - (가수/음악 관련) 실연, 해외공연, 음반 크레딧 포함에 대한 내용 - 기타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필요 사항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 연습생 계약 체결 여부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연습생 계약 미체결 이유 - 연습생 데뷔여부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종료 공지 등 - 훈련활동비용 범위 명시/정산내역 포함여부/훈련활동비 환급 여부 - 연습생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여부 - 연습생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활용 여부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미활용 이유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조항 적용 및 동의서 작성 여부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내용 중 현실 미반영 조문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변경 활용 시 변경 조항 -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 유형 및 출연료 수령 주체 - 방송 출연으로 생성되는 콘텐츠에 대한 수익 배분 및 지급기한/빈도 - 방송출연표준계약서상 수정, 개선 필요한 부분
기타	- 각 계약서 미활용 이유

기획업은 가수와 연기자 부문을 구분하여 가수 부문 54명, 연기자 부문 49명을 조사하였고, 대중예술인은 가수 120명, 연기자 273명을 조사하였다. 표준전속계약서와 관련된 조사이지만,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중예술인의 경우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므로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대중예술인도 81명을 조사하였다.

[표 8] 기획업 정량조사 응답자 현황

			표본 수(명)	구성비(%)
계			103	100.0
가수	소계		54	52.4(100.0)
	소속 예술인 수	1~4인	35	64.8
		5~9인	8	14.8
		10인 이상	11	20.4
연기자	소계		49	47.6(100.0)
	소속 예술인 수	1~4인	19	38.8
		5~9인	13	26.5
		10인 이상	17	34.7

[표 9] 대중예술인 정량조사 응답자 현황

		표본 수(명)	구성비(%)
■ 전체		393	100.0
가수	청소년	11	2.8
	성인	109	27.7
연기자	청소년	21	5.3
	성인	252	64.1
전속계약 여부	전속계약 중	312	79.4
	프리랜서 활동	81	20.6
데뷔 여부	데뷔함	366	93.1
	연습생 활동 중	27	6.9

2. 조사결과

가. 표준전속계약서 활용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비율은 대중예술인은 59.0%, 기획업은 35.0%로 조사되었다.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에 부속 합의서를 통해 보완하여 활용하는 비율은 예술인은 17.0%, 기획업은 45.6%로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또는 부속 합의서를 통해 보완하여 활용하는 비율은 예술인 76.0%, 기획업은 80.6%로 조사되었다.

표준전속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이 변경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계약 기간 및 갱신(가수 부문 기획업 63.0%, 연기자 부문 기획업 53.3%, 대중예술인 38.5%)’, ‘수익의 분배 및 정산(가수 부문 44.4%, 연기자 부문 46.7%, 대중예술인 46.2%)’, ‘저작권 귀속(가수 부문 11.1%, 연기자 부문 3.3%, 대중

예술인 46.2%)’ 등으로 조사되었다.

나. 전속계약 기간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최대 7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중예술인의 75.3%(적절한 기간은 평균 3.9년)가 해당 기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획업도 19.8%(적절한 기간은 평균 5.4년)가 7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가수 부문보다는 연기자 부문에서 현재의 최대 7년이 길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다. 활동 범위, 매체의 다양성, 개인 활동 제한 반영 여부

전속계약 체결 시 활동 매체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대중예술인의 93.0%(대체로 필요함 47.8% + 반드시 필요함 45.2%)가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주로 ‘활동 범위가 명확해야 일하기가 쉬우므로’ >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므로’ > ‘원하지 않은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에 대중예술인의 64.7%, 기획업의 81.6%가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범위는 ‘활동 매체만 포함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대중예술인 38.6%, 기획업은 46.7%, ‘전속 계약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대중예술인은 25.7%, 기획업은 26.7%였다. 개인의 SNS 활동은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대중예술인 31.7%, 기획업 26.7%로 조사되었다.

회사가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회사 또는 예술인의 이미지와 관련 없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이 대중예술인 54.2%, 기획업 40.6%로 가장 많았고, ‘별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도 대중예술인 36.5%, 기획업은 38.5%로 조사되었다.

라. 저작권, 저작인접권 귀속 여부와 문제점

대중예술인 중 전속계약서에서 저작권을 사업체에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례는 11.2%,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례는 35.9%, 기여도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는 사례는 29.5%로 조사되었으나,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도 일부 있었다.

기획업은 표준전속계약서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항목은 가수 부분은 '저작인접권의 귀속(75.5%)', '저작권의 귀속(69.4%)',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67.3%)' 이 가장 많았고, 연기자 부분은 '저작권의 귀속(80.9%)',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72.3%)', '저작인접권의 귀속(66.0%)에 관해 명시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기획업 역시 소속예술인 수가 적은 기획사일수록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기획업 중 5.8%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거래/양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거래/양도 경험은 연기자보다 가수 부문 기획업에서 많았으며, 소속예술인이 5~9인 규모의 중소 기획업에서 거래했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수익분배방법과 정산내역 제공 여부

대중예술인과 기획업과의 수익분배를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대해 가장 많이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수익배분 비율에 관한 내용(대중예술인 85.9%, 기획업 89.6%)' 이며, 그 외 '비용 정산 범위에 관한 내용(대중예술인 54.2%, 기획업 70.8%)', '수익배분 대상 범위에 관한 내용(대중예술인 53.2%, 기획업 66.7%)', '수익금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대중예술인 51.9%, 기획업 70.8%)'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산자료 제공 기간에 관한 내용' 은 대중예술인은 33.0%만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기획업은 60.4%가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수익금을 매월 또는 월별 지급하는 비율이 대중예술인은 30.8%, 기획업은 46.9%로 용역대금 수령 후 45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는 사례는 대중예술인은 61.9%(즉시 13.5%+매월 또는 월별 30.8%+45일 이내 17.6%), 기획업은 92.7%(즉시 28.1%+매월 또는 월별 46.9%+45일 이내 17.7%)인 것으로 대중예술인과 기획업 간 응답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정산내역은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또는 원할 때 즉시) 정산내역만 제공하는 사례가 대중예술인은 45.8%, 기획업은 51.0%로 가장 많았고, 대중예술인 중 22.1%, 기획업 중 37.5%는 주기적(또는 원할 때 즉시)으로 정산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별도의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대중예술인은 22.4%, 기획업은 10.4%로 조사되었다.

바. 성희롱/성폭력, 우울증 등에 대한 지원

대중예술인의 52.6%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어떤 교육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기획업은 24.5%만 어떤 교육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은 '외부 강사를 통해 직접 교육하는 형태로 진행' 한 사례는 대중예술인은 9.6%, 기획업은 15.7%,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강좌를 통해 진행'한 사례는 대중예술인은 8.0%, 기획업은 33.3%였으며, '구두로 간단한 사항만 전달' 한 사례는 대중예술인 24.7%, 기획업 25.5%로 조사되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항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대중예술인 중 96.8%가 동의하고 있으나 기획업은 60.4%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속사로부터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대중예술인 67.6%, 기획업은 35.6%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획업은 소속된 예술인의 수가 적을수록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대중예술인의 요청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대중예술인은 15.7%, 기획업은 34.7%로 응답하였고, '주기적으로(주간/월간/분기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음',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 비정기적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 받는 경우가 대중예술인은 각각 8.3%인데 반해, 기획업은 각각 13.9%, 15.8%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지원 방법은 주로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35.6%)' 이며, 그 외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31.7%)', '내부 상담/교육 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30.7%)' 등의 형태로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속사로부터 주기적 또는 특정사안 발생 시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중예술인 중 25.7%는 소속사에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요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수보다 연기자에서 그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청소년 연기자에서 신청 비율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표준전속계약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대중예술인은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에 대한 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수익분배 및 정산과 관련한 정확한 기준 기재’ > ‘계약 기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획업은 ‘기획사별 특수성/대중예술인의 컨디션에 맞는 내용 구성’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위약벌/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제시’ > ‘해외공연, 실연에 관한 내용 포함’ > ‘대중예술인/기획업 간 역할에 대한 범위 제시’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제5장 표준계약서의 개선 방안

현재의 표준계약서 활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현행 표준계약서의 부적절한 부분 혹은 규정 내용의 부족 부분 등을 도출하고 이를 적절하게 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전제로 표준계약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표준계약서의 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표준계약서의 규정을 수정 혹은 보완하기 위하여 1) 기존 표준계약서 규정의 개정, 2) 별도 부속합의 등의 추가, 3) 신규 표준계약서의 개발을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기존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방송출연표준계약서와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아직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여 표준전속계약서를 중심으로 개정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표준계약서의 역할과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표준계약서는 산업적 특수성과 보편성, 여러 사례에서의 보편성을 기준으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넷째, 계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가 서로 동일한 지위 하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일방에 불공평한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 양자간 균형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대중문화예술산업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존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제1장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 1
3. 연구방법 ····· 2
가. 심층 인터뷰 설계 ····· 2
나. 정량조사 설계 ····· 3
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분석 ····· 4
라. 대중문화예술인 계약 관련 주요 사례 연구 ····· 5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분석 ····· 9
1.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 9
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표준계약서 ····· 9
나.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과 논의 ····· 11
2.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 현황 ····· 15
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표준 전속계약서 ····· 15
나.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 23
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 27
라.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 29
3. 계약서상 주요한 쟁점의 논의 ····· 31
가. 표준전속계약서 관련 ····· 31
나. 표준출연계약서 관련 ····· 45
다. 청소년 및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 관련 ····· 51
제3장 대중문화예술인 계약 관련 주요 사례 ····· 55
1. 판례에서의 사례 ····· 55
가. 개관 ····· 55
나.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 57
다.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 67
라. 손해배상 ····· 74
마.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또는 신뢰 관계 파탄 ····· 77
바. 전속계약 부존재 ····· 84
사. 기타 ····· 87

Contents

2. 판례 이외의 사례 ····92

가. 전속계약 분쟁 ····92

나. 출연금 및 정산금 분쟁 ····102

다. 상표권 분쟁 ····108

라. 부당계약 분쟁 ····111

마. 이중계약 분쟁 ····113

제4장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조사결과 ····119

1. 조사개요 ····119

가. 심층 인터뷰 ····119

나. 정량조사 ····122

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집 ····124

2. 대중문화예술인 조사결과 ····126

가. 정량조사 결과 ····126

나. 심층 인터뷰 결과 ····154

3. 기획업 조사결과 ····195

가. 정량조사 결과 ····195

나. 심층 인터뷰 결과 ····220

4. 요약 및 결론 ····235

가. 표준전속계약서 내용에 대한 개선 필요 부분 ····235

나.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대한 활용 ····239

다. 결론 ····240

라. 조사의 한계 ····241

제5장 표준계약서의 개선 방안 ····245

1. 표준계약서 개선의 방향성 ····245

2.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48

가. 개정(안) ····248

나. 주요 개정 사항의 이유 ····258

3.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73

가. 개정(안) ····273

나. 주요 개정 사항의 이유 ····282

제6장 결론 ·····299

〈부록〉 기획업 정량조사표 ·····307
〈부록2〉 대중문화예술인 정량조사표 ·····321

Contents

[표 1] 심층인터뷰 진행 현황 ····· 3
[표 2] 정량조사 설문항목 ····· 4
[표 3] 대상 표준계약서 ····· 4
[표 4] 대중문화예술인 계약 관련 주요 사례 연구 ····· 5
[표 5] 표준전속계약 관련 논의의 주요 쟁점 ····· 12
[표 6] 개정(2011. 6. 16.) 표준계약서 신설조항 ····· 12
[표 7] 대상 표준계약서 등 연혁 ····· 14
[표 8]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15
[표 9]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19
[표 10]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 23
[표 1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 25
[표 1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 27
[표 13]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 29
[표 14]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전속계약 기간 관련 규정) ····· 32
[표 15]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전속계약 기간 관련 규정) ····· 32
[표 16]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 34
[표 17]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 35
[표 18]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수익 분배 관련 규정) ····· 37
[표 19]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수익 분배 관련 규정) ····· 38
[표 20]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계약 해지 등 관련 규정) ····· 40
[표 21]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계약 해지 등 관련 규정) ····· 40
[표 22]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위약벌 관련 규정) ····· 42
[표 23]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위약벌 관련 규정) ····· 42
[표 24]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제3자 계약 동의 관련 규정) ····· 44
[표 25] 표준전속계약 관련 논의의 주요 쟁점 ····· 44
[표 26] 가수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출연료 지급 대상 관련 규정) ····· 46
[표 27] 배우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출연료 지급 대상 관련 규정) ····· 46
[표 28] 가수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소극적 의무 관련 규정) ····· 47
[표 29] 배우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소극적 의무 관련 규정) ····· 48
[표 30] 가수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사에 반한 출연 관련 규정) ····· 49
[표 31] 배우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사에 반한 출연 관련 규정) ····· 49
[표 32] 가수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저작인접권 관련 규정) ····· 50
[표 33] 배우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저작인접권 관련 규정) ····· 51
[표 34] 주요 쟁점 별 분석 대상 법원 판례 ····· 55
[표 35] 심층인터뷰 진행 현황 ····· 119

[표 36] 기획업 대상 주요 인터뷰 내용 ····· 120
[표 37] 대중문화예술인 주요 인터뷰 내용 ····· 121
[표 38] 기획업 심층 인터뷰 참여자 ····· 122
[표 39] 대중문화예술인 심층 인터뷰 대상자 ····· 122
[표 40] 기획업 대상 정량조사 설문항목 ····· 123
[표 41] 대중문화예술인 정량조사 설문항목 ····· 124
[표 42] 기획업 정량조사 응답자 현황 ····· 125
[표 43] 대중예술인 정량조사 응답자 현황 ····· 125
[표 44]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 126
[표 4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 활용하지 않는 이유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대중예술인 ····· 127
[표 46] 전속계약 체결 전 계약조건 검토-전속 대중예술인 ····· 127
[표 47]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항목-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예술인(가수) ····· 128
[표 48]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항목-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예술인(연기자) ····· 129
[표 49] 적절한 전속계약 기간-전속 대중예술인 ····· 130
[표 50] 전속계약 체결 시 활동 범위(복수응답)-전속 대중예술인 ····· 130
[표 51] 전속계약 체결 시 활동 매체(복수응답)-전속 대중예술인 ····· 131
[표 52] 전속계약 체결 시 활동 매체 범위에 대한 명시 필요-전속 대중예술인 ····· 131
[표 53]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 132
[표 54] 개인의 활동(연예활동 외 겸업, 파트타임 등)에 대한 제한 필요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 133
[표 55] 표준전속계약서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한 명시(저작권)-전속 대중예술인 134
[표 56] 표준전속계약서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한 명시(저작인접권(실연))
-전속 대중예술인 ····· 134
[표 57] 표준전속계약서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한 명시(저작인접권(음반제작))
-전속 대중예술인 ····· 135
[표 58] 표준전속계약서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한 명시(저작인접권(음반제작))
-전속 대중예술인 ····· 135
[표 59]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관하여 표준전속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내용
(복수응답)-전속 대중예술인 ····· 136
[표 60] 수익분배방법-전속 대중예술인 ····· 137
[표 61] 수익분배방법에 대한 만족도-전속 대중예술인 ····· 137
[표 62] 수익금 지급 빈도-전속 대중예술인 ····· 138
[표 63] 정산내역 형태-전속 대중예술인 ····· 138
[표 64] 대중예술인으로 활동하면서 피해 경험 여부(복수응답)-전속 대중예술인 ····· 139

Contents

[표 65] 퍼블리싱 계약 여부-가수 또는 겸업 전속 대중예술인 ····· 140
[표 66] 퍼블리싱을 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수익배분
-가수 또는 겸업 전속 대중예술인 ····· 140
[표 67] 실연, 해외공연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 포함에 대한 의견
-가수 또는 겸업 전속 대중예술인 ····· 141
[표 68] 음반 크레딧에 대한 내용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
-가수 또는 겸업 전속 대중예술인 ····· 141
[표 69]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진행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 142
[표 70] 성희롱/성폭력 관련 처리 방법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전속 대중예술인 ····· 142
[표 71]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 143
[표 72]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방법(복수응답)
-지원 경험 있는 전속 대중예술인 ····· 144
[표 73]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요청 경험
-지원 경험 있는 전속 대중예술인 ····· 144
[표 74]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연습생 활동 경험자 ····· 145
[표 75]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하지 않는 이유-연습생 활동 경험자 중
연습생 표준계약서 미 활용자 ····· 146
[표 76]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분(복수응답)-연습생 활동 경험자 ····· 146
[표 77] 연습생 계약체결 전 계약 조건(또는 계약서)검토 동반자-연습생 활동 경험자 ····· 146
[표 78] 소속사로부터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지원여부-연습생 활동 경험자 ····· 147
[표 79] 소속사로부터 지원받은 형태(복수응답)-연습생 활동 경험자 중 지원경험자 ····· 147
[표 80] 인성교육/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 요청 경험-연습생 활동 경험자 중 지원 경험자 ····· 148
[표 81]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정기출연) ····· 148
[표 82]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일회성 출연) ····· 149
[표 83] 방송 출연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여부 ····· 149
[표 84]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는 대중예술인 ····· 150
[표 85] 방송 출연계약 작성 주체-방송 출연계약서 작성 대중예술인 ····· 150
[표 86]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변경 활용 여부-방송 출연계약서 작성 대중예술인 ····· 151
[표 87]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조문 변경 내용(복수응답)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대중예술인 ····· 151
[표 88] 방송 출연 시 출연료, 출연 기간, 출연 조건 등이 변경되어 경험한 피해 ····· 152
[표 89] 방송 출연 시 출연료, 출연 기간, 출연 조건 등 변경 시 계약조건 변경 여부
-방송 출연 조건이 변경되었으나 피해는 없었던 예술인 ····· 153

[표 90] 기획업 응답 업체 특성 ····· 195
[표 9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 ····· 196
[표 92]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항목-표준전속계약서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업체 ····· 197
[표 93] 최대 7년의 전속 기간의 적절성 평가-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198
[표 94] 개인이 직접 개설한 SNS 활동을 업무 범위에 포함 및 제한 여부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199
[표 95]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표준전속계약서에
제시 필요 여부-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중 SNS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업체 ····· 199
[표 96]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포함 범위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중 SNS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업체 ····· 200
[표 97] 회사가 개인의 활동(연예활동 외 겸업, 파트타임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가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201
[표 98]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 명시 여부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202
[표 99]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거래 한 경험-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202
[표 100]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관하여 표준전속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내용(복수응답)-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203
[표 101] 수익금 지급 진행 빈도-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204
[표 102] 정산내역 제공 형태-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205
[표 103]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유지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 처리 방법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205
[표 104] 일반적인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벌의 대상-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206
[표 105] 계약해지 시 배상 수준과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을 희망하는 배상 범위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206
[표 106] 퍼블리싱 계약 여부-퍼블리싱을 하는 기획업 ····· 207
[표 107] 퍼블리싱을 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수익배분-퍼블리싱을 하는 기획업 ····· 207
[표 108] 실연, 해외공연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 포함에 대한 의견-가수 부문 ····· 208
[표 109] 음반 크레딧에 대한 내용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가수 부문 ····· 208
[표 110]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진행 여부 ····· 209
[표 111] 성희롱/성폭력 관련 처리 방법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210
[표 112]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방법(복수응답) ····· 210
[표 113]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연습생 보유 기획업 ····· 211
[표 114]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분-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업체 ····· 211
[표 115] 연습생이 데뷔하게 되는 경우 계약 기간 산정-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업체 ····· 212

Contents

[표 116]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분(복수응답)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업체 ····· 212
[표 117] 연습생의 계약 연장 또는 계약 종료에 대한 공지–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업체 ····· 212
[표 118]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활용 여부–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유업체 ··· 213
[표 119]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내용 중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는 내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유업체 ····· 213
[표 120]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조항에 대한 적용 여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유업체 ····· 214
[표 121]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정기출연)–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 ····· 215
[표 122]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음악방송, 1회성 예능 등)–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 ····· 216
[표 123]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기획업 216
[표 124]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필요 여부–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 ····· 217
[표 125] 방송 출연료 외 방송 출연으로 생성되는 콘텐츠로 인한 수익 배분에 관한 의견
–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 ····· 217
[표 126] 방송 출연료 외 방송 출연으로 생성되는 콘텐츠로 인한 수익 배분 기간
–방송 출연으로 생성된 콘텐츠 수익 배분이 필요하다는 업체 ····· 218
[표 127] 방송 출연료 외 방송 출연으로 생성되는 콘텐츠로 인한 수익 배분 주기
–방송 출연으로 생성된 콘텐츠 수익 배분이 필요하다는 업체 ····· 218
[표 128]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수준 ····· 219
[표 129]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신구대조표 ····· 248
[표 130] 개정(안) 제2조 ····· 258
[표 131] 개정(안) 제3조 ····· 258
[표 132] 개정(안) 제4조 ····· 259
[표 133] 개정(안) 제6조 ····· 260
[표 134] 개정(안) 제7조 ····· 262
[표 135] 개정(안) 제8조 ····· 264
[표 136] 개정(안) 제9조 ····· 265
[표 137] 개정(안) 제10조 ····· 266
[표 138] 개정(안) 제11조 ····· 267
[표 139] 개정(안) 제13조 ····· 268
[표 140] 개정(안) 제17조 ····· 271
[표 141] 개정(안) 제20조 ····· 272
[표 14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신구대조표 ····· 273
[표 143] 개정(안) 제2조 ····· 282
[표 144] 개정(안) 제4조 ····· 283

[표 145] 개정(안) 제6조 ····· 284
[표 146] 개정(안) 제7조 ····· 286
[표 147] 개정(안) 제8조 ····· 287
[표 148] 개정(안) 제9조 ····· 288
[표 149] 개정(안) 제10조 ····· 289
[표 150] 개정(안) 제11조 ····· 291
[표 151] 개정(안) 제13조 ····· 292
[표 152] 개정(안) 제19조 ····· 294
[표 153] 개정(안) 제20조 ····· 295
[표 154] 개정(안) 제23조 ····· 296

Contents

[그림 1] 심층인터뷰 진행 절차 ····· 3
[그림 2] 심층 인터뷰 진행 절차 ····· 119
[그림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 126
[그림 4]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항목-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예술인 ····· 128
[그림 5] 적절한 전속계약 기간-전속 대중예술인 ····· 129
[그림 6]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 132
[그림 7] 개인의 활동(연예활동 외 겸업, 파트타임 등)에 대한 제한 필요 여부 -전속 대중예술인 133
[그림 8]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관하여 표준전속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내용(복수응답)-전속 대중예술인 ····· 136
[그림 9] 정산내역 형태-전속 대중예술인 ····· 138
[그림 10]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진행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 142
[그림 11]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 143
[그림 1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 ····· 196
[그림 13]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항목-표준전속계약서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업체 ····· 197
[그림 14] 최대 7년의 전속 기간의 적절성 평가-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198
[그림 15]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포함 범위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중 SNS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업체 ····· 200
[그림 16] 회사가 개인의 활동(연예활동 외 겸업, 파트타임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가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201
[그림 17]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관하여 표준전속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내용(복수응답)-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203
[그림 18] 수익금 지급 진행 빈도-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 204
[그림 19]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진행 여부 ····· 209
[그림 20]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방법(복수응답) ····· 210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9년 가수 및 연기자 중심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2종)를 제정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그러나 전속계약을 중심으로 약관의 불공정성을 규제의 내용으로 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된 대응은 방송의 출연 및 제작 등에 있어서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도 개선의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2018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표준계약서 보급 · 제 개정 정책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인 간 표준계약서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 양자의 균형 있는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및 통계자료, 주요 분쟁 자료 등을 통한 사례조사와 대중문화예술인 및 기획업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정량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연구기획-연구결과 적정성 검토로 구성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구조와 동향 파악을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주요 통계자료 분석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음악산업진흥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유관 법제도 검토 및 분석

대중문화예술산업 종별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파악

- 표준전속계약서(가수, 연기자) 등 주요 계약서 사용현황 조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관련 주요 쟁점 및 현장 인식, 활용도 조사
- 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인 심층 인터뷰/정량조사 실시

국내 분쟁 등 주요 사례 조사를 통한 개선된 계약조항 개발

- 법원 판례 및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불공정 계약사례, 전속계약 위반 사례, 금지행위 등 사례 조사
- 다양한 계약 이행 관련 주요 분쟁내용 조사를 통한 원인 파악 및 표준계약 관련 개선 방향 도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전문가, 법률 전문가, 유사연구 수행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사례수집과 더불어 개선된 계약 조항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실제 표준전속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가. 심층 인터뷰 설계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업 대상 정량조사를 하기 전, 표준전속계약서 활용과 관련한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업 10개사, 대중문화예술인 4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주로 표준전속계약서(가수, 연기자) 등 주요 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연습생 표준계약서 등의 주요 쟁점과 현장의 인식 · 활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심층 인터뷰는 2020년 7월

8일~2020년 8월 19일까지 진행) 직접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진의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협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일정 내 마무리할 수 있었다.

대상자 선정 및 컨택	- 기획업자 : 전화 컨택을 통해 실제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섭외 - 대중문화예술인 : 연구진의 인적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계약 경험이 있는 예술인 섭외
↓	
가이드라인 작성	- 조사 목적을 감안한 조사 내용을 구성하여 1차 가이드라인을 작성 - 현장 전문가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1차 가이드라인 수정 - 각 1~2명 파일럿 인터뷰 진행 후 가이드라인 보완
↓	
인터뷰 진행	- 인터뷰 진행은 연구진이 직접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 - 인터뷰이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 내용 녹취
↓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인터뷰 내용 스크립트 정리 -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그림 1] 심층인터뷰 진행 절차

[표 1] 심층인터뷰 진행 현황

구분	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
총 업체/인원	10개사	40명(연습생 포함)
진행기간	2020. 7. 28 ~ 2020. 8. 19	2020. 7. 13 ~ 2020. 8. 11
구분	- 연기 중심 5개사 - 가수 중심 5개사	- 음악 분야 성인 예술인 12명, 청소년 예술인 3명, 연습생 10명 - 연기 분야 성인 예술인 12명, 청소년 예술인 3명

나. 정량조사 설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량조사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예술인 393명, 기획업자 1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10월 5일~11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었고, 대면 조사가 어려운 응답 대상자만 온라인 조사페이지(모바일 접속 가능)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량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 정량조사 설문항목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 현황	-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나이, 전속계약여부 등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 및 미활용이유, 변경활용 항목 - 전속계약기간의 적절성 및 그에 대한 의견 - 활동매체 범위 및 SNS 활동에 대한 범위 제시 필요성 - 저작권, 저작인접권 명시 수준 - 수익분배 방법/정산내역 제공 형태 및 개선 필요 사항 -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지원,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 여부 - (가수/음악관련) 실연, 해외공연, 음반 크레딧 포함에 대한 내용 - 기타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필요 사항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 연습생 계약 체결 여부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연습생 계약 미체결 이유 - 연습생 데뷔여부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종료 공지 등 - 훈련활동비용 범위 명시/정산내역 포함여부/훈련활동비 환급 여부 - 연습생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여부 - 연습생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활용 여부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미활용 이유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조항 적용 및 동의서 작성 여부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내용 중 현실 미반영 조문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변경 활용 시 변경 조항 -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 유형 및 출연료 수령 주체 - 방송 출연으로 생성되는 콘텐츠에 대한 수익 배분 및 지급기한/빈도 - 방송출연표준계약서상 수정, 개선 필요한 부분
기타	- 각 계약서 미활용 이유

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분석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근거한 6종의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표 3] 대상 표준계약서

현행 대상 고시 및 계약서	제정 및 개정 연혁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문체부고시 제2018-47호, 2018.11.28.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 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	- 문체부고시 제2018-33호, 2018.9.18. 제정 - 문체부고시 제2019-36호, 2019.8.27. 일부개정 - 문체부고시 제2019-41호, 2019.9.30. 일부개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 문체부 고시 제2019-10호, 2019.3.4. 제정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 문체부고시 제2019-40호, 2019.9.29. 제정

라. 대중문화예술인 계약 관련 주요 사례 연구

법원 판례 및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불공정 계약사례(장기간 전속계약, 출연료 미정산 등), 전속계약 위반 사례(독자 연예 활동, 위약금 등 손해배상, 사전설명 위반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표 4] 대중문화예술인 계약 관련 주요 사례 연구

구분	주요 사례
판례에서의 사례	-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 손해배상 - 매니지먼트의무 불이행 또는 신뢰관계 파탄 - 전속계약 부존재 - 기타
판례 이외의 사례	- 전속계약 분쟁 - 출연금 및 정산금 분쟁 - 상표권 분쟁 - 부당계약 분쟁 - 이중계약 분쟁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분석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분석

1.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표준계약서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표준계약서 규범의 태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할 의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부여(법 제8조 제1항)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것이 요구되며(법 제8조 제1항), 현실에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표준계약서 내용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8조 제2항).

대중문화예술용역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의미(법 제2조 2호)하는데,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가수와 연기자의 연예활동이 이루어지는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수와 연기자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통칭할 수 있으며, 이 법 제2조 3호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로 정의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이에 ⅰ) 계약 기간 · 갱신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ⅱ)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ⅲ)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ⅳ)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ⅴ)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ⅵ)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ⅶ)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ⅷ) 아동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ⅸ) 부속합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이들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동법 제7조 제3항).

(2) 표준계약서의 특징과 한계[1)]

민법 및 특별법 등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계약 체결상 지위의 차이, 정보 능력의 차이 등에 따라 실질적인 계약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상대적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계약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을 줄여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대중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및 제정, 그리고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보통 정형적 거래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을 모아 놓은 계약서식을 의미하는데, 크게 양식으로서의 표준계약서와 규제로서의 표준계약서, 두 가지로 구별한다. 양식으로서의 표준계약서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계약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표준양식으로서 일종의 견본 계약서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업무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개별 계약이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 표준양식에 적법한 변형을 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2)] 반면, 규제로서의 표준계약서는 양식으로서의 표준계약서가 계약 당사자 간에 이를 채택할 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에 의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표준계약이 개별 계약으로 편입되어 구체적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상대적 약자의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고려된 것이다.[3)]

이와 같은 표준계약서는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건축 관련 법령에서의 예와 같이 특정 법규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에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표준계약서는 결국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표준계약서를 통하여 상대적 약자인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일종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함으로써 계약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1) 표준계약서의 특징과 한계에 관하여는「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37-38면을 인용하였다.

2) 박영정,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19면; 강석홍,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12, 39면.

3) 박영정, 상게보고서(2009), 20면; 강석홍, 상게보고서(2012), 39면.

나.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과 논의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운영 과정

우리나라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업계에서 통일되고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계약의 주체마다 상이한 계약서를 사용하게 되고, 특히 상당히 부당한 계약 형태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2008년에서 2009년 당시 각종 연예계의 계약 분쟁이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주요 기획사들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 직업선택자유 침해 조항,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조항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4)]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업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당시의 전속계약 개선을 진행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 7월 6일 가수 및 연기자 중심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2종)를 제정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이는 2008년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서 시정」의 후속 조치로 2008년 12월부터 관련 사업자단체와 함께 추진된 것이었다.[5)] 이에 가수 부문은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6)]가, 연기자 부문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표준계약서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확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정안을 마련한 협회와 대한가수협회,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그리고 현직 연예인들과 수십 차례의 간담회 및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당시 전속계약의 불공정한 조항 사례는 230명의 전속계약서에서 시정사항이 발견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연예 활동의 일방적 지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이 대표적이었고, 291명의 전속계약서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연예인 소재 상시 통보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소속사 허락 없이는 활동중지 및 은퇴금지 조항, 소속사의 홍보활동 시 강제·무상 출연 등이 대표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측면과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4) 오마이뉴스 2019. 3. 26.자 기사(김상화 기자), "강다니엘부터 이용규 분쟁까지... 표준계약서가 뭐기에?."

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8.12.1.자), "공정위, 연예기획사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6)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표준전속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2009. 7. 6.)을 앞두고 2009년 7월 3일 심사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중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청구취하에도 불구하고 심사한 표준계약을 공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9. 7. 7.자), "연예인 권익과 연예산업 발전, 2마리 토끼를 잡는다.."

두었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표준전속계약 관련 논의의 주요 쟁점

중점사항	반영내용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의 권익증진	- 장기 계약 기간설정 제한 또는 해지권 강화, 다만, 개인 문제로 활동중단 시 연장 가능하며 가수의 경우 해외 활동 등의 경우 장기계약 유지 가능 - 구체적인 연예 활동 범위·매체 등이나 독점적 권리부여는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여 자율성을 존중 -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인격권 보호 강화 및 기획사 측의 부당행위 요구 시 거절할 권리 확보 - 연예인의 실연권 보호 및 제3자에게 권리양도 시 연예인 서면동의 필요
연예산업 발전토대 마련	- 비용의 합리적 분담 및 수익분배의 투명성 확보 - 저작권 귀속 관계의 명확화(계약 기간 종료 후 콘텐츠 판매에 필요한 저작권 등의 이용 보장) - 연예인 인성교육 강화, 정신건강 지원 및 연예기획사의 자격 강화(연예인에게 보증토록) - 유통 활성화(사업다각화) 협력 명시 및 불필요한 소송 남발 방지(중재절차 선택 가능)

한편, 이후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2011년 6월 16일 개정하였고, 2014년 9월 19일에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6] 개정(2011. 6. 16.) 표준계약서 신설조항

제18조(아동.청소년의 보호)

①갑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갑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갑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한편, 2016년 4월 26일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프로듀스101, 위키드 및 K팝 스타 시즌 5의 출연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다. 이때 지적된 시정내용으로는, ⅰ) 부당한 편집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ⅱ) 출연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ⅲ) 출연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ⅳ) 출연자의 저작인격권 등 침해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조항, ⅴ) 지나치게 추상적인 계약 해제·해지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ⅵ) 출연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ⅶ) 사업자의 권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ⅷ) 출연자의 가족 등에 대한 인터뷰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자가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ⅸ) 출연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출연자의 사망 등도 출연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ⅹ) 출연자에게 부당하게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ⅹi) 출연자의 가족 등에게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ⅹii)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에 관한 내용이었다.[7]

최근에는 8개 기획사 소속 연습생 계약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이 요구되었는데, 지적된 시정내용으로는 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ⅱ)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 ⅲ)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ⅳ)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ⅴ)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 ⅵ)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에 관한 내용이었다.[8]

(2)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운영 과정

전속계약을 중심으로 약관의 불공정성을 규제의 내용으로 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된 대응은 방송의 출연 및 제작 등에 있어서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도 개선의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기존 표준약관이 일종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여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대중문화예술산업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른 산업적 특성이 적절히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비판 및 시장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9] 이를 위한 과정으로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 운영,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 시행 및 분야별 테스크포스(TF)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49호로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까지, 연결되어 동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약에 관한 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 4. 26.자),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화.”

8)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7. 3. 7.자),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2. 6. 18.자), “연예 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

이에 따라 2013년에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ⅰ) 출연료는 방송 익월 15일 이내 지급, ⅱ) 출연료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미지급 예방장치 마련, ⅲ) 쪽대본 개선을 위해 대본을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고, 일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 이내로 제한, ⅳ) 방송사(제작사)가 계약 해지 시 출연료의 10% 이상 지급, ⅴ) 촬영 종료 후 보충 촬영 등은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ⅵ) 장기 촬영의 경우, 촬영장에 휴식시설 제공 등이다.[10] 그러던 가운데 2018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3호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서 이 고시에서 대중문화(가수, 배우) 관련 표준계약서 2건, 만화 관련 표준계약서 6건, 방송 관련 표준계약서 6건, 예술 관련 표준계약서 3건 및 저작재산권 관련 표준계약서 4건을 일괄하여 담고 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을 명시하게 됨에 따라 과거 공정거래 측면에서 이를 다루던 것을 넘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표준약관을 기초로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용어를 정비[11]하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2018년 11월 28일 새로운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로 마련하였다. 이때 새롭게 포함된 내용으로는 ⅰ)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사전 설명 내용, ⅱ) 수익의 분배 등의 회계처리, ⅲ) 비밀유지와 신의성실, ⅳ) 청소년의 보호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등에 관한 조항들이 있다. 이후에는 청소년 및 연습생 등에 대한 계약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등을 제정하고 보급하고 있다.

[표 7] 대상 표준계약서 등 연혁

현행 대상 고시 및 계약서	제정 및 개정 연혁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문체부고시 제2018-47호, 2018.11.28.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 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	- 문체부고시 제2018-33호, 2018.9.18. 제정 - 문체부고시 제2019-36호, 2019.8.27. 일부개정 - 문체부고시 제2019-41호, 2019.9.30. 일부개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 문체부고시 제2019-10호, 2019.3.4. 제정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 문체부고시 제2019-40호, 2019.9.29. 제정

1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 7. 30.자),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11) 예를 들어, '연예활동'은 '대중문화예술용역',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용어로 정비.

2.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 현황

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표준 전속계약서[12)]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가) 계약서 구성 및 체계

[표 8]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조항	주제어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함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기획업자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 및 의무 명시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최대 기간 내 전속계약 기간 명시 및 기간의 예외 사유 제시
제4조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활동범위 및 매체를 특정
제5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개괄 및 구체적 사항
제6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가수에 부여되는 권한 및 의무를 명시
제7조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에 대한 가수 인성 및 정신건강 지원 의무 부여
제8조	상표권 등	가수 관련 상표, 디자인 개발 권한 및 기획업자의 권리자성 부여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기획업자에 일체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이용권원 부여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가수 관련 저작권의 기획업자 귀속 및 저작인접권 등 인정
제11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기획업자의 권리침해 배제조치 근거 및 가수의 협력의무 부여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수익 분배의 원칙을 수립하고 부당한 비용전가 금지 제시
제13조	확인 및 보증	부실 기획업자의 기만에 다른 계약 방지를 위한 의무 부여
제14조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변경 필요 사유 발생시 계약변경 방식 명시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방식을 명시
제16조	비밀유지	계약당사자 모두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
제17조	분쟁해결	분쟁해결 시 협력의무 부여 및 관할 명확화
제18조	청소년의 보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명시
제19조	부속 합의	부속 합의서를 통한 추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

12) 문체부고시 제2018-47호, 2018. 11. 28.제정.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첫째, 기획업자는 가수로부터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다. 이때 매니지먼트 권한의 대상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 활동의 범위에 한정된다. 즉, 본 표준계약서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용역 및 활동 매체 등의 한계 내에서 기획업자에 매니지먼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다만, 허용된 모든 범주에서의 매니지먼트 위임이 아닌 가수가 원하는 일부에 대한 매니지먼트만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획업자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 그는 그 권한을 성실히 행사할 의무가 부여되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가수의 인격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독점적 매니지먼트 위임으로 인하여 가수는 권한이 있는 기획업자와의 사전 승인 없이 별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둘째, 전속계약은 최대 7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만약 계약 기간을 7년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 7년이 경과 후 가수는 계약의 해지를 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계약은 종료된다. 한편, 계약의 해지권은 장기의 해외 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수와 기획업자 간 서면의 합의를 통하여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군 복무, 임신·출산 등 가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어려울 때는 해당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연장일수 등)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도록 하였다.

셋째, 대중문화예술용역의 활동과 그 매체를 한정한다. 우선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은 ⅰ)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 출연, 광고 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 ⅱ) 배우, 모델, 성우, TV 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ⅲ) 기타 앞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활동으로 한정된다. 한편,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매체는 ⅰ)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ⅱ)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ⅲ)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ⅳ)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ⅴ)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로 한정된다. 이러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활동 및 이를 위한 매체 등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넷째,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기획업자는 ⅰ)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ⅱ)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ⅲ)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ⅳ)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홍보 및 광고, ⅴ) 제3자로부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ⅵ)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ⅶ)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ⅷ) 기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제반 지원에 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아울러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의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부여받으나, 가수의 명시적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한편,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에 대한 제3자의 방해 등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을 위한 목적 이외의 가수의 사생활 및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은 가수의 사전 서면동의를 거쳐 제3자에 양도할 수 있다.

다섯째, 가수의 권한 및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가수는 기획업자에게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용역 관련 자료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한편, 가수는 성실하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품위 손상 및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가수는 기획업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부당한 파기 또는 침해행위가 금지된다.

여섯째,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각 조항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상표권 및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기획업자는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계약 기간에 한정되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등록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가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때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투여한 비용 중 기획업자의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 등에 관련하여, 기획업자는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은 계약 기간에만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가수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 콘텐츠에 포함된 가수의 실연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는 기획업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매출 발생 시 가수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수개월 단위로 지급하여야 하고, 가수는 계약종료 후 1년간 위의 콘텐츠를 자신 혹은 제3자를 위하여 사용 및 판매할 수 없다.

일곱째, 수익의 분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당해 계약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입은 기획업자가 수령하며 이를 가수에게 분배하도록 하며, 이때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일정한 항목에 대한 공제를 선행한 후 분배하도록 한다. 수익분배방식 및 분배비율은 가수와 기획업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획업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가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가수 역시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비용을 기획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아울러 기획사는 발생한 수익의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해진 금원을 가수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수에 정산금을 지급 시 정산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덟째,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 사유 발생 시 귀책 있는 상대방에게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특히 가수의 대해서는 위약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가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 발생의 경우(가수의 중대한 질병 및 상해, 가수에 대한 기획업자 측의 성범죄 등) 가수는 당해 계약을 해지 등 종료할 수 있다.

아홉째,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용역 제공시간 역시 제한된다.

(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가) 계약서 구성 및 체계

[표 9]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조항	주제어	주요내용
제1조	목적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함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기획업자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 및 의무 명시
제3조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활동범위 및 매체를 특정
제4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개괄 및 구체적 사항
제5조	'연기자'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연기자에 부여되는 권한 및 의무를 명시
제6조	'연기자'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에 대한 연기자 인성 및 정신건강 지원 의무 부여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수익 분배의 원칙을 수립하고 부당한 비용전가 금지 제시
제8조	상표권 등	가수 관련 상표, 디자인 개발 권한 및 기획업자의 권리자성 부여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기획업자에 일체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이용권원 부여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연기자 관련 저작권의 기획업자 귀속 및 저작인접권 등 인정
제11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기획업자의 권리침해 배제조치 근거 및 연기자의 협력의무 부여
제12조	계약의 적용지역	계약 적용지역의 범위를 명문으로 명확화
제13조	계약기간	최대 기간 내 전속계약 기간 명시 및 기간의 예외 사유 제시
제14조	확인 및 보증	부실 기획업자의 기만에 다른 계약 방지를 위한 의무 부여
제15조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변경 필요 사유 발생시 계약변경 방식 명시
제16조	권리 등의 양도	계약상 권리의 제3자 양도 시에 대한 원칙 제시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방식을 명시
제18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중대한 질병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따른 예외 명시
제19조	비밀유지	계약당사자 모두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
제20조	분쟁해결	분쟁해결 시 협력의무 부여 및 관할 명확화
제21조	청소년의 보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명시
제22조	부속 합의	부속 합의서를 통한 추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첫째, 기획업자는 연기자로부터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다. 다만 허용된

모든 범주에서의 매니지먼트 위임이 아닌 연기자가 원하는 일부에 대한 매니지먼트만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획업자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 그는 그 권한을 성실히 행사할 의무가 부여되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연기자의 인격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독점적 매니지먼트 위임으로 인하여 가수는 권한 있는 기획업자와의 사전승인 없이 별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둘째, 대중문화예술용역의 활동과 그 매체를 한정한다. 우선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은 ⅰ) 배우·모델·성우·TV 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 출연, 광고 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 ⅱ)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ⅲ) 기타 앞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한 활동으로 한정된다. 한편,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매체는 ⅰ)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ⅱ)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ⅲ)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ⅳ)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ⅴ)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로 한정된다. 이러한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 및 이를 위한 매체 등은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셋째,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기획업자는 ⅰ)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ⅱ)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ⅲ)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ⅳ)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홍보 및 광고, ⅴ) 제3자로부터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ⅵ) 대중문화예술용역 일정의 관리, ⅶ)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ⅷ) 기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제반 지원에 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아울러, 연기자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한편,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에 대한 제3자의 방해 등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을 위한 목적 이외의 가수의 사생활 및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넷째, 연기자의 권한 및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연기자는 기획업자에게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용역 관련 자료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연기자는 성실하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품위 손상 및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연기자는 기획업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부당한 파기 또는 침해행위가 금지된다.

다섯째, 수익의 분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당해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비율은 연기자와 기획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획업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연기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연기자 역시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비용을 기획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아울러 기획사는 발생한 수익의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해진 금원을 연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기자에 정산금을 지급 시 정산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섯째,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각 조항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상표권 및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계약 기간에 한정되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등록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연기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때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투여한 비용 중 기획업자의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 등에 관련하여,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은 계약 기간에만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연기자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 콘텐츠에 포함된 연기자의 실연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는 기획업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매출 발생 시 연기자에게 일정 비율을 정하여 수개월 단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일곱째, 전속계약은 최대 7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아울러 군 복무, 임신·출산 등 연기자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어려울 때는 해당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연장일수 등)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도록 하였다.

여덟째,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 사유 발생 시 귀책 있는 상대방에게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연기자에 대해서는 위약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연기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 발생의 경우(연기자에 대한 기획업자 측의 성범죄 등) 연기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 등 종료할 수 있다.

아홉째, 연기자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한 경우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이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계속적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열 번째,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용역 제공시간 역시 제한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13)]

(1) 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

(가) 계약서 구성 및 체계

[표 10]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조항	주제어	주요내용
제1조	계약의 목적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함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를 위한 조건을 명시
제3조	계약의 대상	계약 대상인 프로그램을 특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명시
제4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가수 또는 매니지먼트사에게 부담할 의무를 명시
제5조	'가수'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가수 및 매니지먼트사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부담할 의무를 명시
제6조	권리의 귀속	출연 프로그램에 대한 가수의 저작인접권 귀속 등의 사항을 명시
제7조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프로그램 제작 완료 후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8조	비밀유지	계약당사자 모두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
제9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방식을 명시
제10조	위임 등의 금지	계약당사자 간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변동 금지
제11조	책임면책 및 보험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의 위험 대비에 관한 규정 명시
제12조	분쟁 해결	분쟁해결 시 협력의무 부여 및 관할 명확화
제13조	기타 부속 합의	부속 합의서를 통한 추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
제14조	이행의 보증	계약사항 이행 보증 및 매니지먼트사의 정당성 확보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첫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명확히 특정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서에는 프로그램명, 제작형식, 방송일정, 제작사를 명시하도록 하며, 규정 본문과 달리 계약서 서두에 계약사항 요약을 제시하면서 프로그램의 장르 및 방송횟수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둘째,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당해 계약에 따른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식은 가수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13) 문체부고시 제2018-33호, 2018. 9. 18., 제정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또한, 프로그램 전 제작 과정에서 가수의 인권 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선관의무가 부여되며, 가수가 최적의 능력발휘를 위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촬영일 2일 전까지 대본 등의 자료제공, 1일 최대 촬영시간(12시간)의 제한, 1회 최대 촬영시간을 3일로 제한, 휴식 공간의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가수가 출연대상이면 그에 대한 보호(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의 보장 및 폭력적·선정적 표현에서의 배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외 해외촬영에 따른 협의 의무, 촬영일정 변경에 따른 협의 의무, 품위손상 금지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셋째, 가수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가수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사회적 물의나 품위 손상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며, 매니지먼트사는 가수의 그러한 의무이행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여받는다. 특히 촬영 전과 촬영 기간 중, 촬영 후로 구분된다. 촬영 전에는 최선의 준비 의무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여되며, 촬영 기간에는 적절한 지시 이행의 의무와 성실한 참여 의무가 부여된다. 촬영 후에는 사후작업이 필요하면 이에 대한 성실한 협조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당해 계약의 목적인 촬영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가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요청하는 다양한 합목적적인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넷째,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관하여 정한다. 계약상대방인 가수가 신탁관리단체에 가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제작사는 전자의 경우는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인접권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고, 후자의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을 앞선 경우와 같이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변형 이용의 경우에도 가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다섯째, 계약의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불가항력적인 여건에 따른 계약 유지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당사자 일방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위반의 경우에도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중대한 위반 등의 경우 시정 요구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귀책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여섯째,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는 안전의무가 부여되므로, 출연 가수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며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그에 따른 지연에 따른 책임은 방송사 및 제작사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2) 대중문화산업분야 배우출연계약

(가) 계약서 구성 및 체계

[표 1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조항	주제어	주요내용
제1조	계약의 목적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함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를 위한 조건을 명시
제3조	계약의 대상	계약 대상인 프로그램을 특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명시
제4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배우 또는 매니지먼트사에게 부담할 의무를 명시
제5조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부담할 의무를 명시
제6조	권리의 귀속	출연 프로그램에 대한 배우의 저작인접권 귀속 등의 사항을 명시
제7조	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의 중단	계약의 효력시점 및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 지급 기준 명시
제8조	프로그램 출연회차 증감 및 내용의 변경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출연조건 변경에 대한 절차 명시
제9조	비밀유지	계약당사자 모두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
제10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방식을 명시
제11조	위임 등의 금지	계약당사자 간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변동 금지
제12조	책임면책 및 보험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의 위험 대비에 관한 규정 명시
제13조	분쟁 해결	분쟁해결 시 협력의무 부여 및 관할 명확화
제14조	기타 부속 합의	부속 합의서를 통한 추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
제15조	이행의 보증	계약사항 이행 보증 및 매니지먼트사의 정당성 확보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첫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명확히 특정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서에는 프로그램명, 제작형식, 방송일정을 명시하도록 하며, 규정 본문과 달리 계약서 서두에 계약사항 요약을 제시하면서 프로그램의 장르 및 방송횟수, 방송사 및 제작사, 출연횟수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둘째,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당해 계약에 따른 출연료를 배우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지상파 방송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지상파방송사가 제작사에 의뢰하는 외주제작만 지상파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계약서에 정지조건부 외주

제작비 채무(제작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모든 출연자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함)를 설정한다면 해당 제작사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하게 된다. 한편, 지급방식은 배우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며, 프로그램 전 제작 과정에서 배우의 인권 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선관의무가 부여되며, 배우가 최적의 능력발휘를 위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촬영일 2일 전까지 대본 등의 자료제공, 1일 최대 촬영시간(12시간)의 제한, 1회 최대 촬영시간을 3일로 제한한다. 아울러 동일장소에서 장기간 고정 촬영 시 배우에게 휴식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안전의무 및 상해보험에 가입 의무를 부여받는다. 미성년자인 배우가 출연대상이면 그에 대한 보호(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의 보장 및 폭력적·선정적 표현에서의 배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외 해외촬영에 따른 협의 의무, 촬영일정 변경에 따른 협의 의무, 품위손상 금지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셋째,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배우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그러한 의무이행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여받는다. 특히 촬영 전과 촬영 기간 중, 촬영 종료 후로 구분된다. 촬영 전에는 최선의 준비 의무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여되며, 촬영기간에는 적절한 지시 이행의 의무와 성실한 참여 의무가 부여된다. 촬영 후에는 사후작업의 필요하면 이에 대한 성실한 협조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당해 계약의 목적인 촬영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요청하는 다양한 합목적적인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넷째,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관하여 정한다. 계약상대방인 배우가 신탁관리단체에 가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제작사는 전자의 경우는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인접권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고, 후자의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을 앞선 경우와 같이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변형 이용의 경우에도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다섯째, 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일정한 금원을 배우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 귀책 시 출연료의 10% 이상, 배우 귀책 시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여섯째, 계약조건 및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사전에 배우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연장 시 출연료 등 계약조건을 별도로 합의하여야

하는데, 이때 기존 출연료의 150%를 넘을 수는 없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프로그램 조기 종영 시에는 촬영분에 대하여 출연료 100%를 지급하고 잔여 횟수에 대해서는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구체적인 촬영 장면 활용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는 안전의무가 부여되므로, 출연 배우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며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그에 따른 지연에 따른 책임은 방송사 및 제작사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14)]

(1) 계약서 구성 및 체계

[표 1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조항	주제어	주요내용
제1조	목적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함
제2조	적용	주계약 보다 우선성을 명확히 정함
제3조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보장	자유선택권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명시
제4조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학습권 보장에 대한 기획업자의 의무 부여
제5조	청소년의 인격권 보장	인격의 보호 및 인격권 보장에 대한 기획업자의 의무 부여
제6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건강의 확보를 위한 기획업자의 의무 부여
제7조	청소년의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휴식 및 수면 보장에 대한 기획업자의 의무 부여
제8조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용역제공시간의 한계를 명시
제9조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 및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및 금지장소 출입 불가 명시
제10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알선의 제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지업종 용역 제공 불가 명시
제11조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기획업자의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및 보호의무 명시
제12조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청소년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법정대리인 권한 명시
제13조	청소년의 정산금액 지급	정산금액 지급 청구에 대한 청소년 본인 우선권 명시
제14조	확인 및 보증	기획업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확인
제15조	계약의 실효	계약의 효력을 청소년 기간 내로 한정 명시

14) 문체부고시 제2019-10호, 2019. 3. 4. 제정.

(2) 주요 내용 및 특징

첫째, 청소년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자유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은 기획업자에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니며, 기획업자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ⅱ)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기획업자는 청소년인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외의 학교교육에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ⅲ) 인격권 보장과 관련하여, 청소년인 대중문화예술인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기획업자에 부여되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부당한 행위(폭행, 강요 등)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일정한 부당한 행위 발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ⅳ)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과 관련하여, 건강검사에 참여하도록 협조할 의무,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 등이 기획업자에게 부여된다. ⅴ)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기획업자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ⅵ) 청소년인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 시간과 관련하여, 용역 제공 시간을 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15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인 청소년과 그 이상인 청소년을 구별하여 달리 용역 제공 시간을 제시한다.

둘째, 청소년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유해환경 제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 역시 여러 가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금지행위 및 출입금지 장소와 관련하여, 청소년인 대중문화예술인은 음주·흡연 등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ⅱ) 용역제공 알선 제한과 관련하여, 기획업자는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아울러 청소년인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 행위 요구가 금지된다. ⅲ) 유해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기획업자에게 청소년유해 행위 금지 의무가 부여되며, 대중문화예술인이 제3자로부터 유해행위 요구를 받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의무가 부여된다.

셋째, 청소년인 대중문화예술인의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정대리인이 본인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계약 및 그 보호 등을 위해 적절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 당사자인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정산금액 지급을 청구할 시 계약상 보수청구권의 존재 유무를 불문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한다.

라.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15)]

(1) 계약서 구성 및 체계

[표 13]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조항	주제어	주요내용
제1조	목적 및 정의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함
제2조	계약기간	최대 기간 내 연습생계약 기간 명시
제3조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를 개괄 및 구체적 사항을 명시
제4조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	연습생에 부여되는 권한 및 의무를 명시
제5조	훈련활동 비용의 관리	연습생 훈련비용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정함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내용 변경을 위한 방식과 변경내용의 효력 시점 명시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방식을 명시
제8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	계약해제 및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방식
제9조	전속계약 체결 등	연습생 계약과 전속 계약의 연결 및 관계에 관하여 명시
제10조	비밀유지	계약당사자 모두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
제11조	확인 및 보증	기획업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확인
제12조	분쟁해결	분쟁해결 시 협력의무 부여 및 관할 명확화
제13조	부속 합의	부속 합의서를 통한 추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

(2) 주요 내용 및 특징

첫째, 연습생 계약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아울러 계약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둘째, 기획업자의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기획업자는 ⅰ)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훈련의 제공 및 성실한 이행의 요청, ⅱ)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의무 외 사생활 및 인격 침해 등에 관한 행위 금지, 부당한 금품 요구의 금지, ⅲ) 제3자에 의한 연습생 권익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의무, ⅳ) 연습생의 정신적 건강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 지원 의무 등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기획업자의 권한 또는 지위는 연습생의 사전 서면동의를 거쳐 제3자에 양도할 수 있다.

15) 문체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제정.

셋째,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연습생은 ⅰ)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활동에 충실할 의무, ⅱ)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대한 부당한 파기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ⅲ)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금지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ⅳ) 기획업자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ⅴ) 기획업자의 부당한 요구 거부 권한 등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넷째, 훈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기획업자는 연습생 훈련 활동에 소요된 직접비용에 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며, 이때 직접비용의 범위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2인 이상의 연습생에 동시 투자된 비용의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균등 배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동의 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훈련 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은 연 2회 당해 연습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습생의 요구 시 회계내역을 지체없이 제공할 의무가 기획업자에 부여된다. 연습생 훈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획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표준전속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 사유 발생 시 귀책 있는 상대방에게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 외 연습생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는 등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연습생의 성장 가능성이 평가를 통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특히 연습생이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연습생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여섯째,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당사자 일방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귀책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연습생의 귀책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기획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훈련 활동직접비로 추정하고,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본 계약사항의 위반 시 연습생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연습생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유(중대한 질병, 낮은 성장 가능성 판단, 기획업자 등의 성폭력)를 한정하고 있다.

일곱째, 연습생 계약의 종료에 따른 전속계약과의 관계를 명시한다. 기획업자는 연습생 계약 1개월 전까지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 여부 등을 연습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때는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한편, 연습생 계약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때라고 하더라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습생 계약이 종료한 것으로 봄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서상 주요한 쟁점의 논의

가. 표준전속계약서 관련

(1) 전속계약 기간 문제

(가) 쟁점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장기인 이유는 전속계약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16] 전속계약 기간의 적절성에 관하여는 계약에서 어느 편에 속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태도가 나타난다. 매니지먼트사 등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하여 수년간의 관리와 육성을 통해 그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주장[17]인 반면, 계약 상대방인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는 연예 활동을 통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주장[18]이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인 데뷔 방식의 변화와 이로 인한 이전보다 짧아진 준비 기간 및 투자비용이 적절한 전속계약 기간을 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9]

과거 전속계약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가 활용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7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전속계약 기간에 대하여 법원은 6년의 전속계약 기간의 경우 부당한 정도로 장기간이 아니라 판단(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가합2351(본소),13405(반소))한 바 있으며, 10년을 넘는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로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가합3735 판결)한 바 있다.[20] 다만 이들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전속계약의 기간만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계약에서 정한 전속 기간이 계약 당사자인 연예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21]

---

16) 이충훈,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0.7.29.선고 2010다29584판결", 법학논총 제18권 제3호, 2011, 156면.
17) 최승수・안건형,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2009, 61면; 장보은, "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계약의 이해: 출연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법조 제68권 제3호, 2019, 644면.
18) 이충훈, 전게논문(2011), 154면.
19) 이경호,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전속계약 기간에 관한 고찰",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통권 56호, 2019, 327-328면.
20) 최승수・안건형, 전게논문(2009), 61면.
21) 이충훈, 전게논문(2011), 153-155면.

(나) 현행 표준계약서의 관련 규정

[표 14]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전속계약 기간 관련 규정)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년 _____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기획업자'와'가수'가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가수'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기획업자'와 '가수'가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가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표 15]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전속계약 기간 관련 규정)

제13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년 _____개월)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연기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연기자'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기획업자'와'연기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연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식재산권 등 보호 문제

(가) 쟁점에 대한 논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을 창출하게 된다. 이에 전속계약에 있어서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기획사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와 퍼블리시티권 등의 인정 및 처리 문제 등이다.

첫째,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에서는 저작권 문제와 상표권 등 문제로 분리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주로 상표권 등의 문제가 주목받는다. 가수 그룹 '엠씨 더 맥스' 사건에서와 같이 전속계약 기간 중 대중문화예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다양한 가치에 상표권 등을 등록하고 이때 등록한 권리를 기획사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전속계약 종료 이후 이 상표권 등의 활용 상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라 할 수 있다.[22] 이에 대해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이를 실제 창출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기획사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실시권 등)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23]가 제기되기도 한다.

반면 기획사는 기획사가 주도적으로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이 기획사에 귀속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태도이다.[24] 이와 같은 구조에서 상표권 등의 귀속 문제는 권리의 귀속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의 종료 후 해당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둘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퍼블리시티권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상업적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는데, 현재 우리 법체계상 법률로서 인정하는 권리는 아니다. 그런데도 계약을 통하여 해당 권리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여할 수는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현행 표준전속계약서 역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률상의 근거와는 별론으로 계약 현실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다음 문제로는

22) 최승수・안건형, 전게논문(2009), 63면.
23) 박기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관련 토론",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2.12.10., 100면 이하; 김원찬, "실연자 권리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방안",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2.6.20., 38면 이하 등.
24) 이충훈,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7권 1호, 2013, 61면.

퍼블리시티권을 기획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이 과거 저작권의 한 일종으로 생각되던 당시에는 당연히 창작자 원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저작권과 무관한 별도의 권리로 인식하는 최근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이점에 있어서 학설은 부정설[25]과 긍정설[26]로 대립한다. 부정설은 법인의 경우 상법 등의 기존 법률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법인 기타 단체는 퍼블리시티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긍정설은 현행법상 법인 등 기타 단체 역시 퍼블리시티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는다.[27]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마지막 문제로는 퍼블리시티권의 구체적 이용 비용 등 구체적인 권리이용 체계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28] 현행 표준전속계약서 역시 단순히 전속계약 종료 후 기획사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다는 것만 명시할 뿐 그 외의 권리이용 체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전속계약이 종료 이후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미 있는 지적이다. 앞서 언급한 가수 그룹 사건의 판결(특허법원 2007허7808)을 고려하면,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후 기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예명 또는 기타 명칭을 기획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계약 규정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29]을 참고할 수 있다.

(나) 현행 표준계약서의 관련 규정

[표 16]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제8조 (상표권 등)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하기 위해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기획업자'는 전단에 따라 등록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가수'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속→)

25) 이해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 715면;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8, 817면.
26)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1996, 111면 이하.
27) 이충훈, 전게논문(2013), 61면.
28) 이충훈, 전게논문(2013), 61-62면.
29) 최승수・안건형, 전게논문(2009), 64면.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기획업자'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 '기획업자'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가수'의 명예나 기타 '가수'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기획업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기획업자'는'가수'에게 매출의 ____%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가수'가'기획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가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한다.

③ 계약종료 후 1년간 '가수'는 '기획업자'가 '가수'를 통하여 개발.제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해당 콘텐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예컨대, 가수가 동일 곡을 재가창한 음반, 디지털 파일 등의 녹음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이 조항과 관련하여 '기획업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가수'는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활용을 통해 '기획업자'의 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1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기획업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수'는 이와 같은 '기획업자'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표 17]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제8조 (상표권 등)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연기자'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연기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하기 위해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획업자'는 전단에 따라 등록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연기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연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속→)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기획업자'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연기자'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연기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 '기획업자'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연기자'의 명예나 기타 '연기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연기자'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의 매체 등을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기자'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기획업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기획업자'는 '연기자'에게 매출의 %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연기자'가 '기획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연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 조항과 관련하여 '기획업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연기자'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연기자'는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활용을 통해 '기획업자'의 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1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기획업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연기자'는 이와 같은 '기획업자'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3) 수익의 분배 문제

(가) 쟁점에 대한 논의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 계약 관련한 분쟁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에이전시 계약과 매니지먼트 계약이 혼합된 형태인 우리나라에서의 전속계약의 특성상 대중문화예술인이 데뷔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기획사는 교육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투자 비용에 대한 회수가 수익 분배가 쟁점이 되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다 보니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 입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익 분배가 없거나 낮은 수준의 수익 배분만을 허용함으로써 데뷔 이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비해 실제 대중문화예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주장과 일정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투자된 비용을 회수한 수준은 아니라는 기획사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30]

30) 이충훈, 전게논문(2013), 63-64면.

한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인에 투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대립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은 기획사의 지휘 감독하에 연예 활동에 따른 기능습득 및 형성을 위한 교육에 임하는 것으로 기획사에 약속한 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때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부정설)[31], 투자 비용 회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긍정설)[32]로 나뉜다.

그 외에도 전속계약 체결에 있어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부여되는 수익 분배 정도와 기획사에 부여되는 수익 분배 정도를 비교하여 양자 간 합리적 수준의 이익이 정해질 수 있어야 하며,[33] 특정 기획사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투자손실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동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34]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나) 현행 표준계약서의 관련 규정

[표 18]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수익 분배 관련 규정)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기획업자'가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단,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눈다.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기획업자'와 '가수'가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가수'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기획업자'가 '가수'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기획업자'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가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가수'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계속→)

31) 이은영, "엔터테인먼트계약의 다양한 모습", 외법논집 제13집, 2002, 78면.
32) 장재옥, "專屬契約에 관한 小考-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7집제4호, 2006, 218면; 이충훈, 전게논문(2013), 64면.
33)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29584 판결(이충훈, 전게논문(2011), 162면).
34) 이충훈, 전게논문(2013), 64면.

⑤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비용을 '기획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⑥ '가수'의 귀책사유로 '기획업자'가 '가수'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가수'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⑦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수'에게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기획업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한다. '가수'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가수'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기획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한다.
⑨ '기획업자'와 '가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표 19]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수익 분배 관련 규정)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연기자'와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연기자'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기획업자'가 '연기자'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획업자'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연기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연기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연기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비용을 '기획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연기자'에게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연기자'의 귀책사유로 '기획업자'가'연기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연기자'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기획업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연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연기자'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연기자'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기획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⑦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4) 계약 해지·해제의 문제

(가) 쟁점에 대한 논의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 체결한 전속계약은 일정한 사유 발생에 따른 효과로 계약을 해지 혹은 해제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계약해제권이나 해지권을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점이다.[35] 특히 당사자 일방에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 살펴봐야 하며, 그러한 행위에 적절히 비례하여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계약에 대한 해지권 혹은 해제권이 계약상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유의 발생 시 이를 행사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당해 계약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36]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지권 혹은 해제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다면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 체결한 전속계약의 내용이 다소간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속한다는 불공정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권 혹은 해제권의 균형적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29584 판결처럼 기획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 혹은 해제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과 달리 계약상대방인 대중문화예술인은 연예 활동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해당 전속계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사례에서는 설사 계약서에 해지권 혹은 해제권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이를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정한 바 있다.

35) 이충훈, 전게논문(2011), 165-166면.
36) 이충훈, 전게논문(2011), 166면.

(나) 현행 표준계약서의 관련 규정

[표 20]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계약 해지 등 관련 규정)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가수'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이 '가수'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가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가수'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가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가 소속 직원의 성범죄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21]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계약 해지 등 관련 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기획업자' 또는 '연기자'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기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_____%를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위약벌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③ 계약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이'연기자'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기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연기자'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기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가 소속 직원의 성범죄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약벌 문제

(가) 쟁점에 대한 논의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이다. 위약금에는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37]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게 되면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38] 반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의 이행을 확보 및 강제할 목적으로 받는 것이 위약벌인데, 이 경우 민법 제39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39]

현재 표준전속계약에서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위약벌로 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약벌로 정할 때 귀책 있는 당사자 일방은 손해배상과 함께 위약벌로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손해배상액 및 위약벌로 약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도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40] 이에 계약 당사자 일방(현실상 주로 대중문화예술인)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부여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타방 당사자(현실상 주로 기획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과거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제17조 제2항[41]에서 위약벌이라는 용어 대신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용어로 개정하고자 시도한 바도 있다.[42]

현재 표준전속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한 반면 기획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위약벌 등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규제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 균형 있는 조치가 요구되며, 당사자 일방에 지나치게 무거운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43]

---

37) 이충훈, 전게논문(2013), 64면.
3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6250 판결 등.
39) 이충훈, 전게논문(2013), 65면.
40)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등.
41) "갑(연예기획사)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연예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요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7조에 따른 직전 ( )개월간의 갑의 매출액의 ( )%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단, 손해배상 예정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 )%를 넘지 못한다."
42) 이충훈, 전게논문(2013), 65면.
43) 이충훈, 전게논문(2013), 65-66면.

(나) 현행 표준계약서의 관련 규정

[표 22]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위약벌 관련 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표 23]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위약벌 관련 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②'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기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_____%를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위약벌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6) 제3자 계약 체결 시 전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문제

(가) 쟁점에 대한 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는 계약상대방인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사무를 위임받아 제3자와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연예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한편, 도급계약의 성질도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즉, 이러한 여러 성질이 혼합된 혼합계약 또는 비전형 무명계약으로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을 정의하는 보통이다.[44]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일단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기획사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위임에는 대리권의 수여가 부수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편이다.[45] 왜냐하면, 위임과 대리권 수요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말하고 대리권은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44) 정상조,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18면. 한편, 이러한 전속계약에 대한 법적 성질 분석은 결국 어떠한 민법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장보은, 전게논문(2019), 631면.

45) 이충훈, 전게논문(2013), 59면.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하는 것인데,[46] 전속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효과를 보건대 대리권이 기획사에 수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처럼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면서 의사표시(법률행위)를 하는 자와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데, 민법은 행위 당사자를 현실의 행위인 인 대리인으로 보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일 뿐이라 보는 태도를 갖는다(대리인행위설).[47] 즉, 행위의 여러 요건도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하여야 한다.[48]

그런데 대중문화예술인의 측면에서 보면 기획사가 제3자와 자신의 연예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대중문화예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계약의 효과를 받는 당사자인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49] 현행 표준전속계약서는 단순히 해당 전속계약과 유사한 계약, 즉 전속계약의 제3자로의 양도에 대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요하고 있을 뿐, 기타 활동에 대하여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연예 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 내용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46) 대법원 1962. 5. 24. 선고 61다251,252 판결(박기현・김종원, 「핵심정리 민법」, 고시연구사, 2007, 1114면에서 재인용)

47) 이에 대하여 본인행위설, 대리인행위설(대표설), 공동행위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는데, 민법 제116조 제1항은 대리행위의 흠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인행위설(대표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박영사, 2012, 328면.

48) 곽윤직・김재형, 상게서(2012), 327면.

49) 이충훈, 전게논문(2013), 60면.

(나) 현행 표준계약서의 관련 규정

[표 24]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제3자 계약 동의 관련 규정)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③ '가수'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기획업자'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기획업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③ '가수'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기획업자'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기획업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⑥ '기획업자'는 '가수'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⑤ '가수'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7) 정리

표준전속계약서에 관하여 앞서 제시한 논의되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표준전속계약 관련 논의의 주요 쟁점

구분	구체적 쟁점	
전속계약의 기간 문제	기간의 적절성 문제	
	가수중심의 경우 사실상 전속계약 기간 제한이 없는 상황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퍼블리시티권 등의 인정 및 처리 문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계약상 인정의 적절성 여부
		퍼블리시티권의 기획사 귀속의 적절성 여부
		퍼블리시티권의 구체적 이용비용 등 권리이용 체계에 대한 규정 흠결

(계속→)

구분	구체적 쟁점
수익의 분배 문제	약자일 경우 체결한 전속계약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매우 불리한 수익배분 조건을 합의
	대중문화예술인에 투자 비용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기획사의 투자손실의 부담을 대중문화예술인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 있는지 여부
계약 해지.해제의 문제	계약 당사자간 계약 종료를 위한 요건의 균형 문제
위약벌 문제	위약금을 위약벌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위약벌 규정 포함 불가 문제
	위약벌 규정이 당사자 일방에만 부여되어 있는 것의 문제
제3자 계약 체결 시 전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문제	기획사의 대리권 행사 시 당사자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표준출연계약서 관련

(1) 출연료 지급의 상대방 문제

(가) 쟁점에 대한 논의

출연 계약 시 방송사 및 제작사로서는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출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그(혹은 대리인)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나 현실에서 대부분은 기획사와 출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에 전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은 기획사의 제의에 따라 방송 출연을 하는 양태를 지닌다.[50]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출연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방송사 및 제작사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키도록 한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출연료의 지급이 실제 노무를 제공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출연 계약의 당사자인 기획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51] 이에 대해 당연히 출연 계약의 당사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면 이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기획사가 당사자인 경우만이 해당한다.

이 논의에 대하여 통설은 출연 계약이 방송사 및 제작사와 출연을 할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신하여 기획사가 계약 당사자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획사가 출연료를 받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출연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받을 출연료를 대신 받는 것으로

50) 남기연, "방송출연계약의 법리 분석", 스포츠와 법, 제15권제1호, 2012, 204면.
51) 남기연, 상게논문(2012), 204면.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52] 특히 출연 의무를 이행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갖는 자신의 보수에 대한 청구권은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상 의무 이행에 따른 권리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만큼, 그 지급의무는 전속계약의 상대방인 기획사가 부담하는 것이지 방송사 및 제작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다.[53]

다만, 이러한 논의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와의 관계가 전속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출연 계약의 대리권을 기획사에 부여한 것이라면 앞서 논의와는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54]

(나) 현행 표준계약서의 관련 규정

[표 26] 가수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출연료 지급 대상 관련 규정)

제4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수'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출연료의 지급방식은 '가수'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가수'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표 27] 배우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출연료 지급 대상 관련 규정)

제4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2)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출연료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보험가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시작 전에 '배우'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상파방송 자체제작 프로그램일 경우는 제외한다.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제작사에 의뢰하는 외주제작에 한해, 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서에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제작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모든 출연자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함)를 설정할 경우, 해당 제작사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한다. (4) 출연료 지급방식은 '배우'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배우'가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52) 장보은, 전게논문(2019), 636면.
53) 남기연, 전게논문(2012), 204면.
54) 이러한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기연, 전게논문(2012), 205-209면 참조.

(2) 소극적 의무 부담의 문제

(가) 쟁점에 대한 논의

출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은 다른 사업자의 방송 등에 출연하지 않아야 할 소극적 의무가 부여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대중문화예술인 혹은 기획사가 이를 대리한 것이든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이 특별히 전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업자의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부정설의 입장이다.[55] 이 경우 출연 계약 자체에 전속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소극적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약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 출연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 및 제작사의 승낙 없이 다른 사업자와의 출연 계약으로 기존 방송사 및 제작사와의 출연 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가 긍정설의 입장이다.[56] 다만, 이러한 소극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출연금지가처분 혹은 연예활동금지가처분 등의 조치가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57]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제한이 용이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현행 표준계약서의 관련 규정

현행 방송출연표준계약서는 소극적 의무 부여 관련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수 및 매니지먼트사에 부여하는 일반의무로 이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필요하면 별도의 부속 합의를 할 수 있다.

[표 28] 가수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소극적 의무 관련 규정)

제5조 ('가수'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니지먼트사'는 '가수'가 전단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 '가수'와 '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55) 장보은, 전게논문(2019), 634면.
56) 남기연, 전게논문(2012), 199면.
57) 남기연, 전게논문(2012), 199면.

[표 29] 배우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소극적 의무 관련 규정)

제5조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 '배우'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 '배우'와 '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 의사에 반한 출연 문제

(가) 쟁점에 대한 논의

출연 계약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의 주된 의무가 일신전속적인 급부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획사가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방송사 및 제작사와 직접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급부의 내용이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계약 이행에 앞서 내재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58] 둘째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신하여 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기획사가 방송사 및 제작사와의 출연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사이에 존재하는 대리권 수여의 범위가 논의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에서 정해져야 하는 사안이며, 전속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의 출연에 있어서 그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다만, 출연 계약에 있어서 인정되는 출연 의무는 이른바 '하는 채무'로서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설사 대중문화예술인이 특정 출연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출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59] 일반적으로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고, 이때의 배상금은 법정제재금의 성격을 갖는다.[60] 그런데 대중문화예술인의 출연 의무는 대부분 특정한 날짜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자가 집행권원을 받아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거나

58) 남기연, 전게논문(2012), 201면.
59) 장보은, 전게논문(2019), 636면.
60)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의 방법[61]으로 출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사후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62] 이러한 점이 출연 계약에서 어떠한 형태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나) 현행 표준계약서의 관련 규정

현행 방송출연표준계약서는 출연 의무의 이행 강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고의에 의한 계약 불이행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수 또는 배우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필요하면 별도의 부속 합의를 할 수 있다.

[표 30] 가수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사에 반한 출연 관련 규정)

제11조 (책임면책 및 보험)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표 31] 배우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사에 반한 출연 관련 규정)

제7조 (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의 중단) (3) 본 계약을 근거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배우'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지급한다. **제12조 (책임면책 및 보험)**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저작인접권에 관한 문제

(가) 쟁점에 대한 논의

출연 계약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일신전속적 채무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실연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저작권법은 실연자에 대한 권리를 저작

61) 민사집행법 제261조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2) 장보은, 전게논문(2019), 636-637면.

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 복제권·배포권·대여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방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그리고 공연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수 혹은 연기자가 저작물인 노래나 시나리오를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실연이라 하는데, 출연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1호 라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 에 대해서 이를 행한 대중문화예술인은 실연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현행 표준출연계약서의 경우 실연권 이용허락에 따른 사용료와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 해당 실연권을 신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사용료 지급액을 신탁단체와 체결된 특약에 기준하고 있다. 특히 신탁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연의 활용 시 일정한 경우 실연자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는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

(나) 현행 표준계약서의 관련 규정

[표 32] 가수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저작인접권 관련 규정)

제6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수'의 저작인접권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가수'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 '가수' 또는 '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 '가수' 또는 '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 '가수'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표 33] 배우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저작인접권 관련 규정)

제6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배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배우'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 '배우' 또는 '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 '배우' 또는 '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 '배우'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다. 청소년 및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 관련

(1) 계약의 불공정성

청소년과 연습생(청소년인 연습생 포함)[63]은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등의 계약 당사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특징이 있다. 청소년과 연습생의 공통점은 아직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나름의 자리를 갖지 못하고 이를 얻기 위하여 기획업자 등의 조력을 계속 필요로 하므로 이들과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당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다. 즉, 계약 당사자로서 양자 간의 불균등한 지위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게 된다.[64] 더군다나 청소년 등에 대한 계약은 단순히 계약상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학습권, 인격권, 보건권 등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적 요소에 대한 사항마저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행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및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나 그 효과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었다.[65] 그 결과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63) 대다수의 연습생이 사실상 청소년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양자는 계약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공통된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황승흠, 「청소년 및 연습생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용역」,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면.

64) 장재옥・김훈주, "전속연예매니지먼트계약에서 미성년 보호의 과제", 스포츠와 법, 통권 제33호, 2012, 342면.

표준 부속합의서”(문체부 고시 제2019-10호)가 2019년 제정되었고,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체부 고시 제2019-40호) 역시 2019년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청소년 및 연습생에 대하여 그간 주요한 불공정 계약 요소로 지적된 것은 지나친 장기간의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및 위약벌, 계약의 종료, 불공정한 수익분배 등이다.[66]

(2) 주요 논의 사항

현행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및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그 시행일이 2019년 3월 4일 및 2019년 9월 29일로 시행 기간이 약 1년을 전후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 고시 내용의 개정요구보다는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부속 합의서 및 표준계약서 활용의 확산이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부속 합의서 및 표준계약서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그간 청소년 및 연습생(청소년인 연습생 포함) 계약에 대하여 논의되었던 주요한 사항들을 살펴본다.

먼저 연예기획업자의 적절한 자격 보유 확인에 대한 문제이다. 대중문화예술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실제로 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연예 기획업자가 일정한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춰버리는 사건 등이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청소년 및 연습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부실한 기획업자를 확인하고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능력 및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계약 단계에서 계약 상대방인 기획업자 자격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혹은 일정한 자격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67]

그 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및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부족한 실효성이 지적되기도 하며,[68]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관행의 존재,[69] 부당한 비용 요구 관행 존재[70] 등이 지적되고 있다.

---

65) 황승흠, 전게서(2019), 1면.
66) 김기덕, “표준출연계약서 제정과 청소년(미성년) 연예인의 권리문제”,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2012, 68-70면; 장재옥・김훈주, 전게논문(2012), 342-343면.
67) 장재옥・김훈주, 전게논문(2012), 344면.
68) 미디어스 2020. 1. 15.자 기사(김혜인 기자), "법이 아역 배우를 지켜주나요"; 아시아경제 2012. 12. 20.자 기사(이규성 기자), "연예인 노예계약 이번엔 사라지나... 표준계약서 개정 갈등" 등.
69) 스포츠동아 2019. 6. 26.자 기사(유지혜 기자), "아역 부모들, 출연료 계약서? 구경도 못 했죠" 등.
70) 뉴스웍스 2019. 1. 14.자 기사(장원수 기자, "트레이닝비용요구 등 키즈모델선발대회 이용한 아역모델 대상 불법행위 정화노력 필요" 등.

제3장
대중문화예술인
계약 관련 주요 사례

제3장 대중문화예술인 계약 관련 주요 사례

1. 판례에서의 사례

가. 개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과 전속계약 등 일련의 계약사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어 소송으로까지 진행되고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경우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그리 많지 않다.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과중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의 어려움 이외에도 공개적인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대중의 인기를 중요한 가치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계약상 문제가 주된 분쟁의 원인이 된 판결(확정판결)을 조사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해결을 거치게 된 사안과 이들의 사례에서 어떠한 법적 쟁점이 주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연기자와 기획업자 사이의 분쟁과 가수와 기획업자 사이의 분쟁 판례를 조사하고, 이들 판결에서 다루어진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쟁점 분석 결과 이들 판결은 다음의 쟁점들이 주로 문제 되고 있으며, 정산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사안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표 34] 주요 쟁점 별 분석 대상 법원 판례

구분	판례번호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49297(본소), 2018가합521418(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20197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20664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60862(본소), 2018나2060879(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0가합1327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50108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38792(본소), 2018가합33053(반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가합379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합5402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합32211 판결

(계속→)

구분	판례번호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489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20246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0가합132751(본소), 2011가합115067(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가합9743 판결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4나5725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나2006674(본소), 2019나2006681(반소) 판결
매니지먼트의무 불이행 또는 신뢰관계 파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5400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8나20117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2066467(본소), 2017나2066474(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합5451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가합5849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5010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합54029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37587 판결
전속계약 부존재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본소), 2016다256975(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가합5494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2010다54542(참가) 판결
기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780 판결 : 신의성실원칙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581089 판결 : 민법 제104조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나2028691 판결 : 무권대리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2010다54542(참가) 판결 : 전속계약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2066467(본소), 2017나2066474(반소) 판결 : 인격권 보호의무 위반

나.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1) 사례1[71]

(가) 사실관계

본소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정해진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지속해서 정산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1.경 이전까지 구두로 수입 및 지출비용이 얼마인지 대강 설명하고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 및 연예 활동과 관련된 수입과 각 수입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할 비용 등이 기재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는 2016. 10. 19. 원고들에게 'E'의 2016년 8월까지의 정산내역서를 보냈으나, 이는 피고가 그동안의 매출내역과 지출내역을 임의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고 그러한 내역에 대한 아무런 기초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으며, 수입 누락 등 부실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 등 시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반소에서 피고(반소원고)는 자신이 원고(반소피고)들의 연예 활동을 위해 성실히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일방적으로 그룹을 이탈하고, 정산 의무의 불이행 등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만을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위반한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16조에 따른 피고의 손해액(음원 등 제작비용, 숙소비용, 레슨비용) 및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속계약에 정해진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속계약을 원고들이 부당하게 파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의 정산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더 피고의 청구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49297(본소), 2018가합521418(반소) 판결.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성실한 수익 분배는 신뢰 관계의 존속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피고가 부담하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역시 피고의 정산의무와 결부된 중요한 의무라 봄이 상당하고, 이는 정산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2017. 1. 10. 해지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사례2[72)]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정산의무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외에도 원고의 연예 활동에 관한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지원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변경을 강요하여 연예 활동에 관한 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여 2019.03.22.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성실한 수익 분배는 신뢰 관계의 존속을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역시 피고의 정산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정산자료 제공 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문제가 된다.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산자료는 총수입과 비

72)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산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정산내역도 피고가 원고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집계표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충분히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전속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사실상 이 사건 전속 계약상의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이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해지 사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3) 사례3[73]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2017년 정산자료는 2018.1. 초에야, 2018년 상반기 정산자료는 분기별로만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의 정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속 계약상의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에게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인격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광고 촬영 스케줄을 원고에게 촬영 이틀 전에서야 알리는 등 전속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기획업자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시 바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73)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2019762 판결.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우선, 피고는 2017년 정산자료는 12개월 치를 한꺼번에 묶어 2018.1. 초에, 2018년 상반기 정산자료는 분기별로만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7조 제6항에 따른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정산자료 제공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따라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인격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정 및 광고촬영 일정을 원고에게 촬영 직전에서야 알리는 등 전속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전설명의무도 위반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전속 계약상 여러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고의 2018.08.31.자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4) 사례4[74)]

(가)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곡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고, 피고는 위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각 음원 사이트 회사로부터 위 각 싱글앨범곡 등에 관한 음원 사용료 합계 7,177,043원가량을 받았으나, 원고들에게 위 음원 사용료 수입에 관한 보고서를 통지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으므로, 피고가 전속 계약상 정산의무 및 정산내역 제공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속계약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온라인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은 피고의 직접적인 업무수행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계약 기간의 1~3년 차는 피고 80%, 원고들 20%로, 4~5년 차는 피고 70%, 원고들 30%로 각 정산・분배하여야 하고, 모든 수입은 매월 말에 결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서(결산 및 판매량)를 통보하고 익월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을 발매한 이후 원고들에게 위 전속계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정산・분배나 수입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공을 전혀 이행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하지 아니하여 위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원고들이 해지 의사를 표시한 2011. 5. 26.경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온라인 음원 수익을 정산·분배하거나 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 활동과 관련하여 숙소 사용료, 트레이닝 비용 및 음반·뮤직비디오 제작비용, 활동비 등으로 4개월간 5,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는데 원고들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위 지출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배분할 수익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위 전속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전속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지출비용 중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피고가 실비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산보고서 통보의무는 원고들의 각 싱글앨범의 곡과 관련된 음원 수입이 발생하는 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사례5[75]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년 5월 이후부터 피고들이 회계처리 상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나아가 비용 부당 공제까지 하는 등,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전속 계약상 정해진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성실한 수익 분배는 신뢰 관계의 존속을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역시 피고의 정산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한 의무이고, 정산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산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들은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신뢰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75) 서울고등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2066467 판결.

(6) 사례6[76]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수입과 비용에 관한 정산자료를 단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산자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14일이 지난 후 원고가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음을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성실한 수익 분배는 신뢰 관계의 존속을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역시 피고의 정산의무와 결부된 중요한 의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정산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부담해야 할 의무인 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속계약서와 동일한 표준전속계약 제6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산내역서가 이러한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원고가 비록 14일의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요구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정산을 요구한 2016.02.03. 및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한 2016.02.04.의 행위는 결국 피고에게 정산자료 제공의무 불이행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해지권 행사 때문에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7) 사례7[77]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이 ① 원고가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산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②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의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및 지원을

7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60862(본소), 2018나2060879(반소) 판결.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0가합132751 판결.

성실히 하지 않았고, ④ 원고의 저작물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⑤ 음원 유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다른 유통사를 통한 음원 유통 대리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은 원고의 2010. 9. 27. 계약해지의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음원 수익 내역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외 다른 수익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비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점, 2009. 3. 28.자 G 공연, 2009. 4. 14.자 H 공연, 2009. 5. 26. I시 여성회관 공연, 2009. 6. 16. J백화점 목동점 공연, 2009. 9. 5-6. K극장 공연의 각 수익금이 약정한 비율대로 정산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들이 F에게서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음원 수익은 2008년분 13,008,393원(10,442,867원 + 2,565,526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09년분 22,347,558원(상반기 12,879,526원 + 하반기 9,468,032원)을 합한 35,355,951원인데, 실제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23,631,984원(2008년 10,701,218원 + 2009년 12,930,766원)이므로, 그 차액인 11,723,967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들의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과 정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0. 9. 27.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8) 사례8[78)]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 제12조 제7, 8항에 따라 매월 원고들에게 분배할 돈을 정산하고, 그다음 달까지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원고들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2016.12월 이후 한 번도 원고들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성실한 수익 분배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501087 판결.

사항에 해당하고, 성실한 수익 분배를 위해서는 정산자료의 성실한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정산자료의 성실한 제공도 상호 간의 신뢰 관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한 번도 원고들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역시 불충분하여 신빙성마저 부족한 상태인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9) 사례9[79]

(가)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속 계약상 '계약금은 음반 제작비로 대체한다'라는 조항을 두어 원고에게 사실상 음반 제작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원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로 대하고 폭언, 욕설 등 인격모독으로 부당한 대우를 했고, 지원의무 및 교육투자의무를 위반했으며,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첫째, 전속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전속계약 체결 당시의 불확실한 장래 전망과 초기 단계의 투입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음반 제작비를 전부 부담하되 그 대신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회사가 전속계약 체결 시 반드시 매니지먼트 회사가 계약금도 지급하고 음반 제작비도 모두 부담하는 것이 확립된 연예 업계의 정당한 관행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전속계약 해지 여부에 관하여, 두 번의 대화 녹취만으로는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해 '지속적인' 폭언, 욕설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설령 폭언이나 욕설에 해당하는 피고의 행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전속계약 해지사유는 입증되지 않는다(다만, 뒤에서 보듯 신뢰 관계 파괴의 사유는 됨). 한편,

7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38792(본소), 2018가합33053(반소) 판결.

지원의무 등을 소홀히 한 피고의 일부 행위나 부작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다만, 뒤에서 보듯 신뢰 관계 파괴의 사유는 됨).

피고는 이 사건 전속 계약상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사정들과 종합하면 원피고 간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마저 파괴되어 더는 전속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발송한 협의요청서는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완곡한 표현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10) 사례10[80]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자료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방문 열람만 가능하고 정산자료는 영업비밀로서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전속 계약상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취지는 원고의 수입이 정당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및 비용 지출 내역이 정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정산자료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자료를 교부의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고, 단순히 방문 열람만으로는 전속계약에서 예정한 정산자료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와 같은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이 확인되고, 원고가 일정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요구한 후 시정이 없자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11) 사례11[81]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지금까지 두 차례 정산내역을 제공한 것 외에는 정산내역을 제공한 바 없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한다.

---

8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가합37904 판결.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합540293 판결.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피고는 단 두 차례만 원고들에게 이메일로 정산내역을 전송하였을 뿐, 그 외에는 원고들에게 정산내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가 일부 제공한 위 정산내역 조차도 상당 부분 서로 불일치하고,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 공제되어 있기도 하며, 2013년에는 연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쉽사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바,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2) 사례12[82]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가 전속계약 상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성실한 수익 분배는 신뢰 관계의 존속을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역시 피고의 정산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한 의무이고, 정산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산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4.6.8.경 이후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11.15.까지 원고들에게 정산내역을 제공했거나 정산금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는 아무런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시정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되는 점, 이후 피고의 위반사항 시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합32211 판결.

다.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1) 사례1[83]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연예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① 계약 기간을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간이라는 장기간으로 하고 원고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있고, ② 일정 수 이상의 음반이 판매되거나 방송매체에 고정출연하는 때에만 일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되어있으며, ③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하고 있고, ④이에 비하여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고 피고는 그의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연예 활동을 중단시키고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되어있어 쌍방의 권리, 의무에 지나친 불균형이 있는바,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피고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만 10년까지 존속하되, 원고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장기간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위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들의 연예 활동에 관한 모든 관리, 대행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킬 뿐 아니라 최초 약정한 수익분배의 방법을 위 기간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훈련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이는 점, 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첫 번째 음반 출반일 또는 첫 주연작품 출연일로만 정하고 있어, 만약 원고들이 음반을 발매하지 못하거나 연기자가 되더라도 작품에 주연 배우로 출연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은 영원히 종료되지 아니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48914 판결. 2009. 1. 14. 선고.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7. 6. 의결로 전속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전속계약의 이익 분배와 관련한 조항은 현재의 국내 음반 시장의 상황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50만 장 또는 1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그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를 경우 원고들은 음반 발매로 인한 이익의 분배를 거의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고정출연이 아닌 게스트 및 가수로서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익의 분배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은 그 금액이 과다하여 원고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하여 피고의 계약위반에 관하여는 아무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는 그의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연예 활동을 중단시키고 이 사건 전속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어, 쌍방의 권리 의무에 지나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중 그 계약 기간, 이익의 분배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각 규정은 원고들의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사례2[84]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이고, 계약 해지 시 원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과도한 금액의 위약벌을 정하고 있으며, 해지권 제한 사유도 포괄적 개념이어서 원고들의 해지권을 부당히 제한하고 있음. 이는 계약 당사자인 원고들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인격의 발전을 막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전속계약의 약정 내용 중 대부분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일 경우 해당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약정 내용 중 대부분은 불공정한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려고

84)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2024609 판결.

공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인 점, 피고가 지출하는 초기 투자 비용에 비추어 각 전속계약에서 정하는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전속계약이 원고들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사례3[85]

(가) 사실관계

원고들(가수)은, 이 사건 전속계약은 그 계약 기간이 5년이나 되는 점, 자동연장 사유가 포괄적이고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도 당연 연장되도록 하고 있는 점, 연장 기간에 있어서도 상호합의가 아닌 공백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전속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를 주장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5년 동안 피고의 관리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고 달리 그 기간에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점, 이익분배 조항(제9조)이나 권리귀속 조항(제6조)에 따르면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연예 활동을 하여 방송매체에 고정으로 출연하기 전까지는 피고로부터 분배받을 수익이 없는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가수 활동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저작권 등 여러 권리를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손해배상 조항(제13조)은 원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원고들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정함이 없어 불공정하고, 원고들로서는 그 손해배상의 액수를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 이익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모두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 이상 나머지 계약조항들 만으로는 위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속계약의 각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사례4[86]

(가)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① 계약 기간이 '정규 앨범 10집 발매 후 6개월까지'인데, 정규앨범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정규앨범이 발매되는 시간적 간격을 볼 때 계약 기간이 부당하게 길고, ② 원고에게 피고가 체결한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과할 뿐, 사전에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 내용을 설명받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고의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③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피고가 제작, 발매한 음반과 영상물 등에 수록된 작품을 타사에서 녹음, 녹화하여 제작 출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저작권 및 실연권을 모두 보유하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고,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고, ⑤ 수익 분배 조항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결국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저작권 계약 역시 이 사건 전속계약 제9조에 근거하여 체결된 그 일부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무효에 해당하는 이상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는 가수의 경우 당초 계약 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사와 가수가 합의한 경우에는 해지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하게 하는 점,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이 이에 따라 수반되는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전속계약의 성질상 도출되는 당사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가 각종 계약 체결을 강행하여 원고의 신체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제작한 음반, 영상물 등에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0가합132751(본소), 2011가합115067(반소) 판결.

수록된 작품을 타사에서 녹음, 녹화하여 출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전속 계약상 피고가 직접 음반을 제작하고 원고에게 음반 판매에 대한 인세를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재산상 손해 및 손실의 10배'라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과다하기는 하나, 쌍방에 동일하게 부과되어 있고, 실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사 위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서라도 당사자들은 여전히 2차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추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저작권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지는 아니한 점, 수익분배 조항이 다른 가수들에 비하여 부당히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전속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사례5[87]

(가) 사실관계

원고는, 연예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피고가 연예인 지망생에 불과한 원고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애초 계약 기간을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으로 정하여 장기간으로 정했으면서도 원고의 개인적인 사유로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할 때는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고, 심히 불공정한 수익분배 약정을 두었으며, 원고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총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에다가 그와 별도로 위약벌 1억 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도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계약의 해제 여부가 피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되어있을 뿐, 원고가 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연예 활동을 중단하는 길밖에 없는 등 쌍방의 권리·의무 사이에 불균형이 지나쳐 이 사건 전속계약 가운데 위에서 본 해당 조항들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조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이 사건 전속계약 본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연예산업에서 신인을 발굴·육성하여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데 비해, 그 성공비율이 높지 않아서 피고와 같은 연예 기획업자는 성공한 연예인들에게서만 그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지만, 계약 상대방이 연예인으로서 성공한 후에는 개별 활동을 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의 유혹에 빠져 연예기획사를 바꾸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로서는 투자비용을 회수하려는 방편으로 계약

87)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기간, 이익 분배,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정할 때도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계약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적정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는 2007. 7.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수정 합의를 하여 원고도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므로, 이러한 사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피고는 해제(해지) 조항을 통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이 사건 전속계약에 심히 종속되어 그 활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장기간 부당하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제3조 제1항·제2항, 제12조 제2항은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익 분배 및 권리귀속에 관한 제5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의 내용은,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은 극히 미미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모두 가져가는 심히 불공정한 이익 분배에 관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역시 계약 위반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 회복 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원고를 피고에게 예속시킬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전속계약 무효의 범위를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 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모두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상, 나머지 계약 조항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라 판단하였다.

(6) 사례6[88]

(가) 사실관계

피고들(가수)은, 이 사건 전속계약은 수입금에서 원고가 산정한 모든 직간접적 비용을 공제하는 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점, 7년의 지나치게 긴 전속 기간을 규정하는 점, 과중한 위약벌을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들은 작곡과 연주에 대한 전문 교육 및 연습 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은 점, 밴드 구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보컬을 섭외하지 않아 피고들이 직접 섭외한 점, 대표이사가 피고들에게 무자비한 폭언과 욕설, 협박을 한 점, 원고 소속 여성 팀장과 실장이 피고들에게 모욕적인 신체접촉을 지속한 점, 피고들의 데뷔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른 가수들 뒤에서 반주활동만 시킨 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인터넷 쇼핑몰에 피고들이 의류 모델로 활동할 것을 강요한 점, 원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연예기획사로서의 능력이 없는 점, 원고가 타 음반사와 음반 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아무런 의사 확인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속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전속계약을 위반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전속계약은 해지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수입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드는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있으므로 수입금에서 그러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 점, 피고들의 창작이나 공연 역시 소속사인 원고의 지원에 근거하여 연예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 등을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전속기간이나 위약벌 규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 주장의 전속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 타 음반사와의 음반유통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가합9743 판결.

라. 손해배상

(1) 사례1[89]

(가) 사실관계

기획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의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피고에게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제공하고 피고의 음반 홍보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전 연습 지시에 불응하고 생방송 TV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안무를 틀리거나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음반에 수록된 노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연습 과정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송 기획에도 불구, 해당 연습에서 빠지고 해외로 출국한 뒤 원고의 반복된 복귀 요구에도 불구하고 2개월여 뒤에서야 복귀하는 등 이 사건 전속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1. 30.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기획업자와 전속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상대방은 전속계약에 따라 협력 및 의무이행 요청에 최우선으로 하여 응할 의무가 인정되나 이러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지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음반제작 등에 관한 원고의 협력 및 의무이행 요청에 최우선으로 하여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음악방송에 필요한 노래와 안무 연습을 게을리하였고, 연습 및 방송스케줄에 불참하였으며, 원고가 추진한 프로젝트 방송준비 시점에 무단으로 소속사에서 이탈하여 프로젝트 방송을 무산시키는 등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2012. 1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89)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4나57251 판결.

(2) 사례2[90]

(가) 사실관계

기획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사실상 원고와의 이 사건 전속계약은 종료되고 다른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통해 연예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등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기획사가 피고 소속사로서의 외관을 형성하고 피고에 대한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허용함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 동안 모든 연예 활동 권리를 원고에게 일임하고(이 사건 전속계약서 제1조), 모든 연예 활동의 계약과 수익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일임하며(제3조), 모든 연예 활동 시 피고의 관리 및 통제, 조정권을 원고에게 일임(제8조)하기로 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주요 의무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전속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에 따른 금원을 곧바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전속계약의 주요 의무조항을 위반한 전속계약 당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벌금, 손해배상금 및 피고를 위해 지출된 관리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91].

(3) 사례3[92]

(가)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인 점, 피고는 원고의 전속계약

90)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9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8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92) 서울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나2006674(본소), 2019나2006681(반소) 판결.

의무 위반에 대하여 투자금의 2배를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속계약 부속 합의서에서 소외 회사에 지급한 2천만 원을 원고에 대한 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설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자신이 2017.01.20.경 피고에게 그룹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 원고의 탈퇴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화되도록 하였으며, 2017.03월 경 일본 공연을 마친 이후 피고를 통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7.01.31.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2015.5월경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일본 연예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수익배분 등 정산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점, 원고의 연예 활동에 대한 지원의무를 불이행한 점, 열람복사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첫째, 전속계약 무효 주장에 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 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전속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수표준전속계약서의 상한 기간과 마찬가지로 전속 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익 분배비율이나 계약금 지급 규정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채무불이행 경우에 위약벌을 규정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전속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합의해지 주장에 관하여,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01.31. 무렵에는 모두 이 사건 전속계약의 실현 의사가 결여되었거나 그 계약 실현을 포기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7.01.31.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전속계약 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7.01.31.경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 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또는 신뢰 관계 파탄

(1) 사례1[93)]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용 연습실을 제공하지 못하여 원고들은 제한된 시간에만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었고, 2015.1.경에는 피고가 연습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연습실에서 퇴거당하였으며,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였고, 보컬 트레이너와 연기지도를 지속해서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매니지먼트 업무의 불이행에 대한 증거 자료의 제시를 토대로, 계약 체결 시 고도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연예 활동이나 연습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연예 활동에 대한 기획, 제반 지원 등의 업무에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540036 판결.

관하여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 연예인 전속 계약의 일반적 특징 및 이 사건 전속 계약에서 규정하는 원고들과 피고의 의무(계약 기간이 5년으로 장기이며 계약 특성상 서로 포괄적, 추상적, 전속적인 의무를 부담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더는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바, 원고가 2015.2.경 피고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발송한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우편의 도달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예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갖추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2) 사례2[94)]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소속의 연예인 또는 연습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며,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10년간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1인 회사인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 대표의 위 추행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로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전속 계약의 특성상 매니지먼트 업무의 성실한 이행이 불가능할 만큼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경우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었다.

94) 서울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8나2011709 판결.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경우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 간 고도의 신뢰 관계 유지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의 추행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고 그 대표가 원고의 법정 증언 등을 증거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앞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 관계는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외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신뢰 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하여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된바,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8.07.06.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사례3[95]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원고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지속해서 피고들의 대표자들에게 원고들의 활동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개선을 요구해왔고, 특히 2015.11월 이후로 소속 연예인인 원고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피고들의 대표자들에게 원고들의 활동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실, 2015.12월 이후로는 피고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연예 활동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그 정도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해지를

95) 서울고등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2066467(본소), 2017나2066474(반소) 판결.

정당화할 정도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들의 노래 및 춤 실력의 향상을 위해 트레이닝 기회를 부여하고, 원고들의 성형수술 등 비용을 지원한 사실, 피고들의 지원하에 원고들은 앨범 및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각종 방송에 출연하였으며, 원고 중 일부는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은 2015.12월까지 걸그룹으로 활동하였고, 피고들은 당시 원고들의 일정을 위하여 교통편을 제공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사례4[96]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연예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관계로 원고의 재능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연예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면서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전속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속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해지 이전에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첫째, 인적, 물적 자원 및 능력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제공함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없거나,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따라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성실한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원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합545186 판결.

고는 피고가 원고의 연예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면서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는 2018. 4. 11. 피고 대표이사에게 C 없이는 연예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C의 퇴사와 관련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16.에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5) 사례5[97]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상 의무 위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며, 이의 원인은 피고의 전속계약 상 의무 위반 등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의 기초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별도의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어 피고의 청구 기각이 확정되었고, 이후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관한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논의한 후, 원고가 신뢰 관계의 훼손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바, 이 사건 전속계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이 피고의 직원인 매니저의 폭력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어린 나이에 연예 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감 등도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오로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미국 소재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2013. 9월부터는 미국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연예 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이나 지원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아,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가합584962 판결.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의 기초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6) 사례6[98]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연예 활동을 홍보하며 기타 제반 지원을 해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지 않았고, 식비, 차비, 의상비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연습실을 마련하여 제공하지 않았고, 약속한 숙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들이 대만에서 귀국한 2017. 3월 이후 2017.7월까지 원고들에 관하여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았고, 연습실을 마련하여 제공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연습실을 마련하여 제공한 반증이라면서 내세운 증거는 면적이 31.44㎡인 주거용 건물 2층의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그렇다면 피고의 교육 시행 등 매니지먼트 이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다만, 식비/차비/의상비/숙소 제공 의무 위반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

(7) 사례7[99]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측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숙소 관련 비용이나 직원들의 월급조차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원고의 연예 활동을 성실히 매니지먼트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속계약 제14조 제3항의 해지사유인 ‘부도,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501087 판결.
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합540293 판결.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들에게 ‘회사의 자금이 거의 없다.’, ‘투자를 받을지 문을 닫을지 양 갈래에 서 있다’ 라는 등의 말을 해온 점, 원고들의 숙소 차임 및 가스비의 지급이 연체되어 위 숙소의 가스공급이 중단되기도 한 사실, 피고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퇴사한 사실, 피고 소속의 연예인으로는 현재 원고들이 유일한데 원고들의 활동으로 인한 적자도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고의로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된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8) 사례8[100]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① 이 사건 일본회사 E와의 사이에서의 일본 내 활동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준비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서 열람 요청을 거절한 점, ③ 2014. 8월 이전까지는 원고에게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8월 이후 비로소 285,000원에서 일본 엔화 90,000엔 사이의 금원을 매월 지급했을 뿐이라는 점, ④ 수입과 비용에 관한 정산자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점, ⑤ 그룹의 2번째 싱글앨범 활동 이후 3번째 싱글 앨범 활동 전까지 원고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고, 4번째 싱글앨범 활동을 마친 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원고의 ① 주장의 경우, 이 사건 일본회사 E와의 사이에서의 일본 내 활동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준비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② 주장의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서 열람 요청을 하기 위한 행사 요건인 “해당 자료 또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의 ③ 주장의

10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37587 판결.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정산자료를 제출하면서 비용이 수입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아 원고 주장이 입증되지 못하였다. 원고의 ⑤ 주장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방송, 연예 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의 ④ 주장의 경우, 피고는 그룹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비용을 초과하는 때 이 사건 그룹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그 수입을 정산할 의무가 있고, 연예인인 원고와 소속사인 피고 사이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 정산 결과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정산내역의 개요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은 피고의 위 정산의무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부수 의무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내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11. 11.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전속계약 부존재

(1) 사례1[101]

(가)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인 1심의 판결문을 보건대,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7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2013. 12. 26.경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가 이 사건 소송 중에 2015. 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10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본소), 2016다256975(반소) 판결.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때 그 결과로서 생기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피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의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사례2[102]

(가) 사실관계

이 사건 전속계약들은 2014. 6. 24. 및 2014. 9. 17.에 각 체결되었고, 각 계약일로부터 7년간 원고들의 연예 활동 관련 제반 권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2015. 5. 6. 원고들에게 이미 잡혀있는 일정 외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앞으로 원고들에게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을 걸그룹의 멤버에서 탈퇴시켰으며, 원고들 역시 2015. 5. 30. 이후 피고 소속 가수로서 어떠한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5. 5. 30.부터 그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전속계약 체결의 당사자 쌍방 모두 계약 실현 의사가 결여되었거나 계약 실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전속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1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가합549439 판결.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 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계약 실현 의사가 결여되었거나 계약 실현을 포기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5. 5. 30.경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인정하였다.

(3) 사례3[103]

(가) 사실관계

원고(소속사)는 피고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익분배약정에 따른 위약금인 원고가 지출한 제반 비용 및 전속금의 3배액 중 일부로서 전속금의 3배인 3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전속 계약상의 소속사 지위가 원고로부터 참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더는 피고에 대하여 전속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07. 10. 29.경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전속계약에 기한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원고는 참가인에게 소속사 지위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에게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나아가 이 사건 전속 계약상 피고는 계약 기간 중 원고의 음반 발매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참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9.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그 후 원고와 참가인의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5집 정규 음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던 참가인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10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2010다54542(참가) 판결.

사유 없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 기타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104]

(가) 사실관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로는 원고의 계약 해지를 구하였다.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하였으므로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체결된 점, ②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이고, 원고에게 불리한 편면적인 계약 기간 연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해지의 요건을 강화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전속계약 적용 범위가 전 세계 지역일 뿐 아니라 원고가 그룹활동과 무관한 문예적/미술적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에까지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③ 과도한 위약벌을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오로지 원고에게만 적용되고 피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④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일종의 고용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도 전속계약금이나 기본급 보장 규정이 없는 점, ⑤ 수익분배 규정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불공정한 점, 등을 들어 전속계약은 약관규제법이나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수익 정산을 하면서 매 반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는 정산 시기를 준수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피고에게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원고가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역시 쟁점이 된다.

10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780 판결.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원고는 ① 전속계약 체결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이기는 했으나,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입회한 가운데 전속계약을 체결한바, 원고 측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해외 진출계획을 고려하여 전속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이지 않고, 계약의 지역적 적용 범위나 연예 활동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표준 전속계약서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속계약 자체가 원고의 해외 활동을 예정하여 체결되었고,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매체 등은 별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에 비추어 그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이 부당하게 과중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계약에서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기본급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전속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1년에 2회씩 정산을 하기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2012년 및 2013년에 연 단위로 정산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원고의 활동 초기로서 분배할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원고가 거부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불공정 법률행위[105)]

(가)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 기간을 5년의 장기간으로, 계약의 적용 범위를 전 세계로 정하고, 과다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는 등 그 내용이 불공정함에도 피고는 한국말이 서툰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서를 마치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원로 하여금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나) 이 시간의 쟁점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기반으로 일부 수정한 점, 위약벌 규정이 다소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교섭에 따른 점, 위약벌 액수만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전체적 내용이 현저히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이전에도 다른 소속사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의 한국어 구사 수준이 전속계약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4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581089 판결.

(3) 무권대리[106]

(가) 사실관계

원고(소속사)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17조 제4항에 삽입된 “원고의 임직원인 C가 퇴직할 경우, 본 전속계약서는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 라는 조항은 C가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전속계약에 편입시킨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해지조항을 근거로 한 피고(연기자)의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는바,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 소속사 D의 대주주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은 당시 D에서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던 C에게 원고와 D 소속 연예인들과의 전속계약 체결을 위임한 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작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중요사항은 원고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계약에 반영하기로 한 점, D에 소속되어 있던 연예인 중 상당수는 매니저였던 C가 원고의 직원으로 남아서 계속 매니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고 이에 C는 D의 대주주이자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E와 상의 후 이 사건 해지조항을 작성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해지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뿐만 아니라 원고와 D 소속의 다른 연예인들 사이에서 체결된 전속계약에도 마찬가지로 포함된 점, C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를 원고 측 E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 측에서는 이 사건 해지조항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조항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는 원고 측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해지조항을 전속계약에 편입시켰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은 위 해지조항에 대해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107]

(가) 사실관계

원고(소속사)는 피고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106)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나2028691 판결.
107)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2010다54542(참가) 판결.

대하여 이익분배약정에 따른 위약금인 원고가 지출한 제반 비용 및 전속금의 3배액 중 일부로서 전속금의 3배인 3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속계약이 2008. 2. 15.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사실, 이 사건 전속금이 10억 원인 사실, 이익분배약정에서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전속금 및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의 3배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3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전속금의 3배인 30억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15억 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5) 인격권 보호의무 위반[108)]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인격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해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거나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하면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는 걸그룹의 명의로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간베스트 등의 사이트에서 노무노무와 같이 특정인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이용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걸그룹 명의로 일간베스트에 글을 쓰고 음원 사이트에 욕설을 사용한 댓글을 다는 등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의 사회적 명예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원고들과 그 소속사인 피고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각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08) 서울고등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2066467(본소), 2017나2066474(반소) 판결.

2. 판례 이외의 사례

가. 전속계약 분쟁

(1)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속 계약상 권리 양도 관련

(가) 개요

A 측은 OO 엔터테인먼트가 2019년 1월 28일 A의 사전 동의 없이 A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위반 사항에 대한 수정 요청이 이뤄지지 않아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2019년 3월 21일, A가 요구한 계약 수정안에 대해 소속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A의 법률 대리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이 있는 계약의 경우, 표준계약서 제5조 제6항에 의거해 아티스트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인데, OO 엔터테인먼트가 A의 사전 동의 없이 A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양도 계약 성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다) 결과

2019년 5월 10일, 법원은 A의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OO 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 계약은 OO 엔터테인먼트가 A에 대한 전속 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A가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OO 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와 OO 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OO 엔터테인먼트는 A의 각종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 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 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을 결정하였다.

2019년 9월 27일,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상대측 역시 서울고등법원(항고)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 당사자의 전속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되었다.

(2)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전속계약 분쟁

(가) 개요

2018년 3월, B는 OO 기획사의 최대 주주가 중국계 그룹으로 바뀐 후, 이들이 창업자 C 공동대표를 해임하고 중국 측 대표이사 단독 체제를 선언하자 OO 기획사에 전속계약 해지 내용 증명 발송하여 소속사와 분쟁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OO 기획사 대주주인 중국 자본 그룹이 C 대표를 전격 해임하고 중국 측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변경하면서 매니지먼트를 관장하던 주요 인력 상당수가 이탈하자 B는 회사의 전문성 부재, 매니지먼트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다. B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OO 기획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OO 기획사는 2018년 3월 B부터 전속계약 해지의 일방적 통보를 받았고, B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사실상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OO 기획사는 “B는 독자적으로 타 드라마 출연 교섭을 하는 등 지난 4개월간 독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며 “당사는 이를 전속계약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속계약에 따라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앞으로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O 기획사는 계약준수의 준엄성과 종전 경영진과 연예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유로 연예인의 계약관계 이탈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다) 결과

2019년 2월 22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OO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OO 기획사는 B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B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준수의 원칙에 따라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 라

고 판단하였다. 이후 소속사는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분쟁이 종료되었다.

(3) 전속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 분쟁

(가) 개요

C는 전 소속사(OO 기획사)의 성범죄자의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에 대하여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였고, OO 기획사 측은 정산금과 매니지먼트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2013년 7월 OO 기획사 대표 D 씨와 C 측은 7년간 C의 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으로 활동하던 대표 D 씨의 친동생 A 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대표 D 씨와 사실혼 관계인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2013년 11월 C는 이 사실을 알고 A 씨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표 D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업무에 투입하였다. 이에 C의 아버지는 2013년 11월 계약해지 구두통지를 하고, 2014년 2월 △△기획사라는 기획사를 만들어 C를 매니지먼트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4년 6월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OO 기획사 측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의 50%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 원과 C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1억여 원의 부당이득금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결과

2019년 9월 17일, 대법원은 C의 전 소속사 OO 기획사 대표 D씨가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C는 전 소속사에 3억788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첫 번째 계약해지 구두통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지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해당 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이 일부 이뤄졌다” 라고 판단하였지만, 두 번째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해 “B 씨의 성폭행 혐의 기소는 미성년자인 C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D 씨는 B씨가 C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 라면서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2013년 7월부터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된 2014년 6월까지의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D 씨에게 절반을 지급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승소했지만 3억 원이 넘는 미정산 수익금에 대해 전 소속사에 1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4) 계약의무위반 1

(가) 개요

D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음반을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음반 제작 능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소속사는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소송 취하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2005년 D는 OO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2006년에 OO 기획사는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D와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OO 기획사 측은 2005년 11월 D와 2009년 말까지 음반 4장을 제작하기로 전속계약을 하고 계약금 10억 원 중 2억 원을 매니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D 측이 내기로 한 5집을 제작하지 않았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D 측은 OO 기획사가 코스닥 상장회사이고 대표인 개그맨 E 씨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계약했으나 알고 보니 음반제작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D의 매니저는 “계약금은 받았으나 회사는 음반 제작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음반 제작을 위해 1억5000만 원이 필요했으나 OO 기획사 측은 돈이 없다며 늑장을 부렸다” 라면서 “음반 제작비, 진행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5개월을 허송세월했다. 받은 돈을 돌려주겠으니 계약을 풀어달라고 했음에도 오히려 우리를 고소했다” 라고 주장하였다.

(다) 결과

결국, D와 OO 기획사 측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D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서로 소송을 취하하였다.

(5) 계약의무위반 2

(가) 개요

E는 비용 지불 및 수익금 미정산, 일방적 스케줄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으나, 소속사는 “2006년 7월 E와 음반 네 장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금 10억 원을 주고 전속 계약을 맺었다” 라며 “작년 7월 전국 콘서트 이후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금 10억 원의 세 배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나) 진행경과

2008년 1월, E는 전 소속사였던 OO 기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으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OO 기획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2006년 7월 E와 음반 네 장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금 10억 원을 주고 전속 계약을 맺었다” 라며 “작년 7월 전국 콘서트 이후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금 10억 원의 세 배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재판에서 E는 “전 소속사는 당시 녹음, 편곡 및 마스터링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공연, OST 수익금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결정적으로 전 소속사가 일방적인 스케줄을 잡아 2007년 5월부터 연 전국투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연할 수 없었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OO 기획사로부터 15억 배상 판결을 받은 E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년 6월 대법원은 E의 전 소속사 OO 기획사가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E는 15억 원을 배상하라” 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E는 패소했다.

(다) 결과

2012년 6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E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배상금 15억 원과 법정 이자금 등 총 33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발생하였고 향후 이를 변제하도록 결정하였다.

(6) 이중계약 논란

(가) 개요

F는 2008년 12월 전속계약이 8개월 남은 상황에서 당시 소속사인 OO 기획사 측에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보낸 뒤 현 소속사인 △△ 기획사 측과 전속계약을 맺어 이중계약 논란이 일어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OO 기획사가 △△기획사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었다가 2010년 9월 F의 전・현 소속사는 더는 문제를 확대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하지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이러한 이중계약 분쟁을 일으키고 '자숙 기간'도 없이 F가 연예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F의 출연이 확정됐던 제작사에 "회원사 배우들을 보이콧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히었다.

(다) 결과

2010년 10월 26일, F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하차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매협은 기존의 '강경 입장'을 철회, 2년간 끌어온 분쟁이 종료되었다.

(7) 전속계약 만료일 관련 분쟁

(가) 개요

G가 전 소속사 OO 기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사건으로, 전 소속사는 G를 상대로 연예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G는 전 소속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G 측은 전속계약 만료일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이라 주장하고, 전 소속사 OO 기획사 측은 그로부터 10개월이 연장된 2013년 10월 31일이 만료 시점이라 주장하였다.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 시점은 2012년 12월 31일이지만 전 소속사 측은 G의

OO 기획사 이전 소속사인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활동 불가 기간 2개월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보이콧으로 인한 활동 불가 기간 8개월을 합쳐 총 10개월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OO 기획사는 G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드라마 출연 교섭을 하였다는 것과 G가 매니저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결과

2013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속계약에는 실질적인 연예 활동을 못 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라며 "소속 연예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활동하지 못할 경우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고 판단하였다. G가 2012년 10월 소속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SBS 드라마 제작사와 출연 교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독단적으로 제작사와 출연교섭을 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G가 분쟁을 일으켜 소속사의 명성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속사가 2012년 12월 "G가 매니저들에게 폭언, 협박을 일삼았다" 라는 내용의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G가 보도 자료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8) 연예 활동 방해금지 관련 분쟁

(가) 개요

H가 합의 없는 계약, 음반 제작 약속 불이행, 활동 지원 미비, 출연 방해 등을 근거로 소속사의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고, 이후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산금 미지급, 소속사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대하여 H가 소속사에 대하여 연예 활동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H는 2012년 9월 OO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2016년 5월, OO 기획사가 △△ 기획사에 H의 매니지먼트 업무 일부를 위탁하였다. 이에 H는 OO 기획사가 합의 없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기획사에 양도한 점, OO 기획사가 신보 독집음반을 1년에 1장씩 제작하지 않은 점, 활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점, 뮤지컬 출연을 방해한 점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017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OO 기획사 측이 소속 가수의 홍보 업무를 △△기획사 측에 맡겼을 뿐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미니앨범 외에 싱글 음반이나 OST 제작에 관여하는 등 연평균 3회 내외로 음원 발매를 계속해왔고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음반 판매가 부진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신보 음반을 제작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며, OO 기획사 측이 H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뮤지컬 출연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H는 OO 기획사가 2016년 9월을 끝으로 출연료 등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연료 7,000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4월에 “10일 안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OO 기획사는 H가 협조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서의 ‘배상 조항’에 따라 투자금의 3배인 24억 7,800만 원을 물어낼 책임이 있다며 그중 일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H는 2017년 6월에 연예 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결과

2017년 8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예 활동 방해금지를 명하지 않으면 H는 소송 기간 연예 활동이 크게 제약돼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많다”라고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소속사가 막연히 계약서에 따라 H가 3배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뿐 H의 계약해지 주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소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였다.

(9) 일본 내 연예 활동 방해 및 신용 훼손 행위 관련 분쟁

(가) 개요

I는 2010년 2월 일본 최대 음반기획사인 OO 기획사와 일본 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0년 9월, I의 일본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OO 기획사는 I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OO 기획사는 I의 활동 범위를 놓고 △△기획사와 이견을 보이다 2010년 9월께 I의 일본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이 과정에서 △△기획사 대표가 폭력 단체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기획사는 즉각 OO 기획사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OO 기획사는 I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기획사는 일본 내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년 1월, 1심 동경지방재판소는 I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기획사에 6억 6,000만 엔을 배상하고, 또 OO 기획사가 △△기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표 개인에게도 100만 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OO 기획사는 물러서지 않고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인 동경고등재판소는 양측의 합의를 지속해서 중재하였다.

(다) 결과

2014년 2월 16일 △△기획사 (I)는 전 일본 매니지먼트사인 △△기획사와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을 종료하는 것에 합의하고 양자의 활동에 일절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0)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한 분쟁

(가) 개요

J가 소속사에 수익금 배분, 약속 불이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OO 기획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하였고, 2019년 10월 OO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도 제기하였다가 조정을 통해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J는 2019년 9월 25일 수익금 배분, 약속 불이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OO 기획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및 5,000만 원 청구하였다. 이어서 2019년 10월에 OO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도 제기하였다. 법원은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J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였다. OO 기획사 측은 J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면서 당사자 간의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견해를 밝히었다. 당시 J는 “계약 당시 소속사는 저에게 연 4회 이상의 앨범을 약속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앨범은 1개뿐이고, 활동도 거의 지원해주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산서는 한 차례도 보여준 적이 없고, 수익금은 1원도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다) 결과

2020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이 J가 OO 기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양측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하였다.

(11) 전속계약 위반 관련 분쟁

(가) 개요

K 측은 정산금 미지급, 신뢰 관계 파탄 및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2020년 3월 K는 법무법인을 통해 “소속사가 상당기간 동안 월별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실한 정산결과만을 제공했고, 멤버들에게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하는 등 전속계약의무를 위반했다” 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소속사 측은 이에 반박하며 소속사를 기만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계획된 일정과 행사 등이 불이행되며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모든 법적, 사실적 조치와 위약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책임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견해를 밝히었다. K 멤버 측은 7차례 이상 서면을 제출하면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주장하였다. 2020년 8월 27일, 법원은 K의 연예 활동으로 인해 분배받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전까지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문제 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이미 정산확인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했던 점, 소속사는 멤버들의 정산자료 제공 요구가 있고 난 뒤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한 점 등의 이유로 K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결과

K가 소속사 OO 기획사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하였고,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자 간 절차를 통해 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한다고 밝혔다.

나. 출연금 및 정산금 분쟁

(1) 소속사 도산으로 인한 출연료 관련 분쟁

(가) 개요

A와 B 등은 OO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10년에 OO 기획사가 도산하자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에 대해, 방송 3사가 “OO 기획사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라며 A 출연료 6억 907만 원과 B의 출연료 9,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이에 A와 B는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A는 2010년 10월 회사에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방송사와 소속사에 출연료 지급 소송을 하여 방송사는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하였다. A는 방송사에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A에게 공탁출급권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OO 기획사에 40억 원가량의 채권이 있는 △△사가 2013년 7월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라는 계약 내용상 방송사가 지급할 출연료는 소속사가 받아야 하며 소속사의 재산인 이 돈은 채권자인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라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대로 출연료(공탁금)는 소속사에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 측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은 하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하도급 거래법에 따라 방송사는 원고인 수급사업자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심 법원은 이에 대해 연예인은 방송사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닌 만큼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며 기각하였다.

(다) 결과

2019년 1월 17일, 대법원은 방송 3사가 공탁한 출연료를 A (6억)과 B (1억)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1, 2심은 과거 작성한 출연계약서를 근거로 원고들이 방송사와의 출연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소속사라는 이유로 OO 기획사가 출연료(공탁금)를 수령(=채권자가 공탁금 수령)하는 게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A, B 정도 되는 연예인이라면 방송사가 연예인의 능력을 보고 계약하지 소속사를 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OO 기획사는 일체의 서류 처리만 대행했다고 보아 계약 주체가 원고들이라고 판단하였다.

(2) 정산금 등으로 인한 분쟁 1

(가) 개요

C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정산 방식, 무리한 스케줄 진행 등을 이유로 2019년 8월 23일 법원에 OO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였다. OO 기획사 측은 C 측이 2019년 6월 24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통지를 보냈지만, 일방적인 해지 통지를 인정할 수 없으며, OO 기획사와 C 씨 사이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진행 경과

C는 자신의 건강 악화로 인해 스케줄의 조정 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고려치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을 강요했으며, 아무런 사전·사후 동의 없이 광고주와 이면 계약을 체결, 그리고 자신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위 페이퍼컴퍼니에 소속사의 수익 중 일부를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행사 및 광고 수익을 누락시키기도 하는 등 전체 수익금을 축소해 전속 계약상의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OO 기획사 측은 C의 휴일은 평균적으로 연 90일 내외이며, 2019년 상반기에도 52일을 휴식하였고, C가 지난 5년간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회사는 C로부터 당일 오후에 잡혀 있는 스케줄을 진행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을 뿐 수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이틀 후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 등 회사가 건강 이상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OO 기획사는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도 OO 기획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성심껏 소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결과

C는 2019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C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 양측 합의가 진행됐고 C의 새 소속사 △△ 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10월 30일, C와 OO 기획사 양측 변호사들끼리 합의하여 종료하였다.

(3) 정산금 등으로 인한 분쟁 2

(가) 개요

2017년 9월, D가 소속사 OO 기획사에 정산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를 이유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OO 기획사 측은 “정산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라고 문제가 없다면서 D와의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2018년 3월 28일, D 측에서 2015년에 받은 600만 원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소속사와 신뢰가 깨진 상황이니 미지급된 계약금과 정산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OO 기획사 측은 “정산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라고 문제가 없다면서 D와의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고, D는 당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하차하였다. 2018년 9월 27일, 법원이 D 측이 제출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지며 민사 소송 전까지 자유롭게 연예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8년 10월 29일, △△기획사 측과 새로 계약하였고 이에 OO 기획사가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였다. 2018년 11월 14일,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OO 기획사 측에서

D에게 1억 3,000여만 원의 잔여 계약금 및 정산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OO 기획사 측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 OO 기획사 측은 D가 드라마 시놉시스 및 대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라마 출연을 거절했으며, 이미지를 이유로 예능 등 방송 활동을 거절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결과

2019년 7월 22일, D와 OO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D와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다.

(4) 수익 분배와 관련한 분쟁

(가) 개요

E는 지난 2015년 3월, OO 기획사와 5년 전속계약을 맺어 활동하던 중, E가 소속사의 사전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원고와 정산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기간 중 E가 소화한 스케줄에서 E의 계좌나 아내의 계좌를 통해 받은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E는 지난 2015년 3월, OO 기획사와 5년 전속계약을 맺었다. 연예 활동에 대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고, 활동 경비는 회사와 E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OO 기획사는 2017년 3월 3일, E가 소속사의 사전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원고와 정산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017년 3월 6일 내용증명이 도달했지만, 14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대응이 없어 2017년 3월 22일 전속계약 해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내면서 2017년 4월 25일, OO 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 E가 소화한 스케줄에서 E의 계좌나 아내의 계좌를 통해 받은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결과

2년여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OO 기획사의 청구 비용 8,412만 9,120원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산금 미지급내역 존재 여부를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5월 10일, 계약 기간 중 누락됐다고 판단한 정산금액은 총 9,250만 8,604원으로,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 비율에 맞춰 손해배상액 3,700만 3,441원을 E가 OO 기획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E 측은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건,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OO 기획사의 오류에 따른 것이며 법적 분쟁 이전에 미정산된 일부 금원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OO 기획사 측이 터무니없게도 금 2억 원을 요구(소송에서도 2억 원 청구)해 법적 분쟁을 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 일부 억울한 점이 있으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견해를 밝히었다.

(5) 정산내역 미제공 관련 분쟁

(가) 개요

2014년 11월 26일 OO 기획사를 상대로 F가 투명하지 못한 정산을 이유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2014년 11월 26일, F는 2011년 3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3년간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소속사 OO 기획사로부터 1인당 1,800만 원밖에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속계약이 소속사에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평등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OO 기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F는 2014년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대로 상호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해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하는 중” 이라며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 이나 ‘부당계약’ 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 라고 반박하였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F는 소속사 측이 부실한 답변서 제출(앨범 프로모션비 15.5억 원을 무단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불포함) 및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답변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결과

2015년 8월 1일, F가 합의점을 찾아 소속사로 9개월 만에 복귀하였다. 소속사 OO 기획사는 신뢰를 회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며 끊임없는 대화 시도와 진정성 있는 노력 끝에 서로 합의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5) 방송 출연료 미지급 관련

(가) 개요

G는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로 MBC에 2,000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1,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5년 5월 MBC TV 예능 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키면서 발생한 음원 수익금에 대해 OO 기획사와 정산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는 MBC 뮤직 측은 당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당초 약속과 달리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미지급금은 G가 추후 다른 MBC 프로그램에 출연할 시 기존 출연료에 이를 더해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G 측은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OO 기획사 측은 G와 지난 2016년 전속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더는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 미정산분을 해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복면가왕의 경우 G와 OO 기획사 사이에 계약서 해석이 문제 된 사안으로, 계약서에는 OO 기획사가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OO 기획사와 G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G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OO 기획사와 G가 30:70으로 분배하는 계약이 존재하였다. 이에 ‘복면가왕 음원’을 놓고 OO 기획사는 전자, G는 후자라고 주장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OO 기획사가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 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G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 며, OO 기획사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 원을 G에게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다) 결과

2018년 9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G의 현 소속사 △△기획사가 전 소속사 OO 기획사 측에 제기한 소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 복면가왕에 대한 정산금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다.

다. 상표권 분쟁

(1) 상표권 분쟁 1

(가) 개요

H는 지난 1998년 OO 기획사 측 소속으로 데뷔했고, H의 상표권 역시 OO 기획사 측이 갖고 있었다. 하지만 2003년 H와 OO 기획사 측의 전속 계약이 만료되면서 H의 상표권에 대해 위탁업체와 H의 소속사가 상표권 협약을 체결하며 사용하다가 이에 대하여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2012년 상표권 양도소송을 제기해 2015년 조정을 통해 상표권 회복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2013년 2월 H 컴퍼니는 상표권리자인 OO 기획사 측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지만, 2013년 3월 상표권의 소유가 △△기획사로 이전되었다. H는 법적 갈등 진행 중에 H라는 이름이 상표권 사용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H 11집을 비롯한 H 관련 디스코그라피에서 'H' 라는 이름을 삭제한 채 발매하였다. 이후 H 컴퍼니는 2014년 7월 △△기획사에 "상표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 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 중 일부를 당 초 약정에 따라 돌려달라" 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기획사 측도 "상표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 2013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계약에 따라 돌려달라" 라고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각각의 수익을 정산해 돌려줘라" 라고 판결을 내렸고 "상표권은 △△ 기획사 측에 있어 H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H 측은 해당 판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를 신청하였고,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상표권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H 컴퍼니의 명칭마저 '□□ 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였다.

(다) 결과

2015년 5월 20일 재판부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고, □□ 엔터테인먼트와 △△기획사는 2015년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 참석해, 상표권 양도 합의에 대한 재판부 조정을 통해 H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2) 상표권 분쟁 2

(가) 개요

과거 I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OO 기획사 전 직원 M씨(연예기획자)와 I 간의 상표권 분쟁으로 I 상표권 소유자 M씨 측이 I를 고소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2018년 재결합 콘서트가 추진되던 시점에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로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해당 콘서트에서는 상표권이 해결되지 못하여, I라는 명사를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 I의 풀어쓴 원래 의미를 표기하였다. M씨 측은 2018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I 공연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I 상표・로고 사용금지 소송을 내고,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결과

2019년 9월 24일,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I 상표권은 M씨 측이 지난 2010년 등록을 진행하였다. 이에 △△ 기획사(I 콘서트 기획사)는 M씨 측을 상대로 해당 상표권의 등록 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 그리고 2020년 7월 7일에 원고인 △△ 기획사의 M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상표권자는 OO 기획사이며 당시 미성년자인 멤버들의 날인만 있는 등을 근거로 M씨 측이 등록한 상표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I 상표권을 멤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상표권자는 OO 기획사임이 확인되었다.

(3) 상표권 분쟁 3

(가) 개요

2017년 12월 28일, 계약이 해지된 J의 전 소속사 OO 기획사에서 JJ라는 상표로 상표권 출원을 하였다. 2018년 1월 17일, J 측에서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 상표권 등록이 거부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J의 전 소속사인 OO 기획사가 'J(JJ)'를 음원 파일이나 CD 등 음악상품, 공연업, 화장품, 의류 등에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해 멤버들이 법적으로 대응하였다. J 멤버는 2018년 1월 17일 특허청에 'J(JJ)'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했고, 만약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견해를 밝히었다. OO 기획사 측은 "기획사에서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견해를 밝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해결될 부분이라고 견해를 밝히었다.

(다) 결과

특허청은 J는 널리 알려진 저명한 연예인 그룹 명칭을 소속사에서 출원한 상황에 해당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다만 그룹 구성원의 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상표권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라. 부당계약 분쟁

(1) 불공정 계약 및 전속계약 기간 관련 분쟁

(가) 개요

2009년 아이돌 K의 멤버는 소속사인 OO 기획사와 불공정 계약에 대하여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신청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K의 멤버가 K로 활동하던 지난 2009년 7월 31일 전 소속사인 OO 기획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당시 멤버들은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장기이며 수익 분배가 기획사에 유리해 불공정함으로 전속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2009년 10월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OO 기획사는 2010년 4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11년 2월, 법원은 OO 기획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OO 기획사가 이들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내렸다. OO 기획사는 2010년 4월에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K의 멤버들도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K의 멤버들이 맺은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또한 추가 협의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멤버들만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있는 조항 역시 ‘불공정계약’이라고 판결하였다.

(다) 결과

OO 기획사와 K의 멤버들의 전속계약 분쟁이 2012년 11월 28일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합의서는 OO 기획사와 K의 멤버들이 양측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하고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고,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부당계약 사례 1

(가) 개요

L의 소속사가 L을 10개월 이상 여관에 가둬둔 채 연주할 때만 밖에 나올 수 있도록 감금했고 유흥업소와 소규모 행사에 공연하도록 지시하면서 이를 통해 벌어들인 출연료를 강제 착취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L은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2008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소 10개월 이상을 경기도 군포 경찰서 뒤편 여관에 감금당했고 각종 행사로 번 돈 5억 원 상당을 갈취당했으며, 계약 초기를 제외한 2년간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매니저는 L이 최소 10개월 이상 드나들지 못하게끔 여관에 갇힌 채 연주할 때만 밖에 나올 수 있었고 각종 행사에서 벌어들인 출연료를 강제로 빼앗겼으며,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전 소속사 대표가 L의 바이올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연주하게끔 강요했다고 주장하였고 L은 인터뷰에서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다) 결과

L의 전 소속사 대표의 폭행, 감금혐의는 L의 출국으로 조사가 중단됨에 따라 소속 연예인 L에게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하고 행사비 갈취한 것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후 2011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는 소속사 연예인에게 성 상납을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 부당계약 사례 2

(가) 개요

L은 2016년 M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익금 1억 5,000만 원까지 L의 매니저가 가져가도록 하고, 초과한 금액은 L과 M이 절반 나눠 갖는 것으로 약정했으며, 돈 관리는 M 몫으로 전적 일임하는 불공정 계약임이 확인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M 매니저는 1996년 L을 데뷔시킨 뒤 2000년까지 함께 활동했다. 하지만 이후 L의 어머니와 마찰을 빚으면서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가 이후 L이 2009년 감금 사건 및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할 때 다시 매니저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L이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어머니가 2015년쯤 사망한 뒤 매니저 M과 같이 생활하였다. 2016년 L의 이모가 자신과 L의 고모를 L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친인척들 사이 재산을 두고 갈등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후견인 신청은 받아들이되 이모와 고모가 아닌 특정 복지재단을 L의 후견인으로 선정하였으나 이에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선정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L의 이모는 후견인 신청 자체를 취소하였다. 2019년, ‘MBC 스페셜’의 성기연 PD가 L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가 매니저의 사기행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와 공익법률법인에 신고하게 되어 분쟁이 시작되었다. 2019년 5월 23일,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L의 매니저 M씨를 상대로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매니저 M씨가 L 명의로 약 1억 800만 원 가량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 6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M씨가 L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치워 시세 대비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고 센터는 고발장에 적시했다. L 변호인 측에서 추정한 피해액은 최소 7억 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16일,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L의 현 매니저 M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 결과

2020년 4월 3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L을 상대로 거액 사기를 저지르고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매니저 M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이다.

마. 이중계약 분쟁

(1) 이중계약 분쟁 사례 1

(가) 개요

OO 출신 가수 N은 새로운 소속사인 OO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소속사인 △△기획사는 N이 2017년 5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당해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어서 자신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N은 2017년 5월 △△기획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기획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N은 △△기획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반박하였다. 이에 N은 2017년 8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전속계약 부존재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원은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N은 2019년 1월 23일 OO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획사는 N의 계약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자신과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이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문제 제기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전속계약 위반 및 사전접촉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요청하였다. 한편, OO 기획사는 N과 △△기획사 간의 분쟁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2019년 4월 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타 기획사의 전속계약 관련 사전 접촉을 금지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9년 4월 1일 N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N은 2019년 7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결과

N은 현재 □□기획사 소속으로 연기자로 전향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앞서 분쟁에 대한 구체적 결과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서는 2017년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속계약 부존재 판단 사례를 고려하여 추측할 수 있다.

(2) 이중계약 분쟁 사례 2

(가) 개요

2013년 연기자 O는 OO 기획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기획사 또 다른 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중 전속계약이 문제 된 사건이다.

(나) 진행 경과

O는 OO 기획사와 2013년 12월 16일까지를 기간으로 한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에 계약상 O는 2013년 9월 16일 이전에는 다른 기획사와 접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기획사(구(舊) □□기획사)와 사전접촉을 가졌고, 2013년 8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전접촉에 관하여 O 및 △△기획사 측은 구(舊) **기획사가 OO 기획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표가 소속 배우들에게 재계약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O는 5월 이후 이에 대한 차원에서 타 회사와 접촉을 하게 된 것이며, 이는 OO 기획사와도 논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하였다.

(다) 결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2013년 12월 4일 O가 이적하려고 한 △△기획사는 O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 아울러 △△기획사의 대표와 이사에 대해 자격정지 1년과 2년을 각각 의결하였다.

제4장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조사결과

제4장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조사결과[109)]

1. 조사개요

가. 심층 인터뷰

(1) 심층 인터뷰 목적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체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정량조사를 하기 전, 기획업 및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량조사 조사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대상자 선정 및 컨택	- 기획업자 : 전화 컨택을 통해 실제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섭외 - 대중문화예술인 : 연구진의 인적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계약 경험이 있는 예술인 섭외
↓	
가이드라인 작성	- 조사 목적을 감안한 조사 내용을 구성하여 1차 가이드라인을 작성 - 현장 전문가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1차 가이드라인 수정 - 각 1~2명 파일럿 인터뷰 진행 후 가이드라인 보완
↓	
인터뷰 진행	- 인터뷰 진행은 연구진이 직접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 - 인터뷰이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 내용 녹취
↓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인터뷰 내용 스크립트 정리 -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그림 2] 심층 인터뷰 진행 절차

[표 35] 심층인터뷰 진행 현황

구분	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
총 업체/인원	10개사	40명(연습생 포함)
진행기간	2020. 7. 28 ~ 2020. 8. 19	2020. 7. 13 ~ 2020. 8. 11
구분	- 연기 중심 5개사 - 가수 중심 5개사	- 음악 분야 성인 예술인 12명, 청소년 예술인 3명, 연습생 10명 - 연기 분야 성인 예술인 12명, 청소년 예술인 3명

109) 본 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계 표준계약서 활용 정도와 주요 현안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로, 통계적 엄밀성에 기반하기보다는 현황 파악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결과의 인용과 해석에 각별한 유의를 요함

(2) 심층 인터뷰 진행 내용

[표 36] 기획업 대상 주요 인터뷰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 현황	소속, 직위, 성명
표준전속계약서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여부 및 변경한 조항 표준전속계약서 미활용 이유 표준전속계약서상 명시된 전속계약 기간의 적절성 여부 및 그 이유 전속계약 기간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보완수단 반영 사례 및 내용 최대 7년으로 한정된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의견 표준전속계약서상 구체적인 활동 범위 기재 여부 및 내용 표준전속계약서상 SNS, 유튜브 등 신규 매체를 통한 활동의 범위 제시 필요성 기획업자의 개인 활동 제한 필요성 및 제한 수준 표준전속계약서상 저작권, 저작인접권 명시 수준 대중문화예술인에 의하여 창출된 저작권, 저작인접권 관련 문제 발생 여부 대중문화예술인에 의하여 창출된 저작권, 저작인접권 거래 경험 및 어려움 표준전속계약서상 수익분배 방법 명시 여부, 내용 표준전속계약서상 명시된 매니지먼트 업무 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의견 표준전속계약서상 수정, 개선 필요한 부분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연습생 계약 체결 여부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연습생 계약 미체결 이유 연습생 표준계약서 미활용 이유 연습생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활용 여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미활용 이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내용 중 현실 미반영 조문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변경 활용 시 변경 조항 방송출연계약 당사자 유형 및 출연료 수령 주체 방송출연표준계약서상 수정, 개선 필요한 부분
기타	코로나-19 이후 스케줄 취소, 변경으로 인한 피해 여부 및 해결 방법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전통 매체(TV, 라디오) 활동 비중 변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유튜브 등 타 플랫폼 참여 여부, 활동 비중의 변화 표준계약서 활용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

[표 37] 대중문화예술인 주요 인터뷰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 현황	소속, 분야, 성명
표준전속계약서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여부 및 변경한 조항 표준전속계약서 미활용 이유 표준전속계약서상 명시된 전속계약 기간의 적절성 여부 및 그 이유 전속계약 체결 시 계약기관 관련 별도의 조건 추가 경험 최대 7년으로 한정된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의견 표준전속계약서상 구체적인 활동 범위 기재 여부 및 내용 표준전속계약서상 SNS, 유튜브 등 신규 매체를 통한 활동의 범위 제시 필요성 기획업자의 개인 활동 제한 필요성 및 제한 수준 표준전속계약서상 저작권, 저작인접권 명시 수준 대중문화예술인에 의하여 창출된 저작권, 저작인접권 관련 문제 발생 여부 대중문화예술인에 의하여 창출된 저작권, 저작인접권 거래 경험 및 어려움 표준전속계약서상 수익분배 방법 명시 여부, 내용 표준전속계약서상 명시된 매니지먼트 업무 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의견 표준전속계약서상 수정, 개선 필요한 부분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연습생 계약 체결 여부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연습생 계약 미체결 이유 연습생 표준계약서 미활용 이유 연습생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활용 여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미활용 이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내용 중 현실 미반영 조문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직접 체결 경험 유무 방송 출연계약 직접 체결하지 않은 이유 및 발생한 문제 유무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변경 활용 시 변경 조항 방송 출연 시 출연료, 기간, 조건 등의 변화로 인한 피해 경험 및 계약 변경 여부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상 수정, 개선 필요한 부분
기타	코로나-19 이후 스케줄 취소, 변경으로 인한 피해 여부 및 해결 방법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전통 매체(TV, 라디오) 활동 비중 변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유튜브 등 타 플랫폼 참여 여부, 활동 비중의 변화 표준계약서 활용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

[표 38] 기획업 심층 인터뷰 참여자

분야	소속 예술인 수	인터뷰 인원
가수	10명 미만	1명
	10~30명 미만	2명
	30명 이상	2명
연기자	10명 미만	4명
	10~30명 미만	1명
합계		10명

※ 가수 부문 기획업 중 2개사는 코스닥 상장사

[표 39] 대중문화예술인 심층 인터뷰 대상자

분야	구분	인터뷰 인원
가수	아이돌 그룹(댄스)	8명
	그 외 부문(발라드, 록, 댄스 등)	7명
	기획사와 계약한 연습생(댄스, 발라드 등)	10명
연기자	방송/영화 분야 주·조연	6명
	방송/영화 분야 신인·단역	6명
	청소년 주·조연·신인	3명
합계		40명

나. 정량조사

(1) 정량조사의 목적 및 내용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예술인 393명, 기획업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10월 5일~11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조사를 수행하였고, 대면조사가 어려운 응답 대상자만 온라인 조사페이지(모바일 접속 가능)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량조사의 조사항목은 심층 면접조사와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0] 기획업 대상 정량조사 설문항목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 현황	- 소속, 직위, 성명
표준전속계약서	-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 -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여부 및 변경한 조항 - 표준전속계약서 미활용 이유 - 표준전속계약서상 명시된 전속계약 기간의 적절성 여부 및 그 이유 - 전속계약 기간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보완수단 반영 사례 및 내용 - 최대 7년으로 한정된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의견 - 표준전속계약서상 구체적인 활동 범위 기재 여부 및 내용 - 표준전속계약서상 SNS, 유튜브 등 신규 매체를 통한 활동의 범위 제시 필요성 - 대중예술인의 개인 활동 제한 필요성 및 제한 수준 - 표준전속계약서상 저작권, 저작인접권 명시 수준 - (가수/음악관련업) 퍼블리싱을 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수익분배 방법 - (가수/음악관련업) 가수의 실연, 해외공연 내용 포함 필요성 - (가수/음악관련업) 음반 크레딧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성 - 대중문화예술인에 의하여 창출된 저작권, 저작인접권 관련 문제 발생 여부 - 대중문화예술인에 의하여 창출된 저작권, 저작인접권 거래 경험 및 어려움 - 전속계약서상 수익분배 방법 명시 여부, 정산내역 제공 형태 및 개선 필요 부분 - 전속계약서상 명시된 매니지먼트 업무 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의견 -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진행 여부 및 표준전속계약서에 조항추가에 대한 필요성 -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 여부 - 표준전속계약서상 수정, 개선 필요한 부분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 연습생 계약 체결 여부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연습생 계약 미체결 이유 - 연습생 표준계약서 미활용 이유 - 연습생이 데뷔하게 되는 경우 계약 기간 산정 방법 - 연습생이 데뷔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종료 사전공지 기간 - 훈련활동비용 범위 명시 여부 - 연습생이 데뷔 시 연습생 시절 훈련 활동 비용을 정산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연습생에 대한 품위유지비/숙소 제공 여부 - 연습생의 계약 종료 시 훈련활동비 환급 여부 - 연습생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 여부 - 연습생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활용 여부 -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미활용 이유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조항 적용 및 동의서 작성 여부 -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내용 중 현실 미반영 조문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변경 활용 시 변경 조항 -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 유형 및 출연료 수령 주체 - 방송 출연으로 생성되는 콘텐츠에 대한 수익 배분 및 지급기한/빈도 - 방송출연표준계약서상 수정, 개선 필요한 부분
기타	- 각 계약서 미활용 이유

[표 41] 대중문화예술인 정량조사 설문항목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 현황	- 성별, 연령, 주 활동부문, 전속계약 여부, 데뷔 시점 등
표준전속계약서	-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 -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여부 및 변경한 조항 - 표준전속계약서 미활용 이유 - 전속계약 조건에 대한 검토 동반자 - 표준전속계약서상 명시된 전속계약 기간의 적절성 여부 및 그 이유 - 최대 7년으로 한정된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의견 - 전속계약서상 구체적인 활동 범위 기재 여부 및 내용 - 전속계약서상 SNS, 유튜브 등 신규 매체를 통한 활동의 범위 제시 필요성 및 이유 - 기획업자의 개인 활동 제한 필요성 및 제한 수준 - 전속계약서상 저작권, 저작인접권 명시 수준 - (가수/음악관련업) 퍼블리싱을 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수익분배 방법 - (가수/음악관련업) 가수의 실연, 해외공연 내용 포함 필요성 - (가수/음악관련업) 음반 크레딧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성 - 전속계약서상 수익분배 방법 명시 여부, 정산내역 제공 형태 및 개선 필요 부분 - 대중예술인 활동 시 불이익 경험 여부 -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진행 여부 및 표준전속계약서에 조항추가에 대한 필요성 -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 여부 - 표준전속계약서상 수정, 개선 필요한 부분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 연습생 계약 체결 여부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연습생 계약 미체결 이유 - 연습생 표준계약서 미활용 이유 - 연습생 계약 조건에 대한 검토 동반자 - 연습생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 여부 - 연습생 계약에 개선 필요사항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활용 여부 -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미활용 이유 -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내용 중 현실 미반영 조문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변경 활용 시 변경 조항 -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 유형 및 출연료 수령 주체 - 방송 출연 조건 변경으로 인한 피해 여부 및 조건 변경 여부 -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상 수정, 개선 필요한 부분

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집

본 연구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집 경로는 다음과 같다.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가수, 연기자의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문위원들의 추천을 기반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고, 눈덩이 표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수는 아이돌, 비 아이돌 및 음악 장르 등을 고려하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원, 연기자는 주연, 조연, 신인, 단역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회원을 선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2) 정량조사 응답자 현황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예술인 393명, 기획업자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기획업은 가수와 연기자 부문을 구분하여 가수 부문 54명, 연기자 부문 49명을 조사하였고, 대중예술인은 가수 120명, 연기자 273명을 조사하였다. 표준전속계약서와 관련된 조사이지만,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중예술인의 경우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므로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대중예술인도 81명을 조사하였다.

[표 42] 기획업 정량조사 응답자 현황

			표본 수(명)	구성비(%)
계			103	100.0
가수	소계		54	52.4(100.0)
	소속 예술인 수	1~4인	35	64.8
		5~9인	8	14.8
		10인 이상	11	20.4
연기자	소계		49	47.6(100.0)
	소속 예술인 수	1~4인	19	38.8
		5~9인	13	26.5
		10인 이상	17	34.7

[표 43] 대중예술인 정량조사 응답자 현황

		표본 수(명)	구성비(%)
■ 전체		393	100.0
가수	청소년	11	2.8
	성인	109	27.7
연기자	청소년	21	5.3
	성인	252	64.1
전속계약 여부	전속계약 중	312	79.4
	프리랜서 활동	81	20.6
데뷔 여부	데뷔함	366	93.1
	연습생 활동 중	27	6.9

2. 대중문화예술인 조사결과

가. 정량조사 결과

(1) 표준전속계약서의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59.0%,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17.0%로 전속계약이 체결된 대중예술인 중 76.0%가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전속계약서 외 자체 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10.3%, 구두로만 계약하거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각각 8.0%와 5.8%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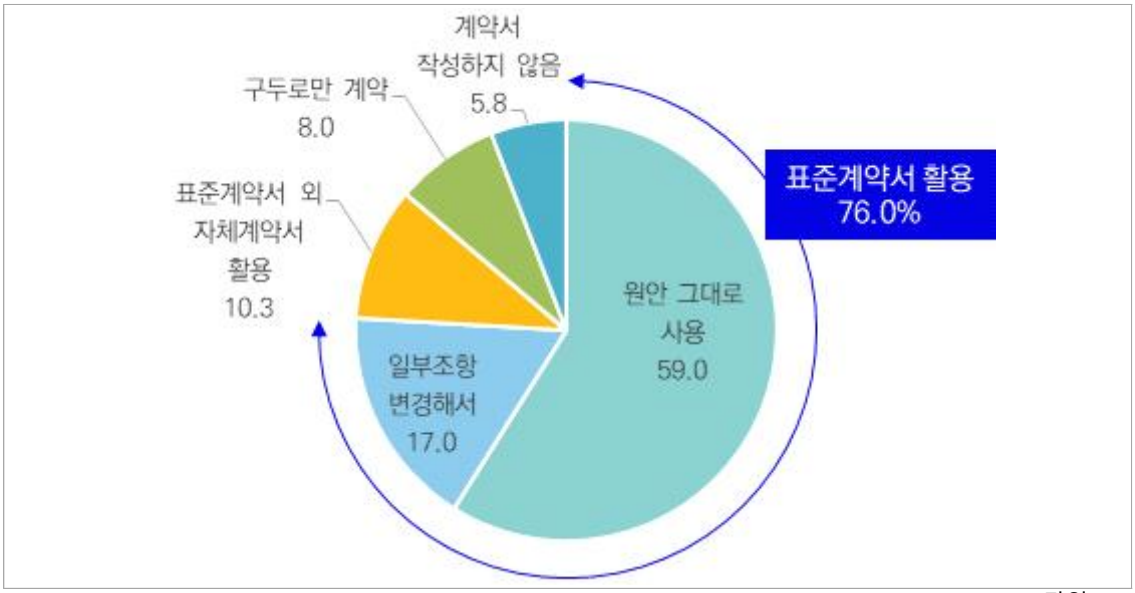

(단위:%)

[그림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표 44]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표준전속 계약서로 계약체결	표준전속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표준계약서 외 자체 제작한 계약서를 활용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
■ 전체		312	59.0	17.0	10.3	8.0	5.8
가수	청소년	10	100.0	-	-	-	-
	성인	80	55.0	17.5	10.0	7.5	10.0
연기자	청소년	17	58.8	17.6	17.6	5.9	-
	성인	205	58.5	17.6	10.2	8.8	4.9

표준전속계약서를 계약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40.0%가 '기획업(엔터테인먼트사)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성인보다 청소년에서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인 예술인의 경우 평소의 친분/지인 등인 이유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 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 활용하지 않는 이유-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기획업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표준전속 계약서가 있는 줄 몰라서	표준전속 계약서의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	기타
■ 전체		75	40.0	9.3	14.7	25.3	10.7
가수	청소년	22	36.4	4.5	13.6	22.7	22.7
	성인	0	-	-	-	-	-
연기자	청소년	4	75.0	25.0	-	-	-
	성인	49	38.8	10.2	16.3	28.6	6.1

전속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또는 전속계약서)에 대한 검토는 성인의 경우 본인 혼자서 검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동종업계 동료/선후배' > '변호사 등 법조인' 이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대부분 '부모님/가족' 이 함께 검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전속계약 체결 전 계약조건 검토-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본인 혼자서	부모님/ 가족	변호사 등 법조인	동종업계 동료 /선후배	기타
■ 전체		312	56.1	25.6	3.8	12.8	1.6
가수	청소년	10	-	100.0	-	-	-
	성인	80	48.8	30.0	6.3	15.0	-
연기자	청소년	17	-	88.2	11.8	-	-
	성인	205	66.3	15.1	2.4	13.7	2.4

표준전속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이 변경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가수의 경우 '저작권 귀속(46.2%)', '수익의 분배 및 정산(46.2%)',

‘계약 기간 및 갱신(38.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자의 경우 ‘수익의 분배 및 정산(61.5%)’, ‘계약 기간(51.3%)’,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35.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33.3%)’ 등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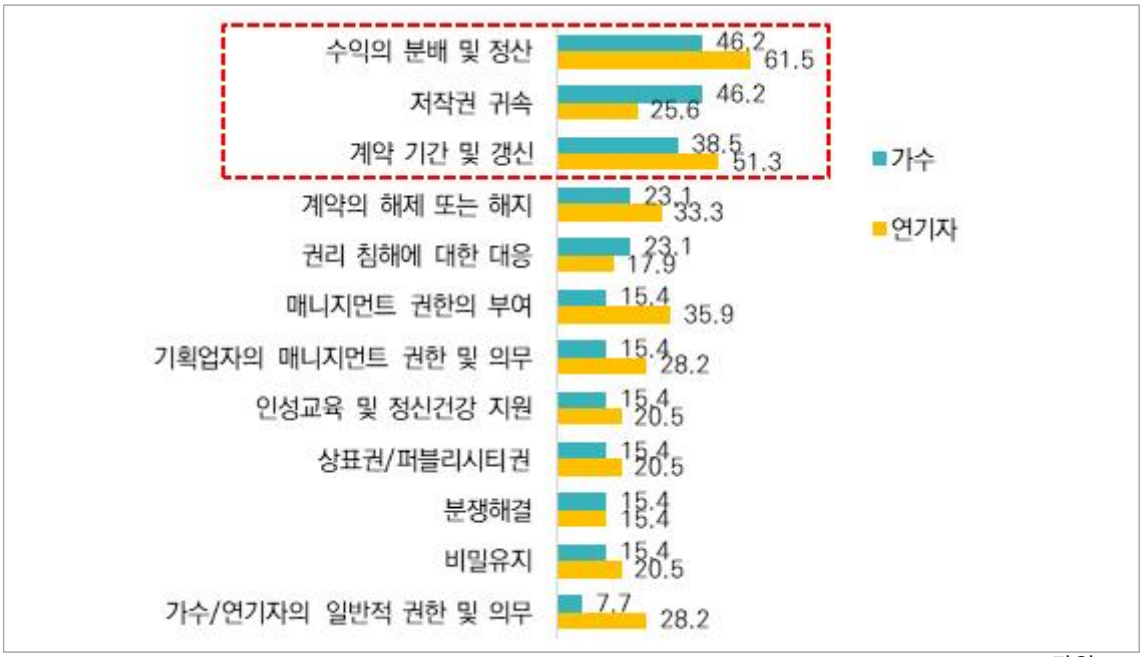

(단위:%)

[그림 4]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항목-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예술인

[표 47]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항목-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예술인(가수)

(단위:%)

수익의 분배 및 정산	46.2
저작권 귀속	46.2
계약 기간 및 갱신	38.5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23.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3.1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15.4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15.4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15.4
상표권/퍼블리시티권	15.4
비밀유지	15.4
분쟁해결	15.4
청소년의 보호	15.4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7.7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7.7
부속 합의 관련	7.7

[표 48]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항목-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예술인(연기자)

(단위:%)

수익의 분배 및 정산	61.5
계약 기간	51.3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35.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3.3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28.2
연기자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28.2
저작권 귀속	25.6
계약의 적용지역(국내/해외포함 등)	25.6
연기자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20.5
상표권/퍼블리시티권	20.5
권리 등의 양도	20.5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종료	20.5
비밀유지	20.5
부속 합의 관련	20.5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17.9
확인 및 보증	15.4
분쟁 해결	15.4
청소년의 보호	15.4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12.8
기타	5.1

(2) 전속계약 기간

현재 전속계약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속 대중예술인의 75.3%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적절한 전속계약 기간은 4년 내외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속계약 기간은 가수보다 연기자 쪽에서 더 짧은 기간을 원했으며, 가수/연기자 구분 없이 최대 7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단위:%)

[그림 5] 적절한 전속계약 기간-전속 대중예술인

[표 49] 적절한 전속계약 기간-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평균(년)	표준편차(년)
■ 전체		312	24.7	75.3	3.9	1.1
가수	청소년	10	30.0	70.0	4.3	0.5
	성인	80	30.0	70.0	4.3	1.4
연기자	청소년	17	17.6	82.4	3.3	0.6
	성인	205	22.9	77.1	3.8	1.0

(3) 활동 범위 확대 및 개인 활동의 제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대중예술인 중 가수도 ‘배우, 모델, 성우, TV 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 출연, 광고 출연’에 대한 부분을 개인 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인의 경우 활동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 없이 진행하는 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0] 전속계약 체결 시 활동 범위(복수응답)-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의 활동	배우, 모델, 성우, TV 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 출연, 광고출연,	구체적인 범위 명시 없이 진행	기타
■ 전체		312	31.1	77.2	5.8	2.6
가수	청소년	10	100.0	70.0	-	-
	성인	80	88.8	37.5	5.0	3.8
연기자	청소년	17	11.8	100.0	-	-
	성인	205	6.8	91.2	6.8	2.4

전속계약 체결 시 활동 매체는 ‘TV’인 경우가 80.1%로 가장 많았고,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57.4%)’,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 기획업자와 별도로 합의(50.3%)’,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46.2%)’,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녹음물(42.9%)’ 등을 주요 활동 매체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전속계약 체결 시 활동 매체(복수응답)-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TV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일체의 영상 녹음물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 전체		312	80.1	42.9	57.4	46.2
가수	청소년	10	90.0	100.0	80.0	90.0
	성인	80	63.8	65.0	43.8	32.5
연기자	청소년	17	100.0	47.1	88.2	88.2
	성인	205	84.4	31.2	59.0	45.9

		표본 수 (명)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 기획업자와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구체적인 매체 명시 없이 진행	기타
■ 전체		312	50.3	8.7	1.9
가수	청소년	10	70.0	-	-
	성인	80	48.8	11.3	3.8
연기자	청소년	17	47.1	-	-
	성인	205	50.2	8.8	1.5

전속계약 체결 시 활동 매체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93.0%(대체로 필요함 47.8% + 반드시 필요함 45.2%)가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주로 ‘활동 범위가 명확해야 일하기가 쉬우므로’ >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므로’ > ‘원하지 않은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 전속계약 체결 시 활동 매체 범위에 대한 명시 필요-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	대체로 필요함	반드시 필요함	평균(점)
■ 전체		312	2.9	4.2	47.8	45.2	3.4
가수	청소년	10	-	-	60.0	40.0	3.4
	성인	80	5.0	5.0	37.5	52.5	3.4
연기자	청소년	17	-	-	58.8	41.2	3.4
	성인	205	2.4	4.4	50.2	42.9	3.3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64.7%는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데 활동 매체만 포함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38.6%, ‘전속계약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25.7%였다. 개인의 SNS 활동은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31.7%로 조사되었다.

(단위:%)

[그림 6]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표 53]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한 범위=100.0			
					활동 매체에만 포함시켜야 한다	개인 SNS 활동은 제시할 필요가 없다	전속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기타
■ 전체		312	35.3	64.7	38.6	31.7	25.7	4.0
가수	청소년	10	30.0	70.0	14.3	28.6	42.9	14.3
	성인	80	38.8	61.3	32.7	38.8	22.4	6.1
연기자	청소년	17	17.6	82.4	28.6	35.7	35.7	-
	성인	205	35.6	64.4	43.2	28.8	25.0	3.0

회사가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회사 또는 예술인의 이미지와 관련 없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이 54.2%로 가장 많았고, ‘별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도 36.5%로 조사되었다.

반면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은 9.3%로 나타났는데 주로 성인보다는 청소년 예술인에서 의견이 많았고,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한 범위의 개인 활동’ 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75.9%)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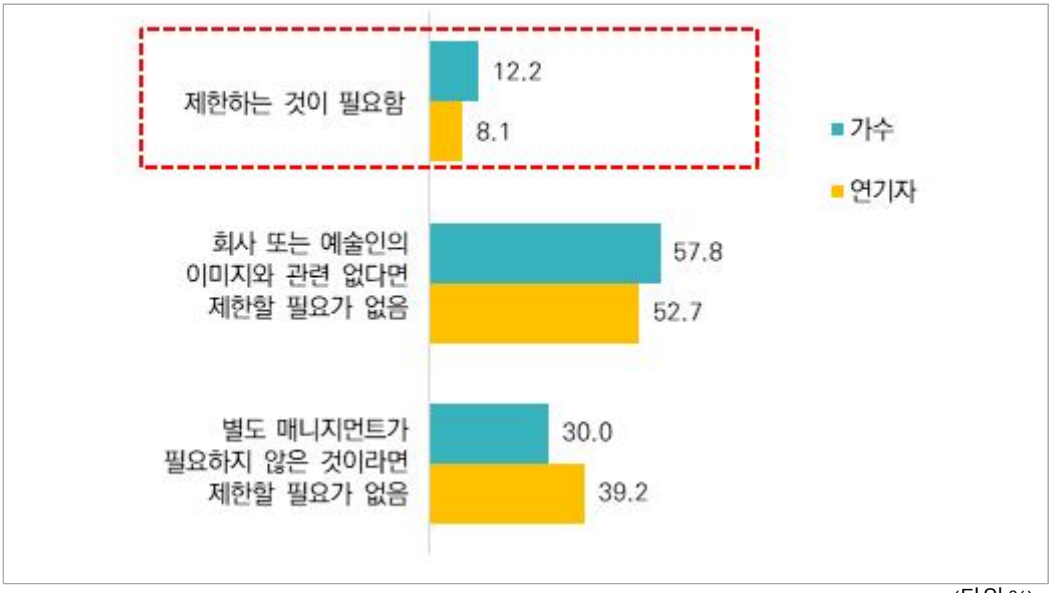

(단위:%)

[그림 7] 개인의 활동(연예활동 외 겸업, 파트타임 등)에 대한 제한 필요 여부
-전속 대중예술인

[표 54] 개인의 활동(연예활동 외 겸업, 파트타임 등)에 대한 제한 필요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회사 또는 예술인의 이미지와 관련 없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음	별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한할 필요가 없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필요한 범위=100.0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한 범위의 개인 활동	연예 활동과 무관한 파트 타임	연예 활동과 무관한 사업/ 창업	개인 활동 전반
■ 전체		312	54.2	36.5	9.3	75.9	6.9	6.9	10.3
가수	청소년	10	50.0	10.0	40.0	75.0	-	25.0	-
	성인	80	58.8	32.5	8.8	28.6	28.6	-	42.9
연기자	청소년	17	52.9	29.4	17.6	100.0	-	-	-
	성인	205	52.7	40.0	7.3	93.3	-	6.7	-

(4) 저작권, 저작인접권

전속계약서에서 저작권을 사업체에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11.2%,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35.9%, 기여도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29.5%로 조사되었다.

[표 55] 표준전속계약서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한 명시(저작권)-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사업체에 귀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귀속	기여도에 따라 합의하여 정함	해당 없음	기타
■ 전체		312	11.2	35.9	29.5	17.9	5.4
가수	청소년	10	-	40.0	30.0	20.0	10.0
	성인	80	10.0	48.8	31.3	7.5	2.5
연기자	청소년	17	11.8	11.8	41.2	35.3	-
	성인	205	12.2	32.7	27.8	20.5	6.8

전속계약서에서 저작인접권(실연권)을 사업체에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비율은 5.8%,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60.3%, 기여도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19.9%로 조사되었다.

[표 56] 표준전속계약서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한 명시(저작인접권(실연))-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사업체에 귀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귀속	기여도에 따라 합의하여 정함	해당 없음	기타
■ 전체		312	5.8	60.3	19.9	8.3	5.8
가수	청소년	10	10.0	70.0	-	10.0	10.0
	성인	80	3.8	57.5	27.5	7.5	3.8
연기자	청소년	17	11.8	76.5	11.8	-	-
	성인	205	5.9	59.5	18.5	9.3	6.8

전속계약서에서 저작인접권(음반 제작)을 사업체에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12.8%,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19.9%, 기여도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28.8%로 조사되었다.

[표 57] 표준전속계약서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한 명시(저작인접권(음반제작)) -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사업체에 귀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귀속	기여도에 따라 합의하여 정함	해당 없음	기타
■ 전체		312	12.8	19.9	28.8	29.2	9.3
가수	청소년	10	40.0	-	10.0	10.0	40.0
	성인	80	25.0	11.3	45.0	10.0	8.8
연기자	청소년	17	17.6	5.9	11.8	58.8	5.9
	성인	205	6.3	25.4	24.9	35.1	8.3

음반(음원)에 관한 저작권 · 저작인접권과 그 외 콘텐츠(예를 들어 영상물 등)에 관한 저작권 · 저작인접권 조항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62.5%가 ‘음반(음원)과 그 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 저작인접권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 연기자 또는 가수가 일부 참여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저작권 분배가 없었고, 작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으나 본인의 이름이 음반 크레딧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8] 표준전속계약서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한 명시(저작인접권(음반제작)) -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현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	음반(음원)과 그 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 저작인접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기타
■ 전체		312	34.0	62.5	3.5
가수	청소년	10	50.0	40.0	10.0
	성인	80	30.0	68.8	1.3
연기자	청소년	17	17.6	82.4	-
	성인	205	36.1	59.5	4.4

(5) 수익 분배

기획업과의 수익분배를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대해 가장 많이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수익배분 비율에 관한 내용(85.9%)’이며, 그 외 ‘비용 정산 범위에 관한 내용(54.2%)’, ‘수익배분 대상 범위에 관한 내용(53.2%)’, ‘수익금 지급기한에 관한 내용(51.9%)’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산자료 제공 기간에 관한 내용’ 은 33.0%만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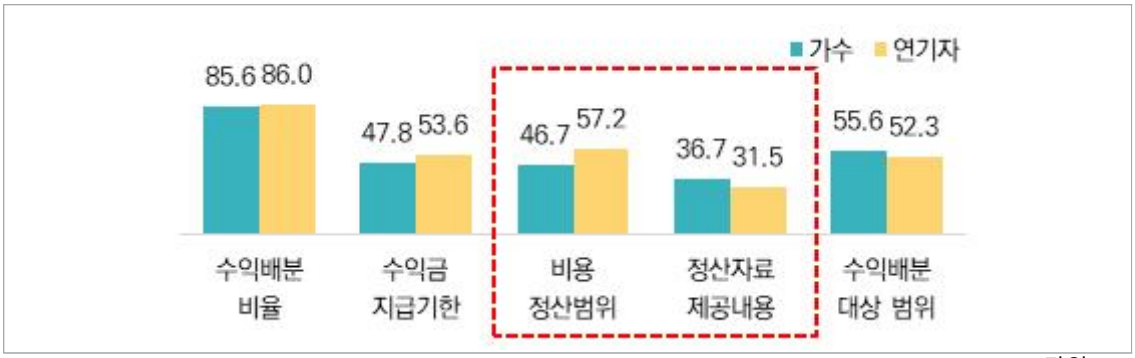

(단위:%)

[그림 8]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관하여 표준전속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내용(복수응답)-전속 대중예술인

[표 59]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관하여 표준전속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내용(복수응답)-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수익배분 비율에 관한 내용	수익배분 대상 범위에 관한 내용	비용 정산 범위에 관한 내용	수익금 지급기한에 관한 내용	정산자료 제공 기간에 관한 내용	기타
■ 전체		312	85.9	53.2	54.2	51.9	33.0	4.5
가수	청소년	10	100.0	50.0	20.0	70.0	40.0	20.0
	성인	80	83.8	56.3	50.0	45.0	36.3	3.8
연기자	청소년	17	100.0	64.7	41.2	70.6	23.5	-
	성인	205	84.9	51.2	58.5	52.2	32.2	4.4

수익금에 대한 분배는 ‘활동 매체(또는 범위)를 포괄하여 분배비율을 적용’ 하여 분배하는 방식이 56.7%로 가장 많았고, ‘활동 매체(또는 범위)별로 별도의 분배비율을 적용’ 하여 분배하는 경우도 22.1%로 조사되었다.

[표 60] 수익분배방법-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활동 매체 (또는 범위)를 포괄하여 분배비율을 적용함	활동 매체 (또는 범위)별로 별도의 분배 비율을 적용함	전체 계약 기간에서 기간별로 다르게 정함	전체 계약 기간에서 인지도에 따라	기타
■ 전체		312	56.7	22.1	9.9	7.7	3.5
가수	청소년	10	70.0	20.0	10.0	-	-
	성인	80	51.3	30.0	8.8	7.5	2.5
연기자	청소년	17	64.7	29.4	-	-	5.9
	성인	205	57.6	18.5	11.2	8.8	3.9

현재의 수익분배 방법에 대해 38.8%(매우 불만족 8.3%+불만족한 편 30.4%)가 불만족한 편으로 나타났다. 가수의 경우가 연기자의 경우보다 불만족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가수의 경우 청소년 대중예술인이 성인 대중예술인에 비해 불만족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61] 수익분배방법에 대한 만족도-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한 편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전체		312	8.3	30.4	55.1	6.1
가수	청소년	10	10.0	40.0	50.0	-
	성인	80	12.5	35.0	45.0	7.5
연기자	청소년	17	5.9	17.6	70.6	5.9
	성인	205	6.8	29.3	58.0	5.9

수익금을 매월 또는 월별 지급하는 비율이 30.8%로 가장 많았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는 26.6%로, 용역대금 수령 후 45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는 61.9%(즉시 13.5%+매월 또는 월별 30.8%+45일 이내 17.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5일 이내 지급 비율은 성인보다 청소년 예술인에게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 수익금 지급 빈도-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매월 또는 월별 지급 하고 있음	용역대금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하고 있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용역대금 수령 즉시 지급하고 있음	기타
■ 전체		312	30.8	17.6	26.6	13.5	11.5
가수	청소년	10	10.0	-	20.0	-	70.0
	성인	80	22.5	11.3	37.5	10.0	18.8
연기자	청소년	17	5.9	17.6	58.8	11.8	5.9
	성인	205	37.1	21.0	20.0	15.6	6.3

정산내역은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또는 원할 때 즉시) 정산내역만 제공하는 경우가 45.8%로 가장 많았고, 22.1%는 주기적(또는 원할 때 즉시)으로 정산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별도의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22.4%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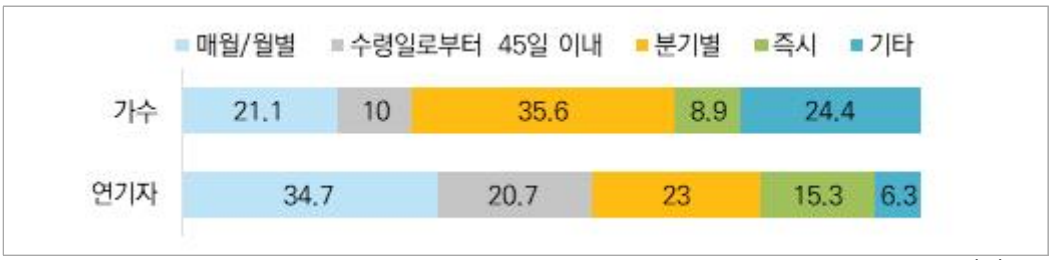

(단위:%)

[그림 9] 정산내역 형태-전속 대중예술인

[표 63] 정산내역 형태-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정산내역만 제공 (또는 원할 때 즉시 열람 가능 상태)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정산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공 (또는 원할 때 즉시)	별도 정산내역 제공하지 않음	기타
■ 전체		312	45.8	22.1	22.4	9.6
가수	청소년	10	30.0	10.0	-	60.0
	성인	80	35.0	18.8	27.5	18.8
연기자	청소년	17	47.1	23.5	11.8	17.6
	성인	205	50.7	23.9	22.4	2.9

(6) 대중예술인으로 활동하면서 피해 경험 여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불합리한 사항으로 '체불(미정산)'의 경우가 32.1%로 가장 많았고,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없음(27.9%)', '비밀유지 안 됨(13.8%)', '사생활 침해(13.1%)'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7%였으며 청소년보다 성인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4] 대중예술인으로 활동하면서 피해 경험 여부(복수응답)-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사생활 침해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없음 (또는 반영 안 됨)	대중문화 예술용역 관련 서류나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시 반영 안 됨	폭력 (언어/신체/ 성 관련)	체불 (미정산)	악플 등에 대한 무대응 (또는 무성의한 대응)
■ 전체		312	13.1	27.9	6.7	10.6	32.1	7.1
가수	청소년	10	10.0	40.0	-	10.0	10.0	-
	성인	80	18.8	36.3	2.5	12.5	30.0	6.3
연기자	청소년	17	-	17.6	-	5.9	17.6	11.8
	성인	205	12.2	24.9	9.3	10.2	35.1	7.3

		표본 수 (명)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 불이행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 침해	비밀 유지 안 됨	기타	없음
■ 전체		312	13.1	5.4	13.8	5.1	24.7
가수	청소년	10	10.0	-	20.0	-	40.0
	성인	80	18.8	7.5	20.0	7.5	17.5
연기자	청소년	17	5.9	-	11.8	5.9	35.3
	성인	205	11.7	5.4	11.2	4.4	25.9

(7) 퍼블리싱과 실연권, 음반 크레딧에 관한 사항(가수 부문)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가수 또는 겸업 전속 대중예술인 중 35.6%는 '별도 계약 없이 전속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퍼블리싱을 전담하는 자회사와 별도 계약' 하는 경우도 10.0%로 조사되었다.

[표 65] 퍼블리싱 계약 여부-가수 또는 겸업 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별도 계약 없이 전속 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부속 합의서로 계약	퍼블리싱을 전담하는 자회사와 별도 계약	계약 없이 구두로만 진행	퍼블리싱 관련 업무는 하지 않음	기타
■ 전체		90	35.6	7.8	10.0	5.6	32.2	8.9
가수	청소년	10	30.0	-	-	-	20.0	50.0
	성인	80	36.3	8.8	11.3	6.3	33.8	3.8

퍼블리싱 계약을 하는 가수 또는 겸업 대중예술인의 경우 61.1%가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에 대해서도 기존 수익 배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만 별도 수익 배분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25.9%로 조사되었다.

[표 66] 퍼블리싱을 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수익배분-가수 또는 겸업 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기존 수익 배분율 적용	저작권에 대해서만 별도의 수익 배분율 적용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만 별도의 수익 배분율 적용	기타
■ 전체		54	61.1	25.9	9.3	3.7
가수	청소년	3	-	100.0	-	-
	성인	51	64.7	21.6	9.8	3.9

가수 또는 실연자의 실연, 해외공연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36.7%는 전속계약서에 이미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23.3%는 부속 합의서로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는 계약 없이 구두 협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11.1%는 계약서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으나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16.7%는 이를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67] 실연, 해외공연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 포함에 대한 의견-가수 또는 겸업 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전속 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부속 합의서로 계약	계약 없이 상호 협의로 진행	계약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전속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포함할 필요 없음	기타
■ 전체		90	36.7	23.3	10.0	11.1	16.7	2.2
가수	청소년	10	50.0	0.0	30.0	10.0	10.0	0.0
	성인	80	35.0	26.3	7.5	11.3	17.5	2.5

음반 크레딧에 대한 내용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40.0%는 전속계약서에 이미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23.3%는 부속 합의서로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9%는 계약 없이 구두 협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8.9%는 계약서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으나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14.4%만 이를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68] 음반 크레딧에 대한 내용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가수 또는 겸업 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전속 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부속 합의서로 계약	계약 없이 상호 협의로 진행	계약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전속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포함할 필요 없음	기타
■ 전체		90	40.0	23.3	8.9	8.9	14.4	4.4
가수	청소년	10	30.0	10.0	20.0	10.0	20.0	10.0
	성인	80	41.3	25.0	7.5	8.8	13.8	3.8

(8) 성희롱/성폭력, 우울증 등에 대한 지원

대중예술인의 52.6%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어떤 교육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 강사를 통해 직접 교육 형태로 진행’ 한 경우는 9.6%,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강좌를 통해 진행’한 경우는 8.0%였으며, ‘구두로 간단한 사항만 전달’ 한 경우는

24.7%로 조사되었다.

(단위:%)

[그림 10]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진행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표 69]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진행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외부 강사를 통해 직접 교육 형태로 진행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강좌를 통해 진행	구두로 간단한 사항만 전달	어떤 교육도 진행하지 않음	기타
■ 전체		312	9.6	8.0	24.7	52.6	5.1
가수	청소년	10	20.0	30.0	20.0	30.0	-
	성인	80	8.8	10.0	18.8	61.3	1.3
연기자	청소년	17	5.9	5.9	23.5	52.9	11.8
	성인	205	9.8	6.3	27.3	50.2	6.3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항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96.8%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0] 성희롱/성폭력 관련 처리 방법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이유
■ 전체		312	96.8	3.2	
가수	청소년	10	100.0	-	- 성범죄 처벌에 관한 별도 법률로 다뤄야 함(2건) - 거짓 미투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문제 소지가 많음(2건) -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좋음(2건)
	성인	80	93.8	6.3	
연기자	청소년	17	100.0	-	
	성인	205	97.6	2.4	

소속사로부터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7.6%로, 청소년보다 성인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대중예술인의 요청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15.7%, ‘주기적으로(주간/월간/분기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음’,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 비정기적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 받는 경우가 각각 8.3%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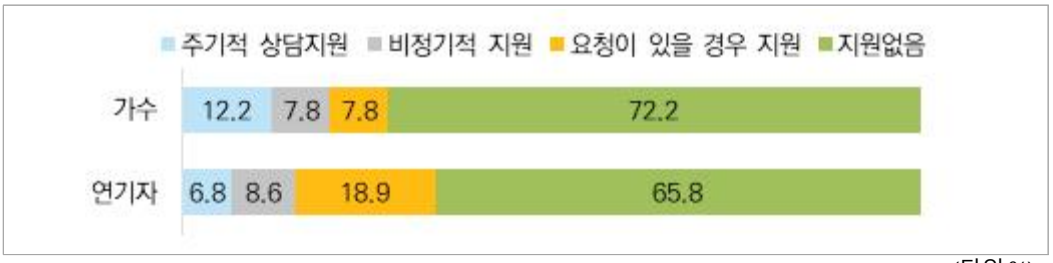

(단위:%)

[그림 11]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표 71]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여부-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주기적으로(주간/월간/분기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 받고 있음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 비정기적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대중예술인의 요청할 경우 지원 받고 있음	어떤 지원도 받지 않음
■ 전체		312	8.3	8.3	15.7	67.6
가수	청소년	10	40.0	10.0	20.0	30.0
	성인	80	8.8	7.5	6.3	77.5
연기자	청소년	17	11.8	17.6	23.5	47.1
	성인	205	6.3	7.8	18.5	67.3

지원 방법은 주로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35.6%)’이며, 그 외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31.7%)’, ‘내부 상담/교육 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30.7%)’ 등의 형태로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방법(복수응답)
-지원 경험 있는 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지원	내부 상담/교육 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지원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지원	기타
■ 전체		101	35.6	30.7	31.7	11.9
가수	청소년	7	71.4	14.3	42.9	-
	성인	18	44.4	50.0	33.3	5.6
연기자	청소년	9	66.7	22.2	22.2	-
	성인	67	25.4	28.4	31.3	16.4

소속사로부터 주기적 또는 특정사안 발생 시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중예술인 중 25.7%는 소속사에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요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수보다 연기자에서 그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청소년 연기자에서 신청 비율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요청 경험-지원 경험 있는 전속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있음	없음
■ 전체		101	25.7	74.3
가수	청소년	7	28.6	71.4
	성인	18	38.9	61.1
연기자	청소년	9	77.8	22.2
	성인	67	14.9	85.1

(9)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필요사항

표준전속계약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에 대한 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수익분배 및 정산과 관련한 정확한 기준 기재’> ‘계약 기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0) 그 외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활용

과거 연습생활동을 했거나 현재 연습생인 응답자 중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원안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혹은 활용했던) 비율은 12.5%이며, 부속 합의서 형태로 보완활용 8.9%로 나타났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자체 계약서 활용(7.1%)’,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 외 자체 제작한 계약서를 활용(7.1%)’ 하였으며,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25.0%)’ 하거나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19.6%)’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19.6%로 조사되었다.

[표 74]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연습생 활동 경험자

(단위:%)

	표본 수 (명)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 원안 그대로 사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보완하여 사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자체 계약서 활용
■ 전체	56	12.5	8.9	7.1
가수	33	6.1	6.1	6.1
연기자	23	21.7	13.0	8.7

	표본 수 (명)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 외 자체 제작한 계약서를 활용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함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	별도의 연습생 계약서가 아닌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 전체	56	7.1	25.0	19.6	19.6
가수	33	6.1	30.3	21.2	24.2
연기자	23	8.7	17.4	17.4	13.0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기획업(엔터테인먼트사)에서 제시하지 않아서(45.0%)’이며,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가 있는 줄 몰라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25.0%로 조사되었다.

[표 75]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하지 않는 이유-연습생 활동 경험자 중 연습생 표준계약서 미 활용자

(단위:%)

	표본 수 (명)	기획업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제시하지 않아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가 있는 줄 몰라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였음	기타
■ 전체	40	45.0	25.0	22.5	7.5
가수	27	48.1	14.8	25.9	11.1
연기자	13	38.5	46.2	15.4	-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변경하고 있는 부분은 '계약 기간(56.3%)'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37.5%)', '전속계약 체결 등(37.5%)' >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31.3%)', '훈련 활동 비용의 관리(31.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분(복수응답)-연습생 활동 경험자

(단위:%)

	표본 수 (명)	계약 기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속계약 체결 등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	훈련 활동 비용의 관리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
■ 전체	16	56.3	37.5	37.5	31.3	31.3	25.0
가수	6	33.3	33.3	16.7	33.3	16.7	-
연기자	10	70.0	40.0	50.0	30.0	40.0	40.0

	표본 수 (명)	비밀유지	분쟁 해결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	부속 합의	계약 내용의 변경	확인 및 보증
■ 전체	16	25.0	25.0	18.8	18.8	12.5	6.3
가수	6	16.7	-	-	-	-	-
연기자	10	30.0	40.0	30.0	30.0	20.0	10.0

연습생 계약체결 전에 계약 조건(또는 계약서)에 대해 주로 '부모님/가족'과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 혼자서' 검토하는 사례도 35.7%로 조사되었다.

[표 77] 연습생 계약체결 전 계약 조건(또는 계약서)검토 동반자-연습생 활동 경험자

(단위:%)

	표본수 (명)	본인 혼자서	부모님/가족	동종업계 동료/선후배	기타
■ 전체	56	35.7	53.6	5.4	5.4
가수	33	24.2	63.6	3.0	9.1
연기자	23	52.2	39.1	8.7	-

연습생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 연습생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9.6%는 인성교육이나 정신건강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기적으로(주간/월간/분기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음’,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 비정기적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을 받은 경우가 각각 8.9%였으며,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대중예술인의 요청할 경우 지원’을 받은 경우는 12.5%로 조사되었다.

연습생 활동 경험자 중 소속사로부터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내부 상담/교육 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8] 소속사로부터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지원여부-연습생 활동 경험자

(단위:%)

	표본 수 (명)	주기적으로 (주간/월간/분기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음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 비정기적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대중예술인의 요청할 경우 지원 받고 있음	어떤 지원도 받지 않음
■ 전체	56	8.9	8.9	12.5	69.6
가수	33	12.1	12.1	6.1	69.7
연기자	23	4.3	4.3	21.7	69.6

[표 79] 소속사로부터 지원받은 형태(복수응답)-연습생 활동 경험자 중 지원경험자

(단위:%)

	표본 수 (명)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내부 상담/교육 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기타
■ 전체	17	41.2	41.2	29.4	11.8
가수	10	50	40	40.0	10.0
연기자	7	28.6	42.9	14.3	14.3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가 3건, ‘내부 상담/교육 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가 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0] 인성교육/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 요청 경험-연습생 활동 경험자 중 지원 경험자

(단위:%)

	표본 수 (명)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지원 경험=100.0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 상담/심리치료 지원	내부 상담/교육 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 상담/심리치료 지원
■ 전체	17	70.6	29.4	60.0	40.0
가수	10	70.0	30.0	66.7	33.3
연기자	7	71.4	28.6	50.0	50.0

(나)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실태

예능 정기출연이나 드라마/영화와 같이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건에 대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대해 32.6%는 '잘 모른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0.4%로 연기자보다 가수가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1]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정기출연)

(단위:%)

		표본 수 (명)	전혀 작성하지 않음	가끔 작성하고 있음	대체로 작성하고 있음	건마다 작성하고 있음	잘 모름
■ 전체		393	10.4	13.7	20.4	22.9	32.6
가수	청소년	11	27.3	-	-	-	72.7
	성인	109	22.0	6.4	7.3	6.4	57.8
연기자	청소년	21	9.5	14.3	14.3	42.9	19.0
	성인	252	4.8	17.5	27.4	29.4	21.0
전속 여부	전속	312	10.6	14.4	20.8	26.0	28.2
	프리랜서	81	9.9	11.1	18.5	11.1	49.4

음악방송이나 일회성 예능 출연 등 비정기적 출연 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33.8%는 작성 여부를 잘 모르고 있었으며,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21.6%로 이 역시 연기자보다 가수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82]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일회성 출연)

(단위:%)

		표본 수 (명)	전혀 작성하지 않음	가끔 작성하고 있음	대체로 작성하고 있음	건마다 작성하고 있음	잘 모름
■ 전체		393	21.6	16.8	11.7	16.0	33.8
가수	청소년	11	36.4	-	-	-	63.6
	성인	109	31.2	11.9	9.2	10.1	37.6
연기자	청소년	21	9.5	19.0	-	19.0	52.4
	성인	252	17.9	19.4	14.3	19.0	29.4
전속 여부	전속	312	21.5	16.3	11.9	15.4	34.9
	프리랜서	81	22.2	18.5	11.1	18.5	29.6

방송 출연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42.0%는 잘 모르고 있었으며, 28.3%는 '방송사/제작자 자체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는 사례도 8.1%로 전속보다는 프리랜서 예술인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표 83] 방송 출연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여부

(단위:%)

		표본 수 (명)	대중문화 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음	방송사/ 제작자 자체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음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	잘 모르겠음	기타
■ 전체		393	20.2	28.3	8.1	42.0	1.4
가수	청소년	11	-	-	-	100.0	-
	성인	109	12.6	16.1	11.5	57.5	2.3
연기자	청소년	21	9.5	14.3	-	71.4	4.8
	성인	252	24.5	34.9	7.9	32.0	0.8
전속 여부	전속	312	24.0	24.4	5.7	44.5	1.4
	프리랜서	81	5.4	43.2	17.6	32.4	1.4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39.2%는 '관행상 방송사에서 사용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30.8%는 '기획업(엔터테인먼트사)에서 요청하지 않아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84]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는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관행상 방송사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기획업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요청하지 않아서	방송사(제작사)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기타
■ 전체		130	39.2	30.8	11.5	18.5
가수	청소년	1	-	100.0	-	-
	성인	27	44.4	33.3	11.1	11.1
연기자	청소년	8	50.0	25.0	-	25.0
	성인	94	37.2	29.8	12.8	20.2
전속 여부	전속	100	41.0	31.0	10.0	18.0
	프리랜서	30	33.3	30.0	16.7	20.0

방송 출연계약의 주체는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 - 기획사’ 형태가 31.7%로 가장 많았고,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 - 기획사 - 대중문화예술인(27.1%)’,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자 - 대중문화예술인(12.6%)’, ‘프로그램 담당 PD/작가 - 기획사(8.4%)’ 등의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리랜서 대중예술인의 경우 소속사 전속 예술인에 비교해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자 - 대중문화예술인’ 형태나 ‘프로그램 담당 PD/작가 - 대중문화예술인’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85] 방송 출연계약 작성 주체-방송 출연계약서 작성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 – 기획사	프로그램 담당 PD/작가 - 기획사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 – 기획사 – 대중문화예술인	프로그램 담당 PD/작가 – 기획사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자 – 대중문화예술인	프로그램 담당 PD/작가 - 대중문화예술인
■ 전체		262	31.7	8.4	27.1	7.6	12.6	7.3
가수	청소년	1	-	-	-	-	-	-
	성인	45	24.4	8.9	26.7	6.7	15.6	11.1
연기자	청소년	15	13.3	-	40.0	33.3	-	-
	성인	201	34.8	9.0	26.4	6.0	12.9	7.0
전속 여부	전속	208	33.2	8.2	29.3	7.7	12.0	5.8
	프리랜서	54	25.9	9.3	18.5	7.4	14.8	13.0

방송 출연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경우가 35.5%였다. 반면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변경해서 활용하는 경우는 32.4%, 전혀 변경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32.1%로 조사되었다.

[표 86]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변경 활용 여부-방송 출연계약서 작성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음	전혀 변경하지 않음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음
■ 전체		262	32.4	32.1	35.5
가수	청소년	1	-	-	100.0
	성인	45	24.4	37.8	37.8
연기자	청소년	15	20.0	20.0	60.0
	성인	201	35.3	31.8	32.8
전속 여부	전속	208	36.5	34.6	28.8
	프리랜서	54	16.7	22.2	61.1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주문을 변경하여 활용하는 경우 ‘계약 기간’에 대해 가장 많이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가수/연기자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 ‘권리의 귀속’ > ‘계약의 대상’ >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등의 순서로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자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32.4%)’, ‘비밀유지(31.0%)’, ‘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중단(26.8%)’, ‘분쟁 해결(22.5%)’과 관련한 조항을 변경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가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7]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조문 변경 내용(복수응답)-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대중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계약 기간	계약의 대상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가수/ 연기자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권리의 귀속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비밀 유지
부문	가수	18	44.4	22.2	22.2	27.8	27.8	11.1	16.7
	연기자	71	66.2	28.2	25.4	40.8	29.6	32.4	31.0

(→계속)

		표본 수 (명)	계약 해제 및 손해 배상	위임 등의 금지	책임 면책 및 보험	분쟁 해결	기타 부속 합의	이행의 보증	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의 중단
부문	가수	18	27.8	16.7	11.1	5.6	22.2	11.1	-
	연기자	71	31.0	19.7	19.7	22.5	21.1	11.3	26.8

방송 출연 시 방송사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료, 출연 기간, 출연조건 등이 변경되어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8.3%였으며, 성인보다 청소년 예술인에게서 피해가 있었다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피해는 주로 ‘출연료 삭감 또는 미지급’과 관련한 사항이었고, 그 외 ‘출연취소나 출연자 교체’ > ‘일정 변경으로 인한 스케줄 조정의 어려움’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방송 출연 시 출연료, 출연 기간, 출연 조건 등이 변경되어 경험한 피해

(단위:%)

		표본 수 (명)	변경된 적은 있으나 피해는 없었음	변경으로 인해 피해가 있었음	변경된 적이 없음
■ 전체		393	28.0	18.3	53.7
가수	청소년	11	9.1	27.3	63.6
	성인	109	12.8	10.1	77.1
연기자	청소년	21	23.8	23.8	52.4
	성인	252	35.7	21.0	43.3
전속 여부	전속	312	28.2	20.5	51.3
	프리랜서	81	27.2	9.9	63.0

방송 출연 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해 ‘사전에 구두로 계약 변경사항 협의’하여 변경한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고, ‘문서 형태로 추가계약/변경합의서 작성’한 경우는 27.3%, ‘협의하지 않고 나중에 통지’한 경우도 21.8%로 조사되었다.

[표 89] 방송 출연 시 출연료, 출연 기간, 출연 조건 등 변경 시 계약조건 변경 여부-방송 출연 조건이 변경되었으나 피해는 없었던 예술인

(단위:%)

		표본 수 (명)	문서 형태로 추가계약/ 변경합의서 작성	사전에 구두로 계약 변경사항 협의	협의하지 않고 나중에 통지함	기타
■ 전체		110	27.3	50.0	21.8	0.9
가수	청소년	1	-	100.0	-	-
	성인	14	35.7	42.9	21.4	-
연기자	청소년	5	20.0	80.0	-	-
	성인	90	26.7	48.9	23.3	1.1
전속 여부	전속	88	29.5	45.5	25.0	-
	프리랜서	22	18.2	68.2	9.1	4.5

나. 심층 인터뷰 결과

(1) 표준전속계약서의 활용

가수와 연기자 대부분 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한 사례가 많지만, 해당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인지 모르는 사례도 있었으며 기획사가 사용하는 자체 계약서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중문화예술인들 대부분은 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해당 계약서가 공시된 표준전속계약서가 맞는지 확인해 본 사례는 드물었으며,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인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전속계약서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가수(성인)

☞ “가수들 대부분 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앨범 발매 이후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했어요.”

☞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이 대신해 계약해서 확실하지 않지만, 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했다고 들었어요.”

☞ “처음에는 기획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했었고 계약 기간 중 표준전속계약서로 다시 계약 체결을 변경했습니다.”

☞ “표준전속계약서와 부속 합의서를 추가하여 계약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수(청소년)

☞ “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하기 전 친분 있는 연습생 부모들이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몇 주 정도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 계약했습니다.”

☞ “표준계약서의 내용 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기자(성인)

☞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 합의서를 추가해 계약했습니다.”

☞ “연기자 동료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와 신뢰 관계가 있어서 구두 계약을 체결했어요.”

☞ “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했는데 동료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 “기획사에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표준전속계약서라고 해서 그대로 계약했던 것 같아요.”

연기자(청소년)

☞ “기획사에서 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이가 적응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구두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요.”

☞ “기획사에서는 체결한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라고 말했는데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수·연기자 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인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음

(2) 전속계약 기간

현행 최대 7년으로 정해져 있는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사항은 가수나 연기자 모두 최대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일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투자금 회수와 손익분기점을 고려하여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아이돌 그룹의 가수는 연기자보다 투자금액과 준비 기간이 길어서 7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은 기획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진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연령대를 고려하여 최대 계약 기간 단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수(성인)

☞ “가수가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재계약이 가능한데 굳이 계약 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최대 7년으로 정해진 계약 기간이 길다고 생각해요.”

☞ “만약 기획사와 가수가 갈등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한다면 7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계약 해지에 상당히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 “기획사와 가수가 7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었다면 7년이 길지 않은 기간이겠지만, 수익 창출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7년은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기간입니다. 특히 활동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기획사는 계약을 해지해 주지도 않고 가수는 시간만 낭비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쪽은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 “가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했더라도 정보 취득의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계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회사의 문제가 발생하여 가수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7년이란 계약 기간은 독소조항이 될 것입니다.”

☞ “가수로 활동하는 남자는 군 복무 기간도 있어서 7년으로 계약하면 한 개의 기획사와 10년 이상 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생을 중요한 순간에 10년이라는 시간을 건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최대 5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수의 상황마다 계약 기간이 달라지겠지만 투자비용 회수라는 명목으로 최대 7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사가 가수에게 투자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은 필요합니다. 데뷔 1년 내외로 기획사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점은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저는 3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년 동안 충분히 투자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수라면 재계약할 것이고 그렇게 느끼지 못한 가수라면 재계약하지 않겠죠.”

☞ “가수는 계약 기간에 자유로운 개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인지도에 따라서 기획사가

가수에게 대하는 제한이 달라지는데, 가수가 7년 동안 인지도를 쌓지 못한다면 제한된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계약 기간은 5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싱어송라이터나 인디 가수는 기획사가 아이돌 가수만큼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7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 "아이돌 그룹은 제작 기간도 길고 투자도 많이 해서 최대 7년으로 정해진 계약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사에서 가수에게 충분히 투자해준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면 7년은 과한 계약 기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을 때 7년은 너무 길죠."

가수(청소년)

☞ "저는 연습 기간을 포함해서 7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전속 계약 기간 중 2년은 연습생 기간이고 5년은 활동 기간이죠. 다른 친구들은 연습생 기간 3~5년과 전속 계약 기간 7년으로 계약해서 한 기획사에 10년 이상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히 저는 다른 가수들보다는 합리적인 조건에 계약했다고 생각합니다."

☞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7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사와 가수의 원하는 방향이 다를 경우 서로의 시간만 낭비될 수 있어서 5년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업계의 특성상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이 합리적입니다."

연기자(성인)

☞ "신인 연기자의 경우 아무런 정보 없이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장기간 기획사에서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하고 계약한 연기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애초에 많은 정보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연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년 아래로 계약 기간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계약 기간이 너무 짧다면 재계약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워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현행 최대 7년으로 정해진 계약 기간은 과하게 길다고 생각합니다."

☞ "보통 기획사와 연기자가 호흡을 맞추는 기간은 1년 정도이고 이후부터 수익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 계약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재정적인 변수, 회사의 지원 없이 연기자가 방치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를 고려하면 최대 계약 기간은 5년 가장 적절한 계약 기간은 3년이라고 생각해요."

☞ "7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연기자나 가수 모두에게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문제점을 누군가 중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기획사와 예술인이 서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의 한계가 존재하는 산업의 특성상 너무 긴 계약 기간은 서로에게 좋지 못합니다."

☞ "연기자에게 많은 투자도 하지 않고 계약 기간만 7년으로 정하는 기획사들이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에이전시나 다름없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의심만 듭니다. 계약 기간이 7년보다는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기획사가 에이전시처럼 운영하려면 미국의 에이전시처럼 수익분배비율도 연기자에게 더 높게 책정해 주어야 하고 계약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산업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본 결과 연기자와 기획사가 알아가는 기간은 1~2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격적인 활동 기간까지 포함하면 계약 기간은 최대 5년 이내가 합리적이죠."

☞ "남자는 군 복무 문제가 있지만, 여자는 임신·출산·육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7년이란 기간이 연장된다면 계약한 기획사에 10년도 넘게 소속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조건이 형성됩니다."

☞ "현재 제 주변에는 7년으로 계약 체결한 사례는 드뭅니다. 그러나 기획사가 7년을 제시한다면 그 회사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되어 계약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최대 7년은 아이돌 종속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기자는 연예인에 대한 투자의 방식도 다르고 활동 방식도 달라서 5년이 합리적입니다."

☞ "언론에서는 연기자가 기획사를 자주 옮겨 다니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사실 기획사와 신뢰 관계를 쌓아가면서 장기적 계약체결이나 갱신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7년이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연기자는 기획사와 계약 기간에 출연료 등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7년보다는 5년 또는 3년 계약이 적절합니다."

☞ "연기자와 기획사는 협업으로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물론 저는 좋은 기획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양자 간에 파트너십이 문제가 없다면 현행 최대 7년 계약 기간은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자(청소년)

☞ "기획사의 경영 능력과 자본에 대한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데 최대 7년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연기자에게 무모한 도전입니다. 청소년의 계약 기간은 최대 2년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기는 진로 선택 및 변경을 반복하며 미래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단계라서, 해당 시기에 진로 방향이 변경될 경우 긴 계약 기간은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예술인 계약 기간은 3~5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계약 기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대 5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수·연기자 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인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음

(3) 표준전속계약서의 계약 내용 변경(별도의 조건 추가 등)

표준전속계약서 내용 그대로 계약하는 사례도 있었고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가수와 연기자는 변경 내용이 각각 달랐다. 변경된 내용에서 가수는 앨범 발매에 관한 이슈가 가장 많았으며, 앨범 발매 후부터 계약이 시작된다는 조건, 가수에게 투자하는 비용과 기획사의 손익분기점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사생활 제한에 관한 조건 등이 가장 많이 변경되었다. 연기자는 작품에 출연하는 출연료에 관한 이슈가 가장 많았으며, 출연료 상승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조정, 계약서상에 명시된 극도의 우울증에 대한 조건 변경을 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수(성인)

☞ “가수는 앨범 발매 후부터 계약이 시작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게 표준전속계약서 내용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

☞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수익분배비율을 기획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계약 기간 중 수익분배비율을 다시 수정하자고 기획사와 합의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표준전속계약서에서 변경된 것이 없다고 기획사를 통해 들었는데 실제로 공시된 원본과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 “저는 표준전속계약서에서 변경된 것은 없고 추가로 합의한 내용을 부속 합의서로 대신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끼리 계약에 관한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전속계약서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고 아닌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 부속 합의서에 연습생 기간의 제한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점은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획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가수가 할 수 없는 제약도 점점 많아졌어요.”

☞ “가수를 보호하는(계약 기간 중 활동 불발, 회사의 방관으로 가수 방치 등)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표준전속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했고 3년 이내에 최소 몇 장 이상의 앨범을 을이 발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조건이나 손익분기점까지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추가됐어요.”

☞ “표준전속계약서 내용에 을이 계약 기간 내에 갑이 제시한 특정 개수의 앨범을 제작해야 한다는 내용과 앨범을 위한 을의 활동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늘어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수(청소년)

☞ “표준전속계약서에서 별도로 변경된 내용은 없었어요. 다만 저는 좋은 조건에 계약한 사례이고 다른 기획사와 계약한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 변경 없이 계약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획사를 믿고 있어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지 않았어요.”

연기자(성인)

☞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료가 기준 금액을 초과했을 시 활동에 사용되는 진행비는 연기자가 일부 책임진다는 내용도 있었고, 저작인접권(실연)에 대한 수익도 배우의 수익 중 하나로 회사와 분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지 못한 조건이 추가되어도 신인 연기자는 을이라서 협의하기가 힘듭니다.”

☞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부속 합의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가령 수익분배비율, 진행비(식음료 등 촬영 시 발생 비용 등), 매니저 임금,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상세한 정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물론 내용이 공평하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불합리한 조건도 있었습니다.”

☞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일부 변경된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을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을은 회사와 협의 후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제가 오랫동안 활동했던 연기자라서 계약 연장 시 연기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수익분배 비율로 수정한다고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오랜 기간 활동했던 경력자들에게만 해당합니다.”

☞ “상황별로 수익분배기준도 명시되어 있고 우울증 대처,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 제공 등이 있네요. 다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라는 조항을 변경해야 할 것 같아요. 연기자들은 특수한 직업이라서 대부분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극도의 우울증세보다는 경미한 경우라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계약 내용 대부분은 바뀌지 않았는데 계약 기간 중 을의 출연료가 높아질 때 수익분배 비율을 기존보다 연기자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순수예술에 가까운 연극 공연에서 출연료가 낮으면 연기자가 모두 가져가고 회당 수익 기준이 높아지면 기획사가 극히 일부만 가져간다는 조항도 추가했어요.”

☞ “계약 내용에서 추가된 특이한 사항은 작품 활동이 끝난 후 회식 비용은 기획사와 연기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기획사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입장을 추정할 수 있고, 실제로 계약 이후 회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 “기존 표준전속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은 수익분배조건의 유동성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출연료는 작품이나 인지도에 따라 다른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기획사와 연기자가 수익분배비율을 조정하는 편입니다. 다만 출연료의 객관화된 지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 “출연료 상승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을 조정한다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 기간 내 몇 회 이상의 오디션 참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의 긴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연기자(청소년)

☞ “계약 내용 변경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사를 믿고 계약한 상황이라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연예산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사나 연기자의 환경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을 고려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약서로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가수·연기자 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인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음

(4) 활동 범위, 매체의 다양성, 개인 활동 제한 반영 여부

가수나 연기자 모두 지상파 TV, 케이블, 라디오, 공연, 앨범 활동, 인터넷 등은 활동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예술인들이 다수였으며, 영상물에 소셜 미디어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화두가 되는 소셜 미디어 활동은 기획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차별을 두기를 원했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개인적인 소셜 미디어 활동은 부분적 제한에 동의했지만, 완전한 제한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의 계약서 조항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을 때 저작권의 권리를 정확하게 따질 수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기도 했다.

가수(성인)

☞ “소셜 미디어와 관련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새로운 매체가 나올 것을 고려해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 “개인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를 너무 제한하면 예술인의 자유가 너무 구속된다는 점도 있고 제한이 없다면 사고 발생의 확률이 높은 점도 있으니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은 계약서에 콘텐츠의 소재, 계획, 수익분배비율 등을 협의하여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셜 미디어 조항을 별도로 추가한다면 가수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는 것이라서 사실상 가수에게 불편한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표준전속계약서에 가수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서 굳이 소셜 미디어 활동 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가수가 창작한 곡의 저작권과 기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분리도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계약서 조항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 매체는 조항이 있지만, 소셜 미디어 활동은 계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획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회사의 개입 가능 범위를 설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수의 이미지관리를 위해서 소셜 미디어 활동에 관한 기획사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한 제한보다는 충분한 협의로 적절한 개입을 반영하는 결과가 중요하죠.”

☞ “소셜 미디어 개인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기획사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가수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가수 개인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사에서 가수의 새로운 매체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정했다면 계약서대로 따르는 것이 맞겠죠.”

☞ “레이블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들은 매체 지원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 경우 기획사에서 가수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적다 보니 매체 활동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만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소셜 미디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전통적인 매체 이외에 유튜버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계약서에 상세한 내용보다는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수(청소년)

☞ “계약서에는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한 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활동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5:5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향후 정산 비용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관한 내용도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인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사회적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가수뿐만 아니라 기획사도 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적절한 개인 활동 제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 “콘텐츠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소셜 미디어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회사의 역할 가수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미성숙한 판단으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획사가 개인 활동을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 “지금의 계약서는 활동 매체에 대해 너무 포괄적 명시로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체의 다양성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추후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려면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합니다.”

연기자(성인)

☞ “기획사의 소셜 미디어 개인 활동 협의나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령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해 기획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강력한 조항은 독이 될 수 있지만, 연기자의 이미지를 위해서 기준을 정한다거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내용에 기획사와 협의하여 소셜 미디어를 활동해도 된다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분배비율이나 구체적인 매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소셜 미디어라고 지칭하지 않고 영상물에 관한 포괄적 명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기술의 결합, 장르와 장르의 결합, 장르와 기술의 결합(ex. 라이브 퍼포먼스와 미디어의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다원 예술적 융/복합 콘텐츠가 매우 증가하고, 미디어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어서 활동 범위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양한 활동 범위를 고려한 모든 소셜 미디어 활동에 수익을 분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최근에는 전통매체가 아닌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연기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지원조건, 수익분배비율 등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구체적인 조항으로 들어가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이 소셜 미디어 활동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기획사에 소속된 연기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회사와 상의 없이 출연한다면 계약 위반 사항으로 분쟁까지 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구체적인 매체 활동 조항이 명시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콘텐츠와 관련해서 저작권 일체가 갑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위해 갑이 일체의 노력을 했다면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구체적인 소셜 미디어 활동 범위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로운 매체 활동에서 기획사에 지원을 받았다면 수익 분배가 필수적이지만 지원받지 못했다면 분배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활동 범위는 기획사와 연기자가 신뢰 관계가 높다면 구도로 협의해도 좋겠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를 고려하면 매체 활동의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개인적인 활동을 제한할지 안 할지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지 등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 “연기자로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이나 이미지관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개인 매체 활동은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정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활동 범위를 담아야 한다면 콘텐츠의 소재, 활동 제한 범위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기자(청소년)

☞ “기존 매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소셜 미디어에 관해서는 기획사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구도로 정했고, 수익도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소셜 미디어 계정 활동은 기획사가 관리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기자 청소년의 개인 소셜 미디어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발생할 시 대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은 활동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와 달리 또 다른 수익 창출의 매체가 생겨나고 있는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의 활동 범위에 관한 포괄적인 명시는 분쟁만 부추기는 거죠.”

☞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상황에 따른 활동 매체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했다면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가수·연기자 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인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음

(5) 저작권, 저작인접권 귀속 여부와 문제점 등

작곡과 작사 노래를 겸하는 가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편이었으나 일부 노래만 불렀던 가수는 저작권의 상세한 권리관계는 잘 모르는 편이었다. 연기자는 곡을 창작하지 않는 특수성 때문에 저작권보다 저작인접권(실연)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었다. 한편 가수나 연기자 중 저작권 지식이 부족한 경우 기획사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기획사와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묵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최근 소셜 미디어 콘텐츠 창작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작권 권리문제를 표준전속계약서에서 명확한 조항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수(성인)

☞ “가수가 곡을 창작했다면 저작권은 가수에게 귀속되고 저작인접권(실연)도 가수에게 귀속되어 있어요. 만약에 가수의 창작물 수익을 기획사가 분배하자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 사례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속계약서와는 별도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작권 수익은 분배하기로 명시했는데 저작인접권(실연) 수익은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어요.”

☞ “창작의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 귀속 여부는 결정되는 것으로 정해졌고 저작인접권(실연)은 가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했어요.”

☞ “저처럼 저작인접권(실연)의 수익을 기획사와 분배하는 것이 올바른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 “계약서에 저작권 수익분배비율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획사는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협의 없이 팀이름으로 등록하기도 했으며, 팀 이름으로 등록된 저작권료는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 "표준전속계약서에 앨범(음반/음원) 저작권과 콘텐츠 저작권이 약간 모호하게 들어가 있는데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가수가 콘텐츠를 창작해도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 "대중문화예술인의 창작물을 기획사가 가진다는 것은 예술인의 창작 욕구를 저하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향후 음악 시장의 콘텐츠 질이 낮아질 겁니다. 잘못된 관행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 시장에 맞는 저작권 조항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노래만 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저작인접권(실연)은 가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습니다."

☞ "주변에서 작사/작곡 시 기획사 부대표가 극히 일부의 멜로디 수정(음정 한두 개의 변화)에만 참여한 후, 공동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여 수익분배비율을 5:5로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해당 부대표는 이후에도 작사/작곡을 한 비소속 가수와 공동 앨범 작업을 했을 때도 똑같이 행동했는데, 해당 가수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작권 등록은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없어져야 하는 관행이죠."

☞ "가수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실연)은 가수에게 귀속하고 음반 제작에 관한 저작인접권은 기획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모든 권리를 기획사와 분배하는 사례를 종종 듣고 있어서 이를 방지할 조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저작권은 국내에 발표하는 곡은 기획사가 30% 가수가 70%, 해외에 발표하는 곡은 양측이 50%의 비율로 곡 발표 후 10년 동안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저작인접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수(청소년)

☞ "가수가 작사 작곡한 곡은 가수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고 저작인접권(실연)도 가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했어요. 또한, 기획사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 있다면 기획사와 공동저작권을 소유한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가수 개인의 창작물을 기획사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간혹 악용하는 기획사들 때문에 분쟁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실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기자(성인)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실연)이 연기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연기자의 모든 수익을 기획사와 분배한다는 내용 때문에 추후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당 조항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수익은 제외한다는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어요."

☞ "연기자는 가수보다 창작하는 사례가 드물어서 저작권으로 분쟁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제 주변에는 저작인접권(실연)료가 꽤 많은 연기자가 있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 기획사가 수익 분배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연기자가 창작하거나 제작비를 직접 투입했는데도 권리를 기획사가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모두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 “보통 계약 기간 중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기자는 남은 계약 기간 때문에 기획사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런 점을 악용하는 기획사도 많아요. 하루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 “간혹 법적 지식이 부족한 어린 연기자나 신인을 대상으로 통장을 대리로 관리하겠다는 기획사들이 있는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실연) 수익을 빼돌리고 통장 관리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려면 저작권 기본지식은 정부가 교육해 주는 것이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콘텐츠에 관련하여 을에 발생하는 저작권 일체는 갑에게 귀속되나, 계약종료 후에 갑과 별도로 협의는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음악을 창작하는 것 이외에도 연기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럴 때 콘텐츠 저작권이 기획사에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 “주변 동료 중 계약체결 시에는 저작인접권(실연)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추후 저작인접권(실연)료가 연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기획사와 불화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 “과거에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제작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제가 먼저 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제작자에게 제작비 전부를 지불한 뒤 저작권을 가져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저작권 권리 여부를 표준전속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기자(청소년)

☞ “국내 드라마와 영화가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저작인접권(실연)이 실연자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연기자의 손해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저작권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저작물 제작에 있어서 기획사의 지원이 있을 때는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될 수 있겠지만, 기획사의 지원이 없고 창작자가 비용을 투입했을 때는 창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수·연기자 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인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음

(6) 수익분배방법과 정산내역 제공 여부 등

가수는 음반(음원) 수익과 공연(행사 등) 수익을 통합 또는 구분하여 수익분배방법을 정하는 편이었으며, 대체로 수익분배비율, 수익분배방법, 정산내역의 항목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었다. 수익금 지급 기간은 보통 월별, 분기별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 단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혹 기획사가 정산내역서에 상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엑셀로 된 정산내역만 제공하는 편이었다. 연기자도 수익분배비율, 수익분배방법, 정산내역의 항목이 계약서에 반영되는 편이었으며, 연기자는 출연료가 수익금이라서 가수와 달리 월별, 분기별 수익금 지급이 아닌 작품 시작 2개월 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연기자는 가수보다 투자비용이 적어서 진행비 중 유류비 사용의 차량 ㎞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를 원했다. 가수와 연기자 대부분이 희망하는 것은 정산내역의 투명성이었다. 기획사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으며, 투자금 또는 진행비의 상세한 항목과 영수증을 받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수(성인)

☞ “수익 분배는 기획사와 가수가 3:7로 나눈다고 계약했어요. 매월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했을 때마다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했는데 기획사와 신뢰 관계 때문에 별도의 정산내역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행사 출연료가 정해지면 보통 구도로 전달받았습니다.”

☞ “계약서에는 정산내역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분기마다 메일로 받고 있는데 영수증도 없고 상세한 내역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행사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초기 투자금액을 일부 회수하고 잔금을 받는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 “계약서에 수익분배비율과 분배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정산내역은 매월 이메일로 받고 있어요. 만약 받는 금액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사에 물어보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아이돌 걸그룹이어서 수익도 나누어야 하고 활동한 지 오래되지 않아 투자금을 제외하면 많은 돈은 받지 못해요.”

☞ “계약서에 행사 활동은 기획사와 가수가 5:5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명시했고, 행사 활동에 사용되는 진행비도 기획사와 가수가 5:5로 부담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산내역도 매월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가수에게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없었어요. 다행히도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정산내역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은 행사 출연료에요. 앨범 관련 수익은 예측할 수 있지만, 행사 출연료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기획사 대표만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한 금액을 받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또한, 제작비 회수 명목으로 금액을 제외하는데 얼마의 제작비가 들었는지 몰라서 항상 정산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 “기획사가 구두로 분기별 1회, 월 1회로 정산내역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정산내역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획사에 소속된 5년이 넘는 기간에 방송, 행사 등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수익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 “계약서에는 3개월마다 정산내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보통 이메일로 정산내역을 받고 있는데 항목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 “계약서에 정한 대로 6개월에 한 번씩 문서로 정산내역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수익에 대한 지출비용은 매니저, 차량유지비, 스타일리스트 임금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 같아요. 정산내역을 보내는 날은 그룹 전체 멤버들과 보호자,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정산내역에는 회사 건물 유지비용을 가수의 지출내역에 포함한 적도 있었고, 회사 전체가 참여하는 패밀리 콘서트의 운영비가 지출내역에 포함된 적도 있었습니다. 기획사가 크다 보니 영세한 기획사보다 체계적인 느낌은 있었습니다.”

☞ “총수익에서 진행비를 선 차감한 후 남은 차액을 기획사와 가수가 5:5로 분배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정산내역을 어떻게 받는지 등에 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정산내역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기획사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정산내역서가 아니었어요. 또한, 정산내역을 가수가 요청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수익분배방법, 분배비율, 정산내역 제공 방법 등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 “수익분배비율은 음원과 공연을 분리하여 비율은 정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기획사가 정산내역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었고 활동하면서 정산내역서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기획사는 가수의 통장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가수가 어떤 돈이냐고 물어보면 구두로 얘기해주는 방식이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수익분배비율만 명시되어 있었어요. 정산내역은 가수가 요청할 때 또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메일로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기획사에 요청하면 즉시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 “계약서에 수익분배비율은 기획사와 가수가 7:4(1/N)로 명시되어 있고, 투자금액을 제외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수의 수익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여 기획사에 정산내역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기획사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산내역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 “수익분배비율, 수익분배방법, 정산내역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매월 말일 정산해서 다음 달 말일에 수익금이 입금되었는데 정산내역서는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가수(청소년)

☞ “수익분배비율과 방법 등이 계약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분기별 정산 때 기획사가 지출한 항목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통 지출항목은 인건비, 식비, 차량유지비, 녹음실 비용 등이었어요. 기획사의 정산내역에 투명성이 높아서 이러한 부분으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기도 합니다.”

☞ “투자 회수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갑과 을이 3:7(1/N)로 수익을 분배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서에 정산내역 관련한 내용을 보았지만 주기와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네요.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점에 기획사가 정산내역서를 제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 “갑과 을의 수익분배비율은 6:4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산내역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는 없지만,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기자(성인)

☞ “수익분배방법, 정산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연기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어요. 정산내역서는 이메일로 받고 있으며, 상세 지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연기자가 정산내역에 관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물어볼 수 있을 만한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구두로 수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정산내역서를 분기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친한 동료는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빠른 정산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기획사에서 이를 들어준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수익분배비율 5:5로 정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산내역은 서류로 받고 연기자가 이를 확인하여 서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정산내역 항목 중 유류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차량 이동 거리(km)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저작인접권(실연) 수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은 진행비를 선 회수한 후 순수익을 기준으로 5:5로 분배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지도에 따라 출연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분배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기획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직원 인건비이고, 연기자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진행비는 기획사와 공동 부담이며 연기자가 원할 때 모든 내용을 서류나 이메일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기획사에서 제공하는 항목 중 유류비가 ㎞ 단위로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 “제가 소속된 기획사는 정산내역서에 세부항목(연월일, 활동명, 장소 등)을 기준으로 유류비 ㎞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공하고 있어요. 매달 메일로 받고 있는데 타 기획사보다 투명하다고 생각해요.”

☞ “수익분배비율은 기획사와 연기자가 6:4, 모든 진행비(스태프 진행비, 스타일리스트, 헤어 등의 인건비성 비용 및 미술비, 행사, 계약 등의 에이전시 수수료 비용, 교육비, 치과 및 성형수술,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PR 비용)는 연기자와 기획사가 5:5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이러니 한 점은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이전 기획사에서도 정산내역서를 받아본 적이 없고 현재 소속된 기획사에서도 받지 못했어요.”

☞ “수익분배비율과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기획사마다 또는 연기자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겠지만 저는 드라마 방영 두 달 후에 출연료를 받는 방법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또한,

영수증 첨부는 없지만 비교적 정확한 진행비 내용을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연기자(청소년)

☞ “기획사의 투자비용이 없었기 투자금 공제는 없고 수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갔습니다. 정산내역 제공은 구두로 협의했는데 연기자 또는 연기자의 부모님이 원할 때 서면으로 제공됩니다.”

☞ “수익분배비율 항목이 들어간 것은 기억하는데 정산내역 제공 방법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네요. 다만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사실 아이가 소속된 기획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수익분배비율도 정확했고 진행비 공제 등도 문제 된 적이 없었습니다.”

※가수·연기자 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인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음

(7) 권한 및 의무 방지 조항의 적절성

권한 및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가수와 연기자 모두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기획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거절하기 힘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암묵적인 불이익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획사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도 권한 및 의무를 위반하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획사의 사례, 대중문화예술인의 사례 전체를 조사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미투 운동 이후로 예전보다 접대 또는 성폭력, 성희롱 관련 사례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가수(성인)

☞ “인적 관계가 중요한 업종이라서 계약서를 언급하며 갑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해요.”

☞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어요. 현재 저희 기획사는 소속 가수에게 트랙 메이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우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물론 가수의 발전과 기획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권유한다는 것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분야라서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인데 기획사의 강제적 권유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소속된 기획사는 적절하게 기능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기획사 말고 다른 기획사라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가수들 대부분은 대표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거든요.”

☞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기획사는 계약서의 조항을 빌미로 권한 남용 또는 의무를 핑계로 들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 조금 더 면밀한 항목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 “가수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기획사 대표의 개인적인 친목 모임에 가수를 대동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기획사 대표는 가수를 위한 기회라고 매번 말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가수가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돌아오는 불이익 때문에 실질적인 대처는 어려워요.”

☞ “현행 조항의 내용보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실적으로 가수는 기획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계약서 명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만약에 기획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요청했는데 이를 가수가 이행하기 힘든 상황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수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어요.”

가수(청소년)

☞ “보통 아이돌 제작하는 회사에서 수면 부족에도 불구하고 활동하게 하고, 학교도 잘 보내지 않고 그밖에 교육도 충분히 보조하지 않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가수는 철저하게 을의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사 권한 남용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추가하면 좋겠어요.”

연기자(성인)

☞ “계약서 조항에는 업무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해 기획사가 연기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품관계자와 일을 위해 미팅하면서 식사와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 협의하여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남자가 아닌 여자라면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요.”

☞ “사실 실질적인 방지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만약 기획사가 업무와 전혀 관계없은 내용을 요구할 경우 연기자는 암묵적인 불이익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미투 이후로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 “사실 기획사와 연기자의 신뢰 관계는 이런 사항들이 누적되면서 깨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다행히 좋은 기획사 관계자들이어서 지금까지 무리한 요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투자를 위해 영화, 방송 관계자와 미팅한 적도 많았는데 기획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다만 다른 기획사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면 될 것 같습니다.”

☞ “여성 연기자가 피하는 역할이 있어요. 노출 장면이나 베드신입니다. 그런 섭외가 들어왔을 때 연기자가 기획사에 확고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연기자의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자(청소년)

☞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이런 정보를 연기자들은 알 수가 없으니, 기획사의 권한 및 의무 남용, 대중문화예술인의 권한 및 의무 남용 사례를 모두 조사하여 유형별로 정리한 자료를 가이드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가수·연기자 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인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음

(8)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가수들 대부분은 정산내역의 투명성 개선, 모호한 계약서 문구 개선, 기획사의 의무 조항 보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장 등이 개선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자는 인지도에 따라 작품 출연료가 결정되는 특성상 신인은 처음부터 불리하게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출연료 조사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전속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원했다. 그 밖에도 여성 연기자를 배려한 연기자의 배역 선택 권한 강화, 정산내역 투명성 개선, 기획사의 방치로 인한 기회 박탈 개선, 청소년 대리인인 부모에게 정산내역, 활동계획 등의 협의 개선 등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가수(성인)

☞ “전속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강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현재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불리한 계약서 항목이 많아서 수정될 필요가 있고, 계약서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면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계약하는 가수는 계약체결 전 기획사가 가수의 기존 인기도와 활동 상황을 참고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재계약에서 계약 기간 내에 발매할 앨범 횟수와 콘서트 횟수 등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를 지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사의 투자가 없고, 가수 활동이 없을 때 계약 해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명시도 필요해요. 또한, 해당 상황에서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 원금 공제에 대한 상황을 가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획사가 정산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제공해야 하며, 투명한 정산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출연 비용을 가수에게 계약서와 함께 쓸 수 있도록 기획사의 정산 관련한 의무 사항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전 기획사에서 계약서에 갑이 최선을 다하여 을의 연예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받았는데, 기획사의 지원과 노력이 없어서 분쟁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 “계약 기간에 가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30평 남짓한 숙소에 10명 이상의 가수나 연습생을 합숙시키는 것은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계약 기간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를 요구하는 쪽에서 얼마 이상의 위약금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중 활동이 불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방안에 관해 계약서에 조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현재 표준전속계약서는 갑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을의 고충 사항(정산 내역서 지급, 헤어/메이크업 등의 스태프 부재 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익분배비율의 경우 표준 수익분배비율을 설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준전속계약서에 가수의 활동,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적어주면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혼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기획사가 정기적으로 소속 가수가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이 제시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프지 않은 이상 건강을 돌봐준다는 개념의 현재 조항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수(청소년)

☞ “가수들 대부분이 계약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또는 이해하지 못해도 정산문제는 잘 기억해요. 그래서 정산에 관한 문제를 상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기자(성인)

☞ “연기자도 등급이 존재한다면 등급에 따라 연기자의 출연료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면 되지만, 명확한 기준을 통해 통계를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사와 갑, 을의 관계로 나누어 체결하는 전속계약은 사실상 을인 연기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체결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연기자가 보장받는 부분에 관해 최소한의 기준치를 설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출연료 기준은 정부가 연예인들 대상 연구를 통해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 “기획사와 계약은 체결했지만, 기획사의 방치로 인해 작품 활동 경력을 쌓지 못하고 기획사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 몇 회 이상의 작품 출연, 오디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 “계약서의 내용이 다소 어려워서 기획사에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획사가 설명하거나 기관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연기자가 활동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수익을 기획사와 분배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지원 없이 연기자 스스로 활동하여 창출한 수익은 기획사와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되 한 가지 기준으로 명시된 계약서가 아닌, 연기자의 상황에 따라(신인 연기자 또는 경력 연기자, 인지도가 높은 연기자 또는 낮은 연기자) 또는 기획사의 규모(자본)에 따라 수익분배비율, 개인 활동 제한 범위, 매체 활동 제한 범위 등이 다르게 명시된 여러 종류의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어요.”

☞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근거해서 계약하는 표준전속계약서인데 순수예술에 해당하는 연극의 저렴한 출연료까지 기획사가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할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투자비용 회수에 관한 내용은 기획사와 연기자의 상황마다 달라서 하나의 기준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의 조항으로 개정되기를 원합니다.”

☞ “포괄적인 내용의 표준전속계약서 조항(계약 기간, 활동지원 조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신인 또는 활동이 적은 연기자에 대한 적은 지원, 회사 방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 안에 기획사가 소속 연기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최소 월 몇 회 오디션 제공 등)에 대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추가되면 좋겠어요.”

연기자(청소년)

☞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에서 스케줄을 정해주지 않을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계약 기간의 활동계획 및 진행 상황에 관해 부모님이 인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기획사에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수·연기자 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인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음

(9) 연습생표준계약서

(가) 연습생 계약체결 여부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

가수는 대체로 구두 계약이나 연습생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전속계약서 등으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편이지만, 연기자는 가수처럼 연습생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연습생 생활을 거치더라도 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 가수나 연기자 모두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았고 간혹 최근에 계약한 사례들은 연습생표준계약서의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수(성인)

☞ “저는 데뷔하기 전까지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기획사에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는데 당시 불성실했던 연습생들이 많았고 저도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연습생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들었어요.”

☞ “연습생 신분이었을 때 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연습생들은 연습생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들었는데 해당 계약가 연습생표준계약서인지는 모르겠어요.”

☞ “저도 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획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획사와 연습생의 신뢰 관계를 우선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또 한편으로는 연습생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단순 사유의 계약 해지 불가, 계약체결 후 회사 변경의 어려움 등)를 고려하면, 연습생 입장에서 계약체결은 지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수(연습생)

☞ “연습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습생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보지 않아서 해당 계약서가 기획사 자체 연습생계약서인지 연습생표준계약서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어머니가 법을 전공하셔서 계약체결 시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제법 큰 기획사 중 하나는 3개월 단위로 연습생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서가 연습생표준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현재 연습생 신분이지만 표준전속계약서로 5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희 기획사는 연습생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델로 프리랜서 활동을 겸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 기획사에 구두 계약을 원했고 2017년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비교적 최근에 계약했는데 연습생표준계약서로 알고 있어요. 연습생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내 데뷔를 할 경우, 기존의 연습생 계약을 해지하고 표준전속계약서로 재계약하며, 연습생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내 데뷔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 기간 종료 후 연습생표준계약서로 재계약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연습생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연습생 계약 대신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데뷔 일정이 미루어져서 1년 후 계약 해지했습니다. 당시 기획사로부터 받은 수업은 기획사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는데 대표적으로 연기 수업과 댄스 수업을 받았어요.”

☞ “데뷔 조 투입 조건이었기 때문에, 연습생표준계약서가 아닌 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 “저는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동료들이었던 다른 연습생들은 연습생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동료들의 연습생표준계약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조항에는 ‘연습생은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데뷔가 확정되었을 때, 데뷔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 “연습생 이전에 댄스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기획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갈 당시 기획사는 투자비용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우선 구두 계약을 체결한 뒤 데뷔시켜 준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 대표가 원하는 스타일의 다른 연습생이 나타났고 결국 저는 기획사에서 퇴출당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획사 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구두 계약을 원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다른 연습생들도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었습니다.”

가수(청소년)

☞ 가수 청소년은 인터뷰 시 해당 사례가 없었음

연기자(성인)

☞ “연기자가 연습생 계약을 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 “구두로 기획사 대표와 협의 후, 약 3개월간 연습생 기간을 가졌는데 연기자는 연습생 계약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 같은 경우는 기획사와 연기자가 협의하여 연습 기간을 두기로 했었는데, 이는 서로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당시 서면 계약은 없었어요. 연습생표준계약서는 가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 “매우 어린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래는 교육이 필요해서 연습생 연기 트레이닝을 받지만, 연습생표준계약서가 아닌 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한다고 들었어요.”

연기자(청소년)

☞ 연기자 청소년은 인터뷰 시 해당 사례가 없었음

※가수·연기자 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인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음

(나) 연습생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

가수와 연기자 모두 대부분 연습생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연습생표준계약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데뷔하지 못했을 때 연습생의 계약 해지 권한 강화, 학습권 보장을 받지 못했을 때 연습생의 계약 해지 권한 강화, 투자비용 통지에 관한 기획사의 의무 강화 등으로 나타났으며, 연기자는 오디션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획사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가수(성인)

☞ “가령 ‘기간 내 데뷔 못 할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내용 등과 같이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 “모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기준으로 인해 회사의 결격사유가 가수의 결격사유로 전가되면서 불합리한 계약해지를 했던 경우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결격사유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비용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연습생과 보호자에게 일정 주기(6개월 혹은 1년)로 공지하여, 후에 연습생이 투자비용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연습생 계약 조항에서 투자(훈련)비용에 관한 사항, 전속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연습생

권한 및 의무,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등의 내용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들이 기획사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나 대표기관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의 경우 연습생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습생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해당 기간에 데뷔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연습생들이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에 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연습생 기간에 사용된 투자(훈련) 비용을 연습생이 인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투자(훈련) 비용에 관한 내역서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요. 기획사 관계자의 막연한 투자비용 설명은 연습생들이 충실하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에 불안을 주는 요소입니다."

가수(연습생)

☞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습생 생활을 하던 친구가 있는데 학교 폭력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기획사에서 학교 폭력 연루가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친구가 회사에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획업자가 연습생에게 투자(훈련)비용을 정기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획사가 투자비용에 관한 정산 내역서를 제공하지 않아서 스스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록한 투자비용은 식비, 연습실 사용료, 레슨비(보컬, 합주), 미용실 비용 등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데뷔 후 회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사 관계자의 막연한 투자비용 설명은 연습생들이 충실하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에 불안을 주는 요소입니다."

☞ "저는 투자(훈련)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보다 자세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사의 사유(갑이 을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로 을이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추가돼야 합니다. 또한, '갑 또는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을 때는 1~2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라는 내용도 명시돼야 해요. 다음으로 전속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체결 시, 갑은 을에게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야 하며,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해서는 연습생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더불어 회사와 연습생이 공생하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내용도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다 추가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연습생은 철저한 을이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연습생도 활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수익분배비율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습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연습생의 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회사의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돼야 하고 투자(훈련) 비용에 관한 상세 내역은 연습생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기획사의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 "데뷔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연습생마다 다르지만, 장기간 연습생으로 지내면 금전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의 생활비를 보조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소속된 기획사 근처에 거주하는데 부모님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덜하지만, 주변 연습생 생활을 하는 지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가 제한되는 연습생들은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회사가 연습생의 개인 활동을 제한할 부분에 대해 연습생과 계약체결 전에 조율하여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연습생이 계약 당시 어떠한 부분을 제한받을지 인지해야 향후 분쟁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친한 연습생이 있는데 기획사로부터 집에 도착하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개인 활동 제한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물론 심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죠. 또 다른 주변 연습생들의 경우 SNS 계정 삭제를 원하는 기획사의 간섭을 피하려고 비공개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기획사는 연습생들이 데뷔 후 창출한 수익에서 투자 원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개선할 시 기획사에서 연습생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계약할 것 같아요. 저는 기획사에서 정기적인 투자비용 내역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투자 원금을 부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습생이 기획사에 투자비용을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획사가 연습생들에게 투자비용 내역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의 경우, 회사의 지원 부분(수업, 연습실, 숙소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저는 연습실 비용을 제외한 수업료, 미용(성형 및 샵) 비용, 촬영 비용이 모두 투자비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연습생 생활을 경험한 두 회사 모두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 "계약체결 전 기획사가 연습생들에게 회사의 재정 상태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약속하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연습생의 생활 유지비(연습 및 교통 비용 등)는 기획사가 기본적으로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투자(훈련) 비용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숙소 생활을 하면서 기획사가 식비, 생필품 등의 제공하지 않아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소형기획사의 연습생 경험과 대형기획사의 공채 오디션 연습생 경험이 있습니다. 소형기획사에서 요구한 계약 조건(긴 계약 기간, 회사의 명확하지 않은 계획, 위약금 문제 등)이 저에게 맞지 않아 연습생 계약이 아닌 전속계약을 제안받기는 했지만 결국 계약체결은 하지 않았어요. 대형기획사 공채 연습생 때는 보컬(남/여), 댄스(남/여)팀을 구성한 뒤, 팀별로 약 3~4주간 트레이닝을 받고 최종적으로 타 기획사 관계자들과 평가하는 심사에 공연을 올리게 한 뒤, 1~3위를 수상한 연습생에게만 약 3개월간 정식 연습생이 되는 기회를 제공

했습니다. 다만 저는 공채 오디션에서 최종 합격하지는 못했는데 체계적인 연습생 트레이닝 시스템과 기본적인 지원(식사 제공 등)을 충실히 했던 대형기획사에서의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수(청소년)

☞ "데뷔 일정이 미루어졌을 때 연습생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반영돼야 합니다."

☞ "투자(훈련)금액에 관해 연습생이 인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투자비용을 기재한 정산 내역서를 기획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연기자(성인)

☞ "연습생 기간은 데뷔 날짜를 고정해 놓고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서 불확실한 데뷔만을 바라며 긴 연습생 기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연습생 기간에 많은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어요. 연습생이 불안감을 느끼며 기간을 보내지 않도록 연습생 계약 기간의 최대 기한을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사가 소속 연습생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에 1회의 오디션 기회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연습생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기획사가 연습생으로부터 투자(훈련) 비용을 회수하려는 이유로 연습생계약서를 제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습생 계약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데뷔하지 않은 상황이어도 연습생에게 연기 수업, 사진 촬영 연습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투자하고 있는 비용을 얘기해야 연습생도 책임감이 생겨서 투자만 받고 회사를 이탈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연기자의 경우 업계의 환경상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해줄 수 없는데, 자의적으로 연기자 활동을 희망한 청소년의 경우 연기자 활동과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모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모든 소속 연기자와 연습생들은 기획사로부터 차별 없는 공정한 기회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션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좋겠습니다."

연기자(청소년)

☞ "단체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드라마, 영화 촬영으로 인한 업무 외에는 최대한 학교 출석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획사가 스케줄 배려를 해야 하고 반드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활발한 활동 중이더라도 타당한 해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적으면 좋겠습니다."

※가수·연기자 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인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음

(10)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가)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활용 여부 등

가수와 연기자 모두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체결 경험이 없었고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가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보호에 관한 충분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가수(성인)

☞ 가수 성인은 해당하지 않음

가수(연습생)

☞ 가수 연습생은 청소년 표준 부속 합의서를 체결한 사례가 없음

가수(청소년)

☞ “기획사에서 얘기하지 않았고 표준전속계약서 내에 청소년과 관련한 학습권 보장, 주중 연습시간, 활동시간, 아프거나 다치는 신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부속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연기자(성인)

☞ 연기자 성인은 해당하지 않음

연기자(청소년)

☞ “기획사에서 제안한 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했을 때 청소년 표준 부속 합의서 존재 여부를 몰랐습니다.”

☞ “계약체결 당시 청소년 표준 부속 합의서의 여부를 몰랐으며 기획사의 대표와 신뢰 관계가 두터워서 별다른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수·연기자 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인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음

(나)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청소년은 예술인을 하기에 미성숙한 시기여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외국처럼

청소년 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청소년의 유해 행위 금지 강화, 수면권 보장 강화 등의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효력이 강화된 부속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편적이다.

가수(성인)

☞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청소년들은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극도로 아프지 않다면 치료를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지할 수 있어요.”

☞ “외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촬영 현장에 지도 선생님이 방문하여 청소년 예술인들을 학습지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 하며 부속 합의서를 활용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계약체결 당시 부모님이 학교 수업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줄 경우 계약하겠다고 기획사에 요구했기 때문에 학습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은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청소년에게 학습권은 중요한 문제라서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상적으로 학교를 등교하여 청소년의 학습권과 인격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수(연습생)

☞ “청소년 예술인들에게 학습권 보장보다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 예술인도 있을 수 있고 공부를 하고 싶은 청소년 예술인은 휴가 시간에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연습생들은 성인 연습생과는 다르게 일일 최대 연습 시간을 제시하여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체능 분야의 경우, 이론적 학습보다 실기 학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등교 후 오전 수업은 필수로 듣되 오후에는 조퇴 등의 방법을 활용해 기획사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 “촬영 여부 및 회식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선택을 청소년이 할 수 있도록 자유 선택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래와 연기 수업 등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은 진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서 기초 상식을 위한 학습이 꼭 필요해요. 청소년 예술인이 최대한 학칙대로 학교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획사는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건강 보장 항목에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은 매우 예민한 시기라서 사생활 부분에 간섭이 심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거든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성인 연습생 기준으로 계획된 연습생 스케줄로 인해 청소년 연습생의 경우에는 체험

학습 무단 조퇴를 하여 연습생 교육을 받고 있어요. 청소년 연습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 “수면권 및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해 힘들어하는 연습생이 많아서 일별 연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루 14시간 이상의 연습으로 인해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을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기획사의 체계적인 못한 스케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연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가 있다면 좋겠어요.”

☞ “유해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은 청소년뿐만 아닌 성인 연습생까지 포함해야 하며, 연습생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사가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서 연습생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사가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속 합의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년이 연습으로 인해 조퇴, 결석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사에서 청소년 예술인에게 주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상담 등의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부속 합의서에 필요할 것 같아요.”

가수(청소년)

☞ “청소년 예술인의 경우 데뷔해도 많은 연습을 병행해야 하므로 최소 수면권의 정확한 시간을 보장해서 건강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활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정신적 문제(우울증, 자살 등)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 혹은 치료를 제공의무가 추가된 부속 합의서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연기자(성인)

☞ 연기자 성인은 의견이 없었음

연기자(청소년)

☞ “위해 장소 출입금지, 유해행위 금지에 관련된 내용은 필수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퇴, 결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까지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의무가 되도록 효력을 강화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 “드라마, 영화 촬영 시 장시간 현장에서 대기 및 촬영을 하다 보니 장시간 분장과 밤샘 촬영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 및 수면권에 관해 큰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촬영장에서 더욱더 배려받아야 하며 기획사는 청소년 예술인의 건강 보장을 위해 제작사나 촬영

현장 상황 조율에 노력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연기자 청소년 인터뷰는 보호자인 부모님을 동반하여 진행되었음

(11)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가)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직접 체결 경험 유무와 이유, 계약서의 조항 변경이나 출연 조건 변경으로 인한 피해 여부

가수와 연기자는 방송 출연 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고 체결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해당 계약이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인지 모르는 사례가 더 많았으며, 대체로 계약서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부속 합의서 등으로 추가적인 조건을 협의하는 편이었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발생했던 문제는 예정된 촬영 조건 변경 또는 지연에도 불구하고 갑의 지위에 맞서기 힘든 항거불능이 대표적이며, 연기자의 경우 프리랜서였을 때 캐스팅 디렉터의 부당한 수수료로 인한 문제 등이 있었다.

가수(성인)

☞ “주로 기획사에서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나, 직접 체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서 표준출연계약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슈퍼스타K’와 ‘K-POP 스타’는 스튜디오 촬영을 시작한 이후부터 출연계약서를 작성했었어요. 한 장으로 받은 종이에 촬영 당일 빠르게 서명을 하고 전달해서 표준계약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V앱 플랫폼 참여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 “기획사가 대리로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체결한 경험이 없어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모릅니다. 음악방송의 경우 2~3일 전에 갑작스럽게 출연을 고지하면서 무리한 스케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음악방송은 관례상 아이돌 그룹들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출연하는 것이고 음악방송만으로 수익 창출은 힘들어요. 그런데 방송사의 무리한 스케줄 요구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세션으로 방송을 출연했을 때도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 “대부분 기획사 측에서 계약체결 했어요. 그런데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기획사에서 대리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작사나 기획사로부터 프로그램(음악방송, 예능 등) 출연료에 대한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 “계약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 예정된 촬영 시간이 지나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런

것이 피해 아닐까요?"

☞ "기획사에 있을 때는 계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였을 때는 직접 체결한 경험이 있어요. 물론 표준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수(연습생)

☞ 가수 연습생은 해당 사례가 없음

가수(청소년)

☞ "방송 출연계약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방송에 장기로 고정 게스트일 경우 또는 연기자로 드라마를 촬영할 경우만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획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다만 기획사와 출연료 통장을 공유하고 있어서 얼마 들어왔는지 어떻게 수익 분배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인 제가 체결하기도 하고 회사가 대리 체결한 사례도 있는데요. 표준계약서와 대조해보지 않아서 활용 여부나 변경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연기자(성인)

☞ "기획사에서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표준계약서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계약한 경험은 없지만, 주변 동료 중 캐스팅 디렉터를 통해 작품에 출연했던 연기자들은 캐스팅 디렉터가 제작사와 연기자의 중간에서 각각 수수료를 받아 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 "최근에는 TV 출연이 없었는데 과거에는 기획사가 대신했었어요. 다만 최근 카카오TV 출연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협의했었습니다. 물론 표준계약서인지는 알 수 없어요."

☞ "기획사가 제작사로부터 받아온 계약서를 함께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했어요. 표준계약서인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과거에 선 촬영 후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작사의 제안에 기획사와 제가 동의한 후 해외 촬영에 참여했는데, 편집 과정에서 제 분량이 통편집되었던 적이 있어요. 제작사에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 계약 후 활동했던 지인의 경우, 제작사는 출연료를 지급한 상황이고 기획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기획사와 체결한 계약서가 없어서 출연료를 받을 방법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속사가 없었을 때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보통 표준계약서라고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부속 계약서를 통해 보충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촬영 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연한 경험도 많아요. 언젠가는 촬영이 끝난 상태인데 방송사에서는 주연 연기자의 연기 관련한 문제로 재촬영을 했었는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사에 항의하였고, 다른 출연자들에게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출연료를 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 연기자는 계약서가 있다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할 때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 출연확인서로 대체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 "과거에는 기획사에서 연기자의 인감도장, 통장, 위임장을 갖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은데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방송은 제작사마다 계약서가 조금씩 달라서 자회사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던 사례도 있고 부속 합의서를 추가하거나 혹은 표준계약서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제작사와 기획사, 연기자가 함께 계약체결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갑(제작사), 을(기획사), 병(연기자)이 모두 동의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표준계약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작 기간 연장으로 인해 촬영 기간이 길어질 경우, 협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 "기획사와 저 그리고 제작사와 같이 계약하는데 표준계약서 여부는 모릅니다. 프리랜서 연기자는 주로 캐스팅 디렉터를 통해 방송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캐스팅 디렉터에게 구두로 계약 조건(출연료, 출연 정보 등)을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계약은 캐스팅 디렉터가 연기자의 인적사항, 통장사본을 받아서 방송사와 계약을 한 후, 연기자는 추후 등기로 체결된 계약서를 전달받는 방식이에요. 주변의 경우, 캐스팅 디렉터가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겨서 연기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지만 캐스팅 디렉터에게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 "주로 기획사에서 대리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했던 방송 출연계약서가 표준계약서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획사의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섭외가 들어온 활동은 계약을 직접 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 기획사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을 때 모든 진행비를 사비로 부담하여 드라마 촬영을 한 후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사에서 드라마 출연료를 제 통장이 아닌 이전 회사 통장으로 지급하였고, 저는 잘못 지급된 출연료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사가 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 "직접 체결한 적은 없었고 기획사가 대리 체결해요. 제작사와 기획사가 체결한 계약서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표준계약서 내용은 바꾸지 않고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 출연료가 미지급된 적은 있었지만, 기획사 측의 문제가 아닌 제작사에서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경우,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 제작과정에서 변수(극 중 출연자 변동)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촬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구두로 전달받는 편이고 촬영이 중단되는 경우 연기자는 갑자기 수입이 끊기는 상황이죠. 물론, 계약체결 시 출연 횟수를 명확히 정하긴 하지만 사실상 변동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에요."

☞ "2014년 모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으나, 방송 출연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어요. 구두 상으로 계약 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었고 다행히 문제 되는 일은 없

었습니다. 다른 연기자의 요구로 인해 재촬영을 한 적은 있으나, 작품을 위한 촬영이었기에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 "프리랜서일 때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사에 소속된 이후에는 기획사에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해당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인지는 잘 몰라요. 제작사의 요구로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재촬영을 하고 추가 출연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있었으나, 재촬영한 이유가 좋은 작품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피해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보통은 기획사와 방송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획사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전에 구두로 계약 조건(출연료, 촬영 조건 등)을 전달받은 뒤, 추후 체결된 계약서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보통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부속 합의서를 통해 보충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연기자(청소년)

☞ "대부분 부모인 제가 직접 체결하였고 기획사에서 대리로 체결한 사례도 있었어요. 표준계약서와 대조해보지 않아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와 조문 내용 변경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방송 출연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조문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표준계약서라고 들었어요."

☞ "계약 문제는 기획사에서 다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동안 발생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가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획사가 대리 계약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계약 내용 자체를 본 적이 없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다만 출연에 관한 특수 상황을 고려한 조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연기자는 직접 계약하거나 기획사가 대리로 체결하는 사례가 섞여 있는데 계약서의 법적 효력 강화, 촬영 시 특수 상황을 고려한 조항 개선, 출연료 지급 방법 개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항 개선 등 다양한 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수(성인)

☞ "가수 중 그룹의 특성상 멤버 전원이 출연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사가 해당 상황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아이돌 그룹의 출연 인원 변경 가능성에 대한 계약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리로 기획사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출연계약서를 기획사가 가수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개선돼야 합니다."

☞ “주변 동료의 경우, 방송 출연 당시 동료가 제작한 곡이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저작권 수익을 방송사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에서도 출연자에게 메일을 통해 정산서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가 많아서 계약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광고 오디오 녹음은 1회 녹음에 몇 회 수정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지만, 방송의 경우 횟수에 제한이 없어 여러 차례 재녹음을 위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녹음 횟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수(연습생)

☞ 가수 연습생은 해당 사례가 없음

가수(청소년)

☞ “단발성 방송 출연도 계약을 체결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계약서를 본 적이 없어서 수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답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계약이 중요한데 방송 출연 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기자(성인)

☞ “공연계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표준계약서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조항(공연 연습이 기준치(%) 이상 진행되었으나, 공연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대한 계약금 처리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드라마나 영화의 표준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드라마와 영화 분야에서도 천재지변에 의한 촬영 중단 및 취소 시의 대처방안에 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드라마와 영화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도 업무 특성상 일정변동이 잦은 분야이기 때문에, 촬영 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대처방안은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 체결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제작사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자체의 실질적인 효력이 강화되어야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강한 권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작사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모두 귀속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약서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촬영했던 작품 중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18부작 드라마’를 촬영했을 때 심한 추위 속에서 힘들게 촬영이 진행되어 많은 스태프와 연기자들이 촬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주로 야외 현장에서 촬영하는 사극 등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를 반영(겨울에는 기준 이하의 영하로 내려가는 날의 경우 촬영시간을 단축 혹은 중단할 수 있다)한 내용의 조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자 연기자들은 남자 연기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야외 촬영 현장의 시설(화장실 등)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자 연기자들이 야외 촬영장에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설이 마련되고 이런 사항이 계약서에 조항으로 추가되면 좋겠어요."

☞ "연기자가 3부 분량의 촬영을 했으나 편집 과정을 통해 촬영한 분량이 사라져 방영되지 않을 경우, 제작사에서 간혹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촬영을 위해 투자한 진행비(촬영 현장 유류비, 헤어, 메이크업, 매니저 인건비 등)에 관해 연기자가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으로 인해 촬영 분량이 방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작사는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 "제작사에서 방송 출연료를 지급할 때, 기획사가 아닌 연기자에게 지급한 뒤 연기자가 기획사에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계약서 내용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 "연기자들도 주 52시간 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 자료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이 계약서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연기자(청소년)

☞ "계약서에 대기 장소에 연기자에 대한 최선의 제공을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새벽 촬영 제한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예술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장을 위해 촬영장에서 배려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은 성인 예술인에 비해 체력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연 연기자의 촬영이 먼저여서 새벽까지 대기 후 촬영해야 했는데 주연 연기자가 재촬영을 요구해서 결국 새벽에 촬영을 못하고 귀가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 제작사에서 청소년에 관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2) 기타

(가) 코로나19 관련 동향(스케줄 취소, 변경, 매체 활동 비중이나 변경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수나 연기자 대부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는 콘서트 같은 공연이나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어 금전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획사 재정 부담으로 앨범 제작이 연기되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전통매체 출연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SNS 같은 새로운 매체 활동으로 영역을 확장 중인 사례가 있었고, 향후 이러한 시장의 규모는 더욱 성장할 예정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연기자는 방송과 영화가 촬영 중단 또는 연기 등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여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는 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연기자의 전통매체 출연비율에는 변화가 미미한 편이다. 다만 연기자들은 가수들이 주력하고 있는 SNS 활동보다 OTT 플랫폼 활동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가수(성인)

☞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취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받고 있어요. 행사, 공연 활동의 활동 비율은 확연히 줄었는데 다른 매체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숏폼 콘텐츠와 같이 짧은 시간으로 제작되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TV보다는 소셜 미디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 3~4월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고, 공연 대신 가수와 함께 사진찍기로 대체된 사례가 있었어요. 현재는 온라인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앨범 발매의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저는 뮤지컬과 같은 오프라인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TV가 주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 “5회 정도의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받았어요. 전통적인 매체에서의 활동 비율 변화는 없는데, 앞으로 온라인 콘서트 유료화에 대한 이슈처럼 한류 아이돌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 공급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 같고 새로운 플랫폼 시장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올해는 금전적인 피해가 가장 큰 시기이며 공연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어요. TV는 활동비율에 변화가 없지만, 코로나19 이후 OTT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발전할 것 같아요.”

☞ “저는 가수라서 괜찮은데 TV 드라마, 웹드라마 촬영 연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받은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로 전통매체 활동비율이 조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SNS 플랫폼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 “행사 취로로 인해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받은 게 대표적이죠. 대면 방식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보니 전통매체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통매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기보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영상매체의 경우 가벼운 느낌으로 가수의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어서 가수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TV, 라디오 등의 전통매체 대비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가수가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될 수 있어요. 향후 온라인 플랫폼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요?”

☞ “앨범 제작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공연, 행사가 많이 취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받았어요. 주변 동료를 보면 전통매체 활동비율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성 가수들 모두 전통매체에 출연하고 싶어서 경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출연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커버 형식의 가창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 제작 방법 등을 다루는 영상이 많아서 플랫폼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활동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콘텐츠의 질에 대한 제작자/구독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영상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뮤지션들도 질 높은 콘텐츠를 많이 제작할 것 같아요.

☞ "전국투어 공연(콘서트)이 코로나 사태로 취소되어 금전적 피해를 받았어요. 인디 가수의 경우, 방송 활동보다 공연 활동(주로 콘서트 활동) 비율이 높은 편인데, 공연이 불가능하다 보니 활동비율에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인디 뮤지션의 경우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가수들이 신비주의 콘셉트로 매체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았지만, 현재 자기 PR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하는 가수들이 많아졌고 과거 대비 새로운 매체 활동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생각돼요."

☞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미국, 일본에서 공연과 팬 미팅, 굿즈 판매를 통해 기획사가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다음 앨범의 제작비 마련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앨범이 제작되어야 음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컴백 시기가 연기되면서 TV, 라디오 활동도 현저히 줄었어요. 앞으로는 비대면 라이브 같은 공연이나 유튜브 등의 매체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현재 'V앱의 V LIVE'와 '1:1 영상통화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할 코로나 영향을 대비해 유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라이브(관객 없이 진행하는 콘서트를 생중계하는 방식이며, 일본의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TV의 선호도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다른 플랫폼의 영향력과 선호도가 커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류 매체는 TV라고 생각합니다."

가수(연습생)

☞ 가수 연습생은 해당 사례가 없음

가수(청소년)

☞ "현재는 기획사 유튜브 계정이나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것만 있어서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작은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지속한다면 공연 취소로 피해가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해요.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TV, 라디오 등의 전통매체 비율이 줄어든 변화는 없고 기획사 유튜브 계정 이외에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청소년 예술인 또래들을 보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몇 년 전부터 온라인 활동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야외 활동 제한으로 인해 공연과 행사가 취소되어서 기획사 내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어요. 그리고 전통매체 활동비율도 줄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네이버TV 등의 플랫폼 시장이 확대될 것 같아요."

☞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중단 및 취소되면서 금전적/시간적 피해가 있었고, 행사와 같은 활동 비율은 확연히 감소하였으나, 다른 활동의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튜브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매체 활동이 더욱 많아질 것 같아요.”

연기자(성인)

☞ “활동 중인 작품의 경우 코로나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주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촬영이 중단, 취소되면서 예정되어 있던 해외 촬영 등의 불발로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전통적인 매체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서 이전과의 활동비율에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활발한 유튜브 활동으로 새로운 직업군에 ‘창작 크리에이터’가 생길 정도로 MCN(멀티채널 네트워크) 시장이 매우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튜브와 같은 매체 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에 관한 규제 또한 함께 마련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공연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객석 띄어 앉기가 시행돼서 관객 확보가 어려우며,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를 한다고 하여도 관객 수가 현저히 줄어 공연 매출에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TV, 라디오 매체는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있는데 공연계가 비대면으로 공연을 영상화하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SNS 채널을 직접 운영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닌데 섭외를 받아서 카카오톡 TV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사실상 카카오TV와 같은 플랫폼들은 넷플릭스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생겨난 플랫폼이고,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플랫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손쉽게 집에서 시청할 수 있는 OTT 플랫폼이나 유튜브 등에 연기자들의 참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드라마 작품이 없을 때는 모델로 활동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모든 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차 회복되면서 현재 80% 정도의 활동이 복구된 것 같아요.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투자자가 투자를 포기하면서 기획사의 재정이 악화하였고, 계약 기간 중 기획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계약 기간의 진행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피해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전통매체에 비해 새롭게 등장한 영상매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연기자들의 경우 유튜브와 같은 매체 활동을 많이 시작하고 있는데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사실상 연기자가 또 다른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 “현재까지 출연 취소로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있죠. 주변 동료들도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의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아 해결하는 상태에요. 코로나 이전부터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방영되는 작품에 참여하였고 코로나 사태로 더욱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OTT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기자 섭외 비율이 증가한 것이 체감됩니다.”

☞ “예정되어 있던 방송 작품이 중단 및 취소되면서 큰 피해를 받았어요. 저는 공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의 경우 큰 피해를 받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전통매체 활동비율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대면 활동이 불가능해서 기존 콘텐츠의 제작/투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인 미디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1인 미디어 활동에 관련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동료에 비해 피해를 많이 받은 편은 아니었으나 촬영 시 장소 섭외가 되지 않아 촬영이 연기되는 피해를 받은 경험은 있습니다. 전통매체 활동 비율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앞으로는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해 시청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시청 가능한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될 것 같아요.”

☞ “매년 봄, 신문사에서 개최하는 신춘문예 연극의 경우, 2달 동안의 공연 연습을 하던 중 공연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보았지만, 그 외의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는 큰 피해는 받지 않았어요. 올 초에는 공연, 드라마, 영화 등 전반적으로 활동비율이 줄어들었지만, 현재는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요. 코로나로 영화 개봉이 불투명성으로 영화제작이 중단된 일반 상업영화 시장과는 다르게, OTT 시장은 영화관의 대체재 역할을 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OTT 플랫폼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 같습니다.”

☞ “제가 출연하던 뮤지컬이 있었는데 지방 공연이 중단되어 금전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한 달 정도 촬영이 지연되는 피해가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유튜브와 같은 매체가 활발해지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생활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라서 다른 개인 활동을 하지 않지만, 주변을 보면 유튜브를 시작하는 연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향후 시장은 더 커질 것 같아요.”

☞ “상반기에 개봉 예정인 영화 두 작품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개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투자사의 투자 포기로 인해 영화가 무산되어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자들이 웨이브, 카카오,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 넷플릭스, 웨이브, 카카오, 시즌 등 다양한 OTT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영화는 영화만의 고유 특성(현장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OTT 플랫폼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플랫폼 시장의 영향으로 영화 시장이 위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작품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받기는 했으나,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연극, 영화에 종사하는 주변 동료들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창작지원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OTT 때문에 영화 시장의 규모가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나 주변의 동료들 모두 예상하는데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기자(청소년)

☞ “작품 취소로 피해는 있지만, 전통매체 활동비율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흥미가 떨어지지 않는 한 유튜브는 지속해서 활동할 거예요. 다만 연기자로서 연기 활동을 위해 TV 등 작품 출연의 활동을 더욱 많이 하고 싶습니다.”

☞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방송 촬영이 연기되었으며, 몇 개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받았어요. TV와 같은 전통매체 활동비율은 확실히 낮아졌는데,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매체 활동비율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사에서도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매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시장이 확대된 만큼, 기획사에서 개개인 특성 개발 및 발굴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 영향으로 스케줄 수가 줄었으나, 큰 피해는 없습니다. 야외 촬영 활동비율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전통적인 매체의 활동비율에 큰 변화는 없었고 향후 새로운 플랫폼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있어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위한 개선 및 필요사항

가수나 연기자들 대부분은 표준계약서가 의무화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편이다. 또한, SNS나 OTT 등 새로운 매체 또는 플랫폼에 대한 이슈로 인해 계약상 변경되는 조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양한 표준계약서 정비를 원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계나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수(성인)

☞ “새로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모든 표준계약서에 소셜 미디어 콘텐츠 귀속 여부, 수익분배비율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업계 종사자들이 표준전속계약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내용을 인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인디 가수 혹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기획사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소비자센터가 있듯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대중문화예술인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정부 기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개선된 표준계약서를 엔터테인먼트 산업 안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표준계약서 조항을 명시할 때는 갑과 을의 입장을 평등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들은 모두 예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계약서 조항을 개정하는 것보다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을 때 그 효력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표준전속계약서의 경우 계약 기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갑은 을에게 주기적으로 정산 내역서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계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의 효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 “궁극적으로 계약서에는 가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표준계약서에 가수를 보호하는 조항이 상세히 명시되면 가수들도 계약서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계약서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 “을이 갑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업계 환경 자체가 표준전속

계약서를 포함한 여러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시장의 규모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모든 표준계약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창출된 수익에 관한 표준 수익 분배비율을 세부적으로 다루어 권고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하는 가수들을 위해 가수 활동의 정의, 작곡가 활동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정해주고, 표준전속계약서의 틀을 벗어난 계약을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기준을 위하여 표준 수익분배비율이 권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수(연습생)

☞“기획업자의 정산 내역서 제공 의무 강화와 연습생들의 휴식권 보장 등 연습생의 권리나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추가 및 개선이 필요해요.”

☞“연습생에게 최선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기획업자의 의무가 부여되도록 계약서의 실질적인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정되는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비용이 큰 아이돌 가수를 제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최대 계약 기간은 5년 정도로 단축되어야 합니다.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계약 기간에 투자할 항목에 대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하여 방치되는 연습생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뷔 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인한 수익 창출까지 회사에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항목에서 회사의 개인 활동 제한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연습생 기간에 사용된 투자비용 혹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계약 기간 중 발생한 투자비용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정산내역서를 을에게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을이 연습생 기간에 사용한 투자비용 금액에 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심 이슈와 피해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해서 표준계약서가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수입이 없는 연습생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연습 외 시간에는 자유로운 아르바이트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계약서로 개선돼야 합니다.”

가수(청소년)

☞“미성년자 즉 청소년 예술인이라면 표준전속계약서 내에 부속 합의서에 해당하는 약식의 항목을 추가하는 계약서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해지고 있는 매체 활동에 관해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모든 표준계약서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자(성인)

☞ “모든 계약체결에 있어서 계약서의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갑은 없습니다. 사실 어렵고 많은 내용의 계약서를 모두 읽기 어려운 연기자는 사실상 필요한 부분(수익, 계약기간 등)에 관해서만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기자들이 계약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지만 상세한 조항으로 계약서가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계약서가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면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닌 경우엔 ‘을’에 해당하는 연기자에게 계약서는 무용지물일 수 있어서 계약서의 효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현재 표준계약서의 대부분은 예술인이 판단하기 모호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많아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명확한 구분/판단이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의 조항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 “ 궁극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은 모든 부분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서 항목별 조항을 구체적 명시가 중요하니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예술인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부 기관의 검토를 받을 방법이 있다면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예비 예술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 사실 아직도 표준전속계약서를 인지하고 있는 연기자들이 적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받는 성폭력 교육도 필수 이수로 규정하여 을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예술인들이 많아요.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나 협회, 단체, 정부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연기자(청소년)

☞ “ 청소년 예술인의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해 바쁜 활동보다 학업과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활동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협의를 전속계약체결 전 할 수 있도록 권고돼야 합니다.”

☞ “ 연예계에서 모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체결 시, 갑은 을에게 계약서 내용에 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을은 이를 통해 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및 숙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3. 기획업 조사결과[110)]

가. 정량조사 결과

본 조사에 응답한 기획업은 가수 부문 54개, 연기자 부문 49개 기획업에서 응답하였으며, 연습생을 제외한 소속예술인 수를 기준으로 가수는 1~4인이 소속된 기획업이 64.8%, 5~9인 14.8%, 10인 이상 대중예술인이 속해있는 경우는 20.4%로 구성되었다.

연기자 부문은 소속예술인 수가 1~4인인 경우가 38.8%, 5~9인 26.5%, 10인 이상 예술인이 속해있는 경우는 34.7%로 구성되었다.

[표 90] 기획업 응답 업체 특성

			표본 수(명)	구성비(%)
계			103	100.0
가수	소계		54	52.4(100.0)
	소속 예술인 수	1~4인	35	64.8
		5~9인	8	14.8
		10인 이상	11	20.4
연기자	소계		49	47.6(100.0)
	소속 예술인 수	1~4인	19	38.8
		5~9인	13	26.5
		10인 이상	17	34.7

(1) 표준전속계약서의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35.0%,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45.6%로 기획업의 80.6%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원안 그대로+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전속계약서를 기반으로 자체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12.6%, 표준전속계약서 외 자체 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1.9% 별도 계약 없이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는 1.9%였음,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2.9%로 조사되었다.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는 비율은 기획업의 소속예술인 수와도 일부 관련이 있는데, 소속예술인이 5인 미만일 때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보완하여 사용하는 비율은

110) 조사결과는 기획업의 소속예술인 수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별도 부여하지 않고, 응답한 표본만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타 조사 자료와 비교 시 유의해야함

79.6%였으나, 5~9인이 소속된 경우는 90.5%가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0인 이상의 대중예술인이 소속된 경우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체 계약서를 활용하는 비율이 21.4%로 다른 규모의 기획업에 비해 자체 계약서를 활용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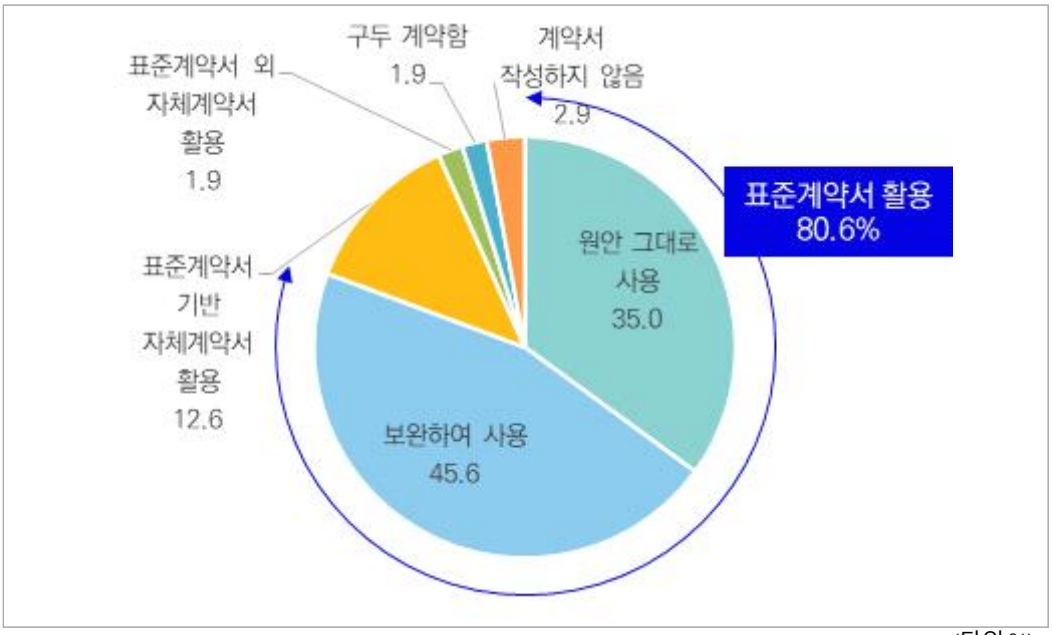

(단위:%)

[그림 1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

[표 9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표본 수 (개)	표준전속 계약서 원안 그대로 사용	표준전속 계약서+ 부속 합의서 형태로 보완하여 사용	표준전속 계약서를 기본으로 작성된 자체 계약서 활용	표준 계약서 외 자체 제작한 계약서를 활용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함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
■ 전체		103	35.0	45.6	12.6	1.9	1.9	2.9
분야	가수 (음악)	54	37.0	33.3	20.4	1.9	3.7	3.7
	연기자 (방송/영화)	49	32.7	59.2	4.1	2.0	-	2.0
소속 예술인 수	1~4인	54	42.6	37.0	9.3	1.9	3.7	5.6
	5~9인	21	23.8	66.7	9.5	-	-	-
	10인 이상	28	28.6	46.4	21.4	3.6	-	-

표준전속계약서 보완하여 활용하는 업체 중 내용을 가장 많이 변경하여 활용하는 부분은 가수 관련 업체는 ‘계약 기간 및 갱신(63.0%)’, ‘수익의 분배 및 정산(44.4%)’ 이었으며, 연기자 부문도 ‘계약 기간(53.3%)’, ‘수익의 분배 및 정산(46.7%)’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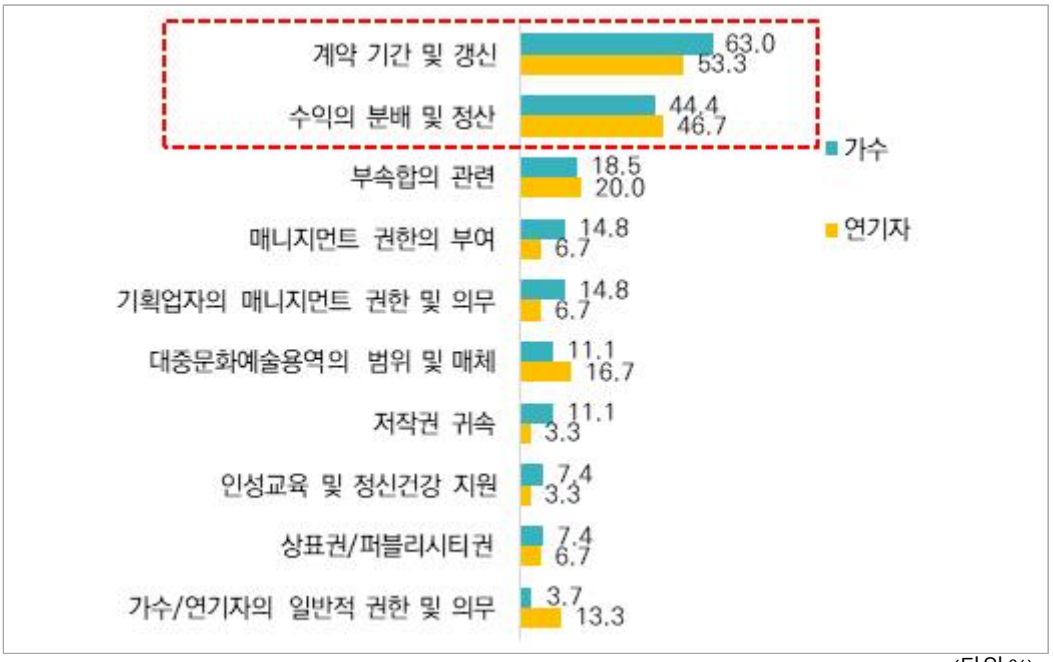

(단위:%)

[그림 13]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항목-표준전속계약서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업체

[표 92] 표준전속계약서 변경 활용 항목-표준전속계약서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업체

(단위:%)

	가수	연기자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14.8	6.7
계약 기간 및 갱신	63.0	53.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11.1	16.7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14.8	6.7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3.7	13.3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7.4	3.3
상표권/퍼블리시티권	7.4	6.7
저작권 귀속	11.1	3.3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3.7	-
수익의 분배 및 정산	44.4	46.7
확인 및 보증	3.7	6.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7	10.0
비밀유지	3.7	3.3
분쟁해결	3.7	3.3
부속 합의 관련	18.5	20.0
청소년의 보호	-	3.3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	3.3

(2) 전속계약 기간

전속계약 기간을 변경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표준전속계약서상 기간을 변경(63.3%)' 하여 활용하는 것이며, '별도 부속 합의서 작성(30.0%)', '구두로 기간 변경(3.3%)'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전속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획업의 80.2%(가수 부문은 79.2%, 연기자 부문은 81.4%)가 '적절하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현재의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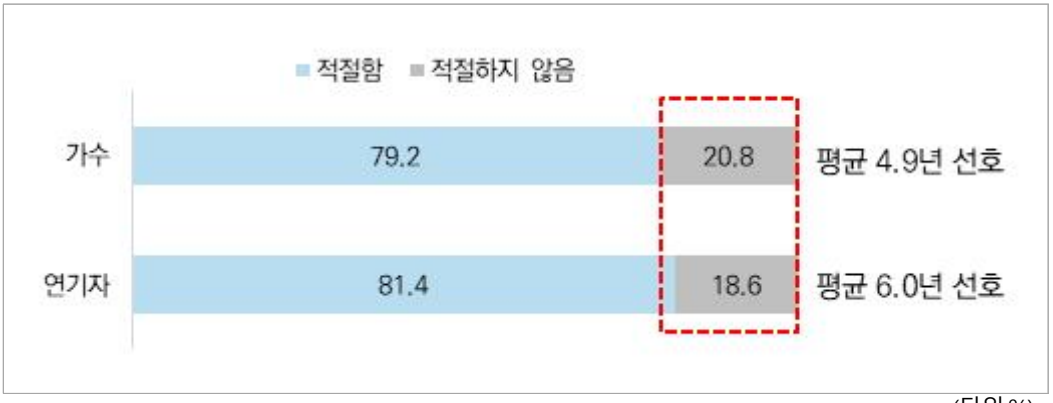

(단위:%)

[그림 14] 최대 7년의 전속 기간의 적절성 평가-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표 93] 최대 7년의 전속 기간의 적절성 평가-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년)	표준편차(년)
■ 전체		91	80.2	19.8	5.4	2.32
분야	가수(음악)	48	79.2	20.8	4.9	2.09
	연기자 (방송/영화)	43	81.4	18.6	6.0	2.56
소속 예술인 수	1-4인	45	80.0	20.0	5.6	2.65
	5-9인	21	85.7	14.3	6.3	3.21
	10인 이상	25	76.0	24.0	4.6	0.89

(3) 활동 범위 확대 및 개인 활동의 제한

소속 대중예술인이 직접 개설한 SNS 등의 활동을 업무 범위에 포함하거나 제한하는지에 대해 15.6%(가수 18.4%, 연기자 12.8%)가 개인이 개설한 SNS도 업무 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자보다 가수 부문 기획업에서 개인의 SNS 활동을 업무 활동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개인이 직접 개설한 것은 활동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19.8%였고, 회사에서 개설하거나 회사 사이트의 하위분류로 개설한 SNS 활동만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는 64.6%였다.

[표 94] 개인이 직접 개설한 SNS 활동을 업무 범위에 포함 및 제한 여부-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SNS 활동 포함	개인이 직접 개설/활동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회사에서 개설하거나 하위분류로 개설한 SNS 활동만 업무 범위에 포함
■ 전체		96	15.6	19.8	64.6
분야	가수(음악)	49	18.4	20.4	61.2
	연기자 (방송/영화)	47	12.8	19.1	68.1
소속 예술인 수	1~4인	48	18.8	14.6	66.7
	5~9인	21	19.0	23.8	57.1
	10인 이상	27	7.4	25.9	66.7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81.6%가 활동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속예술인이 적은 기획업일수록 표준전속계약서에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한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95]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표준전속계약서에 제시 필요 여부-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중 SNS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 전체		38	81.6	18.4
분야	가수(음악)	22	77.3	22.7
	연기자 (방송/영화)	16	87.5	12.5
소속 예술인 수	1~4인	19	94.7	5.3
	5~9인	9	88.9	11.1
	10인 이상	10	50.0	50.0

SNS 등 방송/공연 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는 활동 매체 정도만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으나, 전속계약서에 SNS 등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26.7%로 조사되었다.

소속예술인이 1~4인 규모의 기획업의 경우 활동 매체에만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58.8%, 전속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지만, 소속예술인이 많을수록 개인 SNS 활동은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단위:%)

[그림 15]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포함 범위-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중 SNS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업체

[표 96]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포함 범위-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중 SNS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전속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활동 매체에만 포함시켜야 함	개인 SNS 활동은 제시할 필요가 없음
■ 전체		30	26.7	46.7	26.7
분야	가수(음악)	17	17.6	64.7	17.6
	연기자 (방송/영화)	13	38.5	23.1	38.5
소속 예술인 수	1~4인	17	23.5	58.8	17.6
	5~9인	8	37.5	25.0	37.5
	10인 이상	5	20.0	40.0	40.0

대중예술인의 연예 활동 외 겸업이나 파트타임 등 개인 활동에 대해 20.8%(가수 32.7%, 연기자 8.5%)가 개인의 활동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제한의 범위에 대해 85.0%는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한 범위의 개인 활동((예시) 가수 : 코러스, 세션, 작곡, 작사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예 활동과 무관한 파트타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15.0%로 조사되었다.

소속된 예술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별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반대로 소속예술인의 규모가 클수록 회사 또는 예술인의 이미지와 관련 없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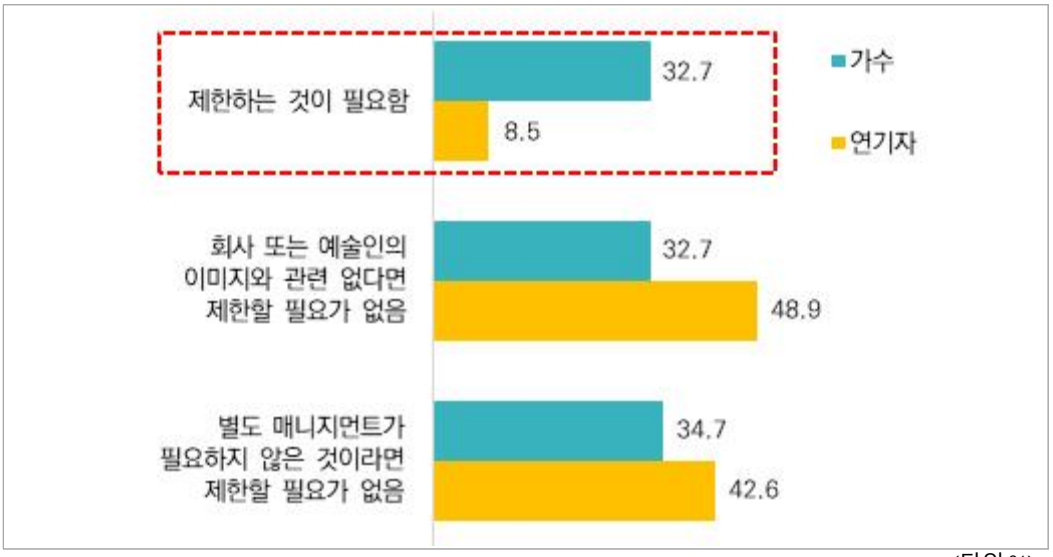

(단위:%)

[그림 16] 회사가 개인의 활동(연예활동 외 겸업, 파트타임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가-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표 97] 회사가 개인의 활동(연예활동 외 겸업, 파트타임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가-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100.0		회사 또는 예술인의 이미지와 관련 없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음	별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한할 필요가 없음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한 범위의 개인 활동	연예 활동과 무관한 파트타임		
■ 전체		96	20.8	85.0	15.0	40.6	38.5
분야	가수(음악)	49	32.7	81.3	18.8	32.7	34.7
	연기자 (방송/영화)	47	8.5	100.0	-	48.9	42.6
소속 예술인 수	1~4인	48	18.8	77.8	22.2	33.3	47.9
	5~9인	21	28.6	100.0	-	38.1	33.3
	10인 이상	27	18.5	80.0	20.0	55.6	25.9

(4) 저작권, 저작인접권

표준전속계약서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항목은 가수의 경우 '저작인접권의 귀속(75.5%)', '저작권의 귀속(69.4%)',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67.3%)'이 가장 많았고, 연기자의 경우 '저작권의 귀속(80.9%)',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72.3%)', '저작인접권의 귀속(66.0%)에 대해 명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소속예술인 수가 적은 기획업일수록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예도 있었다.

[표 98]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 명시 여부-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저작권의 귀속	저작인접권의 귀속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	잘 모름
■ 전체		96	75.0	70.8	69.8	8.3
분야	가수(음악)	49	69.4	75.5	67.3	8.2
	연기자 (방송/영화)	47	80.9	66.0	72.3	8.5
소속 예술인 수	1~4인	48	72.9	70.8	68.8	10.4
	5~9인	21	71.4	61.9	76.2	9.5
	10인 이상	27	81.5	77.8	66.7	3.7

대중문화예술인에 의해 창출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거래(양도, 양수)한 경험에 대해 91.5%는 거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5.8%는 거래/양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거래/양도 경험은 연기자보다 가수 부문 기획업에서 많았으며, 소속 예술인이 5~9인 규모의 중소 기획업에서 거래했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9]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거래 한 경험-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거래한 경험이 없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거래한 경험이 있으나 문제는 없었다
■ 전체		94	91.5	8.5
분야	가수(음악)	48	87.5	12.5
	연기자 (방송/영화)	46	95.7	4.3
소속 예술인 수	1-4인	47	91.5	8.5
	5-9인	21	85.7	14.3
	10인 이상	26	96.2	3.8

(5) 수익 분배

대중문화예술인과의 수익분배를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대해 가장 많이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수익배분 비율에 관한 내용(89.6%)’이며, 그 외 ‘수익금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76.0%)’, ‘비용 정산 범위에 관한 내용(70.8%)’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획업의 규모가 클수록 수익배분 대상 범위에 관한 내용, 비용 정산 범위에 관한 내용, 정산자료 제공 기간에 관한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비율이 높지만, 소속예술인의 수가 10인 미만의 경우 정산자료 제공 기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6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그림 17]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관하여 표준전속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내용(복수응답)-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표 100]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관하여 표준전속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내용(복수응답)-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수익배분 비율에 관한 내용	수익배분 대상 범위에 관한 내용	비용 정산 범위에 관한 내용	수익금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	정산자료 제공 기간에 관한 내용
■ 전체		96	89.6	66.7	70.8	76.0	60.4
분야	가수 (음악)	49	89.8	69.4	67.3	77.6	61.2
	연기자 (방송/영화)	47	89.4	63.8	74.5	74.5	59.6
소속 예술인 수	1~4인	48	85.4	64.6	64.6	75.0	58.3
	5~9인	21	100.0	61.9	66.7	76.2	52.4
	10인 이상	27	88.9	74.1	85.2	77.8	70.4

수익금을 매월 또는 월별 지급하는 비율이 46.9%(가수 57.1%, 연기자 36.2%)로 가장 많았고, ‘용역대금 수령 즉시 지급’하는 경우도 28.1%(가수 20.4%, 연기자 36.2%)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45일 이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7.3%였으며, 소속예술인이 적은 기획업일수록 45일 이내 지급(즉시+매월/월별+45일 이내)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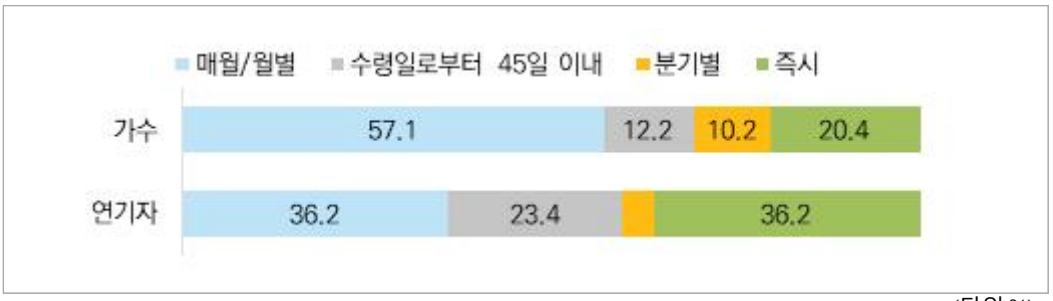

(단위:%)

[그림 18] 수익금 지급 진행 빈도-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표 101] 수익금 지급 진행 빈도-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매월 또는 월별 지급하고 있음	용역대금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하고 있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용역대금 수령 즉시 지급하고 있음
■ 전체		96	46.9	17.7	7.3	28.1
분야	가수(음악)	49	57.1	12.2	10.2	20.4
	연기자 (방송/영화)	47	36.2	23.4	4.3	36.2
소속 예술인 수	1~4인	48	43.8	10.4	10.4	35.4
	5~9인	21	47.6	23.8	4.8	23.8
	10인 이상	27	51.9	25.9	3.7	18.5

정산내역은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또는 원할 때 즉시) 정산내역만 제공하는 경우가 51.0%로 가장 많았고, 37.5%는 주기적(또는 원할 때 즉시)으로 정산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별도의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10.4%로 조사되었다.

소속예술인이 많을수록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정산내역만 제공(또는 원할 때 즉시 열람 가능상태)로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속예술인 수가 5인 미만인 기획업의 18.8%는 별도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2] 정산내역 제공 형태-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요청 여부와 상관 없이 주기적으로 정산내역만 제공 (또는 원할 때 즉시 열람 가능상태)	요청 여부와 상관 없이 주기적으로 정산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공 (또는 원할 때 즉시)	별도 정산내역 제공하지 않음	SNS 등으로 제공
■ 전체		96	51.0	37.5	10.4	1.0
분야	가수(음악)	49	51.0	34.7	14.3	-
	연기자 (방송/영화)	47	51.1	40.4	6.4	2.1
소속 예술인 수	1~4인	48	47.9	33.3	18.8	-
	5~9인	21	52.4	47.6	-	-
	10인 이상	27	55.6	37.0	3.7	3.7

(6) 계약해지 및 위약벌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유지 문제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주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기자(23.4%)보다 가수(54.2%)에서 그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기자는 '별도의 금전 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 해지만을 진행(27.7%)', '손해배상금만을 지급(25.5%)'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가수와 차이를 보였다.

[표 103]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유지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 처리 방법-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손해 배상금만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	위약금만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	손해 배상금과 위약금을 함께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	손해 배상금 및 위약금의 지급과 함께 별도의 요구를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별도의 금전 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 해지만을 진행	기타 (해지 경험 없음)
■ 전체		95	14.7	7.4	38.9	5.3	26.3	7.4
분야	가수(음악)	48	4.2	6.3	54.2	6.3	25.0	4.2
	연기자 (방송/영화)	47	25.5	8.5	23.4	4.3	27.7	10.6
소속 예술인 수	1~4인	48	10.4	8.3	37.5	8.3	29.2	6.3
	5~9인	21	19.0	9.5	28.6	4.8	28.6	9.5
	10인 이상	26	19.2	3.8	50.0	-	19.2	7.7

일반적인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벌의 대상은 양자 모두인 경우가 52.6%(가수 58.3%, 연기자 46.8%)로 가장 많았으나, 대중예술인이 위약벌 대상이라는 경우도 46.3%(가수 41.7%, 연기자 5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4] 일반적인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벌의 대상-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인	양자 모두
■ 전체		95	1.1	46.3	52.6
분야	가수(음악)	48	-	41.7	58.3
	연기자 (방송/영화)	47	2.1	51.1	46.8
소속 예술인 수	1~4인	48	2.1	37.5	60.4
	5~9인	21	-	61.9	38.1
	10인 이상	26	-	50.0	50.0

계약해지 시 현재 배상 범위는 가수는 ‘손해배상+위약금’ 형태인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고, 연기자는 ‘손해배상(39.1%)’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향후 포함되어야 하는 수준으로 가수, 연기자 모두 ‘손해배상+위약금’ 형태를 희망하는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다.

[표 105] 계약해지 시 배상 수준과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을 희망하는 배상 범위-표준전속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손해배상	위약금	손해배상+ 위약금	상황에 따라 다름	계약 해지만
■ 전체		94	34.0	13.8	42.6	6.4	3.2
분야	가수(음악)	48	29.2	12.5	50.0	4.2	4.2
	연기자 (방송/영화)	46	39.1	15.2	34.8	8.7	2.2
소속 예술인 수	1~4인	48	29.2	14.6	45.8	6.3	4.2
	5~9인	21	42.9	9.5	28.6	14.3	4.8
	10인 이상	25	36.0	16.0	48.0	-	-

(7) 퍼블리싱과 실연권, 음반 크레딧에 관한 사항(가수 부문)

가수 부문의 경우 응답 기획업의 48.9%는 퍼블리싱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퍼블리싱을 하는 기획업 중에서는 45.8%가 ‘별도 계약 없이 전속계약서에

포함’ 하여 퍼블리싱 업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6] 퍼블리싱 계약 여부-퍼블리싱을 하는 기획업

(단위:%)

		표본 수 (개)	별도 계약 없이 전속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부속 합의서로 계약	퍼블리싱을 전담하는 자회사와 별도 계약	계약 없이 구두로만 진행	기타
■ 전체		24	45.8	20.8	12.5	16.7	4.2
소속 예술인 수	1~4인	24	45.8	20.8	12.5	16.7	4.2
	5~9인	14	42.9	14.3	14.3	28.6	-
	10인 이상	4	75.0	25.0	-	-	-

퍼블리싱 계약을 하는 기획업의 경우 52.2%가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에 대해서도 기존 수익배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만 별도 수익배분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21.7%로 조사되었다.

[표 107] 퍼블리싱을 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수익배분-퍼블리싱을 하는 기획업

(단위:%)

		표본수 (개)	기존 수익배분율 적용	저작권에 대해서만 별도의 수익배분율 적용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만 별도의 수익배분율 적용	기타
■ 전체		23	52.2	17.4	21.7	8.7
소속 예술인 수	1~4인	23	52.2	17.4	21.7	8.7
	5~9인	14	57.1	14.3	14.3	14.3
	10인 이상	4	50.0	-	50.0	-

가수 또는 실연자의 실연, 해외공연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38.3%는 전속계약서에 이미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27.7%는 부속 합의서로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5%는 계약 없이 구두 협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12.8%는 계약서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으나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소속된 예술인 수가 많을수록 계약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12.8%만 이를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108] 실연, 해외공연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 포함에 대한 의견-가수 부문

(단위:%)

		표본 수 (개)	전속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부속 합의서로 계약	계약 없이 상호 협의로 진행 (구두 협의 등)	계약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포함할 필요 없음
■ 전체		47	38.3	27.7	8.5	12.8	12.8
소속 예술인 수	1~4인	30	40.0	23.3	13.3	3.3	20.0
	5~9인	8	37.5	37.5	-	25.0	-
	10인 이상	9	33.3	33.3	-	33.3	-

가수 또는 실연자의 음반 크레딧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17.0%는 전속계약서에 이미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17.0%는 부속 합의서로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5%는 계약 없이 구두 협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6.4%는 계약서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으나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51.1%는 이를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여 실연, 해외공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고, 소속예술인 수가 적을수록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9] 음반 크레딧에 대한 내용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가수 부문

(단위:%)

		표본 수 (개)	전속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부속 합의서로 계약	계약 없이 상호 협의로 진행 (구두 협의 등)	계약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포함할 필요 없음
■ 전체		47	17.0	17.0	8.5	6.4	51.1
소속 예술인 수	1~4인	30	13.3	16.7	6.7	6.7	56.7
	5~9인	8	37.5	25.0	-	-	37.5
	10인 이상	9	11.1	11.1	22.2	11.1	44.4

(8) 성희롱/성폭력, 우울증 등에 대한 지원

기획업의 49.0%(외부 강사를 통한 교육 15.7%+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강좌를 통한 교육 33.3%)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5%는 구두로 간단한 사항만 전달하고 있으나, 24.5%는 어떤 교육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련한 교육 시행은 기획업에 소속된 예술인 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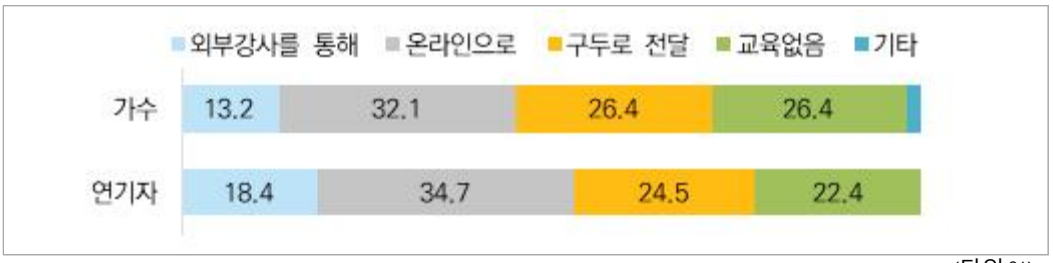

(단위:%)

[그림 19]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진행 여부

[표 110]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진행 여부

(단위:%)

		표본 수 (개)	외부 강사를 통해 직접 교육형태로 진행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강좌를 통해 진행	구두로 간단한 사항만 전달	어떤 교육도 진행하지 않음	기타
■ 전체		102	15.7	33.3	25.5	24.5	1.0
분야	가수(음악)	53	13.2	32.1	26.4	26.4	1.9
	연기자 (방송/영화)	49	18.4	34.7	24.5	22.4	-
소속 예술인 수	1~4인	53	17.0	32.1	24.5	24.5	1.9
	5~9인	21	14.3	33.3	23.8	28.6	-
	10인 이상	28	14.3	35.7	28.6	21.4	-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항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60.4%만 동의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범죄 처벌에 관한 별도 법률로 다뤄야 한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표 111] 성희롱/성폭력 관련 처리 방법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표본 수 (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이유
■ 전체		101	60.4	39.6	
분야	가수(음악)	52	59.6	40.4	- 성범죄 처벌에 관한 별도 법률로 다뤄야 함 (3건) - 거짓 미투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문제 소지가 많음(2건) - 관련 사례가 없어서 판단 불가(2건)
	연기자 (방송/영화)	49	61.2	38.8	
소속 예술인 수	1~4인	53	56.6	43.4	
	5~9인	21	76.2	23.8	
	10인 이상	27	55.6	44.4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35.6%(가수 40.4%, 연기자 30.6%)는 어떤 형태로도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획업에 소속된 예술인의 수가 적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원 방법 역시 주기적인 교육이나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보다는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대중예술인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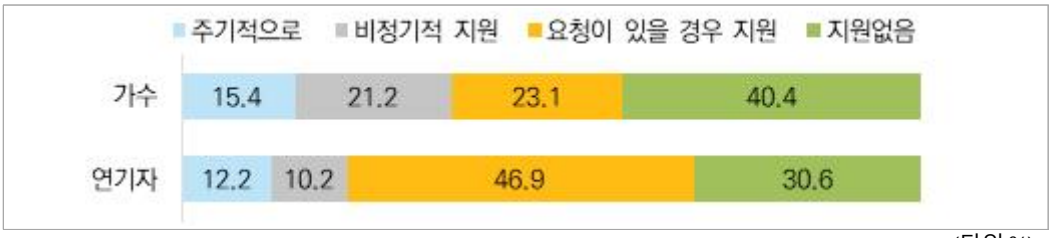

(단위:%)

[그림 20]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방법(복수응답)

[표 112]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방법(복수응답)

(단위:%)

		표본 수 (개)	주기적으로 (주간/월간/분기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음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 비정기적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대중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고 있음	어떤 지원도 하고 있지 않음
■ 전체		101	13.9	15.8	34.7	35.6
분야	가수(음악)	52	15.4	21.2	23.1	40.4
	연기자 (방송/영화)	49	12.2	10.2	46.9	30.6
소속 예술인 수	1~4인	53	11.3	15.1	30.2	43.4
	5~9인	21	14.3	14.3	42.9	28.6
	10인 이상	27	18.5	18.5	37.0	25.9

(9)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필요사항

표준전속계약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기획사별 특수성/대중예술인의 컨디션에 맞는 내용 구성'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위약벌/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제시' > '해외공연, 실연에 관한 내용 포함' > '대중예술인/기획업 간 역할에 대한 범위 제시'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응답하였다.

(10) 그 외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활용[111]

연습생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업 중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원안 그대로 활용하거나 부속합의서 형태로 보완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45.5%로 조사되었다. 27.3%는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자체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18.2%는 표준계약서 외 자체 계약서를 활용, 9.1%는 구두로만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연습생 보유 기획업

(단위:%)

	표본 수 (개)	연습생 표준계약서 원안 그대로 사용	연습생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 형태로 보완하여 사용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자체 계약서 활용	연습생 표준계약서 외 자체 제작한 계약서를 활용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함
■ 전체	11	27.3	18.2	27.3	18.2	9.1
가수(음악)	6	16.7	16.7	33.3	16.7	16.7
연기자 (방송/영화)	5	40.0	20.0	20.0	20.0	-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변경하고 있는 부분은 '계약 기간(66.7%)' > '전속계약 체결(50.0%)' > '계약의 해제(33.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분-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계약 기간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	훈련 활동 비용의 관리	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속계약 체결 등
■ 전체	6	66.7	16.7	16.7	16.7	33.3	50.0

111) 연습생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업은 11개로 전체 표본 수가 적어 응답 내용을 일반화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함

연습생이 데뷔하게 되는 경우 연습생 표준계약서 외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44.4%는 ‘연습생 계약을 종료하고 최대 7년의 전속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있으며, 55.6%는 ‘연습생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전속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있었다.

[표 115] 연습생이 데뷔하게 되는 경우 계약 기간 산정-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연습생 계약을 종료하고 최대 7년의 전속계약을 새로 체결함	연습생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전속계약을 추가로 체결함
■ 전체	9	44.4	55.6

연습생 표준계약서 내용 중 가장 많이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금지’, ‘기획업자의 업무(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였다.

[표 116]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분(복수응답)-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이성 교제 금지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 금지	과도한 노출 및 지나친 성적 표현행위 강요 금지	훈련 활동 범위에 관한 내용	기획업자의 업무(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 전체	6	25.0	50.0	25.0	25.0	50.0

연습생이 계약 기간 내에 데뷔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연장 또는 계약의 종료에 대해 37.5%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공지를 하고 있으나 25.0%는 ‘계약 종료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7] 연습생의 계약 연장 또는 계약 종료에 대한 공지-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	계약 종료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음
■ 전체	9	25.0	37.5	12.5	25.0

(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활용실태[11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유한 기획업체 중 36.4%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원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활용한 자체 부속합의서 활용하는 경우도 36.4%,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112) 청소년 대중예술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업은 11개로 전체 표본수가 적어 응답내용을 일반화 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함

없이 표준전속계약서에 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27.3%로 조사되었다.

가수 부문의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원안 그대로 사용하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없이 표준전속계약서에 준한 경우가 각각 40.0%였으나, 연기자 부문의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활용한 자체 부속합의서 활용하는 경우가 50.0%로 가수 부문보다 연기자 부문에서 자체 부속 합의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66.7%(2건)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가 있는 줄 몰라서였으며, 보호자와 구두로 협의하기 때문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었다.

자체 부속 합의서를 활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권한 명시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2건)하거나, 학습권(1건), 정산금액 지급(1건)에 대해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8]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활용 여부-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유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원안 그대로 사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활용한 자체 부속합의서 활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없이 표준전속계약서에 준함
■ 전체	11	36.4	36.4	27.3
가수(음악)	5	40.0	20.0	40.0
연기자 (방송/영화)	6	33.3	50.0	16.7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내용에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금지’, ‘휴대전화 사용금지’, ‘과도한 노출 및 지나친 성적 표현행위 강요 금지’, ‘훈련 활동 범위에 관한 내용’, ‘이성 교제 금지’, ‘기획업자의 업무(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9]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내용 중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는 내용-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유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금지	휴대전화 사용금지	과도한 노출 및 지나친 성적 표현행위 강요 금지	훈련 활동 범위에 관한 내용	이성 교제 금지	기획업자의 업무(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 전체	6	33.3	33.3	33.3	33.3	16.7	16.7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조항[113]에 대한 시간 기준에 대해 60.0%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라고 응답했지만,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0.0%로 가수보다 연기자 부문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별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66.7%(2건)이며, 별도 동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경우(1)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역 제공 시간이 준수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뮤직비디오 촬영/드라마 촬영 등이 야간시간대를 포함하여 all-day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국/외주제작사 등이 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지정하여 통보하기 때문에' 인 것으로 응답하였다.[114]

청소년 예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은 대부분이 '등교 시간 내에 스케줄 최소화' 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학교 학습 외 별도 학습시간을 부여' 하거나 '개별 과외/또는 보충 수업 지원' 을 하고 있다는 곳은 없었다.

[표 120]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조항에 대한 적용 여부-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유업체

(단위:%)

	표본 수 (개)	대체로 지켜지고 있음	매우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
■ 전체	10	40.0	60.0
가수(음악)	4	25.0	75.0
연기자 (방송/영화)	6	50.0	50.0

(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활용[115]

정기출연 시 52.2%는 대체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작성(대체로 작성 12.8%+건마다 작성 39.4%)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수 부문의 경우 대체로 작성하고 있는 비율이 37.8%(대체로 17.8%+건마다 작성

113)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구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 주당 **35시간** 이내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단,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15세 이상의 청소년	▪ 주당 **40시간** 이내 * 단,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 단,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114) 각각 1건씩 응답했으며, 사례가 적으므로 활용에 유의해야 함

115) 7개 기획업은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아 방송 출연계약서에 대한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20.0%)인데 반해, 연기자 부문의 경우 65.3%(대체로 작성 8.2%+건마다 작성 57.1%)로 연기자 부문에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28.7%로 조사되었는데 가수(48.9%)가 연기자(10.2%)와 비교해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소속예술인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정기출연 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18.5%였으나, 소속예술인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38.3%가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에 따른 차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정기출연)-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

(단위:%)

		표본 수 (개)	전혀 작성하지 않음	가끔 작성하고 있음	대체로 작성하고 있음	건마다 작성하고 있음
■ 전체		94	28.7	19.1	12.8	39.4
분야	가수(음악)	45	48.9	13.3	17.8	20.0
	연기자 (방송/영화)	49	10.2	24.5	8.2	57.1
소속 예술인 수	1~4인	47	38.3	19.1	6.4	36.2
	5~9인	20	20.0	15.0	20.0	45.0
	10인 이상	27	18.5	22.2	18.5	40.7

음악방송이나 일회성 예능 출연은 39.4%가 대체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작성(대체로 작성 16.0%+건마다 작성 23.4%)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수 부문의 경우 대체로 작성하고 있는 비율이 26.6%(대체로 13.3%+건마다 작성 13.3%)인데 반해, 연기자 부문의 경우 51.1%(대체로 작성 18.4%+건마다 작성 32.7%)로 비정기 출연의 경우에도 연기자 부문에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41.5%이며, 가수(64.4%)가 연기자(20.4%)와 비교해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소속예술인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비정기 출연 시 방송출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46.8%로 그 외 규모의 기획업에 비해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122]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음악방송, 1회성 예능 등)-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

(단위:%)

		표본 수 (개)	전혀 작성하지 않음	가끔 작성하고 있음	대체로 작성하고 있음	건마다 작성하고 있음
■ 전체		94	41.5	19.1	16.0	23.4
분야	가수(음악)	45	64.4	8.9	13.3	13.3
	연기자 (방송/영화)	49	20.4	28.6	18.4	32.7
소속 예술인 수	1~4인	47	46.8	19.1	8.5	25.5
	5~9인	20	35.0	15.0	30.0	20.0
	10인 이상	27	37.0	22.2	18.5	22.2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51.3%가 '방송사/외주제작사에서 관행상 사용하지 않아서'였으며, '방송사/외주제작사에서 자체 작성한 방송 출연 계약서를 활용해 오고 있으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35.9%로 나타났다.

[표 123]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기획업

(단위:%)

		표본 수 (개)	방송사/외주제작사에서 자체 작성한 방송 출연 계약서를 활용해 오고 있으므로	방송출연표준 계약서가 있는 줄 몰라서	방송사/외주제작사에서 관행상 사용하지 않아서
■ 전체		39	35.9	12.8	51.3
분야	가수(음악)	29	34.5	17.2	48.3
	연기자 (방송/영화)	10	40.0	-	60.0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1.3%(필요한 편임 44.7%+반드시 필요함 26.6%)였으며, 가수 부문(64.5%)보다 연기자 부문(77.5%)에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없이 잘 진행되어 왔으므로(6건)', '계산서 등을 발행하므로(2건)' 등이며, 필요한 이유로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16건)'서가 가장 많았다.

[표 124]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필요 여부-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

(단위:%)

		표본 수 (개)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으나 있어도 괜찮겠음	필요한 편임	반드시 필요함
■ 전체		94	12.8	16.0	44.7	26.6
분야	가수(음악)	45	15.6	20.0	48.9	15.6
	연기자 (방송/영화)	49	10.2	12.2	40.8	36.7
소속 예술인 수	1~4인	47	17.0	17.0	40.4	25.5
	5~9인	20	10.0	10.0	65.0	15.0
	10인 이상	27	7.4	18.5	37.0	37.0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TV 등에 업로드되는 스페셜/요약/편집/직캠/무대 영상 등을 통해 생성되는 콘텐츠(소속예술인의 얼굴 또는 음악이 포함된)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획사 및 소속예술인에 배분해야 하는가에 대해 79.8%의 기획업에서 ‘배분이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 40.4%+반드시 필요함 39.4%)’고 응답하였다.

[표 125] 방송 출연료 외 방송 출연으로 생성되는 콘텐츠로 인한 수익 배분에 관한 의견-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

(단위:%)

		표본 수 (개)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으나 있어도 괜찮겠음	필요한 편임	반드시 필요함
■ 전체		94	10.6	9.6	40.4	39.4
분야	가수(음악)	45	13.3	8.9	42.2	35.6
	연기자 (방송/영화)	49	8.2	10.2	38.8	42.9
소속 예술인 수	1~4인	47	14.9	8.5	44.7	31.9
	5~9인	20	-	10.0	45.0	45.0
	10인 이상	27	11.1	11.1	29.6	48.1

방송 출연으로 생성되는 콘텐츠의 수익에 대해 ‘콘텐츠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영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66.7%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가 생성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22.6%로 나타났다.

[표 126] 방송 출연료 외 방송 출연으로 생성되는 콘텐츠로 인한 수익 배분 기간
-방송 출연으로 생성된 콘텐츠 수익 배분이 필요하다는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콘텐츠가 생성된 시점부터	콘텐츠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영구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기타	평균 (년)
■ 전체		84	22.6	66.7	6.0	4.8	5.9
분야	가수(음악)	39	28.2	56.4	7.7	7.7	7.5
	연기자 (방송/영화)	45	17.8	75.6	4.4	2.2	3.4

방송 출연으로 생성되는 콘텐츠의 수익은 '분기별/연간 수익의 배분' 방식이 적합하다는 경우가 36.9%, '월별로 발생한 수익의 배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32.1%, '수익 발생 시마다 건별로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0%로 배분 주기에 대한 뚜렷한 선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7] 방송 출연료 외 방송 출연으로 생성되는 콘텐츠로 인한 수익 배분 주기
-방송 출연으로 생성된 콘텐츠 수익 배분이 필요하다는 업체

(단위:%)

		표본 수 (개)	월별로 발생한 수익의 배분	분기별/연간 수익의 배분	수익 발생 시마다 건별로 배분
■ 전체		84	32.1	36.9	31.0
분야	가수(음악)	39	30.8	38.5	30.8
	연기자 (방송/영화)	45	33.3	35.6	31.1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시 포함되어야 하는 수준은 '일부 항목의 경우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27.7%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18.1%는 '계약의 자율성 보장 및 최소한의 가이드로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례별로 다르므로 표준계약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6.4%로 조사되었다.

[표 128]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수준

(단위:%)

		표본 수 (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일부 항목의 경우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계약의 자율성 보장 및 최소한의 가이드로만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사례별로 다르므로 표준계약서 자체가 불필요함
■ 전체		94	27.7	47.9	18.1	6.4
분야	가수(음악)	45	28.9	42.2	22.2	6.7
	연기자 (방송/영화)	49	26.5	53.1	14.3	6.1
소속 예술인 수	1~4인	47	27.7	42.6	21.3	8.5
	5~9인	20	40.0	55.0	5.0	-
	10인 이상	27	18.5	51.9	22.2	7.4

나. 심층 인터뷰 결과

(1) 표준전속계약서

(가) 표준전속계약서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기획업자들은 대중문화예술인과의 전속계약 시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획업자의 대부분은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희는 표준전속계약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 “네. 저희는 활용하고 있죠. 기간, 금액 때문에 변경하지, 전체적인 내용은 변경하진 않아요.”

☞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단계가 아니라 다른 데로 멤버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추가로 합의서를 썼던 것 같아요. 개인과 그룹 사이의 계약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일부 기획업자들은 손해배상, 수익분배, 저작권 관련 조항들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조항이 표준전속계약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거나, 각 예술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조항의 경우,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상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계약 종료 이후의 수익 분배와 연관되어 있어 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90% 이상? 약간 변경은 하는데, 첨부하는 거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귀속. 여기 보면 계약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이게 소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음반, 음원이 계약 기간 끝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서비스는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기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 귀속 부분에서 계약종료 1년간 여기서 만든, 저희 회사에 있을 때 만든 것과 유사한 걸 못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봤을 때 텀이 너무 짧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저희는 기간을 좀 더 늘려서 계약하고 있어요.”

☞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제일 크게는 수익 분배 부분이고요. 수익 분배에 대해서 단순한 분배를 떠나서 분배 방식에 있어서 상세하게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 전속계약 기간

현행 최대 7년으로 정해져 있는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신인의 경우 조금 더 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체로 신인이 아닌 예술인과의 계약에서는 최대 7년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신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2~5년 사이로 계약을 하고, 필요하면 재계약하는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7년의 계약 기간은 기획업자와 예술인 양자 간 모두 부담스러운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연습생을 활용하고 있는 기획업자의 경우에는 연습생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데뷔가 확정되면 별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전속계약 기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최대 7년으로 정해진 전속계약 기간이 짧다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신인을 상대로 한 계약의 경우, 수익 회수 기간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길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신인의 경우, 데뷔하고 바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수익을 창출하여 정산 수익을 지급하는 데에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다소 짧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 발생 외에도 계약체결 시점과 수익 활동을 위한 앨범 발매 등의 시점 간 차이가 큰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데뷔 직전에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자체적으로 전속계약 기간을 보완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부문-대중음악

☞ “신인 7년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년 계약을 하면서 데뷔 이후 7년인데, 사실 아이돌이나 가수가 바로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략) 그래서 7년이 적당하고, 신인은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때에 따라 3년, 5년, 인지에 따라 하는 거죠.”

☞ “사업자로서는 7년도 짧죠. 7년이면 사실 성공해서 한창 시익이 발생할 시기인데 그 때 계약이 끝나잖아요. 적어도 한 회사 만났으면 10년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사실 7년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5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5년도 했었는데, 요즘은 데뷔하자마자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수익이 생기는 게 최소, 그것도 운 좋으면 2년 후부터나 생기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기까지 몇 년은 회사에서 계속 투자만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거예요. 저는 최소 10년 정도로는, 7년에서 10년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면 좋겠어요. 딱 7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만, 연기자 중심의 기획사의 경우 연기자의 경력에 따라 계약 기간을 체결하고 있고, 계약 기간도 1년, 3년, 5년 등으로 체결하고 있어서 계약 기간 최대 7년에 대한 부분은 주로 가수 중심 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이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기자 부문

☞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신인 연기자나 이런 친구들에게는 적용하고 있는데 기존 연기자들은 7년은 상대방도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을 기존 연기자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죠. (중략) 보통 기성 연기자들은 2년 또는 3년 정도를 요구하시지, 7년씩은 무리가 있습니다."

가수 중심 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이라도 아이돌/대중음악 중심이 아닌 독립 음악/레이블 분야의 경우 연기자와 비슷하게 음악인과의 계약을 2년, 3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어서 아이돌/대중음악 중심의 기획업과 차이를 보였다. 즉, 계약 기간 최대 7년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예술인의 기획단계까지 포함되어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획업의 경우 최소 그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수 부문-레이블

☞ "저희는 대부분 2년이나 3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기획사로부터 처음 픽업이 되고 빌드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길게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전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다) 활동 범위, 매체의 다양성, 개인 활동 제한 반영 여부

대부분의 기획업에서 지상파 등에서의 활동은 전속계약범위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뉴미디어로 분류될 수 있는 SNS, 유튜브를 통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회사의 매니지먼트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역시, 그동안 축적된 인지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수익분배의 대상, 활동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가수 부문-대중음악

☞ “활동 매체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것이 저희도 표준전속계약서에 있어야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나 계약하기 편합니다. 매체에 대한 비율은 각각 아티스트랑 협의해서 정하니까, 전속계약서에 활동 매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저희가 부속 합의서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수익분배를 전속계약서 안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광고 수익도, 계약도 나누잖아요. 유튜브나 SNS도 무료로 방송을 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이것 때문에 수익이 생기고 가수로서 광고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중략) 뭔가 PPL을 받든 뭘 하든, 광고 모델 하는 것도 결정하고 회사랑 상의해야 하는 건데, 이미지에 대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 “저희가 표준전속계약서에 추가한 건 그 팀에 대한 공식 채널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는 것을 추가했어요. (중략) 개인적으로 먹방이나 개인 SNS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회사랑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뭔가 협조를 해 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연기자 부문

☞ “저희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기존의 연기자가 독자적으로 자기의 1인 미디어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별도의 부속 합의를 해야겠죠. 저희도 표준계약서에서 사실상 일일이 다루기 애매한 부분들이 인정해요, 그걸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계약서에 있는 것 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부속 합의를 별도로 하죠.”

☞ “계약서상에는 따로 그런 거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직접 유튜브를 한 게 아니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유튜브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계약서, 회사 대 회사 계약서, 예를 들어 갑을병정 이런 식으로 해서 아티스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표준전속계약서상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 “터치를 안 해요. 인지도가 있고 콘텐츠가 좋고 발전시킬 생각을 하면 다른 회사랑 조인해서 3자 계약을 했겠죠.”

가수 부문-레이블

☞ “하려는 편입니다. 여기 4조 2항에 보면 매체가 나오는데, 사실 거기서 부속 합의서 이전에 많이 보완해서 쓰는 편이고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에 대해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걸 배제할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편이에요.”

☞ “이쪽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세미나 형식이든 뭐든 해서 적절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은 좋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이죠. 유튜브 같은 것도 지금은 중요한 플랫폼이니까요”

(라) 저작권, 저작인접권 귀속 여부와 문제점 등

가수 부문의 기획업의 경우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였으며, 계약상에서 수익분배를 어떻게 할지, 계약 종료 후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진행할지 비교적 명확하게 계약서 또는 부속 합의서를 통해 정리하고 있었다. 더불어 저작인접권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었으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연기자 관련 기획업의 경우 저작권보다 초상권이나 저작인접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수 부문-대중음악

☞ "저작권이 모든 저작인접권 포함해서 회사 소속된 기간에는 저희한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계약이 종료되어도 저희가 투자한 비용이 있기때문에 양도되는 대로. 대신 계약이 종료되어도 수익분배는 하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작사나 작곡에 연예인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수익분배 해요."

☞ "저작인접권은 크게 문제 될 게 없는데, 왜냐하면 저작인접권은 돈을 투자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라. 마스터링 권리는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저작인접권을 뮤지션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작권은 작곡가가 갖고 있죠. 작사, 작곡이 참여한 뮤지션이면 그 친구가 가진 거고. 회사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수에 대한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 매니지먼트 수익의 5:5로 나누는 회사도 있고.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가수 부문-레이블

☞ "저작권은 자연권에 가깝기 때문에 창작을 한순간 이미 계약 필요 없이 창작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고. (중략) 저작권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나 이미 공연이나 음반 발매, 음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에 대해서는 아티스트가 직접 퍼블리셔나 저작권 단체를 통해서 징수를 통해서 직접 수행하고요."

☞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저작권이라는 단어로 통칭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회사에서는 저작인접권을 가져가는 것이고, 가수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직접 작사, 작곡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원저작권, 저작인접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저작권으로 통칭하는 게 약간... 이것을 조금은 세분화해서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중략) 예를 들어서 저희 아티스트가 작사 작곡한 곡을 해서 저희가 앨범을 발매했는데, 이렇게 저작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함 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귀속된다고 하면 그들이 이 앨범을 통해서 받는... (중략)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정의 자체가 광범위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연기자 부문

☞ “저작인접권에 관련된 건 충분히 야기 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작인접권은 회사 쪽에 귀속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작 기획부터 쭉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상품을 만드는 제작 기획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해서 앨범이다, 앨범에 제작투자는 나중에 수익분배를 통해서 서로 정산을 하긴 하겠지만 제작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가져가고, 실연에 대한 권리, 아티스트가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하면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아티스트가 100% 가져가듯이 인접권은 회사, 혹은 제작자가 가져가는..”

☞ “만약에 유튜브를 회사가 기획해서 전속 계약되어 있는 연기자를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시켜서 하게 되면 저작권을 회사와 권리를 약정해야겠죠. 그런데 회사가 개입하지 않고 본인이 별도로 1인 방송을 하면서 나오는 것은 또 회사에서 관여할 수는 없겠죠. 회사가 제작비를 쓰고 출연시켜서 제작했다면 회사와 출연자가 권리 관계를 구분 지어야겠지만, 회사 관여 없이 연기자 혼자 한다면 저작권을 전부 연기자가 가져가야겠죠.”

(마) 수익분배방법과 정산내역 제공 여부 등

가수 부문, 연기자 부문 모두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전속계약서에 수익분배 비율 등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전속계약서에서 45일 이내 정산을 하게 되어있는데, 45일이란 기간에 대해 가수 부문 기획업에서는 정산이 사실상 어렵고 분기별 단위 정산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솔로가 아닌 그룹의 경우 정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자 부문의 경우 작품을 진행할 때마다 수익을 정산하고 있었으며, 가수보다는 투자비용에 대한 개념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수 부문-대중음악

☞ “예술인에게 당연히 정산내역은 제공하고 있고, 분기에 한 번 할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는 매월 정산하니까 적어도 분기에 한번은 할 거예요. 예술인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월에 될 수도 있고, 정산내역을 제공하고 있어요. 요새는 예술인들도 정산 내역에 관심이 많아서 보여 달라고 해요.”

☞ “비용을 제외하고 45일. 매달 하기는 힘들고, 분기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 “전속계약서에 보면 45일 이내 정산하고 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상 준수하기는 힘들어요. 특히나 그룹을 가진 회사는, 솔로면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데, 연기자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룹을 가진 회사는, 저희가 원래 하던 건 분기별로 정산해서 익월이었어요. 여기 보면 45일 이내에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키긴 지켜야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임시 정산을 한번 하고, 완벽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산을 한 번 더 하죠.”

가수 부문-레이블

☞ “일단 음원 활용 관련해서 발생한 수익은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제작된 음원에 대한 인접권 수익은 손익분기니까 상계 후에 5 대 5로 분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활동해서 발생한 수익은 7 대 3, 회사가 3, 아티스트가 7로 분배를 하고 있고요. (중략) 요새는 포괄로 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 전체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음원 제작부터 매니지먼트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서 손익 분기 상계를 합니다. (중략) 음원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피지컬 음반 쪽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대신 공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 “계약서상으로 수익분배에 대한 걸 넣죠. 몇 대 몇으로 하고, 음원은 몇대몇 이런 식으로. 정산내역은 저희는 2개월에 한 번씩 정산서와 정산금도 지급하고 있어요. (중략) 처음 계약할 때 그 계약서 내용을 서로 고지를 할 테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하게 하는 건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정산범위에 대해 너무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연기자 부문

☞ “수익 분배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 같아요.”

☞ “표준전속계약서에는 45일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연기자 쪽은 바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입이 매달 생기지는 않잖아요.”

☞ “정산서는 그 연기자가 어떤 수익을 가져왔고 어떤 비용을 지출했고 얼마의 수익을 배분해 줘야 한다는 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연기자에게 교부를 하죠. (중략) 매달 활동이 왕성해서 수익이 매달 어떻게든 조금씩 있다면, 그래서 연기자에게 돌아갈 것이 있다면 어떻게 정산을 했다는 것을 매달 줄 것이고, 매달 발생하지는 않지만 1년에 전체적으로 한 3, 4개월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정산을 지급할 때마다 정산서를 만들어서 연기자 보관용 그리고 회사 보관용, 그래서 연기자 보관용은 당연히 연기자가 소지하지만, 회사 보관용은 연기자가 서명해서 회사에 다시 주죠. 그럼 회사는 그 정산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확인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보관을 하고. 표준계약서에는 정산서를 교부한다 서면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별도로 명시할 이유가 없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바)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기획업 대부분은 수익분배와 정산에 관한 사항이 다소 모호하거나, 반대로 너무 세부적이어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수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하는 데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많은 양의 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대체로 다양한 경우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수 부문-대중음악

☞ “기간에 대해서 양도 기간을 갖고 그다음에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허락을 받는 건데,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가 아니고 소속 연예인과 회사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창작물인데, 연예인이 나가면 항상 연예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너무 연예인 위주의 내용인 것 같아요.”

☞ “상품권, 퍼블리시티권, 저희 수정해서 가고 있는 부분,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도 수익을 정산해야 하는 부분과 계약기간, 정산기간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수 부문-레이블

☞ “이게 매니지먼트 계약서 외에, 가수잖아요, 가수는 가창자를 의미하는데 아티스트는 더 복합적인 개념이고, 그럼 케이스에 따라 다른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포괄적인 계약이 있고, 음원 제작하는 계약이 있고, 그거와 별도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있고,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까 봐 이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보통은 갑과 을이 있으면 대부분 이런 계약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중략) 계약서 만드는 방식은 좀 자유롭게 두고, 다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콘텐츠진흥원에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자기들이 만든 계약서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홍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자 부문

☞ “수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혹시나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안들이 있으면 저희도 조금 더 완화되거나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가장 애매한 부분이 제반비용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나눌 것이고, 어떻게 본인 사유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 게 정해지면 좋겠어요.”

☞ “지금 만약에 부속 합의서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이 표준계약서로만 반영한다고 하면, 물론 약간의 수정을 하고 첨삭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부속 합의서라는 걸로 해서 별도로 합의서를 꾸미기 때문에 현재 표준계약서상에 크게 바꿔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건 사실 없고요, 1인 미디어에 관련된 조항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화한 수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가) 연습생 계약체결 여부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

레이블이나 연기자 부문은 연습생을 두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활용하지 않고, 대중음악 관련 기획업 중 연습생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하고 있었다.

연습생계약서는 표준전속계약서보다 양이 비교적 적고 연습생과 관련한 부분이 많아서 대체로 원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 훈련, 계약 종료와 같은 일부 항목은 내용을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부문-대중음악

☞ "연습생 계약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많아서 진짜 표준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전속계약서는 성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약간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연습생 관련이니까. 계약종료의 효과, 계약 종료가 됐을 때 약간의 권리 관계를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 "연습생 계약서 쓰죠. 전속계약서보다는 조항이 덜 어렵죠. 저희는 연습계약서가 표준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기획사는 한 페이지짜리도 있고, 회사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습생 계약서를 받거든요. 보면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냥 별 법적 효력 없는 연습생 계약서도 있고."

☞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내 계약 기간은 저희도 지키고 있고요. 3년이 지났는데 데뷔하지 못하면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중략) 5조 3항, 투자된 비용의 경우, 예를 들어 단체훈련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저희는 단체 훈련비랑 연습실 임대료, 연습생 관리 담당자 인건비, 연습실 관리비, 그렇게 추가했어요. 이렇게 한 전 저희가 공정위에서 한번 계약서 시정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중략) 5조 4항, 5항에 보면 여기도 비용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은 저희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연습생의 요청이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나) 연습생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

연습생 표준계약서 내용 중 계약해지, 위약벌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데뷔하지 못한 연습생에 대한 비용청구를 위해 훈련 활동비용의 범위에 연습실 임대료, 관리담당자 인건비, 연습생관리비 등을 추가하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습생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활용하는 곳도 있었다.

가수 부문-대중음악

☞ "문체부는 시정명령을 위약벌을 아예 받지 말라는 내용으로 하잖아요. 그게 사실상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이라서 그게 어려워요. (중략) 그 친구들도 투자를 받았지만 결국은 데뷔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라서. 저희가 받아낼 돈도 없잖아요."

☞ "연습생 계약서는 청소년이라서 민감해서, 시정명령도 많이 들어오고. 8쪽 계약해지 부분, 이 부분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문체부는 이것과 별도로 청소년 관련해서 트레이닝비

받지 말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조항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연습생의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지된 건 저희 입장에서 투자니까.”

(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활용 여부 등

청소년 예술인이 속해있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가수 부문-대중음악

☞ “내용 하나도 안 바꿨어요. 수익분배 내용도 아니고, 학습권, 인격권 등 당연한 내용이니까”

☞ “저희도 직접 썼어요. 몇 시 이후에는 자야 하고, 하려면 부모님 동의서 받아야 하고. 계속 받았어요.”

☞ “수정 없이 그거대로 써요. 쓰는데, 사실 이건 방송국이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앨범을 내고 첫 방을 해요. 첫 방을 하는 첫 주의 음악방송들은 사전녹화를 보통 다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녹화가 새벽 1시, 새벽 3시 이래요. 그러면 10시 이전에 안 되고, 수면권이 있고 하잖아요. 그걸 해 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청소년의 기본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야간/새벽에 진행되는 스케줄을 소화하는 부분에 있어 현실적인 스케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수 부문-대중음악

☞ “새벽에 진행해야 하는 스케줄에 대해서는 부모님 동의를 받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1년 치를 받거나. 1년씩을 받든 6개월을 받든 회사마다 다르겠죠. 부모님이나 청소년들도 방송 현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략) 서로 잘 계도하고 알려줘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고 사인을 받고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활동하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날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요즘은 자퇴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자퇴하고 아예 검정고시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편이고, 수면권 같은 경우는, 수면권, 휴식권은 애매한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이게 수면권이 해결되고, 휴식권이 해결되냐? 그런 게 애매한 것 같기는 하고, 용역 시간 제한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죠. 자체적인 콘텐츠 촬영이나 이런 건 물론 있지만, 외부 스케줄을 소화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지키기 힘든 (중략) 사실 스케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 연습할 때도 있고, 상황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장, 이래 놓으면 이 보장을 안 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보장을 하려다 보면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고,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중략) 상황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 안 돼도 문제도 되는 건 아니게끔, 회사가 상습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정황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여지를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4)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가)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직접 체결 경험 유무와 이유, 계약서의 조항 변경이나 출연 조건 변경으로 인한 피해 여부

방송 출연 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주로 고정으로 출연하는 경우에 작성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방송국에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업에서 먼저 요청해서 방송출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계약금과 관련한 사항이 중심이며 별도의 수정 없이 대부분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기획업-방송사 간의 출연계약서는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 아닌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방송 출연계약서나 일종의 합의서 같은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자의 경우 대부분 방송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예능이나 라디오처럼 일회성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초의 계약조건보다 계약 기간이 늘어지거나 변경이 되어도 별도 부속 합의를 하기보다 방송사의 요청을 대체로 수용(항거불능)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부문-대중음악

☞ "인기 가요에 나올 때 방송 출연계약서는 안 쓰는 것 같던데, 출연료는 받아요. 많지는 않지만 출연하면 계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계약서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큰일들이라. 매번 나올 때마다 써야 하잖아요. 4번 나오면 4번 다 써야 하고. 이런 출연계약서는 데일리로 나오는 건 안 쓰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 10부작, 예능 같은 건 나오면 쓰는 것 같아요."

☞ "음반은 안 쓰는데, 근데 이게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더 많기도 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요청해서 써야 한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방송국에서 보내오면 쓰는 거고, 안 오면 안 쓰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방송사 혹은 외주 제작사와 체결은 기획사에서 하시는 거고요. 아티스트랑 하지 않고.

출연료 관련해서 예전에는 멤버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통장은 회사에서 관리했었죠. 요즘은 거의 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요."

☞ "방송사에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양식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도의 출연계약서. 이런 건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송 출연계약서에는 1일 최대 촬영 12시간 초과, 이런 내용은 절대 없어요. 편의시설 제공, 이런 것도 절대 없어요."

가수 부문-레이블

☞ "계약서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합의서 정도만 받았던 것 같고요. 계약은 작가하고. 그게 사례마다 다른 데 작가와 하는 게 70%인 것 같고, 피디가 30%."

☞ "어쩌다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데 있으면, 있는 예도 있고 없는 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자 부문

☞ "방송 출연 다 쓰죠. 연기자들은 방송 출연계약서,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자계약, 네, 갑-을-병 형태로 계약합니다."

☞ "이제 연기자하고 회사하고 제작사하고 이렇게 작성하고, 계약을 아무래도 갑이 제작사 또는 방송사이다 보니, 외주 제작은 다 작성을 하는데 종종 이제 방송사에서 자체 편성을 해서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약 없이 간혹 진행하는 때도 있어요."

☞ "일회성 출연이면 안 쓰고 고정출연이면 작성하고 있고. 예능이나 라디오는 안 쓰고 있어요. 계약을 체결하는 건 방송국이 갑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하자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게 아니면 방송국에서 굳이 안 주면 네 그럼 저희가 일회성이기 때문에."

☞ "그건 방송 제작사마다 달라요. 어차피 금액적인 게 발송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특별하게 쓰지 않을 때도 많고요."

(나)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출연 횟수에 대한 제한이나 연기자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응답이 많았다.

그 외, 방송 출연과 관련하여 출연하는 예술인에 대한 개인적인 스케줄 공유에 대한 제한, 가수의 경우 실연 조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수 부문-대중음악

☞ "OO 방송사나 △△ 방송사 이런 데는 그대로 잘 따르고 만들어진 초안을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는 거기다가 이름하고 이건 정말 너무 불리하다, 그런 경우만 바꾸죠."

☞ “방송사로서는 출연하는 사람이 해외 간다거나 이런 걸 공유받기를 원하는데, 촬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공개를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중략) 연예인의 발언도 영향을 여기저기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통지 의무가 되는 건 지나치지 않나?”

가수 부문-레이블

☞ “최소한의 출연 조건에 대해서 명시한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음악 관련 방송 같은 경우는 파생된 저작권이 있을 건데 거기서 음원이 생산됐다, 그거에 대한 권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기자 부문

☞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방송 출연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하거나 별도 부속 합의로 가거나 하고 있어요.”

☞ “출연계약서에 주연급이고 향후 편집이 돼서 중국에서 재상영이 된다든지 중국에서 수입해 가는 사람이 기존의 OO 연기자, △△△ 연기자를 써서, 시나리오 자체를 수정해서 중국판 ‘▲▲▲ ▲▲’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 이 연기자가 이제 어쨌든 출연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중국에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중략) 출연계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주연 연기자들은 출연계약서에 어떤 초상권이라던가 이런 것이 명시가 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기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수의 경우 공연/행사가 취소되고, 연기자의 경우 작품 활동 시기가 연기되어가 없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방송 출연보다 공연이 중심인 중소레이블의 경우 공연 자체가 취소되면서 금전적인 수익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대관한 장소에 대한 임대료는 지불해야 해서 이에 대한 불만과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음악 부분의 경우에도 해외공연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기존 스케줄을 모두 조정하거나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온라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도록 영역을 확장 중인 곳들도 일부 있었으나, 오프라인을 완벽히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자금력이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레이블의 경우 온라인 활동으로의 투자에 대해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수 부문-대중음악

☞ “행사가 많이 없죠.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됐어요. 다만 수익이 발생하긴 하는데, 오프라인 보다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티켓 값도 약하고, 굿즈, 머천다이즈 판매도 약하고. 그동안 하루 못 보다가 보는 건데, 오프라인 공연에 비해서는 이윤이 절반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직접 보는 것만큼은. 온라인 팬 미팅, 유튜브 찍어서 보여주는 건 있는데, 네이버 V 라이브, 온라인 활동을 하긴 하는데, 역시나 그냥 오프라인 활동에 비해서는 모든 면에서.”

☞ “블루스퀘어, 샤롯데시어터 모두 마스크 쓰고 하고 있는데, 100명, 200명 모이면 되는데 왜 공연은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유튜브 같은 활동은 늘어날 거에요. 팬층은 유지해야 하고, 신규 팬층도 신곡 나오면 홍보도 하고 신규 팬층도 유입해야 하는데,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엔터테인먼트사가 그렇고, 레저,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다 피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 “저희는 콘서트 사업부가 있는데, 다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돌리고 있어요. K콘도 온라인, 9월에 하는 OO 콘서트도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중략) 그런데 사실은 손해죠. 콘서트도 오프라인 해야 현장에서 굿즈도 팔고 다양하게 하고, 뭔가 수익 사업이 되는 건데. 온라인으로 하는 건 임시방편이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 “가수는 제일 매출이 많은 게 행사인데, 행사가 다 없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더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걸그룹은 국내 활동이 많고, 국내에 행사가 진짜 많고요. 해외에 주로 나가는 올해 해외에 한 번도 못 나갔고, A라는 팀은 이번 앨범이랑 저번에 나온 앨범이 사실 앨범 반응이 좋아서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행사를 많이 했을 건데,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중략) OO 같은 경우는 멤버 하나가 올해 군에 입대해요. 원래 해외 활동으로 연기를 3개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해 준다고 다 하는데, 서류를 막상 넣으니까 지금 해외 못 가는데 연기 못 해 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중략) 저희가 브라질 공연을 하고 있었고 연기가 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안 해줘서 그걸 내년으로 부득이하게 연기했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연기하자 하기 전까지 저희는 가는 것으로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못 갈 거니까 안 된다...”

가수 부문-레이블

☞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쪽 업계는 무조건 타격이 있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계획했던 공연들이 다 취소됐고, 행사들도 다 취소됐고, 그런 게 일단 제일 크죠. 저도 각종 지원 사업 혜택 같은 걸 봤는데 그 항목 중에 대부분 필요조건에 대부분 작년 대비, 동기간 대비 매출이 10% 이상 떨어져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업종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초에 활동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없는데, 그거보다 10% 떨어뜨리려면 진짜 굶어 죽으란 얘기인데.”

☞ “일단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건데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공연을 온라인 콘서트를 해서 가자, 현실적이지 않아요. (중략) 하지만 앞으로도 방송 외 플랫폼으로의 비중은 높아지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미디어가 구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옮겨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옮겨지는 과정에서 힘이 그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소수에게 몰렸는데 지금은 더 다양하게 퍼져가고 있고, 이쪽은 완전히 디지털 기반이고 또 대부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처럼 어느 정도는 있으나, 미디어가 가지는 힘이 완전히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개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음악의 소비 행태도 개인적인 소비, 자기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던가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 "공연, 행사를 할 수 없는 게, 행사가 없어진 건 둘째치고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게 제일 크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오프라인 공연을 못 하는 거고. 온라인 공연을 하는 건 사실 예전에도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고. 물론 오프라인 공연이 전혀 없으니까 온라인 공연을 계획해보자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 이후 언택트 형태의 활동이 유지는 될 텐데 수익 모델들에 관한 관심들이 생길 것 같아요. 스트리밍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오프라인 이벤트나 오프라인 상품을 끌어들이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었는데 그게 한 번 깨지고 나니까 온라인 자체에서 낸 수익에 대한 판로 개발이 일어난 거 같고, 거기서 성공 케이스가 나타나니까 이제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에서의 수익 모델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해요. (중략) 지금 마트도 영업하고 대중교통 수단도 영업하고 심지어 뮤지컬이나 클래식도 공연하고 있잖아요. 대중음악만 못 하게 하는 거고. 규칙을 지키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그걸 아예 원천봉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오프라인 공연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연기자 부문

☞ "피해가 크죠. 취소되면 제작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사전제작 드라마는."

☞ "우리도 피해로 봤을 때 기존에 하려고 했던 작품들, 예를 들어서 해외 촬영, 로케이션 부분에서 섭외가 안 되다 보니까 촬영이 무산되고 연기되고 애초에 1년에 잡아 놨던 계획들이 하나씩 밀려지게 되면서 뒤에 거 때문에 앞에 거를 못하게 되고...(중략) 유튜브 시장 엄청 수입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서 저희 회사 연기자도 코로나 관계없이 유튜브를 이번에 회사 처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잘되고 있고 기대도 되고 있고, 플랫폼들이 저희 매니지먼트사와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OO 포털사나 △△ 라던가 ◇◇ 이런 쪽에서 콘텐츠 제작을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4. 요약 및 결론

가. 표준전속계약서 내용에 대한 개선 필요 부분

(1) 표준전속계약서 활용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비율은 대중예술인은 59.0%, 기획업은 35.0%로 조사되었다.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에 부속 합의서를 통해 보완하여 활용하는 비율은 예술인은 17.0%, 기획업은 45.6%로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또는 부속 합의서를 통해 보완하여 활용하는 비율은 예술인 76.0%, 기획업은 80.6%로 조사되었다.

표준전속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이 변경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계약 기간 및 갱신(가수 부문 기획업 63.0%, 연기자 부문 기획업 53.3%, 대중예술인 38.5%)’, ‘수익의 분배 및 정산(가수 부문 44.4%, 연기자 부문 46.7%, 대중예술인 46.2%)’, ‘저작권 귀속(가수 부문 11.1%, 연기자 부문 3.3%, 대중예술인 46.2%)’ 등으로 조사되었다.

(2) 전속계약 기간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최대 7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중예술인의 75.3%(적절한 기간은 평균 3.9년)가 해당 기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획업도 19.8%(적절한 기간은 평균 5.4년)가 7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가수 부문보다는 연기자 부문에서 현재의 최대 7년이 길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3) 활동 범위, 매체의 다양성, 개인 활동 제한 반영 여부

전속계약 체결 시 활동 매체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대중예술인의 93.0%(대체로 필요함 47.8% + 반드시 필요함 45.2%)가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주로 ‘활동 범위가 명확해야 일하기가 쉬우므로’ >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므로’ > ‘원하지 않은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에 대중예술인의 64.7%, 기획업의 81.6%가 “필요

하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범위는 ‘활동 매체만 포함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대중예술인 38.6%, 기획업은 46.7%, ‘전속 계약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대중예술인은 25.7%, 기획업은 26.7%였다. 개인의 SNS 활동은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대중예술인 31.7%, 기획업 26.7%로 조사되었다.

회사가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회사 또는 예술인의 이미지와 관련 없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이 대중예술인 54.2%, 기획업 40.6%로 가장 많았고, ‘별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도 대중예술인 36.5%, 기획업은 38.5%로 조사되었다.

반면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은 대중예술인은 9.3%, 기획업은 20.8%로 나타났으며,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한 범위의 개인 활동’ 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대중예술인 75.9%, 기획업 85.0%)는 의견이 있었다.

(4) 저작권, 저작인접권 귀속 여부와 문제점

대중예술인 중 전속계약서에서 저작권을 사업체에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례는 11.2%,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례는 35.9%, 기여도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는 사례는 29.5%로 조사되었으나,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도 일부 있었다.

기획업은 표준전속계약서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항목은 가수 부분은 ‘저작인접권의 귀속(75.5%)’, ‘저작권의 귀속(69.4%)’,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67.3%)’ 이 가장 많았고, 연기자 부분은 ‘저작권의 귀속(80.9%)’,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72.3%)’, ‘저작인접권의 귀속(66.0%)에 관해 명시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기획업 역시 소속예술인 수가 적은 기획사일수록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기획업 중 5.8%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거래/양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거래/양도 경험은 연기자보다 가수 부문 기획업에서 많았으며, 소속예술인이 5~9인 규모의 중소 기획업에서 거래했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수익분배방법과 정산내역 제공 여부

대중예술인과 기획업과의 수익분배를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대해 가장 많이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수익배분 비율에 관한 내용(대중예술인 85.9%, 기획업

89.6%)’ 이며, 그 외 ‘비용 정산 범위에 관한 내용(대중예술인 54.2%, 기획업 70.8%)’, ‘수익배분 대상 범위에 관한 내용(대중예술인 53.2%, 기획업 66.7%)’, ‘수익금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대중예술인 51.9%, 기획업 70.8%)’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산자료 제공 기간에 관한 내용’ 은 대중예술인은 33.0%만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기획업은 60.4%가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수익금을 매월 또는 월별 지급하는 비율이 대중예술인은 30.8%, 기획업은 46.9%로 용역대금 수령 후 45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는 사례는 대중예술인은 61.9%(즉시 13.5%+매월 또는 월별 30.8%+45일 이내 17.6%), 기획업은 92.7%(즉시 28.1%+매월 또는 월별 46.9%+45일 이내 17.7%)인 것으로 대중예술인과 기획업 간 응답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정산내역은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또는 원할 때 즉시) 정산내역만 제공하는 사례가 대중예술인은 45.8%, 기획업은 51.0%로 가장 많았고, 대중예술인 중 22.1%, 기획업 중 37.5%는 주기적(또는 원할 때 즉시)으로 정산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별도의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대중예술인은 22.4%, 기획업은 10.4%로 조사되었다.

(6) 퍼블리싱과 실연권, 음반 크레딧에 관한 사항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가수 또는 겸업 전속 대중예술인 중 35.6%, 기획업 중에서는 45.8%가 ‘별도 계약 없이 전속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리싱 계약을 하는 가수 또는 겸업 대중예술인 중 61.1%, 기획업 중 52.2%가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에 대해서도 기존 수익배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만 별도 수익배분율을 적용하는 비율은 대중예술인은 25.9%, 기획업은 21.7%로 조사되었다.

가수 또는 실연자의 음반 크레딧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중예술인 중 36.7%, 기획업 중 38.3%는 전속계약서에 이미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대중예술인 중 23.3%, 기획업 중 27.7%는 부속 합의서로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중예술인 중 10.0%, 기획업 중 8.5%는 계약 없이 구두 협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예술인 중 11.1%, 기획업 중 12.8%는 계약서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으나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대중예술인 중 16.7%, 기획업 중 12.8%는 이를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음반 크레딧에 대한 내용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대중예술인 중 40.0%는 전속계약서에 이미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기획업은 17.0%만 전속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중예술인 중 23.3%, 기획업 중 17.0%는 부속 합의서로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중예술인 중 14.4%만 이를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기획업은 51.1%가 음반 크레딧 관련 내용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7) 성희롱/성폭력, 우울증 등에 대한 지원

대중예술인의 52.6%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어떤 교육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기획업은 24.5%만 어떤 교육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은 '외부 강사를 통해 직접 교육형태로 진행' 한 사례는 대중예술인은 9.6%, 기획업은 15.7%,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강좌를 통해 진행'한 사례는 대중예술인은 8.0%, 기획업은 33.3%였으며, '구두로 간단한 사항만 전달' 한 사례는 대중예술인 24.7%, 기획업 25.5%로 조사되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항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대중예술인 중 96.8%가 동의하고 있으나 기획업은 60.4%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속사로부터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대중예술인 67.6%, 기획업은 35.6%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획업은 소속된 예술인의 수가 적을수록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대중예술인의 요청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대중예술인은 15.7%, 기획업은 34.7%로 응답하였고, '주기적으로(주간/월간/분기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음',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 비정기적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 받는 경우가 대중예술인은 각각 8.3%인데 반해, 기획업은 각각 13.9%, 15.8%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지원 방법은 주로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35.6%)' 이며, 그 외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31.7%)',

‘내부 상담/교육 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30.7%)’ 등의 형태로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속사로부터 주기적 또는 특정사안 발생 시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중예술인 중 25.7%는 소속사에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요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수보다 연기자에서 그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청소년 연기자에서 신청 비율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표준전속계약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대중예술인은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에 대한 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수익분배 및 정산과 관련한 정확한 기준 기재’ > ‘계약 기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획업은 ‘기획사별 특수성/대중예술인의 컨디션에 맞는 내용 구성’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위약벌/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제시’ > ‘해외공연, 실연에 관한 내용 포함’ > ‘대중예술인/기획업 간 역할에 대한 범위 제시’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응답하였다.

나.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대한 활용

과거 연습생 활동을 했거나 현재 연습생인 응답자 중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원안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혹은 활용했던) 비율은 12.5%이며, 부속 합의서 형태로 보완활용 8.9%로 나타났다. 연습생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업 중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원안 그대로 활용하거나 부속 합의서 형태로 보완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45.5%로 조사되었다. 27.3%는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자체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18.2%는 표준계약서 외 자체 계약서를 활용, 9.1%는 구두로만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변경하고 있는 부분은 ‘계약 기간(연습생 56.3%, 기획업 66.7%)’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연습생 37.5%, 기획업 33.3%)’, ‘전속계약 체결 등(연습생 37.5%, 기획업 50.0%)’ >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연습생 31.3%)’, ‘훈련 활동비용의 관리(연습생 31.3%, 기획업 16.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생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 연습생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9.6%는 인성교육이나 정신건강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기적으로

(주간/월간/분기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음’,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 비정기적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을 받은 경우가 각각 8.9%였으며,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대중예술인의 요청할 경우 지원’을 받은 경우는 12.5%로 조사되었다.

연습생 활동 경험자 중 소속사로부터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내부 상담/교육 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를 요청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9.4%였고,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가 3건, ‘내부 상담/교육 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가 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결론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예술인 76.0%, 기획업 80.6%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행 최대 7년의 전속계약 체결 기간에 대해 기획업과 대중예술인 간의 “부적절하다”라는 비율은 거의 반대의 비율을 보일 정도로 의견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기획업에서도 적절한 최대 전속계약 기간을 7년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나 그 비율이 낮았다. 가수의 경우 처음 훈련부터 데뷔해서 일정 기간 수익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현재의 최대 7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하다는 것이 기획업의 의견이지만, 대중예술인으로서는 인생의 한 사이클(군에 입대 시 해당 기간은 제외되므로 거의 10년에 가까운)을 전속계약을 체결한 기획사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대중예술인뿐만 아니라 기획업자도 정확히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고,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전속계약서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연결되어 수익분배와 정산내역 제공과 관련하여 정산자료 제공 기간에 관한 내용을 전속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대중예술인과 기획업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수익금 배분 주기에 대한 부분도 대중예술인과 기획업 간 응답 내용 역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기획업은 대중예술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자주, 더 명확하게 수익배분과 정산내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대중예술인의 경우 상대적

으로 덜 명확하고 더디게 수익배분과 정산내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획사의 규모, 대중예술인이 속해있는 기획사의 규모 차이도 물론 있겠으나 수익배분과 정산내역 제공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만큼 분쟁의 소지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대중예술인의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대중예술인과 기획업 간 응답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중예술인의 52.6%가 성희롱/성폭력 관련해 어떤 교육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지만, 기획업은 그 절반인 24.5%만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성교육이나 정신건강 관련 지원도 대중예술인은 67.6%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기획업은 35.6%만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이었다. 대중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우울증에 대한 이슈는 지속해서 회자하고 있으며, 특히 유명 대중예술인의 잇따른 자살, 성폭력 등의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이들 예술인을 충분히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조사의 한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계약서는 표준전속계약서지만, 아직도 일부 기획업과 대중예술인들은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계약서나 어떤 문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 표본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표준전속계약서 활용률을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속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전속계약을 체결한 대중예술인이나 전속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일부 기획업과 대중예술인은 표준전속계약서 내용 자체에 대한 의견이 아닌 전속계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므로 계약상의 이슈 사항이 모두 표준전속계약서의 이슈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제5장
표준계약서의 개선 방안

제5장 표준계약서의 개선 방안

1. 표준계약서 개선의 방향성

현재의 표준계약서 활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표준계약서 자체에 대한 개선과 표준계약서의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 장은 전자에 대하여 현행 표준계약서의 부적절한 부분 혹은 규정 내용의 부족 부분 등을 도출하고 이를 적절하게 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일지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전제로 표준계약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표준계약서의 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표준계약서의 규정을 수정 혹은 보완하기 위해서는 ⅰ) 기존 표준계약서 규정의 개정, ⅱ) 별도 부속 합의서 등의 추가, ⅲ) 신규 표준계약서의 개발을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존 표준계약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은 현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표준계약서의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준계약서 범위 밖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별도 부속 합의서 등을 추가하는 방식은 상위 단계 대상에 대한 포괄적 문제해결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기존 표준계약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단점이다. 신규 표준계약서 개발을 통한 방식은 산업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나,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재적 문제를 비롯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표준계약서를 개선할 것인지는 논란이 되는 쟁점들의 내용과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논의한 쟁점과 현황조사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행 표준계약서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각각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혹 부속 합의서 형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표준계약서 항목을 명확히 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정도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설사 부속 합의서를 마련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률의 내용과 규범의 일반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진행하였다.

둘째, 개정 대상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어느 범위로 한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표준계약서는 총 6가지 종류로서 표준전속계약서 2종과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종, 그리고 청소년 표준 부속 합의서와 연습생 표준계약서 각 1종이다. 이들

표준계약서 등은 대체로 2018년 또는 2019년 사이에 제정된 것으로 아직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시기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표준전속계약서와 방송출연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된 것은 2018년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등을 통하여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현행 표준계약서의 평가와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이 용이한 면이 있다. 반면, 2019년 제정된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평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그 시행 기간이 다소 불충분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이에 표준계약서 개정(안)의 도출은 표준전속계약서 2종으로 한정한다.

셋째, 표준계약서에 어떠한 정도로 규범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황조사 결과 등을 보면 각 응답자가 겪은 관련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된 부분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제시되는 사항들이 표준계약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응답자가 경험한 각 계약의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하다. 즉,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 자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보다는 개별 계약에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 인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표준계약서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살펴야 한다. 표준계약서의 역할과 한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계약은 대상 산업 및 사례에 대한 특수성과 보편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나, 표준계약서는 현실적으로 사례에 대한 특수성까지 담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명확히 갖는다. 사례에 대한 특수성을 무리하게 포섭하다 보면 오히려 해당 표준계약서의 활용 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드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에 사례에 대한 특수성 관련 문제들은 개별 계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표준계약서에서는 산업적 특수성과 보편성, 그리고 사례에서의 보편성을 기준으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한다. 실무적으로도 표준계약서의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각기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넷째, 계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는 서로 동일한 지위 하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에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은 불공정 계약으로서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는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 역시 거래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 간 지위의 동일성은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에 표준계약서 개정사항을 도출하면서 당사자 일방에 불공평한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양 계약 당사자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대중문화예술산업 구성원 간 첨예한 대립이 유지되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특히 개별

계약에서의 쟁점을 포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사항들을 다수 가지고 있다. 이들 논란의 내용은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산업 내 구성원 간 일정한 합의가 수반되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후자에 관한 사항을 단순히 산업적 이익 혹은 공익적 이유만으로 표준계약으로 만들어서 구성원에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다소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섣불리 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두었다.

2.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가. 개정(안)

[표 129]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가수'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하며, '기획업자'는 '가수'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수'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가수'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하며, '기획업자'는 '가수'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수'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新設)	**제2조 (신의성실)** 이 계약의 당사자인 '기획업자'와 '가수'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가수'는 '기획업자'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기획업자'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다만 '가수'가 '기획업자'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기획업자'는 '가수'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가수'의 사생활보장 등 '가수'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가수'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기획업자'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기획업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제3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가수'는 '기획업자'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기획업자'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다만 '가수'가 '기획업자'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획업자'는 '가수'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가수'의 사생활보장 등 '가수'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수'는 계약 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기획업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 때는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년 _____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가수'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기획업자'와 '가수'가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가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_____년 _____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가수'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계약 기간 연장 일수는 '기획업자'와 '가수'가 합의하여 정한다. 1. 군 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가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이 계약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4조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①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2. 배우, 모델, 성우, TV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단, '기획업자'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제5조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①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 출연, 광고 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 2. 배우, 모델, 성우, TV 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단, '기획업자'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활동 ②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매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2.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3.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4.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5.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 범위와 대중문화예술용역 매체 등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활동 ②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매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2.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3.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4.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5.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 범위와 대중문화예술용역 매체 등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가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 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 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제반 지원 ② '기획업자'는 '가수'를 대리하여 제3자와 '가수'의	**제6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가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 시행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 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제반 지원 ② '기획업자'는 '가수'를 대리하여 제3자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획업자'는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고, 미리 '가수'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 '가수'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기획업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가수'의 동의를 얻는다. ④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준비 이외에 '가수'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할 수도 없다. ⑥ '기획업자'는 '가수'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하면서 '기획업자'는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고, 미리 '가수'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 '가수'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기획업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준비 이외에 '가수'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⑥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⑦ '기획업자'는 '가수'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⑧ '기획업자'는 '가수'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기획업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수'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가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이에 응한다. ② '가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다. ③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	**제7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가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가수'는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서류 등 매체의 종류를 불문)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기획업자'는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가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다. ④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

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가수'는'기획업자'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가수'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가수'는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업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가수'는 계약 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의 내용과 중복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의 효력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가수'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획업자'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때에 '기획업자'에게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가수'는 이 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기획업자'에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는 '가수'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가수'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가수'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는 '가수'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가수'에게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가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상표권 등)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하기 위해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기획업자'는 전단에 따라 등록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가수'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상표권 등의 귀속)** ① 계약 기간 중 '기획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가수'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및 기타 '가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사용하여 상표 또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출원.등록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상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계약종료에 따라 '가수'에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계약 기간의 종료 이전까지 '가수'와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기획업자'는 이들 권리 양도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기획업자'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	**제10조 (가수 자체의 재산적.인격적 권리)** ① 본 계약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수'의 성명, 사진, 초상, 필적 및 기타 '가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가수'에게 있으며, '기획업자'는 계약 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

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 '기획업자'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가수'의 명예나 기타 '가수'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다.	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은 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계약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적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수'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가수'의 명예 등 인격이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기획업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매출의 ____%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가수'가'기획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가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한다. ③ 계약종료 후 1년간 '가수'는 '기획업자'가 '가수'를 통하여 개발.제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해당 콘텐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예컨대, 가수가 동일 곡을 재가창한 음반, 디지털파일 등의 녹음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이 조항과 관련하여 '기획업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가수'는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활용을 통해'기획업자'의 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1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 기간 중 '가수' 또는 '가수'의 활동과 관련하여 창출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 귀속되며,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법이 정한 권리(저작인접권 등)는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귀속한다. ②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 대상이 포함된 콘텐츠를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기간에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때 콘텐츠는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매체에 한정한다. ③ '가수'는 '기획업자'가 '가수'를 통하여 (콘텐츠의 소재로) 창출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계약 종결일부터 1년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콘텐츠(예컨대, 가수가 동일 곡을 재 가창한 음반, 디지털파일 등의 녹음물)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기획업자'와 '가수'는 양자가 보유한 저작권 및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법이 정한 권리(저작인접권 등)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치창출 및 수익 확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기획업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12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8조 부터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기획업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수'는 이와 같은 '기획업자'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가수'는 이와 같은 '기획업자'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기획업자'가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단,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눈다.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기획업자'와 '가수'가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 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가수'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기획업자'가 '가수'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기획업자'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가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가수'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비용을 '기획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⑥ '가수'의 귀책사유로 '기획업자'가 '가수'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가수'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⑦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수'에게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기획업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	**제13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다음 각호의 모든 수익(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매출 수익은 제외)은 일단'기획업자'가 수령하며, 이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1. 음반 및 콘텐츠 판매에 관한 수익 2.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수익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에 관한 수익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기획업자'와 '가수'에 분배하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수익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1. '가수'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 2. 광고수수료 비용 3. 기타 '기획업자'가 '가수'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 ④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분배 시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이에 대한 '기획업자'와 '가수' 간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⑤ '가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획업자'가 '가수'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이 금원 및 배상에 소요된 비용을 '가수'의 수익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수'에게 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사유에 한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45일에서 90일의 범위에서 금원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한다. '가수'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가수'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기획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한다. ⑨ '기획업자'와 '가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⑦ '기획업자'는 제1항의 수익을 '가수'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수익의 정산내역(총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을 '가수'에게 제공한다. 이때 '가수'는 필요하면 정산내역에 대하여 '기획업자'에게 정산내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정산내역의 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⑧ '가수'는 필요시 '기획업자'에게 정산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기획업자'와 '가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新設)	**제14조 (제반 비용의 부담)** ① '기획업자'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반 비용은 '가수'의 동의하에 '가수'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기획업자'는 '가수'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합리적인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비용을 '기획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3조 (확인 및 보증) ① '기획업자'는 '가수'에 대해 계약체결 당시 제5조 제1항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② '가수'는 '기획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이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이 계약의 체결이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계약기간 중 이 계약내용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제15조 (확인 및 보증)** ① '기획업자'는 '가수'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등록번호 : _____ 2. 제5조 제1항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적절히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적절한 능력을 계약체결 당시 갖추고 있다는 것 ② '가수'는 '기획업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이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이 계약의 체결이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계약 기간 중 이 계약 내용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제14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가수'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이 '가수'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가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가수'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가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가 소속 직원의 성범죄에 대하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가수'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가수'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 소속 직원이 범한 성범죄의 경우, '기획업자'가 이에 대한 귀책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여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비밀유지) '기획업자'와 '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8조 (비밀유지)** ① '기획업자'와 '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나, '기획업자'와 '가수'가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 _____에 따라 해결한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3.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19조 (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측 당사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에 의한다.
(新設)	**제20조 (성희롱 피해 구제)** '기획업자'(기획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포함) 및 '가수'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예술창작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와 별론으로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제18조 (청소년의 보호) ①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기획업자'는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경우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제21조 (청소년의 보호)** ①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기획업자'는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경우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제19조 (부속 합의) ① '기획업자'와 '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8조(상표권 등) 내지 제10조(저작권 귀속 등)의 규정은 별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 (부속 합의)** ① '기획업자'와 '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은 별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6조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나. 주요 개정 사항의 이유

[표 130] 개정(안) 제2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新設)	**제2조 (신의성실)** 이 계약의 당사자인 '기획업자'와 '가수'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 문제의 상당한 수는 계약 의무의 불성실 이행이 원인이 되어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계약 당사자 양자 모두에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은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모든 계약은 구체적인 의무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신의성실 의무가 기본 원칙으로서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계약 조항에 신의성실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본 의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보다 직접적인 의무 부여를 위하여 본 조항을 신설하였다.

[표 131] 개정(안) 제3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생략 ② '기획업자'는 '가수'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가수'의 사생활보장 등 '가수'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	제3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좌동 ② '기획업자'는 '가수'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가수'의 사생활보장 등 '가수'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대한 노력한다. ③ '가수'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기획업자'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기획업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③ '가수'는 계약 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기획업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 때는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SNS 등의 발달로 부정적 정보의 확산이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그로 인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주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획업자의 의무를 다소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인의 제3자 교섭 등은 본 계약에서 정한 매니지먼트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제한될 수 있는 것인데, 기존 표준전속계약서는 권한 전부를 위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지만, 제3자 교섭 등에 있어서 일부 위임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위임의 경우 위임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32] 개정(안) 제4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③ 생략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가수'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기획업자'와 '가수'가 합의하여 정한다. 1. ~ 4. 생략 ⑤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및 갱신)** ①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가수'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계약 기간 연장 일수는 '기획업자'와 '가수'가 합의하여 정한다. 1. ~ 4. 좌동 ④ 이 계약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현행 최대 7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큰 이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7년을 초과한 전속계약을 일단 유효하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계약 기간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는 비판, 최대 7년으로 정한 계약의 취지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연기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전속계약서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7년을 초과한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 경우 7년을 초과하는 계약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최대 7년의 기간에 대해 응답 대중문화예술인의 70.0%가 부정적 답변(부정답변 평균 4.3년 선호)

o 심층 인터뷰 결과 역시 최대 7년의 기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다수

- 다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에게 적절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전제된 답변이 많음

≪기획업자 대상≫

o 최대 7년의 기간에 대해 응답 기획업자의 20.8%만이 부정적 답변

o 심층 인터뷰 결과 현행의 최대 7년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신인을 대상으로 계약할 경우 그 보다 장기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수익 회수 관점)

- 일부 5년 정도의 계약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존재

[표 133] 개정(안) 제6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제5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가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 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제6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가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 시행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 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제반 지원 ② '기획업자'는 '가수'를 대리하여 제3자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획업자'는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고, 미리 '가수'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 '가수'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기획업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가수'의 동의를 얻는다. ④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준비 이외에 '가수'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할 수도 없다. ⑥ '기획업자'는 '가수'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대가 수령 및 관리 6.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 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제반 지원 ② '기획업자'는 '가수'를 대리하여 제3자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하면서 '기획업자'는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고, 미리 '가수'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 '가수'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기획업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준비 이외에 '가수'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⑥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⑦ '기획업자'는 '가수'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⑧ '기획업자'는 '가수'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기획업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수'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계약은 계약이 유효한 기간 내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의 경우 반드시 전속계약의 기간 내 종료되는 것만은 아니어서 전속계약 이후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수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 범위 외의 부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동의의 시점에 관하여는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본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전에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였다.

한편, 일부 사례에서 전속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 기간에 걸쳐 적절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계약 기간의 종료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계약 당사자인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활동할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특정 시점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업계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전속계약 기간 내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기회의 제공을 의무화하였고, 기회 제공이 기획업자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때 어느 정도의 기회 제공이 충분한 기회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 성실한 기획업자의 의무 이행이라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한으로 명시된 의견제시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고 양자 간 유기적인 의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여건 확보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암묵적 불이익 우려에 따른 의견 개진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일련의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견해도 존재

[표 134] 개정(안) 제7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제6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가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이에 응한다. ② '가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다. ③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7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가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가수'는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서류 등 매체의 종류를 불문)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기획업자'는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가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다. ④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를 하지 아니하며,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가수'는'기획업자'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가수'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가수'는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업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가수'는 계약 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의 내용과 중복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의 효력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가수'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획업자'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때에 '기획업자'에게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가수'는 이 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기획업자'에게 하여서는 안된다.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유지 문제는 최근 기획업자에 있어서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SN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일반 대중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적 자율성 확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이 문제는 과거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위험 요인 자체로 대상 대중문화예술인의 모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다 보니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상당히 큰 편이다. 이에 품위 손상으로 인한 문제는 약간의 품위 손상과 상당한 품위 손상을 구별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표준전속계약서상에 명시된 품위손상의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강화된 윤리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기획업자의 경영적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특히 계약 당사자 간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품위손상 문제에 있어서 용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는지를 다투는 어려운 쟁점을 배제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편, 기획업자의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으면 이를 단순히 그냥 두고 있을 수밖에 없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계약 양 당사자 간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약이행요구권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부여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암묵적 불이익 우려에 따른 의견 개진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일련의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견해도 존재

[표 135] 개정(안) 제8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제7조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는 '가수'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가수'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가수'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는 '가수'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가수'에게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가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우울증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울증 문제는 이로 인한 활동 자체의 불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그러한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 별다른 외부에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갑작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우울증 문제가 급작성을 보이며 상당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이를 초기에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과거 우울증 문제를 개인의 질병으로 다루어 온 시각을 바꾸어 경영 위험 요인으로 다루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 기존 극도의 우울증일 경우 치료를 지원하던 것을 바꾸어 우울증이라면 그 경중을 구별하지 않고 조기에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이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기획업자에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응답 대중문화예술인(가수)의 72.2%가 기획업자에 정신건강 등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고,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36.0%가 상담 및 치료 요청을 한 경험이 있음

- 이중 내부 인력을 활용한 지원이 제공된 경우는 22.2%

o 심층 인터뷰 결과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가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기획업자 대상≫

o 응답 기획업자의 40.4%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에 정신건강 등의 상담 및 치료에 관한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

[표 136] 개정(안) 제9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제8조 (상표권 등)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하기 위해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기획업자'는 전단에 따라 등록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가수'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상표권 등의 귀속)** ① 계약 기간 중 '기획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가수'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및 기타 '가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사용하여 상표 또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출원.등록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상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계약종료에 따라 '가수'에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계약 기간의 종료 이전까지 '가수'와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기획업자'는 이들 권리 양도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본질이 영업의 표지라는 점에 이를 단순히 기획업자 혹은 대중문화예술인 중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즉,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일체로서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권리귀속 등 일체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상표권은 기존과 같이 기획업자에 귀속시키되,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소재가 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획업자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한정하고, 전속계약 종료 시 대중문화예술인에 무조건 양도하게 되던 것을 각 권리의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양자 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권리 관계의 구성과 정당한 대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기획업자의 사업권을 유지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 보호 혹은 경제적 이익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응답 대중문화예술인(가수)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항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존재

≪기획업자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기획업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부속 합의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식재산권의 이전 등 거래 및 활용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지식재산권에 관한 계약 사항에 관한 문제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음

[표 137] 개정(안) 제10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기획업자'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 '기획업자'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가수'의 명예나 기타 '가수'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가수 자체의 재산적.인격적 권리)** ① 본 계약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수'의 성명, 사진, 초상, 필적 및 기타 '가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가수'에게 있으며, '기획업자'는 계약 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은 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계약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적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수'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가수'의 명예 등 인격이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표준전속계약서의 규정이 전통적 지식재산권 이외에 퍼블리시티권(그 외의 권리 포함)의 인정을 전제하여 이에 대한 귀속과 권리행사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 자체가 입법적으로 근거를 갖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 계약을 통한 재산적 권리는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통적 지식재산권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특히 권리 행사 시 인격권의 훼손 금지를 인격 훼손 금지로 변경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넓게 하였으며, 본 조에서 다루는 권리 역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을 전제로 한 권리라는 점에 그 행사 시 대중문화예술인과 사전 합의를 요건으로 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응답 대중문화예술인(가수)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항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존재

≪기획업자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기획업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부속 합의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식재산권의 이전 등 거래 및 활용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지식재산권에 관한 계약 사항에 관한 문제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음

[표 138] 개정(안) 제11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기획업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매출의 ____%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가수'가 '기획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가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한다. ③ 계약종료 후 1년간 '가수'는 '기획업자'가 '가수'를 통하여 개발.제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해당 콘텐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예컨대, 가수가 동일 곡을 재가창한 음반, 디지털파일 등의 녹음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	**제11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 기간 중 '가수' 또는 '가수'의 활동과 관련하여 창출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 귀속되며,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법이 정한 권리(저작인접권 등)는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귀속한다. ②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 대상이 포함된 콘텐츠를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기간에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때 콘텐츠는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매체에 한정한다. ③ '가수'는 '기획업자'가 '가수'를 통하여 (콘텐츠의 소재로) 창출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계약 종결일부터 1년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콘텐츠(예컨대, 가수가 동일 곡을 재 가창한 음반, 디지털파일 등의 녹음물)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기획업자'와 '가수'는 양자가 보유한 저작권 및 저

여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이 조항과 관련하여 '기획업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가수'는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활용을 통해'기획업자'의 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작권 이외의 저작권법이 정한 권리(저작인접권 등)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치창출 및 수익 확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기존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이 콘텐츠와 저작권의 사항을 다소 명확하지 않게 혼재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저작권과 콘텐츠를 구분하여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의 강행원칙인 창작자 원칙을 적용하였고(기존 표준전속계약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다소 달리 규정을 두었으나 이는 실제로 창작자 원칙이 법상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계약 사항은 무효에 해당), 그에 따라 기획업자의 계약 기간 내 무상의 이용허락을 인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계약서에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다수

≪기획업자 대상≫

o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의 이전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응답 기획업자의 8.5%에 불과

o 심층 인터뷰 결과 기획업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부속 합의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식재산권의 이전 등 거래 및 활용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지식재산권에 관한 계약 사항에 관한 문제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음

[표 139] 개정(안) 제13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기획업자'가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단,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제13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다음 각호의 모든 수익(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매출 수익은 제외)은 일단'기획업자'가 수령하며, 이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눈다.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기획업자'와 '가수'가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 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가수'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기획업자'가 '가수'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기획업자'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가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가수'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비용을 '기획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⑥ '가수'의 귀책사유로 '기획업자'가 '가수'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가수'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⑦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수'에게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기획업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한다. '가수'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가수'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기획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한다. ⑨ '기획업자'와 '가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분하여야 한다. 1. 음반 및 콘텐츠 판매에 관한 수익 2.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수익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에 관한 수익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기획업자'와 '가수'에 분배하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수익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1. '가수'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 2. 광고수수료 비용 3. 기타 '기획업자'가 '가수'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 ④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분배 시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이에 대한 '기획업자'와 '가수' 간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⑤ '가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획업자'가 '가수'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이 금원 및 배상에 소요된 비용을 '가수'의 수익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수'에게 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사유에 한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45일에서 90일의 범위에서 금원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기획업자'는 제1항의 수익을 '가수'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수익의 정산내역(총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을 '가수'에게 제공한다. 이때 '가수'는 필요하면 정산내역에 대하여 '기획업자'에게 정산내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정산내역의 근

	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⑧ '가수'는 필요시 '기획업자'에게 정산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기획업자'와 '가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기존 표준전속계약서의 수익 분배 관련 조항은 지나치게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항 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항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는데 개정의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그룹으로 구성된 가수의 경우 수익 배분을 균등하게 하되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산 시 기존에는 정산근거를 함께 제공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 제공으로 얻는 효용에 비하여 기획업자에 미치는 부담이 과도하게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산 시에는 정산내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정산내역의 근거를 성실하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획업자의 부담 감소와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의 실제적인 권익 보호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존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의 수익 배분에 관한 규정이 수익 배분의 내용과 상이한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항의 정합성 측면에서 이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수익금 지급 시점에 관한 사항을 전속계약 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응답 대중문화예술인(가수)의 52.2%에 이름

o 정산 시 정산근거를 함께 제공하는 비율이 응답 대중문화예술인(가수)의 36.7%에 불과

o 심층 인터뷰 결과 대중문화예술인(가수)이 정산 관련 요구의 핵심은 정산의 투명성이며, 기획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지적

≪기획업자 대상≫

o 수익금 지급 시점에 관한 사항을 전속계약 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응답 기획업자의 22.4%에 이름

o 정산 시 정산근거를 함께 제공하는 비율이 응답 기획업자의 59.6%에 불과

o 심층 인터뷰 결과 그룹의 정산 방식 및 정산 기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그룹의 정산 비율 및 타 수익 항목과의 조율 방안 등
- 현행 45일 한도의 정산 기간의 어려움 등

[표 140] 개정(안) 제17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생략 ④ '가수'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이 '가수'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가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가수'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가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가 소속 직원의 성범죄에 대하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가수'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가수'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 소속 직원이 범한 성범죄의 경우, '기획업자'가 이에 대한 귀책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여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중문화예술인이 질병에 걸리는 등의 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기존 표준전속계약서는 그 사정의 발생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계약 목적 달성 가능 여부의 판단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태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당연 해지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해지로 수정하였다.

[표 141] 개정(안) 제20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개정(안)
(新設)	**제20조 (성희롱 피해 구제)** '기획업자'(기획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포함) 및 '가수'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예술창작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와 별론으로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성폭력 및 성범죄 외에 성희롱을 계약 시 중요한 금지·위반사항으로 명시하고 피해 구제 조항을 신설하여 건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의지를 담았다.

3.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가. 개정(안)

[표 14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연기자'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기획업자'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기획업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있어서의 '기획업자'와 '연기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연기자'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기획업자'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기획업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있어서의 '기획업자'와 '연기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新設)	**제2조 (신의성실)** 이 계약의 당사자인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연기자'는 '기획업자'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기획업자'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다만 '연기자'가 '기획업자'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기획업자'는 '연기자'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연기자'의 사생활보장 등 '연기자'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연기자'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기획업자'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기획업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연기자'는 '기획업자'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기획업자'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다만, '연기자'가 '기획업자'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획업자'는 '연기자'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연기자'의 사생활보장 등 '연기자'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연기자'는 계약 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기획업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 때는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년 _____개월)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기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연기자'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연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조 (계약 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 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_____년 _____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기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연기자'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계약 기간 연장 일수는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1. 군 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연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조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①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배우.모델.성우.TV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2.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단, '기획업자'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한 활동 ②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매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2.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제5조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①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배우.모델.성우.TV 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 출연, 광고 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 2.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단, '기획업자'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한 활동 ②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매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2.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3.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4.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5.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 범위와 대중문화예술용역 매체 등은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3.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4.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5.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 범위와 대중문화예술용역 매체 등은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기획업자'가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연기자'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3조 제1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3. 제3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6. 대중문화예술용역 일정의 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제반 지원 ② '기획업자'는 '연기자'를 대리하여 제3자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기자'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 '연기자'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 '연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그 침해나 방해를 배	**제6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연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진다. 1.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시행 또는 위탁 2. 제3조 제1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 3. 제3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및 일정 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제반 지원 ② '기획업자'는 '연기자'를 대리하여 제3자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하면서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기자'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 '연기자'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그 침해나 방해를 배

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준비 이외에 '연기자'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준비 이외에 '연기자'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⑥ '기획업자'는 '연기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⑦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⑧ '기획업자'는 '연기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기획업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연기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연기자'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연기자'는 제2조에 따라 '기획업자'가 위임받아 행사되는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연기자'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기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연기자'는 '기획업자'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연기자'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연기자'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연기자'는 제2조 및 제4조 따라 행사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연기자'는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서류 등 매체의 종류를 불문)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기획업자'는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연기자'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다. ③ '연기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연기자'는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업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연기자'는 계약 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의 내용과 중복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의 효력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연기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획업자'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때에 '기획업자'에게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연기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기획업자'에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연기자'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는 '연기자'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연기자'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연기자'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연기자'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는 '연기자'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연기자'에게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연기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상표권 등)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연기자'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연기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하기 위해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획업자'는 전단에 따라 등록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연기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연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상표권 등의 귀속)** ① 계약 기간 중 '기획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연기자'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및 기타 '연기자'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사용하여 상표 또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출원.등록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상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계약종료에 따라 '연기자'에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계약 기간의 종료 이전까지 '연기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기획업자'는 이들 권리 양도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기획업자'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연기자'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연기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 '기획업자'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연기자'의 명예나 기타 '연기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연기자 자체의 재산적.인격적 권리)** ① 본 계약을 통하여 형성되는 '연기자'의 성명, 사진, 초상, 필적 및 기타 '연기자'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연기자'에게 있으며, '기획업자'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이를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은 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적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기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연기자'의 명예 등 인격이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연기자'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의	**제11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 기간 중 '연기자' 또는 '연기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창출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 귀속되며,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법이 정한 권리(저

매체 등을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기자'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기획업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기획업자'는'연기자'에게 매출의 %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연기자'가 '기획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연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 조항과 관련하여 '기획업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연기자'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연기자'는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활용을 통해 '기획업자'의 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작인접권 등)는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귀속한다. ②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 대상이 포함된 콘텐츠를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때 콘텐츠는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매체에 한정한다. ③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양자가 보유한 저작권 및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법이 정한 권리(저작인접권 등)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치창출 및 수익 확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기획업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연기자'는 이와 같은 '기획업자'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제12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8조 부터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기획업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연기자'는 이와 같은 '기획업자'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연기자'와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연기자'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기획업자'가 '연기자'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획업자'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연기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	**제13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다음 각호의 모든 수익(제9조 또는 제11조 따른 매출 수익은 제외)은 일단 '기획업자'가 수령하며, 이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1. 콘텐츠 등의 판매에 관한 수익 2.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수익 ② 제1항 각호에 대한 수익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1. '연기자'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 2. 광고수수료 비용

한 비용을 '연기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연기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비용을 '기획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연기자'에게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연기자'의 귀책사유로 '기획업자'가 '연기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연기자'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기획업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연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연기자'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연기자'의 수입이 과소계상되었다는 등 '기획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⑦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3. 기타 '기획업자'가 '연기자'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 ③ '연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획업자'가 '연기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이 금원을 '연기자'의 수익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연기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사유에 한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45일에서 90일의 범위에서 금원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획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수익을 '연기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수익의 정산내역(총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을 '연기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연기자'는 필요하면 정산내역에 대하여 '기획업자'에게 정산내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획업자'는 '연기자'에게 정산내역의 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⑥ '연기자'는 필요시 '기획업자'에게 정산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新設) ※ 제7조에서 분리	**제14조 (제반 비용의 부담)** ① '기획업자'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반 비용은 '연기자'의 동의하에 '연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기획업자'는 '연기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합리적인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기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비용을 '기획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적용지역)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적용지역)** 이 계약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14조 (확인 및 보증)	**제16조 (확인 및 보증)**

① '기획업자'는 '연기자'에 대해 계약체결 당시 제4조 제1항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② '연기자'는 '기획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이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이 계약의 체결이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계약기간 중 이 계약내용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① '기획업자'는 '연기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등록번호 : _____ 2. 제6조 제1항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적절히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적절한 능력을 계약체결 당시 갖추고 있다는 것 ② '연기자'는 '기획업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이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이 계약의 체결이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계약 기간 중 이 계약 내용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제15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연기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연기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권리 등의 양도)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 등의 양도)**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기획업자' 또는 '연기자'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기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_____%를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위약벌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5%	**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기획업자' 또는 '연기자'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기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_____%를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위약벌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5%

를 넘지 못한다. ③ 계약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이 '연기자'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기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연기자'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기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가 소속 직원의 성범죄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넘지 못한다. ③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연기자'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연기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 소속 직원이 범한 성범죄의 경우, '기획업자'가 이에 대한 귀책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18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연기자'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기획업자'는 '연기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연기자'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획업자'는 '연기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 (비밀유지)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 (비밀유지)** ①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나,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0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 ( )에 따라 해결한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3.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22조 (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측 당사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에 의한다.

(新設)	**제23조 (성희롱 피해 구제)** '기획업자'(기획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포함) 및 '연기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예술창작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와 별론으로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제21조 (청소년의 보호) ①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기획업자'는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경우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제24조 (청소년의 보호)** ①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기획업자'는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경우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제22조 (부속 합의) ①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5조 (부속 합의)** ①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나. 주요 개정 사항의 이유

[표 143] 개정(안) 제2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新設)	**제2조 (신의성실)** 이 계약의 당사자인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 문제의 상당한 수는 계약 의무의 불성실 이행이 원인이 되어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계약 당사자 양자 모두에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은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모든 계약은 구체적인 의무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신의성실 의무가 기본 원칙으로서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계약 조항에 신의성실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본 의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보다 직접적인 의무 부여를 위하여 본 조항을 신설하였다.

[표 144] 개정(안) 제4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제13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년 _____개월)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기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연기자'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1. ~ 4. 생략	**제4조 (계약 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 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_____년 _____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기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연기자'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계약 기간 연장 일수는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1. ~ 4. 좌동

현행 최대 7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과도하게 장기간이라는 비판이 있다. 육성 단계가 필요한 가수와 달리 연기자의 경우 육성 단계가 크게 소요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가수보다 상대적으로 장기의 계약 기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대 전속계약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최대 7년의 기간에 대해 응답 대중문화예술인의 77.5%가 부정적 답변(부정답변 평균 3.8년 선호)

o 심층 인터뷰 결과 역시 최대 7년의 기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다수

- 응답자의 대부분 5년 이하의 기간을 최대 계약 기간으로 하는 것을 선호

≪기획업자 대상≫

o 최대 7년의 기간에 대해 응답 기획업자의 18.6%만이 부정적 답변(부정답변 평균 6년 선호)

o 심층 인터뷰 결과 연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속계약은 1년~5년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체결되며 실제 7년까지의 계약 기간은 기획업자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5] 개정(안) 제6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제4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기획업자'가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연기자'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제3자로부터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6. 대중문화예술용역 일정의 관리 7. ~ 8. 생략 ② '기획업자'는 '연기자'를 대리하여 제3자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기자'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 '연기자'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 '연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준비 이외에 '연기자'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연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진다. 1. ~ 4. 좌동 5. 제3자로부터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및 일정 관리 7. ~ 8. 좌동 ② '기획업자'는 '연기자'를 대리하여 제3자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하면서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기자'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 '연기자'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획업자'는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준비 이외에 '연기자'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⑥ '기획업자'는 '연기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

	서는 안 된다. ⑦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⑧ '기획업자'는 '연기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기획업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연기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계약은 계약이 유효한 기간 내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의 경우 반드시 전속계약의 기간 내 종료되는 것만은 아니어서 전속계약 이후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수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 범위 외의 부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동의의 시점에 관하여는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본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전에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였다.

한편, 일부 사례에서 전속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 기간에 걸쳐 적절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계약 기간의 종료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계약 당사자인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활동할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특정 시점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업계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전속계약 기간 내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기회의 제공을 의무화하였고, 기회 제공이 기획업자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때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때 어느 정도의 기회 제공이 충분한 기회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 성실한 기획업자의 의무 이행이라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한으로 명시된 의견제시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고 양자 간 유기적인 의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여건 확보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암묵적 불이익 우려에 따른 의견 개진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일련의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견해도 존재

- 특히 대중문화예술용역 수행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의 인격적 훼손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면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 존재

[표 146] 개정(안) 제7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제5조 ('연기자'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연기자'는 제2조에 따라 '기획업자'가 위임받아 행사되는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연기자'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기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연기자'는 '기획업자'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연기자'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연기자'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연기자'는 제2조 및 제4조 따라 행사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연기자'는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서류 등 매체의 종류를 불문)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기획업자'는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연기자'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다. ③ '연기자'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연기자'는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업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연기자'는 계약 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의 내용과 중복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의 효력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연기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획업자'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때에 '기획업자'에게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연기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기획업자'에게 하여서는 안된다.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유지 문제는 최근 기획업자에 있어서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SN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일반 대중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적 자율성 확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이 문제는 과거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위험 요인 자체로 대상 대중문화예술인의 모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다 보니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상당히 큰 편이다. 이에 품위 손상으로 인한 문제는 약간의 품위 손상과 상당한 품위 손상을 구별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표준전속계약서상에 명시된 품위손상의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강화된 윤리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기획업자의 경영적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특히 계약 당사자 간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품위손상 문제에 있어서 용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는지를 다투는 어려운 쟁점을 배제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편, 기획업자의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으면 이를 단순히 그냥 두고 있을 수밖에 없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계약 양 당사자 간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약이행요구권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부여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암묵적 불이익 우려에 따른 의견 개진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일련의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견해도 존재

- 특히 대중문화예술용역 수행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의 인격적 훼손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면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 존재

[표 147] 개정(안) 제8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제6조 ('연기자'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는 '연기자'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연기자'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연기자'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연기자'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는 '연기자'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연기자'에게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연기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우울증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울증 문제는 이로 인한 활동 자체의 불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그러한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 별다른 외부에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갑작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우울증 문제가 급작성을 보이며 상당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이를 초기에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과거 우울증 문제를 개인의 질병으로 다루어 온 시각을 바꾸어 경영 위험요인으로 다루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 기존 극도의 우울증일 경우 치료를 지원하던 것을 바꾸어 우울증이라면 그 경중을 구별하지 않고 조기에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이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기획업자에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응답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의 65.8%가 기획업자에 정신건강 등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고,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22.4%가 상담 및 치료 요청을 한 경험이 있음

- 이중 내부 인력을 활용한 지원이 제공된 경우는 27.6%

o 심층 인터뷰 결과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기획업자 대상≫

o 응답 기획업자의 30.6%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에 정신건강 등의 상담 및 치료에 관한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

[표 148] 개정(안) 제9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제8조 (상표권 등)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연기자'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연기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이	**제9조 (상표권 등의 귀속)** ① 계약 기간 중 '기획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연기자'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및 기타 '연기자'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사용하여 상표 또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출원.등록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

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하기 위해 '기획업자'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획업자'는 전단에 따라 등록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연기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연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자인권을 '기획업자'의 업무 또는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상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계약종료에 따라 '연기자'에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계약 기간의 종료 이전까지 '연기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기획업자'는 이들 권리 양도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본질이 영업의 표지라는 점에 이를 단순히 기획업자 혹은 대중문화예술인 중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즉,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일체로서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권리귀속 등 일체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상표권은 기존과 같이 기획업자에 귀속시키되,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소재가 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획업자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한정하고, 전속계약 종료 시 대중문화예술인에 무조건 양도하게 되어 있던 것을 각 권리의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양자 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권리 관계의 구성과 정당한 대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기획업자의 사업권을 유지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 보호 혹은 경제적 이익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응답 대중문화예술인(가수)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항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존재

≪기획업자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기획업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부속 합의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9] 개정(안) 제10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기획업자'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	**제10조 (연기자 자체의 재산적.인격적 권리)** ① 본 계약을 통하여 형성되는 '연기자'의 성명, 사진,

을 포함하여 '연기자'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연기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 '기획업자'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연기자'의 명예나 기타 '연기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상, 필적 및 기타 '연기자'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연기자'에게 있으며, '기획업자'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이를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은 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적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기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연기자'의 명예 등 인격이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표준전속계약서의 규정이 전통적 지식재산권 이외에 퍼블리시티권(그 외의 권리 포함)의 인정을 전제하여 이에 대한 귀속과 권리행사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 자체가 입법적으로 근거를 갖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 계약을 통한 재산적 권리는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통적 지식재산권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특히 권리 행사 시 인격권의 훼손 금지를 인격 훼손 금지로 변경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넓게 하였으며, 본 조에서 다루는 권리 역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을 전제로 한 권리라는 점에 그 행사 시 대중문화예술인과 사전 합의를 요건으로 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응답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항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존재

≪기획업자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기획업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부속 합의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150] 개정(안) 제11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연기자'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의 매체 등을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기자'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기획업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기획업자'는'연기자'에게 매출의 %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연기자'가 '기획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연기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연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 조항과 관련하여 '기획업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연기자'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연기자'는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활용을 통해 '기획업자'의 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1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 기간 중 '연기자' 또는 '연기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창출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 귀속되며,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법이 정한 권리(저작인접권 등)는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귀속한다. ②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 대상이 포함된 콘텐츠를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때 콘텐츠는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매체에 한정한다. ③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양자가 보유한 저작권 및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법이 정한 권리(저작인접권 등)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치창출 및 수익 확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가수의 경우와 달리 연기자는 저작권법상 실연권의 주체가 된다. 이에 본 조항에서는 저작권법상의 권리 중 실연권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물론 때에 따라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자를 포괄하도록 조항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개선하는 데는 기존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이 콘텐츠와 저작권의 사항을 다소 명확하지 않게 혼재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저작권과 콘텐츠를 구분하여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의 강행원칙인 창작자 원칙을 적용하였고(기존 표준전속계약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다소 달리 규정을 두었으나 이는 실제로 창작자 원칙이 법상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며, 이를 위반 시 해당 계약 사항은 무효에 해당), 실연권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처럼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창작자 원칙을 전제로 함으로써 기획

업자가 얻는 불이익을 보완하고자 기획업자의 계약 기간 내 무상의 이용허락을 인정하였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심층 인터뷰 결과 계약서에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다수

≪기획업자 대상≫

o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의 이전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응답 기획업자의 4.3%에 불과

o 심층 인터뷰 결과 저작인접권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귀속 주체에 관한 논의가 있으며, 기획업자의 자본과 노력이 투입된 결과이므로 저작인접권이 기획업자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 존재

[표 151] 개정(안) 제13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연기자'와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연기자'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기획업자'가 '연기자'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획업자'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연기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연기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연기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비용을 '기획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다음 각호의 모든 수익(제9조 또는 제11조 따른 매출 수익은 제외)은 일단 '기획업자'가 수령하며, 이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1. 콘텐츠 등의 판매에 관한 수익 2.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수익 ② 제1항 각호에 대한 수익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기획업자'와 '연기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1. '연기자'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 2. 광고수수료 비용 3. 기타 '기획업자'가 '연기자'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 ③ '연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획업자'가 '연기

④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연기자'에게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연기자'의 귀책사유로 '기획업자'가 '연기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연기자'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기획업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연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연기자'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연기자'의 수입이 과소계상되었다는 등 '기획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⑦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이 금원을 '연기자'의 수익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연기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사유에 한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45일에서 90일의 범위에서 금원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획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수익을 '연기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수익의 정산내역(총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을 '연기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연기자'는 필요하면 정산내역에 대하여 '기획업자'에게 정산내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획업자'는 '연기자'에게 정산내역의 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⑥ '연기자'는 필요시 '기획업자'에게 정산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획업자와 '연기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기존 표준전속계약서의 수익 분배 관련 조항은 지나치게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항 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항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는데 개정의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그룹으로 구성된 가수의 경우 수익 배분을 균등하게 하되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산 시 기존에는 정산근거를 함께 제공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 제공으로 얻는 효용에 비하여 기획업자에 미치는 부담이 과도하게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산 시에는 정산내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정산내역을 성실하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획업자의 부담 감소와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의 실제적인 권익 보호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존 표준전속계약서 제7조의 수익 배분에 관한 규정이 수익 배분의 내용과 상이한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항의 정합성 측면에서 이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였다.

※ 현황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o 수익금 지급 시점에 관한 사항을 전속계약 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응답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의 46.4%에 이름

o 정산 시 정산근거를 함께 제공하는 비율이 응답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의 31.5%에 불과

o 심층 인터뷰 결과 대중문화예술인(가수)이 정산 관련 요구의 핵심은 정산의 투명성이며, 기획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지적

≪기획업자 대상≫

o 수익금 지급 시점에 관한 사항을 전속계약 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응답 기획업자의 25.5%에 이름

o 정산 시 정산근거를 함께 제공하는 비율이 응답 기획업자의 59.6%에 불과

o 심층 인터뷰 결과 연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 수입 발생 시 바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52] 개정(안) 제19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기획업자' 또는 '연기자'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기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_____%를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위약벌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③ 생략 ④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이 '연기자'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	**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기획업자' 또는 '연기자'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기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_____%를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위약벌은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③ 좌동 ④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

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기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연기자'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기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가 소속 직원의 성범죄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연기자'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연기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 소속 직원이 범한 성범죄의 경우, '기획업자'가 이에 대한 귀책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한 책임을 계약 당사자 양측에 균등하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존 표준전속계약서가 대중문화예술인의 특정 행위에만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업자 모두에게 특정 행위 시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53] 개정(안) 제20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제18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연기자'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기획업자'는 '연기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연기자'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획업자'는 '연기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대중문화예술인이 질병에 걸리는 등의 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표준전속계약서는 그 사정의 발생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계약 목적 달성 가능 여부의 판단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태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당연해지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해지로 수정하였다.

[표 154] 개정(안) 제23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중심)	개정(안)
(新設)	**제23조 (성희롱 피해 구제)** '기획업자'(기획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포함) 및 '연기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예술창작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와 별론으로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성폭력 및 성범죄 외에 성희롱을 계약 시 중요한 금지·위반사항으로 명시하고 피해 구제 조항을 신설하여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의지를 담았다.

제6장
결론

제6장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계약당사자 간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속계약과 출연계약, 그리고 연습생 또는 청소년 등에 대한 계약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속계약의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개정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 및 현장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었는데, 계약 간 문제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신뢰상실이라 생각된다. 이를 기화로 여타의 다른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계약서의 활용은 여러 환경적 요인의 변화 등에 따른 계약의 불완전 이행 등으로부터 양 계약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준칙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최근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가 그 자체로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 시에야 의미를 갖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시로 지정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전속계약 및 출연계약 등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고시로 지정되어 표준계약서 활용의 실효성을 나름 확보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 대상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생각건대 이 점에 있어서 전속계약 등의 표준계약서 자체의 법적 지위 변경을 통한 실효성 확보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러한 고시를 얼마나 적절히 이행하도록 할 것인지가 표준계약서 활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어떠한 내용의 계약서를 사용할 것인지는 주로 기획업자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기획업자에 표준계약서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전체적인 표준계약서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한편, 이와 반대방향에 해당하는 표준계약서 미활용에 따른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표준계약서 자체의 본질적 한계 뿐 아니라 현재 고시임을 통하여 전제되는 규제 이상의 것을 부여하기에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체계 하에서도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인센티브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기획업자들이 대중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한 요소들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산업 내에서 유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후 부가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표준화된 계약을 도출한다는 것은 서로 반대방향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합치되도록 하거나 혹은 그러한 이익의 합치까지는 아닐지라도 계약

당사자 간 어느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지점을 계약사항으로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사항의 형태로 도출된 지점이 변동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기획업자 혹은 대중문화예술인 각각 특정 시점에서의 산업적 환경, 사회적 분위기 등 다양한 환경 요소가 변화하게 되면 당시의 의사 합치 가능점 역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표준계약서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정 당시 표준계약서의 전제가 된 계약당사자 간 의사 합치 가능점이 지금의 시점에도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향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준계약서의 운용은 계약당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개정의 필요가 발생 시 이를 적기에 개정함으로써 표준계약서가 해당 산업과 괴리를 갖지 않도록 주기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 역시 이러한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 시점에서 최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것 역시 지금 시점에서의 의사 합치 가능점을 도출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표준계약서의 운용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단행본]

강석홍,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12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박영사, 2012

박기현·김종원, 「핵심정리 민법」, 고시연구사, 2007

박영정,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8

이경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이해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

정상조,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황승흠, 「청소년 및 연습생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용역」,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논문]

김기덕, "표준출연계약서 제정과 청소년(미성년) 연예인의 권리문제",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2012

김원찬, "실연자 권리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방안",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2

남기연, "방송출연계약의 법리 분석", 스포츠와 법, 제15권제1호, 2012

박기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관련 토론",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2

이경호,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전속계약 기간에 관한 고찰",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통권 56호, 2019

이은영, "엔터테인먼트계약의 다양한 모습", 외법논집 제13집, 2002

이충훈,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0.7.29.선고 2010다29584판결", 법학논총 제18권 제3호, 2011

이충훈,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7권1호, 2013

장보은, "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계약의 이해: 출연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법조 제68권 제3호, 2019

최승수·안건형,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2009

장재옥, “專屬契約에 관한 小考-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7집제4호, 2006
장재옥·김훈주, “전속연예매니지먼트계약에서 미성년 보호의 과제”, 스포츠와 법, 통권 제33호, 2012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1996

[언론기사]
뉴스웍스 2019. 1. 14.자 기사(장원수 기자, "트레이닝비용요구 등 키즈모델선발대회 이용한 아역모델 대상 불법행위 정화노력 필요"
미디어스 2020. 1. 15.자 기사(김혜인 기자), "법이 아역 배우를 지켜주나요"
스포츠동아 2019. 6. 26.자 기사(유지혜 기자), "아역 부모들, 출연료 계약서? 구경도 못 했죠"
오마이뉴스 2019. 3. 26.자 기사(김상화 기자), “강다니엘부터 이용규 분쟁까지... 표준계약서가 뭐기에?.”
아시아경제 2012. 12. 20.자 기사(이규성 기자), "연예인 노예계약 이번엔 사라지나... 표준계약서 개정 갈등“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8. 12. 1.자), “공정위, 연예기획사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9. 7. 7.자), “연예인 권익과 연예산업 발전, 2마리 토끼를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 4. 26.자),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7. 3. 7.자),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2. 6. 18.자), “연예 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 7. 30.자),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판결]
대법원 1962. 5. 24. 선고 61다251, 252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6250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2958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2010다54542(참가)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본소), 2016다256975(반소)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7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4나572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20246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2066467(본소), 2017나2066474(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8나20117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나20286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나2006674(본소), 2019나2006681(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60862(본소), 2018나2060879(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2019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3758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38792(본소), 2018가합33053(반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가합379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489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0가합132751(본소), 2011가합115067(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가합97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가합5494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5400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합5402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5810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합322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가합5849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49297(본소), 2018가합521418(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5010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합545186 판결

〈부록〉 정량조사표

<부록> 기획업 정량조사표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ID		-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조사(기획업)

안녕하십니까?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제작업 및 종사자의 표준계약서 활용실태의 면밀한 파악 및 공정한 권리관계 형성을 위한 올바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연구의 일환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및 기획업체의 표준계약서 체결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응답하신 업체 정보는 어떤 형태로도 보관하지 않고 반드시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귀사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DN Research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기관 담당 : 성미경 수석연구원

(주)케이디앤리서치
조사담당 김유미 팀장
연 락 처 Tel : 02-2183-9135
E-mail : kdn21@kdn21.co.kr

A. 사업체 일반현황

회사유형	□①법인사업체 □②개인사업체 □③기타_____		
주 사업분야	□①가수(음악)분야 □②연기자(방송/영화)분야 □③기타_____		
회사 총 매출액	2019년 기준 _____백 만원	**주 사업 분야 매출액**	총 매출액의 ( )%

소속 예술인수 (연습생 제외)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합계	만13세 미만	만14세~19세	만 20세 이상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소속 예술인의 분야 구분 시, 중복인 경우(연기자면서 가수) 좀 더 활동 비중이 높은 주된 분야를 기준으로 응답할 것.
※ VJ, DJ, MC, 뮤지컬배우(복합예능) 등은 '기타란'에 기재 후 응답할 것.
※ 핸드폰번호나 이메일주소를 조사원에게 알려주시면 모바일 상품권(5,000원권)을 문자메시지(또는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B.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활용실태

1. 귀 업체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전속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표준전속계약서 원안 그대로 사용 (→2-2번으로)
☐ ② 표준전속계약서+부속합의서 형태로 보완하여 사용 (→2-1번으로)
☐ ③ 표준전속계약서를 기본으로 작성된 자체 계약서 활용 (→2-1번으로)
☐ ④ 표준계약서 외 자체 제작한 계약서를 활용(→1-1번으로)
☐ ⑤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함(→1-1번으로)
☐ ⑥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 (→1-1번으로)

1-1.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체 작성한 전속계약서를 활용해 오고 있으므로 ☐ ② 표준전속계약서가 있는 줄 몰라서
☐ ③ 표준전속계약서 외에도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서
☐ ④ 기타 _____

→ 응답 후 3번으로 이동

2-1.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이나 조문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조문이나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2-2. 변경한 내용 중에서 기획업자에게 더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다면 "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A 사업체 일반현황의 주 사업분야가 ①음악(가수)인 경우,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	2-1. 변경 사용 여부	2-2.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부분
①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	
② 계약 기간 및 갱신	☐	
③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	
④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	
⑤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	
⑥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	
⑦ 상표권/퍼블리시티권	☐	
⑧ 저작권 귀속	☐	
⑨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	
⑩ 수익의 분배 및 정산	☐	
⑪ 확인 및 보증	☐	
⑫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⑬ 비밀유지	☐	
⑭ 분쟁해결	☐	
⑮ 청소년의 보호	☐	
⑯ 부속합의 관련	☐	
⑰ 기타(내용기재:_____)	☐	

2) 주 사업분야가 ②연기/영화인 경우,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	2-1. 변경 사용 여부	2-2.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부분
①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	
②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	
③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	
④ 연기자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	
⑤ 연기자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	
⑥ 수익의 분배 및 정산	□	
⑦ 상표권/퍼블리시티권	□	
⑧ 저작권 귀속	□	
⑨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	
⑩ 계약의 적용지역(국내/해외포함 등)	□	
⑪ 계약 기간	□	
⑫ 확인 및 보증	□	
⑬ 권리 등의 양도	□	
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⑮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	
⑯ 비밀유지	□	
⑰ 분쟁해결	□	
⑱ 청소년의 보호	□	
⑲ 부속합의 관련	□	
⑳ 기타(내용기재:_____)	□	

2-3. *(2-1에서 가수의 경우 ② 계약기간 및 갱신, 연기자의 경우 ⑪ 계약기간 변경했다는 응답자만)* 전속 계약기간의 변경은 어떤 형태로 보완되었습니까?

□ ① 표준전속계약서상 기간 변경 □ ② 별도의 부속합의서 작성
□ ③ 구두로 기간 변경 □ ④ 별도의 서면 계약서 작성
□ ⑤ 기타_____

3.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의 전속계약기간은 최대 7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전속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4번으로 이동) □ ② 적절하지 않다(적절한 전속기간 _____년)

3-1. *(3에서 ②응답자만)* 최대 7년으로 한정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4. 표준전속계약서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매체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You-tube, Blog, Face-book, Twitter, Instagram 등) 활동 등을 활발하게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서에 '인터넷 등'이라는 범위가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대중문화예술인 개인이 직접 개설한 SNS 활동을 업무 범위에 포함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까?

〈표준전속계약서상의 매체범위 기준〉

매체범위	1.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2.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3.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4.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5.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기획업자'와'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 ① SNS(You-tube, Blog, Face-book, Twitter, Instagram 등) 활동 포함
☐ ② 개인이 직접 개설/활동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3-3번으로 이동)
☐ ③ 회사에서 개설하거나 하위분류로 개설한 SNS 활동만 업무 범위에 포함
☐ ④ 기타 _____

4-1. *(4번에서 ①,② 응답자만)* 활동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면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까?

4-2. SNS 등의 방송/공연 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4-2-1로)　　☐ ② 필요하지 않다(→4-3으로)

4-2-1. (4-2 ①필요하다 응답자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제시/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속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구체적으로 : _____)
☐ ② 활동 매체에만 포함 시켜야 한다
☐ ③ 개인 SNS 활동은 제시할 필요가 없다
☐ ④ 기타 _____

4-3. 회사가 개인의 활동(연예활동 외 겸업, 파트타임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문 4-3-1로)
☐ ② 회사 또는 예술인의 이미지와 관련 없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음(→문 5로)
☐ ③ 별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한할 필요가 없음(→문 5로)

4-3-1. (4-3 ①필요하다 응답자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한 범위의 개인 활동
(예시) 가수:코러스, 세션, 작곡, 작사 등, 배우:연기지도 등))
□ ② 연예활동과 무관한 파트타임(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 ③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업/창업(음식점/주점 운영 등)
□ ④ 기타 _____

5. 전속 계약한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한 기준을 표준전속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대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저작권의 귀속 □ ② 저작인접권의 귀속 □ ③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
□ ④ 기타 _____

5-1. (5번에서 ①,②,③ 응답자만)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저작권 귀속	
2) 저작인접권 귀속	
3)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	

5-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3. 대중문화예술인에 의하여 창출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거래(양도, 양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계약상 문제)이 있었습니까?

□ ①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거래한 경험이 없다
□ ②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거래한 경험이 있으나 문제는 없었다
□ ③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거래한 경험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거래 시 발생했던 이슈〉

6.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관하여 표준전속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대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수익배분 비율에 관한 내용 □ ② 수익배분 대상 범위에 관한 내용
□ ③ 비용 정산 범위에 관한 내용 □ ④ 수익금 지급기한에 관한 내용
□ ⑤ 정산자료 제공 기간에 관한 내용 □ ⑥ 기타 _____

6-1. 수익금 지급은 얼마나 자주 진행되고 있습니까?

□ ① 매월 또는 월별 지급하고 있음 □ ② 용역대금 수령일로부터 45일이내 지급하고 있음
□ ③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 ④ 용역대금 수령 즉시 지급하고 있음
□ ⑤ 기타 _____

6-2. 정산내역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 ①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정산내역만 제공(또는 원할 때 즉시 열람 가능상태)
☐ ②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정산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공(또는 원할 때 즉시 열람 가능 상태)
☐ ③ 별도 정산내역 제공하지 않음
☐ ④ 기타 _____

7.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유지 문제(폭력, 음주운전, 약물 등)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① 손해배상금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② 위약금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③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④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지급과 함께 별도의 요구를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⑤ 별도의 금전 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 해지만을 진행
☐ ⑥ 기타 _____

---------- **8, 8-1, 9, 10번은 주 사업분야가 가수인 경우에만 노출**----------

8. *(가수만)* 소속 가수(또는 음악인)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계약하였습니까?

☐ ① 별도 계약없이 전속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 ② 부속합의서로 계약
☐ ③ 퍼블리싱을 전담하는 자회사와 별도 계약 ☐ ④ 계약 없이 구두로만 진행
☐ ⑤ 퍼블리싱 관련 업무는 하지 않음 ☐ ⑥ 기타 _____

8-1. *(8번에서 ①~⑤에 응답한 경우)* 퍼블리싱을 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수익배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① 기존 수익배분률 적용 ☐ ② 저작권에 대해서만 별도의 수익배분률 적용
☐ ③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만 별도의 수익배분률 적용 ☐ ④ 기타 _____

9. *(가수/음악관련업만)*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에는 가수(또는 연주자)의 실연, 해외공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보완하여 계약을 했거나, 현재 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전속계약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속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 ② 부속합의서로 계약
☐ ③ 계약 없이 상호 협의로 진행(구두 협의 등)
☐ ④ 계약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⑤ 포함할 필요 없음
☐ ⑥ 기타 _____

10. *(가수/음악관련업만)*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음반 크레딧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보완하여 계약했거나, 현재 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속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 ② 부속합의서로 계약
☐ ③ 계약 없이 상호 협의로 진행(구두 협의 등)
☐ ④ 계약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⑤ 포함할 필요 없음
☐ ⑥ 기타 _____

---

11.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저작인접권) 이외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규정을 포함했거나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내용(ex. 퍼블리시티권 등)이었습니까?

12.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 ① 기획업자 ☐ ② 대중문화예술인 ☐ ③ 양자모두
☐ ④ 기타 _____

13.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지 시 어떤 수준의 배상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또 표준전속계약서 배상 범위에 대해 다루어져야 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1) 현재 배상 수준	☐ ① 손해배상 ☐ ② 위약금 ☐ ③ 손해배상+위약금 ☐ ④ 기타 _____
12-2) 향후 포함되어야 하는 수준	☐ ① 손해배상 ☐ ② 위약금 ☐ ③ 손해배상+위약금 ☐ ④ 기타 _____

14. 귀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① 외부강사를 통해 직접 교육형태로 진행 ☐ ②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강좌를 통해 진행
☐ ③ 구두로 간단한 사항만 전달 ☐ ④ 어떤 교육도 진행하지 않음
☐ ⑤ 기타 _____

15. 현재의 표준전속계약서에는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간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① 동의함(→15-1로) ☐ ② 동의하지 않음(→15-2로)

15-1. (15번에서 ①동의함 응답자만)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간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5-2. (15번에서 ②동의하지 않음 응답자만)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간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최근 대중예술인의 우울증, 자살관련 기사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에서는 대중예술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상담/심리치료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주기적으로(주간/월간/분기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②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 비정기적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③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대중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고 있음
☐ ④ 어떤 지원도 하고 있지 않음(→C로)

16-1.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② 내부 상담/교육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③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④ 기타 _____

16-2. 소속된 대중예술인으로부터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 요청 받은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17. 표준전속계약서 활용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C.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실태

1. 귀 업체에서는 연습생 양성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연습생 표준계약서 원안 그대로 사용(→2-2번으로)
☐ ② 연습생 표준계약서+부속합의서 형태로 보완하여 사용(→2-1번으로)
☐ ③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자체 계약서 활용(→2-1번으로)
☐ ④ 연습생 표준계약서 외 자체 제작한 계약서를 활용(→3번으로)
☐ ⑤ 연습생도 표준전속계약서로 전속 계약함(→1-1번으로)
☐ ⑥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함(→1-1번으로)
☐ ⑦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1-1번으로)
☐ ⑧ 연습생이 없음(→D섹션으로 이동)

1-1.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체 작성한 연습생 계약서를 활용해 오고 있으므로
☐ ②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있는 줄 몰라서
☐ ③ 연습생도 전속계약을 하기 때문에
☐ ④ 정식으로 연습생을 육성하고 있지 않아서
☐ ⑤ 기타 _____

→ 응답 후 D섹션으로 이동

2-1.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조문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조문이나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2-2. 변경한 내용 중에서 기획업자에게 더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다면 "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	2-1. 변경 사용 여부	2-2.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부분
① 계약 기간	□	
②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	□	
③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	□	
④ 훈련 활동 비용의 관리	□	
⑤ 계약 내용의 변경	□	
⑥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⑦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	□	
⑧ 전속계약 체결 등	□	
⑨ 비밀유지	□	
⑩ 확인 및 보증	□	
⑪ 분쟁 해결	□	
⑫ 부속 합의	□	
⑬ 기타(내용기재:)	□	

3. 연습생 표준계약서 내용 중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이성 교제 금지
□ ②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금지
□ ③ 휴대전화 사용금지
□ ④ 식단 관리
□ ⑤ 과도한 노출 및 지나친 성적 표현행위 강요 금지
□ ⑥ 훈련활동 범위에 관한 내용
□ ⑦ 기획업자의 업무(지원)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 ⑧ 기타 _____

4. 연습생이 데뷔(또는 앨범을 발매)하게 되는 경우 연습생 표준계약서 외 전속계약서를 체결하십니까? 그때 계약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 ① 연습생 계약을 종료하고 최대 7년의 전속계약을 새로 체결함
□ ② 연습생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속계약을 추가로 체결함
□ ③ 기타 _____

5. 연습생이 계약기간 내에 데뷔(또는 앨범을 발매)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연장 또는 계약의 종료는 평균 며칠 전에 연습생에게 공지하십니까?

□ ①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
□ ②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
□ ③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
□ ④ 계약 종료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음
□ ⑤ 기타 _____

6. 연습생의 훈련활동비용 범위는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보컬/연기 트레이닝 비용
□ ② 연습실 대관료
□ ③ 체력단련 관련 비용
□ ④ 어학습득 관련 비용
□ ⑤ 작사/작곡/편곡 관련 교육 비용

☐ ⑥ 관리인건비 ☐ ⑦ 기타 _____

☐ ⑧ 훈련활동 비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음

7. 연습생이 데뷔(또는 앨범을 발매)하여 전속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연습생 시절의 훈련활동 비용을 정산에 포함하고 있습니까?

☐ ① 전체 포함하고 있음 ☐ ② 일부분 포함하고 있음

☐ ③ 연습생 시절의 훈련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④ 기타 _____

8. 연습생에 대해 품위유지비(교통비, 식대 등), 또는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별도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 ② 숙소를 제공하고 있음

☐ ③ 별도로 지급하는 현금/현물은 없음 ☐ ④ 기타 _____

9. 연습생의 귀책사유로 계약 기간 내에 연습생이 데뷔(또는 앨범을 발매)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훈련활동비를 환급받고 계십니까?

☐ ① 전체 환급받고 있음 ☐ ② 일부분 환급받고 있음

☐ ③ 별도로 환급을 받지 않음 ☐ ④ 기타 _____

10. 최근 대중예술인의 우울증, 자살관련 기사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에서는 연습생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상담/심리치료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주기적으로(주간/월간/분기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②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 비정기적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③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대중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고 있음

☐ ④ 어떤 지원도 하고 있지 않음(→D로)

10-1.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② 내부 상담/교육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③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④ 기타 _____

10-2. 소속된 연습생으로부터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 요청 받은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D.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활용실태

1. 귀 업체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원안 그대로 사용(→2-2로)
☐ ②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활용한 자체 부속합의서 활용(→2-1로)
☐ ③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없이 표준전속계약서에 준함(→1-1로)
☐ ④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없음 (→E섹션으로 이동)
☐ ⑤ 별도의 부속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내용 전달 (→1-1로)

1-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① 자체 작성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활용해 오고 있으므로
☐ ② 청소년 표준부속합의서가 있는 줄 몰라서
☐ ③ 보호자와 구두로 협의하기 때문에
☐ ④ 기타 _____
(→응답 후 E섹션으로 이동)

2-1. 청소년 부속합의서 내용이나 조문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조문이나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2-2. 변경한 내용 중에서 기획업자에게 더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다면 "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	2-1. 변경 사용 여부	2-2.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부분
① 자유 선택권 보장	☐	
② 학습권 보장	☐	
③ 인격권 보장	☐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	
⑤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	
⑥ 용역 제공시간 제한	☐	
⑦ 위해 장소 출입 금지	☐	
⑧ 용역 제공 알선 제한	☐	
⑨ 유사행위 금지	☐	
⑩ 법정대리인 권한 명시	☐	
⑪ 정산금액 지급	☐	
⑫ 기타(내용기재:)	☐	

3. 청소년 부속합의서 내용 중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이성교제 금지
☐ ②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금지
☐ ③ 휴대전화 사용금지
☐ ④ 식단 관리
☐ ⑤ 과도한 노출 및 지나친 성적 표현행위 강요 금지
☐ ⑥ 훈련활동 범위에 대한 내용
☐ ⑦ 기획업자의 업무(지원)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 ⑧ 기타 _____

4. 청소년 부속합의서 내용 중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간제한 기준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구 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 주당 **35시간** 이내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단,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15세 이상의 청소년	■ 주당 **40시간** 이내 * 단,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 단,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①	②	③	④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음	대체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대체로 지켜지고 있음	매우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

4-1. (4번에서 ①, ②, ③ 응답자만) 용역 제공시간 제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경우 별도의 연장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 ① 매번 연장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음
□ ② 월별/분기별로 연장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음
□ ③ 연 1회 연장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음
□ ④ 구두로만 협의를 하고 있음
□ ⑤ 별도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음
□ ⑥ 기타 _____

4-2. 용역 제공시간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방송 출연 등이 야간시간대에 정해지기 때문에
□ ② 뮤직비디오 촬영/드라마 촬영 등이 야간시간대를 포함하여 all-day로 진행되기 때문에
□ ③ 방송국/외주제작사 등이 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지정하여 통보하기 때문에
□ ④ 함께 출연하는 성인 예술인의 스케줄에 우선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 ⑤ 기타 _____

5. 청소년 예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 중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사항을 <u>모두 선택</u>하여 주십시오.

□ ① 학교 등교시간내에 스케줄 최소화
□ ② 학교 학습 외 별도 학습시간 부여
□ ③ 개별 과외/또는 보충 수업 지원
□ ④ 기타 _____
□ ⑤ 별도 지원 없음

E.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활용실태

1.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는 비율은 대체로 얼마나 되십니까?

1-1. 정기출연의 경우(예능 정기출연, 드라마/영화 등)

①	②	③	④
전혀 작성하지 않음	가끔 작성하고 있음	대체로 작성하고 있음	매 건마다 작성하고 있음

1-2. 1회성 출연의 경우(음악방송, 1회성 예능출연 등)

①	②	③	④
전혀 작성하지 않음	가끔 작성하고 있음	대체로 작성하고 있음	매 건마다 작성하고 있음

(→ 1회성 출연의 경우, ① 전혀 작성하지 않음을 응답한 경우, 1-3번으로)

1-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① 방송사/외주제작사에서 자체 작성한 방송출연계약서를 활용해 오고 있으므로
□ ②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 있는 줄 몰라서
□ ③ 방송사/외주제작사에서 관행상 사용하지 않아서
□ ④ 기타 _____

3.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으나 있어도 괜찮겠음	필요한 편임	반드시 필요함

3-1.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4. 방송출연료 외 방송출연으로부터 생성되는 콘텐츠(소속 예술인의 얼굴 또는 음악이 포함된)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획사 및 소속 예술인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TV 등에 업로드되는 스페셜/요약/편집/직캠/무대 영상 등

①	②	③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으나 있어도 괜찮겠음	필요한 편임	반드시 필요함

4-1. (4번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방송출연으로부터 생성되는 콘텐츠의 수익 배분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콘텐츠가 생성된 시점부터 ____년까지 □ ② 콘텐츠로부터 수익이 발생되면 영구적으로
□ ③ 기타 _____

4-2. (4번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방송출연으로부터 생성되는 콘텐츠의 수익 배분 주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월별로 발생한 수익의 배분 □ ② 분기별/연간 수익의 배분
□ ③ 수익 발생 시마다 건별로 배분 □ ④ 기타 _____

5. 표준계약서는 실제 활용하면서 어떤 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② 일부 항목의 경우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③ 계약의 자율성 보장 및 최소한의 가이드로만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④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표준계약서 자체가 불필요함
□ ⑤ 기타 _____

<부록2> 대중문화예술인 정량조사표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ID		-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조사(대중문화예술인)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제작업 및 종사자의 표준계약서 활용실태의 면밀한 파악 및 공정한 권리 관계 형성을 위한 올바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연구의 일환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및 기획업체의 표준계약서 체결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반드시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귀하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DN Research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기관 담당 : 성미경 수석연구원

(주)케이디앤리서치
조사담당 김유미 팀장
연 락 처 Tel : 02-2183-9135
E-mail : kdn21@kdn21.co.kr

A. 응답자 일반현황

1) 응답자명		2) 응답자 성별	□①남자 □②여자
3) 연령	만 _____세	4) 주 활동 부문	□①가수(작·편곡 및 연주 겸업 활동도 해당) □②연기자(방송, 영화, 공연 활동 등)
5) 전속계약여부	□①전속/연습생 계약중		
	□②프리랜서 활동 중(→)	프리랜서 활동 시기 : _____년부터(예시:2017년부터)	
6) 데뷔시점 또는 연습생 활동시점	□①데뷔함(→)	_____년 데뷔	
	□②연습생 활동 중(→)	_____년 시작	
7) 응답자 전화번호		8) 응답자 e-mail	

※ 연기자이면서 가수인 경우(또는 가수이면서 연기자인 경우) 활동 비중이 높은 주된 분야를 기준으로 응답할 것.
※ 핸드폰번호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여 주시면 모바일 상품권(5,000원권)을 문자메시지(또는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C섹션부터 응답

B. 표준전속계약서 활용실태

1. 기획업자(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표준전속계약서로 계약체결(→2번으로)
☐ ②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1-2번으로)
☐ ③ 표준계약서 외 자체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음(→1-1번으로)
☐ ④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1-1번으로)
☐ ⑤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1-1번으로)

(1번에서 ③,④,⑤ 응답자)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만	
1-1.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획업(엔터테인먼트사)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 ② 표준전속계약서가 있는 줄 몰라서 ☐ ③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 ④ 자체 제작한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더 명확해서 ☐ ⑤ 기타 _____	**응답 후 2번으로 이동**

(1번에서 ② 응답자) 가수인 경우

1-2.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이나 조문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계신 부분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② 계약 기간 및 갱신
③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④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⑤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⑥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⑦ 상표권/퍼블리시티권
⑧ 저작권 귀속
⑨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⑩ 수익의 분배 및 정산
⑪ 확인 및 보증
⑫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⑬ 비밀유지
⑭ 분쟁해결
⑮ 청소년의 보호
⑯ 부속합의 관련
⑰ 기타(내용기재:)

1-3. 변경한 내용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더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다면 "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번에서 ② 응답자) 연기자인 경우

1-2.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이나 조문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계신 부분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②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③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④ 연기자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⑤ 연기자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⑥ 수익의 분배 및 정산
⑦ 상표권/퍼블리시티권
⑧ 저작권 귀속
⑨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⑩ 계약의 적용지역(국내/해외포함 등)
⑪ 계약 기간
⑫ 확인 및 보증
⑬ 권리 등의 양도
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⑮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⑯ 비밀유지
⑰ 분쟁해결
⑱ 청소년의 보호
⑲ 부속합의 관련
⑳ 기타(내용기재:)

1-3. 변경한 내용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더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다면 "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기획업자(엔터테인먼트사)와 체결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대략적으로라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년 [ ] 월 ~ [ ] 년 [ ] 월 (예시: 2015년 2월~2020년 2월)

3. 전속계약 체결 전 계약 조건(또는 전속계약서)은 주로 누구와 함께 검토하셨습니까?

☐ ① 본인 혼자서 ☐ ② 부모님/가족 ☐ ③ 변호사 등 법조인
☐ ④ 동종업계 동료/선후배 ☐ ⑤ 기타_____

4.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전속 계약기간을 최대 7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 ☐ ② 적절하지 않다(적절한 전속기간 _____년)

4-1.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5. 전속계약 체결시 활동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에 기재되어있습니까? 기재된 내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의 활동
☐ ② 배우, 모델, 성우, TV 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 ③ 구체적인 범위 명시 없이 진행
☐ ④ 기타 _____

5-1. 전속계약 체결 시 활동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에 기재되어있습니까? 기재된 내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
□ ②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 ③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 ④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 ⑤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기획업자'와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 ⑥ 기타 _____
□ ⑦ 구체적인 매체 명시 없이 진행

5-2. 전속계약 체결시 활동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편	대체로 필요함	반드시 필요함

5-3. 위의 5-2처럼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4. 방송/공연 외 SNS(유튜브 포함)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전속계약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5-4-1로)　　□ ② 필요하지 않다(→5-5으로)

5-4-1. (5-4 ①필요하다 응답자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제시/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속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구체적으로 : _____)
□ ② 활동 매체에만 포함 시켜야 한다
□ ③ 개인 SNS 활동은 제시할 필요가 없다
□ ④ 기타 _____

5-5. 회사가 개인의 활동(연예활동 외 겸업, 파트타임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문 5-5-1로)
□ ② 회사 또는 예술인의 이미지와 관련 없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음(→문 6으로)
□ ③ 별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한할 필요가 없음(→문 6으로)

5-5-1. (5-5 ①필요하다 응답자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한 범위의 개인 활동
(예시) 가수:코러스, 세션, 작곡, 작사 등, 배우:연기지도 등))
□ ② 연예활동과 무관한 파트타임(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 ③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업/창업(음식점/주점 운영 등)
□ ④ 기타 _____

6. 기획업자(엔터테인먼트사)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한 기준을 전속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귀속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항목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사업체에 귀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귀속	기여도에 따라 합의하여 정함	해당 없음	기타
1) 저작권	☐	☐	☐	☐	☐
2) 저작인접권(실연)	☐	☐	☐	☐	☐
3) 저작인접권(음반제작)	☐	☐	☐	☐	☐

6-1. 현재 표준전속계약서는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콘텐츠"라 함은'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에 대한 저작권은 '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저작인접권)는 '기획업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음반(음원)에 관한 저작권·저작인접권과 그 외 콘텐츠(예를 들어 영상물 등)에 관한 저작권·저작인접권 조항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
☐ ② 음반(음원)과 그 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 저작인접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 ③ 기타 _____

6-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7. *(가수만(가수와 작·편곡 및 연주 겸업도 해당))* 소속 기획사(엔터테인먼트사, 레이블)와 퍼블리싱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계약하였습니까?

☐ ① 별도 계약없이 전속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 ② 부속합의서로 계약
☐ ③ 퍼블리싱을 전담하는 자회사와 별도 계약
☐ ④ 계약 없이 구두로만 진행
☐ ⑤ 퍼블리싱 관련 업무는 하지 않음
☐ ⑥ 기타 _____

7-1. *(7번에서 ①~⑤에 응답한 경우)* 퍼블리싱을 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수익배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① 기존 수익배분률 적용
☐ ② 저작권에 대해서만 별도의 수익배분률 적용
☐ ③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만 별도의 수익배분률 적용
☐ ④ 기타 _____

8. *(가수만(가수와 작·편곡 및 연주 겸업도 해당))*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에는 가수(또는 연주자)의 실연, 해외공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보완하여 계약했거나, 현재 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전속계약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속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 ② 부속합의서로 계약
☐ ③ 계약 없이 상호 협의로 진행(구두 협의 등)
☐ ④ 계약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⑤ 포함할 필요 없음
☐ ⑥ 기타 _____

9. *(가수만(가수와 작·편곡 및 연주 겸업도 해당))*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음반 크레딧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보완하여 계약했거나, 현재 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속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 ☐ ② 부속합의서로 계약
☐ ③ 계약 없이 상호 협의로 진행(구두 협의 등)
☐ ④ 계약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전속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⑤ 포함할 필요 없음
☐ ⑥ 기타 _____

10. **전속계약한 기획업자(엔터테인먼트사)와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산내역 제공 등에 관하여 전속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대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수익배분 비율에 관한 내용 ☐ ② 수익배분 대상 범위에 관한 내용
☐ ③ 비용 정산 범위에 관한 내용 ☐ ④ 수익금 지급기한에 관한 내용
☐ ⑤ 정산자료 제공 기간에 관한 내용 ☐ ⑥ 기타 _____

10-1. 수익분배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 ① 활동 매체(또는 범위)를 포괄하여 분배비율을 적용함
☐ ② 활동 매체(또는 범위)별로 별도의 분배비율을 적용함 ☐ ③ 전체 계약 기간에서 기간별로 다르게 정함
☐ ④ 전체 계약 기간에서 인지도(음반(음원)판매량의 정도, 주·조연 배역 등으로 출연 조건이 좋아졌을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함
☐ ⑤ 기타 _____

10-2. 수익분배의 기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매우 불만족함	불만족하는 편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함

10-3. 수익금 지급은 얼마나 자주 진행되고 있습니까?

☐ ① 매월 또는 월별 지급하고 있음 ☐ ② 용역대금 수령일로부터 45일이내 지급하고 있음
☐ ③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 ④ 용역대금 수령 즉시 지급하고 있음
☐ ⑤ 기타 _____

10-4. 정산내역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 ①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정산내역만 제공(또는 원할 때 즉시 열람 가능상태)
☐ ②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정산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공(또는 원할 때 즉시 열람 가능상태)
☐ ③ 별도 정산내역 제공하지 않음
☐ ④ 기타 _____

10-5. 정산내역 제공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1.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면서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피해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사생활 침해
□ ②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없음(또는 반영 안됨)
□ ③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류나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시 반영 안됨
□ ④ 폭력(언어/신체/성관련)
□ ⑤ 체불(미정산)
□ ⑥ 악플 등에 대한 무대응(또는 무성의한 대응)
□ ⑦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 불이행
□ ⑧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
□ ⑨ 비밀유지 안됨
□ ⑩ 기타 _____

12. 귀하는 소속사로부터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외부강사를 통해 직접 교육형태로 진행
□ ②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강좌를 통해 진행
□ ③ 구두로 간단한 사항만 전달
□ ④ 어떤 교육도 진행하지 않음
□ ⑤ 기타 _____

13. 현재의 표준전속계약서에는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간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의함(→13-1로)
□ ② 동의하지 않음(→13-2로)

13-1. (13에서 ①동의함 응답자만)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간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2. (13에서 ②동의하지 않음 응답자만)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간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귀하는 소속사로부터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주기적으로(주간/월간/분기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음
□ ②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 비정기적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음
□ ③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요청할 경우 지원받고 있음
□ ④ 어떤 지원도 받지 않음(→C로)

14-1.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② 내부 상담/교육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③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④ 기타 _____

14-2. 현재까지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 요청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15로)

14-3. 해당 요청에 대해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 ①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② 내부 상담/교육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③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④ 기타 _____
☐ ⑤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함(→C로)

15. 표준전속계약서 활용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C. 연습생 표준계약서 활용실태

1. 귀하는 연습생 활동(데뷔전 기획업자(엔터테인먼트사)와 연습생계약 또는 연습생 활동 지원을 받는 상태)을 했었습니까?

☐ ① 연습생 활동을 했었음 ☐ ② 연습생 활동을 하지 않았음(→D섹션으로 이동)

2. 연습생 활동시 별도의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 ①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 원안 그대로 사용(→2-2로 이동)
☐ ②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부속합의서 형태로 보완하여 사용(→2-2로 이동)
☐ ③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자체 계약서 활용(→2-2로 이동)
☐ ④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 외 자체 제작한 계약서를 활용(→2-1로 이동)
☐ ⑤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함(→2-1로 이동)
☐ ⑥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2-1로 이동)
☐ ⑦ 별도의 연습생계약서가 아닌 표준전속계약서 활용(→2-1로 이동)

(2번에서 ③,④,⑤ 응답자)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만	
2-1.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획업(엔터테인먼트사)에서 제시하지 않아서 ☐ ②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가 있는 줄 몰라서 ☐ ③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였음 ☐ ④ 기타 _____	**응답 후 3번으로 이동**

2-2. 연습생 표준계약서 내용이나 조문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계신 부분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계약 기간
②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
③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
④ 훈련 활동 비용의 관리
⑤ 계약 내용의 변경
⑥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⑦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
⑧ 전속계약 체결 등
⑨ 비밀유지
⑩ 확인 및 보증
⑪ 분쟁 해결
⑫ 부속 합의
⑬ 기타(내용기재:)

2-3. 변경한 내용 중에서 연습생에게 더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다면 "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기획업자(엔터테인먼트사)와 체결한 연습생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대략적으로라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년 [ ] 월 ~ [ ] 년 [ ] 월 (예시: 2015년 2월~2020년 2월)

4. 연습생 계약체결 전 계약 조건(또는 계약서)은 주로 누구와 함께 검토하셨습니까?

□ ① 본인 혼자서 □ ② 부모님/가족 □ ③ 변호사 등 법조인
□ ④ 동종업계 동료/선후배 □ ⑤ 기타_____

5. 귀하는 소속사로부터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주기적으로(주간/월간/분기 등)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음
□ ②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등 비정기적으로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음
□ ③ 별도 교육이나 지원은 없으나 요청할 경우 지원받고 있음
□ ④ 어떤 지원도 받지 않음(→C로)

5-1.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② 내부 상담/교육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③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④ 기타 _____

5-2. 현재까지 인성교육 또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치료 요청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6으로)

5-3. 해당 요청에 대해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 ① 외부 강사 또는 외부 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② 내부 상담/교육관련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③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상담/심리치료 지원
□ ④ 기타 _____
□ ⑤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함(→C로)

6.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표준계약서 활용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D. 청소년 부속합의서 활용실태(만19세 이하인 응답자만 응답)

1. 귀하는 기획업자(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원안 그대로 사용(→1-2로 이동)
□ ②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활용한 자체 부속합의서 활용(→1-2로 이동)
□ ③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없이 표준전속계약서에 준함(→1-1로)
□ ④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하지 않음(→E섹션으로)
□ ⑤ 별도의 부속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내용 전달(→1-1로)

(1번에서 ③응답자)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만	
1-1.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획업(엔터테인먼트사)에서 제시하지 않아서 □ ②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가 있는 줄 몰라서 □ ③ 계약당시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 ④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로 대신해서 □ ⑤ 기타 _____	**응답 후 3번으로 이동**

1-2. 청소년 부속합의서 내용이나 조문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계신 부분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자유 선택권 보장
② 학습권 보장
③ 인격권 보장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⑤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⑥ 용역 제공시간 제한
⑦ 위해 장소 출입 금지
⑧ 용역 제공 알선 제한
⑨ 유사행위 금지
⑩ 법정대리인 권한 명시
⑪ 정산금액 지급
⑫ 기타(내용기재:)

1-3. 변경한 내용 중에서 청소년에게 더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다면 "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청소년 부속합의서 활용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E. 방송출연계약서 활용실태

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는 비율은 대체로 얼마나 되십니까?

1-1. 정기출연의 경우(예능정기출연, 드라마/영화 등)

①	②	③	④	⑤
전혀 작성하지 않음	가끔 작성하고 있음	대체로 작성하고 있음	매 건마다 작성하고 있음	잘 모름

1-2. 1회성 출연의 경우(음악방송, 1회성 예능 출연 등)

①	②	③	④	⑤
전혀 작성하지 않음	가끔 작성하고 있음	대체로 작성하고 있음	매 건마다 작성하고 있음	잘 모름

→ 방송출연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경우 6번으로 이동

2. 방송출연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①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음 □ ② 방송사/제작자 자체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음
□ ③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 □ ④ 잘 모르겠음
□ ⑤ 기타 _____

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행상 방송사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 ② 기획업(엔터테인먼트사)에서 요청하지 않아서
□ ③ 방송사(제작사)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 ④ 기타 _____

4. 방송출연계약의 작성 주체는 주로 누구입니까?

□ ①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 - 기획사 □ ② 프로그램 담당 PD/작가 - 기획사
□ ③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 - 기획사 - 대중문화예술인 □ ④ 프로그램 담당 PD/작가 - 기획사 - 대중문화예술인
□ ⑤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자 - 대중문화예술인 □ ⑥ 프로그램 담당 PD/작가 - 대중문화예술인
□ ⑦ 기타 _____

5-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조문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음(→문5-2로)　　□ ② 전혀 변경하지 않음(→문5-3으로)

□ ③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음(→문5-3으로)

(1번에서 ② 응답자) 가수인 경우_(가수와 작·편곡 및 연주 겸업도 해당)_

5-2. 조문이나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계신 부분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계약 기간
② 계약의 대상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④ 가수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⑤ 권리의 귀속
⑥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⑦ 비밀유지
⑧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⑨ 위임 등의 금지
⑩ 책임면책 및 보험
⑪ 분쟁 해결
⑫ 기타 부속 합의
⑬ 이행의 보증
⑭ 기타(내용기재:　　)

5-3. 변경한 내용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인/기획업자에게 더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다면 "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번에서 ② 응답자) 연기자인 경우

5-2. 조문이나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계신 부분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계약 기간
② 계약의 대상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④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⑤ 권리의 귀속
⑥ 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의 중단
⑦ 프로그램 출연 회차 증감 및 내용의 변경
⑧ 비밀유지
⑨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⑩ 위임 등의 금지
⑪ 책임면책 및 보험
⑫ 분쟁 해결
⑬ 기타 부속 합의
⑭ 이행의 보증
⑮ 기타(내용기재:　　)

5-3. 변경한 내용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인/기획업자에게 더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다면 "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6. 방송 출연시 방송사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료, 출연기간, 출연 조건 등이 변경되어 피해를 경험한적이 있습니까?

☐ ① 변경된 적은 있으나 피해는 없었음(→문6-2로)
☐ ② 변경으로 인해 피해가 있었음(→문6-1로)
☐ ③ 변경된적이 없음(→문7로)

6-1. (문6에서 ②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였는지 기재하여 주십시오.

6-2. 방송출연 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해 문서/또는 구두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서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습니까?

☐ ① 문서형태로 추가계약/변경합의서 작성 ☐ ② 사전에 구두로 계약 변경사항 협의
☐ ③ 협의하지 않고 나중에 통지함 ☐ ④ 기타 _____

7.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감 수 | 이양환(정책본부장)
박혁태(산업정책팀장)
연구총괄 | 성미경(산업정책팀 수석연구원)
수행기관 | (주)케이디앤리서치
연구책임 | 김유미 팀장((주)케이디앤리서치)
연구분석 | 오혜리 과장((주)케이디앤리서치)
김동구 연구원((주)케이디앤리서치)
이경호 초빙교수(국제예술대학교)
김시열 박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재식 박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안나 연구원(충청대학교)
발 행 인 |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 행 일 | 2020년 12월 30일
발 행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 화 | 1566-1114
홈페이지 | www.kocca.kr

기관번호_KOCCA 20-45
ISBN_978-89-6514-993-4(93600)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

9 788965 149934
ISBN 978-89-6514-993-4
93600
비매품/무료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20-45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0

한국콘텐츠진흥원